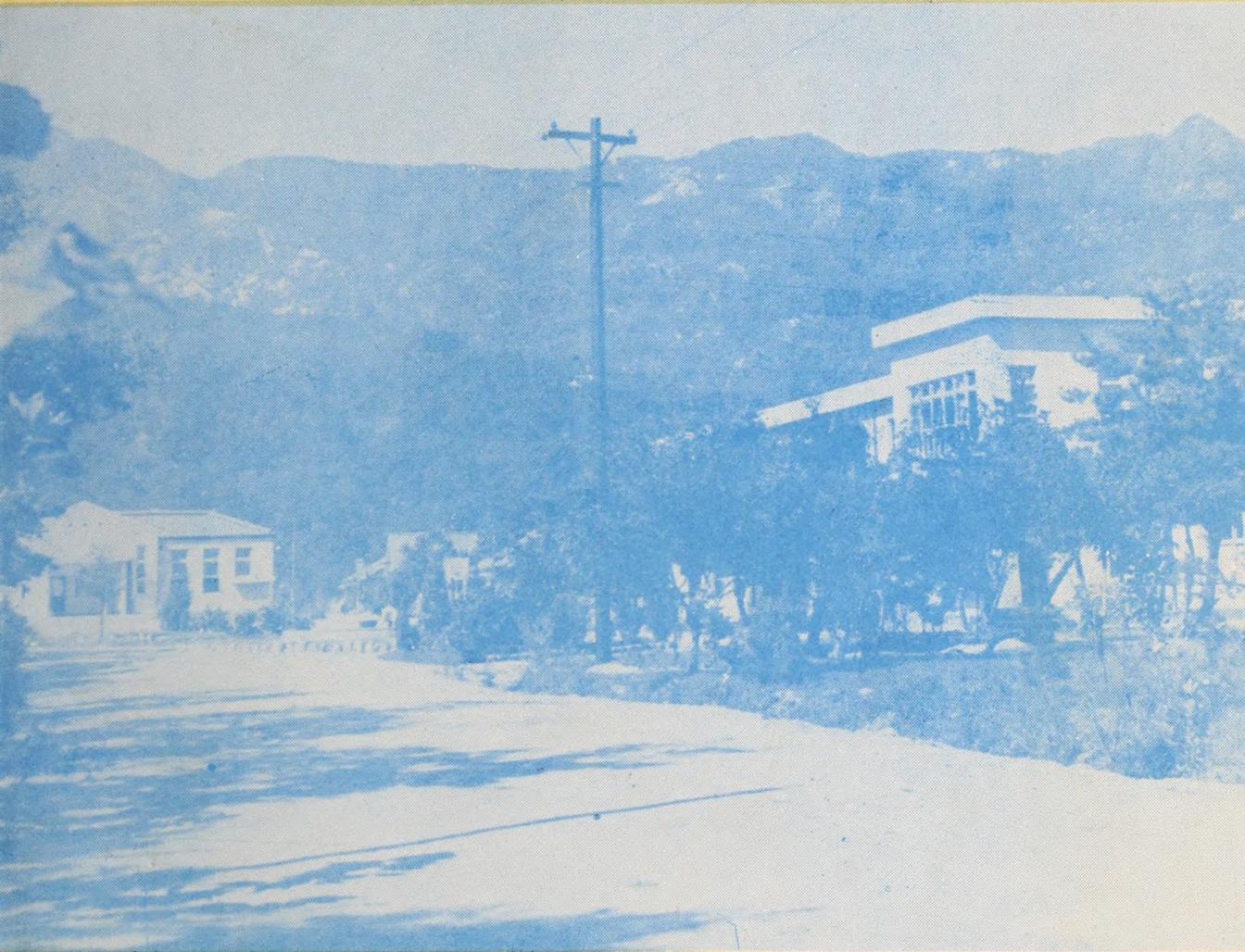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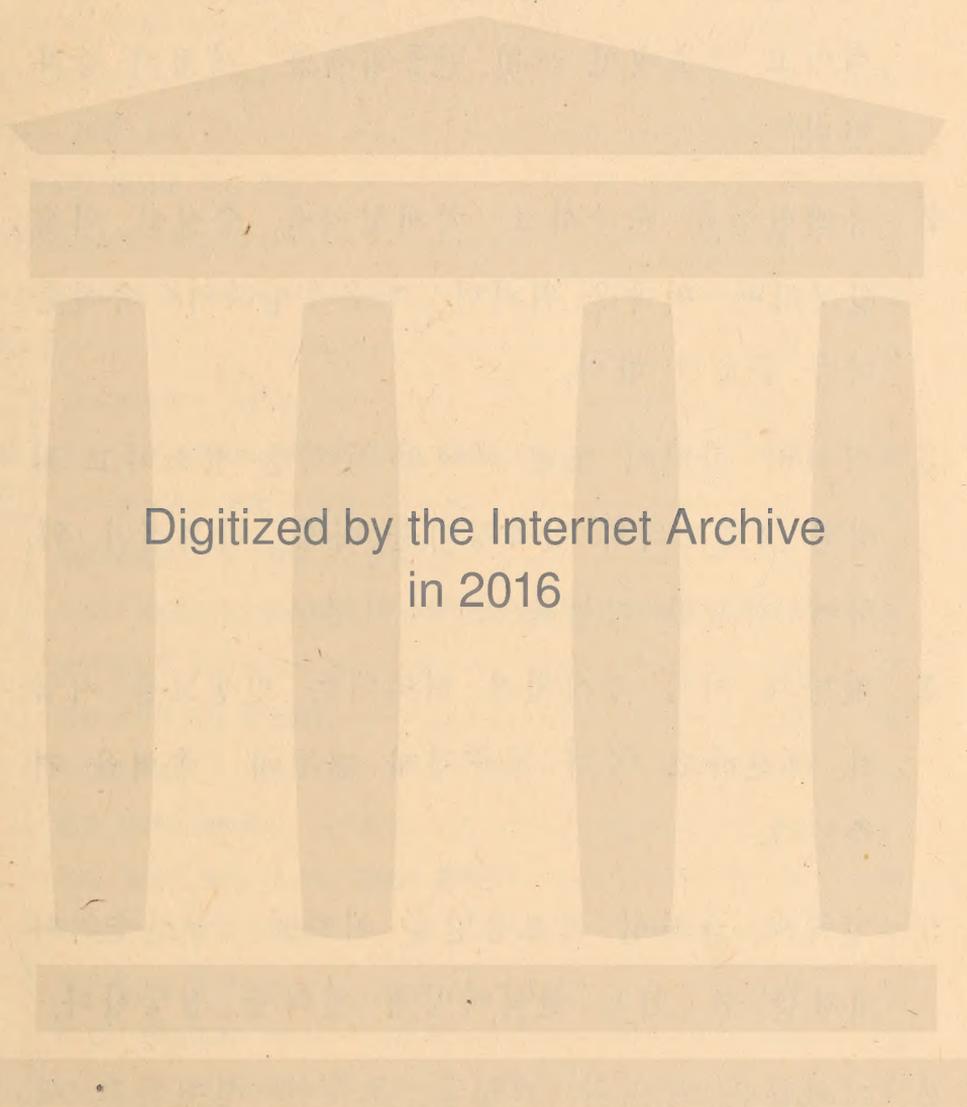
社會事業

第 2 號



保 健 社 會 部

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16

<https://archive.org/details/royalasiaticsoci908unse>

혁 명 공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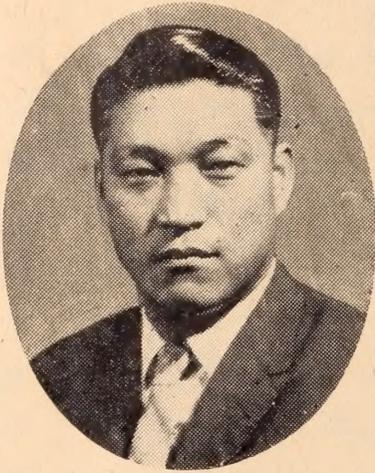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덕과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 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目 次

社會事業誌에 寄함	保健社會部長官 醫學博士 鄭熙燮	2
卷 頭 言	鄭 正	3
社會事業史의 學門的 小考 (2)	池 潤	4
地域社會 開發事業과 社會福祉	尹 吉	15
英國貧民法 變遷 小考	尹 欽	25
解放前 勞動者 處遇에 對한 考察	尹 甲	30
近世朝鮮 民生救恤事業의 沿革	具 滋	34
食母少女 生活調查 報告와 社會的 保護를 爲한 所見	金 洛	46
社會調查論	曹 圭	56
浮浪兒善導의 具體的 方案	芳 泉	61
우리나라 兒童福祉向上을 爲한 具體的 方案	朴 泰	64
浮浪兒善導의 具體的 方案	李 健	68
精神薄弱兒의 學習指導와 作業指導	朴 壽	72
「社訓」附屬育兒施設兒童의 크레치린 檢査結果에 對한 一報告	李 圭	75
精神薄弱兒 收容施設에 對한 小考	李 德	90
精神遲滯兒童의 實地教育	韓 敬	92
院生感化過程에 對한 記錄	梁 東	95
職業 輔導施設職員인 나의報告	禹 乙	98
未感 兒童에 對한 새로운 認識의 緊要性	文 炳	101
被保護兒童의 教育問題	李 東	103
施設兒童의 레크레이션	趙 堯	105
兒童의 讀書指導	金 貞	107
收容施設의 衛生問題	裴 銀	110
院兒生活 善導策	元 容	111
施設兒童의 被服管理	鄭 順	114
榮養과 健康	李 起	115
保姆의 生活手記	洪 沃	118
社會事業訓練 實績과 展望	李 奎	120

入
選
文
作

所
屬
機
關
職
員
研
究
發
表



保健社會部長官
醫學博士

鄭 熙 燮

民族이 繁榮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것은 그 民族이 가진 健康과 剛健한 氣風 그리고 民族 國家社會에 對한 忠誠스러운 意志라고 보겠습니다.

五·一六革命은 弛緩된 民族의 氣風을 再生시키어 不正을 公正으로 腐敗를 清新으로 無秩序를 整然으로 貧困을 裕足으로 轉換시켜 民族傳統의 自尊을 되 살리고 힘 있는 自存을 굳게 세우기 爲한 民族愛의 發露를 行動化한 것입니다. 思考와 生活樣式이 墮性에 빠졌고 沈滯속에 慢性化되었던 過去를 果敢히 清算하고 따라다니는 不幸과 그要素를 除去하는 民族의 發奮이고도 한 것입니다. 獨逸이 敗戰後 近代의인 民主國家로 建設途程에 이르렀을 때 社會事業을 가르켜 社會事業이란 文化의인 理想에 對應할수 있게 國民生活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올리고 保護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國家 및 社會의 努力의 總體로 이 모—든 努力이란 文化에 뒤떨어져 있다던가 또는 障害가 되어 있는 社會階層의 健康, 道德, 經濟의인 여러 關係를 向上시키는 것을 目的으로한 行爲라고 明示하였던 일은 吟味할 만한 말이라고 生覺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文化라는것은 健全한 生活의 諸般 樣態가 包括된것을 意味하는것으로 解釋되는것입니다.

우리의 現下 社會諸般에 걸쳐 그 實情을 살펴볼 때 社會事業은 韓國의인 社會規範 속에서 뚜렷한 意義와 目標가 樹立되어야 할것입니다.

모—든것이 그렇듯이 後進 狀態에서 前進하자면 不合理를 合理化하려면 거기에는 干與되는 人的 物的 狀態의 再組成 再調整과 果敢한 實踐이 必要할것으로 生覺되는 것입니다. 높은 判斷力과 이것을 實踐하는 勇氣는 무엇

보다도 要請되는 것입니다. 어느 部門이고 革新이 要求되지 않음이 없듯이 社會事業 分野도 自家에 對한 果敢한 改革이 必要한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落後된 人間群을 그 狀態에서 이끌어내어 自立, 自存할수 있게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社會事業의 性格을 지닌 各種 施設이 共通의으로 當面하는 特殊條件과 이곳에 收容되는 不幸한 사람 人格의 缺陷 特히 精神面을 올바르게 指導하고 心身이 健全한 社會人으로서의 要求는 社會事業의 短期的 長期的 成敗를 평가할 하는 重要한 要素의 하나 가 된다는 事實에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國立社會事業 指導者 訓練院에서 發刊하는 社會事業誌는 이러한 本然의 趣旨를 弘報하는 것만이 아니라 社會事業이 간직해야할 合理的體系 現代의意味를 더욱 밝히는 內外的 情報과 知識을 傳達하고 이 分野에서 活躍하는 人士의 意思와 經驗을 傳하는 橋梁의 努力의 一端으로서 時宜에 適合한 것으로 思料됩니다.

研究나 調查 評價의 目的은 이를 充分히 活用하여 實生活에 侵透시켜 어떤 條件을 改善 또는 變化토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社會事業誌가 本來의 任務에서 離脫됨이 없이 邁進하여야 할것입니다.

社會事業誌로서의 充實과 發展이 社會事業家들에게 크게 寄與하여 國家再建과 民族繁榮에 보람 있게 되어 줄것을 冀望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社會事業을 우리의 손으로 即 自力으로 解決하여야 한다는 理念에 立脚하여 서로 사랑하고 도움은 同胞愛를 發揮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모든 努力을 集約하여야 할것입니다.



歷史의인 五·一六革命은 不正 腐敗等 弊習을 一掃하고 祖國再建을 위한 힘찬 巨步를 내디디어 健全한 民族의 生活을 約束하고 있습니다

人間의 幸福은 精神의 身體의 社會的 健康이 合致되어 비로서 確保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社會的 健康이라는 말의 相對로 社會的 不健康이란것을 相起하게되는 것이며 社會的 不健康에 想到하고보면 社會事業이 차지해야 할 比重을 자연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人間이 오랜동안 希求하여 왔고 그實現을 熱願하고 있는 福祉社會란 結局 不健全한 많은 毒素가 除去된 健康한 社會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經濟的인 葛藤에서 오는 不安定과 貧困이 없는 調整된 社會, 疾病이 주는 苦痛으로 呻吟하지 않을 健康한 人間들끼리의 集團인 社會, 不適應으로 因하여 社會에서 離脫되어 苦惱를 呼訴하는 이웃이 없는 社會 우리는 하나의 유토피아의 觀念에서가 아니라 實로 調整된 社會의 實現과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의 安定된 生活이 切實한 것이며 이것이 없이 健康한 生活이 營爲되는 것으로는 볼수없는 까닭에 人爲的인 것에 對하여나 自然的인 것에 對하여는 人爲的으로 이것을 改善하고 確保하기 위한 努力이 必然的으로 發動하게 되는 것으로 生覺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測隱之心이나 慈惠精神 만으로 이 社會가 가진 또는 어느 個人이 가진 不健康을 治癒할 수도 없고 豫防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社會가 지닌 어떠한 不健康한 要素나 그러한 좋지않은 것들의 可能性을 制止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不健康한 것이 社會現實에 存在한다면 社會事業은 이

에 對處할 知識과 技能과 資源을 提供해야할 貴重한 役割을 기꺼히 自擔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現今의 社會事業을 現代의 思潮에서 觀照할때에는 思考方式에 있어서 아직도 舊態依然한 領域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 感이 不無하니 이에 對한 改善과 檢討의 必要가 抬頭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眞正한 意味에서 볼 때에 社會的으로 어떠한 個人이나 集團이 가지고 있는 社會的인 問題解決에 對해서는 果敢하게 對處해줄 여러가지의 準備와 이것을 成就시킬 수 있는 社會事業이 活潑하게 展開되어야 할 段階에 다달았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重大한 課題는 現在의 社會事業에 對한 研究의 緊要性을 갖어오게 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를 自然 講究하게 되는 것입니다.

本 訓練院의 設立도 이러한 緣由로서 이루어진것이며 實際로 訓練을 거듭 繼續하고 있는것과 이 社會事業誌를 發刊하는 意圖도 實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社會事業誌에 收錄된 여러 論文은 우리가 改善해야할 問題나 追求하고 있는 問題를 밝히려는 文化的인 努力의 所產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本訓練院은 이러한 冊子들을 통해서 社會事業家 諸賢들이 專擔하신 事業의 좋은 伴侶가 되었으면 하는 所望도 겹쳐있는 것입니다.

社會事業은 前進途上에 있는 祖國의 繁榮을 위한 많은 貢獻을 期約해야 할것이며 社會事業家 諸位의 꾸준하신 研究는 여기에 寄與할 큰 要素가 된다는 것을 敢히 提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多忙하신 時間을 割愛하셔서 貴重한 玉稿를 주신 諸賢께 뜨거운 感謝를 드림과 同時에 當誌發展에 끊임없으신 協助와 聲援이 있으시기를 附託하여 마지않습니다.

많은 愛讀이 있으시기를 冀願하면서 社會事業家 諸賢의 清福을 祝願하여 마지않습니다.

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長

鄭 正 謨

社會事業史의 學問的小考 (2)



池 潤

四. 社會事業의 啓蒙期

(承前)

中世紀의 慈善事業은 全體로서 國家 或은 如何한 一般社會에 依하여도 貧民救濟를 爲하여는 어떠한 試圖도 請求하지 않았다. 이 事業은 全然 教會 및 個人信者들에 依한 宗教的 動機에서 行하는 것 以外에는 別로 없었으며 貧民들에 주어지는 援助의 大部分이 恩惠의 人 形態에서 行하여지고 있었다. 卽 聖俗 兩方面의 大家들과 僧院 救治院 길트 및 個人들에 依하여 行하여진 恩惠의 人 行爲이었던 것이다.

또한 假令 理論上 그 救濟의 方法이 어떠한 間에 大部分이 實際에 있어서 無差別한 施與이었다.

어떤 公共의 當局이거나 聖俗 어떤 것이던 間에 事態에 對하여 理解 있는 見地를 取하며 또한 여러가지 種類의 救貧機關을 統制하려고 하는 試圖은 조곰도 存在하지 않았다. 이 無分別한 恩惠의 人 分配는 일하기 싫어하는 者들을 爲하여 일하지 않고 生活할 수 있게 하였으며 따라서 여러 地方에 있어서 貧民의 增加를 생기기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故로 이것을 正確히 觀察하여 본다면 萬一 中世의 救貧事業이 어떤 方面에서는 지나치게 救濟를 行하였던 反面에 다른 方面에서는 너무도 救濟를 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中世의 弊害만을 施與를 改革하는 것이 宗教改革 以後에 있어서의 慈善事業의 큰 任務이었던 것이다.

A. 宗教改革과 慈善事業改革

(1) 루터—(Martin, Luther 1482—1546)의 改革 意見

오랫동안 教會의 壓迫을 받고 있던 當時 社會에서는 漸次 學問的 優越을 가져오게 되어 過去 數世紀 동안 一般的으로 承認하여 오던 學說에 對하여 많은 疑問을 품게 되었다.

이 改革事業의 根柢에 存在하는 原則은 當時 스킨라 哲學의 全盛期에 있어서 改革意見을 開陳한다는 것은 甚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當時 歐羅巴社會에 있어서 各國의 神學者, 公法學者 및 政治家들에 依하여 特別한 注意가 喚起되게 되었다. 먼저 第一로 新教 指導者들이 應報事業의 學說에 對하여 反對하는 氣運은 스스로 施與의 問題를 考慮하게 하였으며 또한 現存하는 宗教制度에 對한 敵意는 그것이 發生케 하는 弊害에 對하여 그들의 識見을 銳敏케 하였다.

他面으로는 새로운 人本主義의 學徒들은 비록 옛날의 教會制度를 繼續해서 固執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아마 救貧問題에 關하여는 前代의 神學者들 보다는도 一層 獨立의 見地를 取하게 되었다.

이 改革運動은 新教徒側으로부터 일어난 것과 거의 同時代에 自由的케 도릭教派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더 나아가 神學者間에 있어서의 이러한 發展은 第三의 勢力 卽 大都市의 長官들에 있어서도 이 問題를 都市 自體의 義務로서 生覺케 되는 刺戟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루터—는 1520년에 公表한 그의 宣言書 「獨逸國民의 基督教 貴族에게 告함」이라는 題目下에 그는 現下 가장 緊急한 것의 하나는 乞人社會의 全廢라고 宣言하였다.

萬一 우리들에게 充分한 勇氣와 熱心이 있다고 하면 모든 都市가 그 都市의 貧民을 爲하여 設備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容易하게 施行할 수 있는 規定인 것이다. 各 都市는 그 自身의 貧民을 扶養할 수 있으며 또는 어느 것이 眞正한 貧民인가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는 모든 貧民을 알며 또한 그들이 必要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評議會에 報告하는 一名의 監督者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1523년에 루터—에 依하여 起草가 되어 獨逸 新教徒들에 있어서 廣汎한 改革의 根據가 된 「共同金庫의 規定」이라는 著者에 있어서도 그 主要한 理想은 同一하였다.

物貫는 嚴重히 禁止하라.

老齡 虛弱하지 않은 者는 일을 하라.

그 敎區에 屬하지 않은 乞人은 留宿을 禁하라.

正直하게 手工業 또는 農業에 從事하는 貧困한 戶主에게는 萬一 他로부터 어떠한 援助도 얻지 못한다고 하면 無利子로 共同金庫로부터 資金을 貸與하라.

또한 萬一 이 補助金을 事實上 返濟할 수 없을 때에는 返濟를 強要하지 말고 그대로 주어야 한다.

金庫의 收入은 敎會領地의 收入 自由寄附 또는 萬一 必要하다면 市民에게 課稅할 것과 婢僕들에 對한 少數의 人頭稅를 徵收하고 그 管理는 選任된 市民 中에서 委任하여야 한다고 力說하였던 것이다.

(2) 宗教改革과 救濟事業

루터의 宗教改革이 行하여진 地方에서는 敎會制度和 救貧制度에 關한 新規定을 設定하는 權限은 政府 諸侯 또는 市會에 移管되었음으로 慈善箱 規則을 敎會制度의 一部로서 設置하여 救貧施設의 財源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救貧施設도 벌써 過去의 敎區에 있어서와 같은 純全한 宗教의 事業에 屬하지 않고 오히려 公共團體等와의 共同施設로 看做하게 되었다.

政府는 이 機關으로 하여금 救貧施設을 組織시키고 同時に 監督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從來 無統制하게 行하고 있던 救濟事業은 모다 統一하여 理想的으로 貧民들을 救濟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一般 慈善箱을 設置하여 모든 喜捨金, 委託金, 財團 或은 僧院의 財產等을 合併하여 管理 하였다. 그리고 慈善箱을 管理하기 爲하여 恒時一年 乃至 二年의 係員을 三, 四名式 任命하고 그 會計는 市의 會計와 同權으로 取扱하여 市에서는 市會 洞에서는 洞會 등에서 主管하고 또한 牧師가 이것을 監督하였다.

被救護者는 眞正으로 貧民에 限하였으며 保護의 限度는 生存의 程度에 限定하여 新敎의 副牧師로 하여금 親히 그들과 接觸케 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宗教의 道德的으로 向上시키는 義務를 가지게 하였다.

특히 市民이 貧困에 빠지지 않도록 豫防할 것과 이미 貧困에 빠진 者들에게는 再次 經濟上의 獨立을 얻을 수 있도록 授産의 方途를 請求하도록 努力하였으며 또한 孤兒, 棄兒, 病者 및 產婦들의 救濟에 關해서도 詳細한 規定을 設定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原則은 眞實로 훌륭한 것이 있으며 世上 사람들에게도 大端한 好意로써 歡迎되었으나 實際上的 結果로는 資金이 到底히 그 用途에 充足할 수 없었으며 副牧師의 任期가 짧은 關係로 그 責任을 完遂할 수 없

었으며 또한 옛날의 制度를 破壞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代身할만한 新制度를 設置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人物을 求할 수 없게되어 救貧事業은 舉皆가 下級官吏들의 手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所期의 目的을 達할 수 없게되어 16世紀의 後半부터는 再次 乞人들의 增加에 苦痛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宗教改革의 影養을 받은 敎會에서는 救貧施設에 相當한 發達을 본것은 確實하였다.

救貧施設에 關하여 누가 그 責任을 맡아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當時 相當한 論議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루터一派에서는 直接 敎會의 事業으로서는 認定하지 않고 그 管理는 政府에 一任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에 反하여 칼빈派에서는 國家와는 獨立한 宗教的 救貧施設을 理想으로 하였다.

그리고 宗教改革을 하지 않은 國家에 있어서도 救貧制度의 革新에 努力하였으나 敎會에 對한 疑惑과 牧師의 反對에 逢着하여 乞人의 禁止에 많은 困難을 받았다.

그리고 當時 貧民을 個別的으로 取扱할 것.

怠慢者와 참된 要救護者를 判別할 것.

勞動 其他 教育을 줄 것 등은 果然 實行 可能한가, 또한 乞人에 對하여 今後도 繼續하여 寬大하게 取扱할 것인가? 하는 것이 當時의 問題로 되어있던 것이다. 또한 救貧制度를 在來 그대로 敎會의 專管에 둘 것인가? 或은 政府가 이것에 當할 것인가는 重要한 問題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宗教改革과 救濟事業과의 關聯에 있어서 乞人 및 浮浪者에 關한 問題가 相當히 論議되고 있었다

佛國에서는 1350년에 英國에서는 1360~88년에 乞人禁止令을 發布하였다. 그중에도 英國에서는 法律의 施行이 大端히 苛酷하여 乞人에 對한 取扱이 너무 殘忍을 極하여 그 以來 16世紀에 이르기 까지 一般社會는 누구도 勞動할 意思가 있는 者는 恒常만드시 相當한 일을 發見할수 있는 것이라고 生覺하여 乞人을 보면 容赦없이 막대기로 亂打하며 적은 車에붙들어 매여 各洞里를 徊覽시켰다고 한다.

獨逸에 있어서도 英佛에 模倣하여 1384년부터 各都市에서 乞人禁止令을 發布하게 되었고 國家의 權力이 增大됨에 따라 統一的으로 立法의 制定을 必要하게 되어 1497년에는 帝國議會에서 乞人 禁止令을 制定하게 되었다.

그 中에는 衰弱者 및 不具者만을 除外하고 乞人子女들은 勞動能力을 가지게 되면 職工 또는 其他的 生業

에 就職하여야 한다고 規定 되어있다.

그러나 宗教改革後 各 都市는 貧民을 都市의 豫算을 가지고 扶助하기 爲하여 外來의 乞人을 追放하여야 한다는 思想에 依하여 乞人을 禁止함과 同時에 他面에 있어서는 貧民을 扶助할것을 目的으로 하여 貧民條例를 制定하게 되어 1522년에 「아우구스부르크」를 비롯하여 各都市에서는 連달아 都市條例가 되는 貧民條例를 制定하게 되었다.

B 國家主義 및 人本主義 擡頭와 救濟事業

(1) 國家主義와 人本主義의 擡頭

中世에 있어서 國王은 우로 부터는 羅馬法皇 아래로는 封建諸侯에 依하여 苦痛을 받게되어 充分 國家의 統一을 期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十字軍의 戰爭의 結果로 因하여 法皇은 그 權威를 잃게 되었으며 封建諸侯들은 그들 武士들과 함께 生命과 財産을 잃을 뿐만 아니라 領民들의 離散 或은 逃亡으로 因하여 自然히 그들의 勢力을 잃게 되어 國王은 그들을 타서 勢力을 增大하게 되었음으로 國家의 統一을 期할수 있게 되었다.

英國에서는 1265년 마그나 차타(Magna Charta)라는 大憲章이 承認되어서 國民財産의 安全과 個人的 自由가 保護되었으며 薔薇戰爭(War of the Roses)(1455—85年)의 結果로 多數의 封建諸侯와 貴族들이 死亡하여 그 勢力이 萎縮케 되어 自然히 王權이 擴張되어 헨리七世(1485—1509)獨裁君主로서 登場하여 王權의 發展에 힘을 다하였다.

佛國에서는 필립四世(1285—1314年)는 貴族 僧侶 平民等 모든 國民의 後援을 얻어 羅馬法皇에게 對抗하여 世界的 支配力을 掌握하고 있는 法皇權에 大打擊을 주었으며 또한 國公에 別個 集團을 만들고 있던 寺院 騎士團等을 解散시키고 百年戰爭(1339—1453年)에 依하여 國民의 感情을 크게 昂揚함과 同時에 封建諸侯의 勢力이 衰頹하게 되었고 찰스七世는 羅馬教會에 對하여 國家의 優越權을 主張하였으며 루이스十一世, 찰스八世는 모든 領土를 併合하고 國王의 權威를 振興시켜 國家統一을 보게 되었다.

歐羅巴 其他 國家들도 또한 國土併合 騎士團의 解體 封建諸侯의 抑壓으로 因하여 王權의 伸長 國內統一을 斷行하여 15世紀의 西歐全域에는 國家統一이 成立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5世紀의 統一國家의 建設은 羅馬法皇의 世界支配權에 大打擊을 주어 封建制度를 消滅시킨 것이나 그 背後에는 思想的으로 14世紀末의 文藝復興運動이 일어나 中世 神學의 傳統에 根本的인 動搖를 이르게 되었다.

文藝復興運動은 單純히 藝術에 있어서의 古學의 復興만으로 볼것이 아니라 神性으로부터 人間性的 解放 教會의 支配로부터 國民의 獨立 迷信으로부터 科學의 獨立 其他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모든 方面에 있어서

의 革新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특히 思想의 方面에 있어서는 人本主義가 그 基礎를 가졌으며 中世 教會思想의 束縛에서 벗어나 人間의 解放을 絶叫하였다.

伊太利의 단데(Dante 1265—1321) 페트라스가(Petrarca F. 1304—1374) 북가치오(Boccaccio, G 1313—1375) 등이 이것을 鼓吹하였으며 로이흐린(Reuchlin Gohann. 1455—1522)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5) 토마스 모아(Thomas. 1480—1535)등도 이 思想에 共鳴하여 다같이 人間性을 尊重하여 文化的 教養의 發展에 努力하였던 것이다.

이 國家主義와 人本主義의 思想은 이 後 부터의 救濟事業에 그 性格의 公共的意義와 個性의 自由發展에 그 基礎를 이루게하였던 것이다.

(2) 뷔브스(Vives Ludavicus (1492~1540)의 救貧論 中世는 스코라라哲學의 神 中心의 教會 中心의 世界이었다.

그러나 그 反動으로서 十五, 六世紀의 交藝復興運動은 人間性을 尊重하며 그 文化的 教養의 發展을 企圖하는 所謂 人本主義 或은 人文主義 思想이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 思想은 社會的으로는 個人的 自由로운 發展 人間 實際的 要求를 重要視하게 되었던 것이다.

뷔브스는 西班牙人으로서 和蘭과 交國에 活動하여 토마스모아와 에라스무스 등과 交際하였으며 그는 그의 名著 「救貧問題論」(Poar-Relief Problems)을 1524년부터 執筆하여 1532년에 發刊하였던 것이다. 그 書籍은 그에게 助言하여 준 英國 內閣의 一長官에게 獻納하였던 것으로 實際 目的을 가지고 썼다고 한다.

그는 西班牙人이었으나 그 冊은 헨리八世의 朝廷에 있을 때 쓴것이라고 한다. 그의 著書가 公刊되자 그 時期에, 便乘하여 急速度로 西班牙語 伊太利語 및 佛蘭西語 등으로 翻譯되었던 것이다.

이 著書는 全部 二卷으로 되어 있는데 個人 및 公的 慈善에 關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第一卷은 單純한 概論에 지나지 않으며 그 重要한것은 第二卷인 것이다

그는, 公共的 當事者는 社會의 利益을 爲하여 貧困者에게 適當히 支給되어 있는가를 檢討할 義務가 있음을 強調함으로써 그의 論을 始作하였다.

그는 確實히 아리스토텔레스의 影響을 받아 極端한 所有財産의 不均衡은 暴動으로 引導된다고 指摘하였으며 모든 近世의 大都市를 暗示하여 貧民窟은 傳染病의 中心地이며 道德頹廢의 不斷한 源泉이라고 附言하였다.

그 貧困者 階級을 三等級으로 區分하여

- (1) 救貧院 및 養育院에 收容되어 있는 者
- (2) 집 없는 乞人들
- (3) 自宅에 사는 正直한 公的인 貧民들 등으로 分

類하고 더 나아가 新救貧法을 描寫하고 있었다.

또한 뷔브스는 貧困者의 詳細한 人口調査의 必要를 主張하며 그 目的을 爲하여 長官들은 直接 모든 慈善施設을 訪問하여 그 그들의 財政狀態에 關한 正確한 報告를 聽取하여야 하며 또한 收容者의 一覽表와 各自의 境遇에 關하여 그 收容된 理由를 記錄하게 하여야 한다고 主張 하였다.

그리고 모든 教區에 二名의 檢察官을 任命하여 貧寒한 家主를 訪問하고 그들의 狀態를 調査시킬 것이며 모든 집 없는 乞人들에 關하여 一覽表를 作成하여 그들中 어떤 者는 勞動할수 없는가를 醫師에게 診察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것들의 여러 階級の 處置는 二個의 原則에 依하여 實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卽 적어도 일하는데 適當한者는 일하게 할것과 物品을 救乞하는 것은 絶對로 禁止하여야 한다. 일 할수 없는 者는 救治院 및 養育院에 收容하여 救護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前에 救治院內 或은 養育院自體를 改良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卽 일 할수 있는 者는 모다 追放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나 그 設立者와 親戚 關係에 依하여 法律的 要求를 가진 者는 除外된다 이런 境遇는 彼들을 院內에서 어떤 職業을 提供하여 줄 것이다. 救治院內에 있어서 病者는 治療를 받게하며 精神病者는 別棟에 收容하며 盲人은 어떤 輕微한 勞動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뷔브스는 貧民兒童教育에 關하여 그들의 道德的 改善을 完遂하는 手段으로서 特히 強調하였으며 都市에 對하여 이 目的을 爲하여 行하는 모든 準備에 吝嗇하지 말라고 警告하였다.

일 하는데 充分 健康한 成人乞人에 關하여는 當該 都市에 屬하는 者만이 滞在하는 것을 許容하며 他 都市로 부터는 者는 旅費를 支給하여 自己故郷으로 送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殘留한 者를 爲하여는 어떻게 하여서도 雇傭케 할 것이라고 하였다. 萬一 이것들의 方法中의 하나도 그들에게 提供되지 못한다고 하면 街路에서의 乞食을 許하는 것보다 臨時라도 救貧院에 收容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하려 하면 일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充分한 雇傭處를 얻을수 없는 戶主들에게는 그들 自身의 집에 있어서 僅少한 金錢 援助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手段은 多數의 經費를 必要로 한다고 主張하는데 反하여 뷔브스는 모든 都市에 있어서는 救治院은 甚히 富裕한 것이며 第一 奇妙하게 管理만 한다면 그 收入은 이 目的에 全的으로 充分하다고 하는 主張을 가지고 있었다. 富裕한 財團은 貧弱한 財源을 가진 財團을 援助하며 또한 그 收入의 一部를 自宅에 있는 貧民으로서 이것을 받을 資格이 있는 者에게 使用할수 있도록 許可할것이라고 提議하였다. 萬一 寄附가 充分치 않으면 遺贈 教會에 있어서의 義

損金 및 市廳의 祭禮費를 節約하여 얻은 것으로서 補充할것이라고 하였다.

우에서 紹介한바와 같이 뷔브스는 헨리八世朝 廷에 奉仕하며 救貧事業의 根本的 改革의 實際의 政務에 貢獻한 功도 不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各國의 大都市와 地方에서 앞을 다투어 發表한 救貧制度의 大部分은 그의 門下生에 屬하는 사람들의 起案에 依한것이라고 한다.

그의 主張은 宗教的 方面으로부터 많은 抗議를 받았다고 하며 또한 그 制度 自身의 運用의 妙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當時 1531년에 發布된 칼스五世 白耳義救貧制度和 같은 것은 實施後 不過 몇 年이 못되어 廢止하지 않을 수 없는 地境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 偉人의 努力과 時代의 要求와 때를 같이하여 여기에 비로서 政治的 或은 公共的 位置로 社會事業經營의 基礎 確立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3) 都市에 있어서의 救貧制度의 改革

中世記에 있어서는 富裕한 財團을 가지고 無計劃하게 救濟를 하였기 때문에 眞正으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足不足을 不問하고 貧困者를 遠近 各地로 부터 끌어 들이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貧困者들을 救濟하는 責任을 引受하려고 하는 하나의 團體觀念이 都市에 發達하고 있었다. 그리고 都市는 하나의 行政的 又是 財政的인 組織을 만들게 되었다. 勿論 그것은 粗雜하고 不完全한 것이었으나 諸侯의 大領地 그것보다는 優秀한 것이며 하나의 模範이 되었던 것이다.

아우그스부르그市는 맨 처음으로 1522년에 모든 街路의 乞人을 禁하고 救濟의 分配를 取締하기 爲하여 6名의 貧民監督官을 任命하였다. 그後 連이어 各 都市에서는 이와 같은 制度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都市의 改革中 가장 興味있고 또한 重要한 것은 1954年頃 白耳義의 이폴市에서 일어난 事實인 것이다.

그것은 뷔브스에 依하여 示唆된 것인지 或은 獨逸의 都市에 模倣한 것인지 或은 그 事實이 全的으로 獨創的인 것인지는 斷言할수 없으나 뷔브스에 依하여 證明된 方針과 極히 近似하고 있다.

物品을 求乞하는 것은 絶對로 禁止하였으며 일할수 있는 者들에게는 일을 주려고 하였다. 全體의 管理는 中央에 統一되고 四名의 監督官下에 두어 各 教區에 있어서 特히 補助의 義務를 지고 四名에게 援助하게 하였다.

貧困者의 統計는 救治院의 改革과 密接하게 連關되고 있었다. 必要한 財政手段은 뷔브스가 示唆한 方法으로 支給되고 또한 大部分 慈善箱에 依賴할 必要가 있었음으로 敎職者들은 그들의 信者들에게 吝嗇함이 없이 寄贈할것을 勸誘하도록 要求되었던 것이다.

이풀法令이 특히 重要한 理由는 羅馬 舊教 領內의 神學中 最高法院에 있어서 그 原則에 關하여 討論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事實인 것이다.

그 法院은 勿論 소르본(Sorbonne) 即 巴里大學의 神學部이 있던 것이다. 이 討論에 關한 事情에는 甚은 意義가 있다. 이풀市의 改革은 明白히 이 都市의 僧侶들의 贊同을 얻어 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獨逸에 있어서는 重大한 宗教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풀의 僧侶들은 國內의 問題에 關하여 疑惑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1530년에 이풀에 있어서의 四種의 托鉢僧團(그들 自身의 托鉢行爲가 乞人禁止에 關係됨으로 問題로 되었다고 生覺된다) 그 僧團長들은 몇 사람의 他的 僧侶들과 함께 改革이 루터派의 냄새를 띠고 있으며 또한 救하여야 할 貧民을 壓迫한다고 하는 理由로 改革에 反對하였다.

市의 長官은 正直한 貧民은 以前보다는 훨씬 잘 支配되고 있으며 또한 修道僧에 對한 루터의 惡辣한 手段은 이것을 忌避한다고 答辨하였다.

그러나 더욱 그들의 政策에 이같은 問題가 시끄럽게 됨으로 소르본(Sorbonne)에 提訴하기로 決定하고 그들의 新規則의 寫本을 巴里에 送附하였으나 1531年 1月 16日附의 소르본의 回答은 改革側에 큰 權威를 附與하였다. 即 이풀市廳에 依하여 施行된 貧民에 對한 設備은 困難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有用 敬虔하며 利益이 많으며 福音書 또는 使徒 및 敎文들의 聖例에 違反되지 않는 事業이라고 判定하였다.

그리고 繼續하여 어느 것에도 有效한 數個의 條件을 附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各國에서는 이풀市 當局者에게 그 規則의 寫本을 分與하여 달라고 續續 申込이 殺到하였다. 皇帝 찰스 五世는 萬一 有益하다고 認定하게 되면 他的 都市에도 같은 規定을 施行하기 爲하여 1531年 9月 그 自身 書面으로 一部 申込하였다. 大端히 많은 請求書를 이풀長官은 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管區의 本山인 聖마르틴 主監에게 改革 및 巴里의 決議의 記事의 起草를 委託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한 程度인 것이다.

이것은 1931年末頃 이풀市에 있어서 「이풀에 있어서 實行되며 全 基督教國에 가장 利益이 있는 救貧方法」이라는 題目下에 發行되었다.

이풀市의 改革後는 舊教諸國에 있어서의 慈善事業이 公共의 色彩가 一層 濃厚하게 되어 마드릿市는 1544年에 適切한 公共救助의 體系의 研究를 計劃하였으면 1521년에는 쭈루우즈市는 救貧稅를 賦課하였으며 巴里는 1582年 貧民을 訪問하는 委員會를 設立하였고 리온市는 16世紀에 市民의 監督下에 市慈善局이 생기었다고 한다.

(4) 英國救貧法の 成立

英國에서는 16世紀의 社會的 混亂은 乞人 浮浪者 窃

盜等の 非行이 大端히 盛行하고 있었다.

그리고 15世紀에 있어서의 政治的 貧困과 私鬪等은 이 弊害를 더 한層 增加시켰다. 全國이 이와 같이 非行으로 蔽襲되어 있었기 때문에 眞正으로 正直한 勤勉이라는 것은 거기 獎勵할수 없었다.

그리고 漸漸 16世紀에 이르러서는 乞人은 平和로운 市民들에게 實際로 恐怖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1556年에는 浮浪人뿐만 아니라 貧困者의 氾濫을 가져오게 하였다.

當時市民들은 이 現狀을 가르켜 嘆息하여 말하기를 市民 및 同僚諸位들이여 每日 街路에 나타나며 또한 그곳에 住居하며 徘徊하여 街路에 多大한 困難을 끼치는 貧民의 救濟策을 請求하여 줄 것을 바란다. 왜냐하면 街頭人들은 그들을 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貧困과 浮浪의 增加의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나 그 原因中 重要한것은 農業의 變化인 것이다. 即 農民들의 多數는 그들의 옛집으로부터 生計를 剝奪 당하여 거리로 追放 당하고 流浪民이 되고 말았다. 이 農業革命의 原因 以外에는 다른 貧窮의 原因은 別로 考慮할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 이 困窮이 英國의 主要 製造業 即 毛織物業에 있어서의 貿易의 發展 및 그것으로 因하여 工業組織에 생긴 附屬의 變化에 依하여 增進되었다는 것도 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貧窮의 他的 理由中 1527年으로 부터 1536年까지의 饑饉을 遭受하게 한 凶作의 連續을 들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와 같은 動機로 부터 여러가지 困難이 惹起되고 있을때 新救貧法이 바야흐로 形成되려고 하는 機運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暗示를 示唆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中世에 생겼던것과 같은 乞人과 浮浪人들의 弊害로 全國의 正直한 勞動者階級들에게 까지 多大한 困窮과 不幸을 부닥치게 하였던 때라고 한다.

그리하여 1536년에 새로운 法令이 制定되었다.

從來의 條例는 單純히 乞人을 實際로 일 할 수 없는 者만으로 限定하려고 試圖하였으나 이 法令은 누구도 乞食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一般的 原則을 規定하였다. 勞動할수 없는者는 將來 다른 方法으로 適當히 對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貧困者 扶助의 義務를 明確히 敎區에 두었던 것이다.

第一 自發의 寄附가 不充分할 때는 強制로라도 稅金을 徵收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 할수 있는者들을 爲하여는 可能限 일 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漠然하게 規定하고 있다

또한 敎區 當局者에게 就職處를 供給 한다는 義務를 지웠다. 이것들이 英國救貧法の 發展을 支配케 한 原因이라고 한다.

故로 此後의 制度의 基礎로 보아야 할것은 에리자베스法制보 다도 오히려 이 法令이라고 한다.

이法令에 依하여 制定된 1601년의 에리자베스(Elizabeth, Alexandra mary, (1533~1603)의 救貧法은(Poor Law) 健康한 失業者라면, 職業을 가지라.

兒童을 就業 或은 徒弟奉公시켜라 跛者 虛弱者 老齡者 盲者 其他의 勞動할수 없는 者들은 救助하라고 하여 그 責任을 敎區에 주었다. 그러고 敎區에 있어서는 敎區의 役員과 每年 治安判事에 依하여 任命되는 貧民監督을 두어 專擔케 하였으며 그리고 救助에 要하는 費用은 敎區內의 財産所有者들에게 賦課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救貧法이 各國에 앞서서 처음으로 公的救助義務制를 確立한 것이며 此後에 있어서는 世界救貧法制의 模範이 된 것이다.

C 啓蒙運動과 救貧事業

18世紀는 所謂 啓蒙時代라고 하는 것이다.

人智가 發達하고 社會가 進歩하여 中世的인 封建的階級思想을 打破하고 또한 모든 傳統과 不合理한 拘束을 破壞하며 理性을 尊重하여 모든 것을 合理的으로 解決하려고 하였다. 먼저 英國의 존로크(John Locke, 1632~1704)의 經驗論과 그 宗教 政治教育에 關한 自由精神에서 始作하여 다음으로 佛國에 있어서는 볼테루(Voltaire Francois M. A. 1694~1778)는 偏見과 鬪爭하였으며 루소(Gean G. Rausseau 1712~1778)는 自由平等論을 主張하여 自由思想은 結局 自由平等 友愛를 標語로 하는 大革命을 誘致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獨逸에서는 도마시우스(Thomasius, Christian, 1655~1728)의 知識의 普及化를 先驅로 하여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이것을 完成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啓蒙運動은 事物의 合理化와 同時에 表面的 知識을 偏重하였으나 反面으로 情意를 輕히 여기는 弊害가 있었다. 이런 理由로 부터 世紀의 後半부터는 그 反動으로서 獨逸에 新人本主義가 일어나 헤더루(Herder Johann G. 1744~1804) 윈켈만(Winckelmann, Gohann G. 1717~1768) 께데(Gaethe Gohann W. Von 1749~1892) 훔볼트(Humbolt Karl W. V. 1769~1835) 등이 그 代表의 人物이었다.

그리고 「理性과 自由에의 尊貴한 敎化」에로 突進하였다.

(1) 웨슬레(Gohn Wesley 1703~1791)의 社會奉仕

近世 基督教의 特徵 하나는 社會的 救濟에 進出한 것이며 敎會創始의 始初 부터 이 方面에 注力한 것이 메소디스트(Methodist) 敎會인 것이다.

이 敎會의 創始者 존 웨슬레一은 世紀를 通하여 가장 많이 英國의 社會生活을 改良한 사람으로 有名한 것이다.

웨슬레一은 貧民의 使徒로서 學生時代로 부터 貧民救濟에 興味를 가지고 그의 實弟 찰스 웨슬레(Chales, Wesley, 1707~1788)와 함께 옥스포드(Oxford) 大學內

에 「神聖俱樂部」를 組織하고 그 規則中에 俱樂部員은 自己의 必要 以外的 모든 것은 貧民의 救濟에 주어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그는 自身이 率先하여 實行하기를 一年에 30磅中 28磅로 生活하고 殘部 40志을 주었고 그 다음해에 60磅를 얻은 中磅60로 生活하고 32磅를 주었으며 第3년에는 90磅를 얻어 亦是 28磅로 生活하고 나머지 30磅를 주었고 第4년에는 또한 120磅를 얻어 如前히 28磅로 生活하고 殘部 92磅를 貧民을 爲하여 使用하였으며 그가 死亡할때 까지 年 28磅의 生活을 繼續하며 그의 收入의 增加에 따라 救濟도 增加하였다고 하였으며 그의 生存中 私的으로 慈善한 金額은 勿驚 15磅에 達하였다고 한다.

메소디스트敎會는 그의 生存中에는 公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組織을 利用하여 貧民과 不幸한 者들을 救助하였으며 1740년에는 失業者를 救濟하기 爲하여 그의 事務所에 極貧者 12名을 收容하고 1名의 敎師를 採用하여 솜틀기와 紡織法을 가르치며 組織的 救濟를 始作한 것이다.

또한 倫敦을 23個區로 分割하여 各區에 2名式 指定하여 貧民과 病者를 訪問하며 救助토록 하였다.

이 訪問者에게는

- (1) 淡泊하며 二重人格을 가지지마라
- (2) 溫和하고 親切하며 根氣있게 하라,
- (3) 病者에 對하여는 清潔히 하라.

(4) 아침까지 못하도록 注意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訪問 事業中에서 基督教會의 初代 敎會에 模倣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웨슬레一은 또한 貧困者 又は 病者들을 救濟하는 하나의 方法으로 لندن市에 最初의 無料醫療事業을 始作하였으며 이것으로 부터 醫療事業이 監理敎會의 社會事業의 特色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救濟를 받을 程度로 貧困하지 않은 少額 所得者들을 爲하여 融通資金을 計劃하여 1746년부터 이것을 開始하고 每週 火曜日 午前 中一人에 20志(後에 25磅로 增加以下로 三個月을 期限)으로 하여 融通하기로 하여 大端한 功績을 올렸다고 한다.

그는 일찍부터 英國領 아푸리카에 있어서는 奴隸制度에 反對하여 1758년에 二名의 奴隸를 敎化시킨 것을 端緒로 하여 西印度諸島에 傳道를 計劃하고 윌버폴스(Wilberforce, William 1759~1833) 등을 움직여 나중 英國政府로 하여금 그 屬領에 있어서는 奴隸制度를 廢棄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메소디스트敎會는 1784년의 第一回會議에서는 奴隸制度는 神의 誠律에 違反하는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2). 監獄改良事業

英國에 있어서 監獄 改良運動이 일어난 것이 에드워드六世(Edward VI, 1539~1587)때. 有名한 說敎者 라지

몰씨가 監獄改良 및 罪囚敎化를 疎忽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說教한 것으로 부터 始作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1699年 基督教敎養協會가 設立되어서 監獄調查委員會를 選出하고 委員長 도마스·브레이(Thomas Bray 1656—1730)는 1701年에서 同2年에 걸쳐 全國의 監獄을 調査하였다.

當時의 監獄은 全部 裁判所에 屬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大部分 英國敎會 또는 一個人의 所有에 屬하였으며 犯罪者는 國法에 抵觸되어 處罰을 받은 者들이 아니고 負債의 償還을 하지 못하며 或은 債務의 履行을 怠慢하는 者들을 投獄한 것이며 참으로 情狀이 불상함에도 不拘하고 當時의 裁判所는 그 輕重을 不問하고 大概一律의 死刑에 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債務者는 獄吏의 俸給을 爲하여 典獄에 12志 4片 看守에게는 2志의 監獄稅를 支拂하지 않으면 出獄할 수 없었다고 한다.

브레이씨는 獄吏의 弊風 不倫 悖德의 行爲 酒精飲料의 使用 瀆神 咒咀 冒瀆 및 賭博의 恣行 古參 罪囚들의 橫暴 및 宗教의 禮拜等의 放漏等에 關하여 改革案을 具申하여 監獄의 改良이 社會改良上 極히 重要한 것이라고 報告하였다.

그리하여 1728年에는 下院에서는 監獄調查委員會가 設置되어 首都의 監獄을 爲始하여 都鄙 全域의 大小의 監獄을 調査하였다.

그리고 監獄改良事業의 先驅者되는 존하우아드氏(John Haward 1721—1791)는 1755年 리스봉 大地震時의 罹災民을 救濟하려 하다가 七年戰爭으로 因하여 拘束되어 佛國의 브레스트 監獄에 投獄되어 그 곳에서 監獄生活를 經驗하고 1773年에 베포드의 地方長官에 選任됨에 따라 監獄의 弊風을 徹底하게 認識하여 貌生 監獄改良事業에 獻身하여 이 事業의 基礎를 세웠던 것이다.

이 英國의 하우아드氏의 信仰에 基礎를 둔 改良事業에 對하여 美國에 있어서는 브록웨이(Brackway, Eubulon R. 1827—1920)씨는 1848年 以來 엘마이라 感化監獄에 있어서 罪囚들의 感化에 科學的 知識을 應用하여 不定刑期主義의 新制度를 採用하여 監獄改良에 多大한 貢獻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慈善家 휘스터(Whister, R)씨는 필아델피아 監獄 附近에 살면서 每日 監獄으로 부터 釋放되어 나오는 者들의 容貌를 보고 그 不상함에 참을수 없어 同胞를 救濟하는 手段으로서 特別한 會를 組織하여 協力を 求하려고 하여 1776年 2月 同市에 釋放者 保護會를 設立하고 피아델피아 釋放者 保護會라고 稱하였다.

美國에서 이것을 先驅로하여 1815年에는 英國에 런던監獄改良會 1816年에는 獨逸에 監獄協會가 設立되었으며 1819年 佛國에서는 監督委員會가 設置되

었다.

刑은 刑이 없기를 期하여 刑罰思想이 發達함에 따라 釋放者 保護事業이 發達하여온 것이다.

(3) 農奴隸의 解放

1807年 슈타인(Stein, Friedrich K. 1757—1831)은 푸 로시아의 大宰相에 就任하게 됨에 即時 農奴의 解放令을 發布하고 中世時代로부터 傳來한 가장 悲慘한 農奴들을 公布日로부터 2年後의 1809年 10月부터 解放하기로 決定하였다.

即人間을 貴賤에 依하여 階級化하는 思想이 土地所有 및 職業을 束縛한 것이었으나 土地의 自由-買買를 認定하며 職業의 自由選擇을 許하여 이 解放令의 發布以後는 如何한 事由에 依하여도 出生 結婚 土地의 占有 或은 自契約等에 依하여 奴隸狀態의 農民을 새로히 設定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現在 이 狀態에 있는 者는 이 公布와 同時에 모든 權利 義務라도 一切 解除하여야 한다고 命하여 그들은 全部 自由獨立의 人格者로서 自由農民으로 하였다.

要컨대 이 解放令은 從來 土地에 隸屬되어 있던 桎梏을 除去하고 當然히 가질수 있는 權利를 自由롭게 行使할수 있게하여 社會各 階級間의 障壁을 打破하여 平等의 地位에 두었음으로 自由를 獲得한것에 그치었으며 새로히 土地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 効果는 消極的이라 하여도 人間의 自由로운 發展과 人道를 爲하여 眞實로 偉大한 貢獻을 하였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또한 옛날 부터 諸國에서는 捕虜와 貸借로부터 奴隸로하는 惡習이 있어서 奴隸를 얻기 爲하여 戰爭을 일으키기 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言語를 發하는 家畜으로서 自由民은 生殺 與奪의 權利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奴隸의 廢止問題는 1815年 윈의 列國會議에 있어서 決議되었다.

그것의 實施에 關해서 英國에서는 윌버포스(Wilberforce, William, 1759—1833)등은 소리높이 主張하였다.

이 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議論을 거듭한 結果 1792年 法律로서 1808年 1月부터 奴隸買買를 全然禁止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本國에서는 그렇다고 하여도 英國의 殖民地 特히 西印度諸島에서는 아직 奴隸制度가 行하여지고 있었음으로 1833年 30億磅의 賠償金으로서 그 奴隸를 解放토록하여 英國에 附屬하는 領土에서는 全적으로 廢止하게 되었던 것이다.

美國에서는 南北戰爭中 린컨大統領은 奴隸解放令을 發布하고 1863年 1月1日부터 實施할것을 宣言한 것은 前記의 英獨兩國의 解放令을 合하여 19世紀 人道史上 永遠히 記憶할만한 重大한 事件인 것이다.

D 産業革命과 救貧事業

(1) 産業革命과 貧困化

英國의 産業革命은 18世紀로 부터 19世紀 初葉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勞動에 代身하는 機械를 가지고 經濟的으로 生産하였던 것이며 1770年代에 始作하여 1790년까지의 사이는 機械의 工夫가 發達하여 그 以後 1830년까지의 사이에 蒸氣力이 應用되어 그 以後는 鐵道 및 汽船의 利用에 依하여 市場의 世界的發展이 行하여지게 되었다.

이 産業上의 大發展 工場制度의 顯著한 發達에 따라서 人口가 顯著하게 增加하여 貧民救助의 必要性도 一層 緊急하게 되었다.

即 1760年の 人口는 約 700萬名 貧民救助 費125萬磅로서 人口 1名當 3志7片이었으나 四半世紀後의 1784년에는 各各 800萬名에 200萬磅로 五志으로 上昇하였다.

그때로 부터 大工場이 大端히 旺盛하게 增設되기 始作한 1803년에는 人口 9,216,600名에 救助費는 一躍하여 407萬7千磅 人口 一人當 8志 11片에 達하였으며 그것으로부터 15年後인 1818년에는 各各 約 11,831,550名에 787萬磅로 一人當 13志 3片으로 激增하였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貧困의 哲學者 「말서스」의 人口論이 1798년에 나온것도 또한 時代의 產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增加를 가지고 概括的으로 産業革命에 關한 論議는 없는 것이며 특히 1818年の 激增은 나폴레옹 戰爭이 1815년에 講和되었기 때문에 戰爭의 社會的 經濟的 動搖에 基因하는 것이 不少 하였다고 生覺된다.

(2) 말서스(Malthus, Thomas R. 1766—1834)의 慈善論

産業革命이 漸漸 進展하여 工場 工業이 더욱더욱 擴大됨에 따라서 屢시 그 結果가 나타나기 始作하여 그 中에도 人口와 救貧費의 增加가 甚하게 되었다.

그것도 아담·스미스(Adam, Smith, 1723—1790) 時代에는 아직 그러하지는 않았으나 말서스의 時代에 이르서는 極히 顯著하게 되어 나중에 그로하여금 人間의 幸福의 問題로서 名著 人口論을 公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故로 至今 말서스의 慈善論을 考察하여 當時의 18世紀 末葉에 걸친 慈善觀의 大要를 窺知하여 보려고 한다.

말서스는 그의 人口論 第10章에 있어서 吾人의 慈善의 指導에 關하여 論述하고 그의 主眼으로 하는 人口는 生活資料의 限界에 逼迫시키는 것으로부터 防止하여 그것에 依하여 勞動者 階級을 改善하려고 하는 目的에 이바지 하려고 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는 苦痛을 받고 있는 同胞를 救濟하려고 하는 情緒

는 他的 모든 自然的 欲望과 한가지로 一般的인 것이며 또한 어느 程度까지 無差別의 盲目的인 것이다. 故로 慈悲의 衝動도 사랑과 노여움과 野心의 衝動 飮食의 欲望 其他 人間 一切의 自然的 傾向과 마치 한가지로 반드시 經驗에 依하여 制御하며 때때로 그 效果를 試驗하지 않으면 그 所期의 目的을 達할 수 없는 것은 明白한 것이다. 慈悲의 衝動의 目的은 明白히 同胞愛의 細帶로 全人類를 結合시키는 것이나 특히 우리들 自身의 國民 및 血族을 이루고 있는 部分의 人類를 結合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同胞의 禍福에 關心을 품게 함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一般法則 即 聖파울이 일 하지 않는 者는 먹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一家를 扶養할 能力 없이 結婚하면 반드시 困難에 빠진다고 하는 것 등으로부터 생기는 部分的 害惡을 可及的 緩和하며 이와 같이 하여 人類 幸福의 總量을 增加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萬一 사람들의 慈悲가 無差別의이며 또한 外面의 困窮의 程度를 施與의 唯一한 尺度로 한다면 慈善은 거이 全혀 普通的 乞人에게만 베풀게 되어 다른 한 便에 있어서 不可避의 困難과 싸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些少하나 高級하고 清潔한 風律를 保有하고 있는 思慮깊은 謙遜한 사람들에게는 全然 돌아보지 못하게 될것은 明白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價値 없는 것을 價値 있는 것 우에 끌어 올리어 勤勉을 獎勵하고 怠慢을 阻止하며 가장 顯著하게 人類幸福의 總量을 減少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한 耽溺을 制禦하며 또한 그와 같이 慎重하게 自然的 情欲의 結果를 吟味하며 또한 때때로 그 効用을 試驗하는 것에 依하여 弊害를 隨伴하지 않고 明白히 人間幸福의 總量을 增加하며 또한 創造主의 明白한 目的에 副應하는 것과 같은 方法을 講求할 것을 必要로 하며 効用이라고 하는 것은 如何한 情欲의 滿足에 對하여도 直接의 刺戟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람들이 啓示된 神意를 떠나서 그 情欲을 滿足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判定하는 唯一한 標準이며 따라서 自然의 빛으로부터 얻어지는 道德律이 가장 正確한 基準인 것이다. 그리고 萬一 効用의 基準을 끊임 없이 念頭에 두게 되면 完成할만한 大目的을 妨害함이 없이 慈悲를 實行하는 充分한 餘地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라고 論하였다.

그리고 그는 慈善의 가장 價値있는 部分의 하나는 주는 者에게 미치는 效果라고 力說하여 주는 것은 받는 것 보다도 幸福이라고 하였다.

假令 사람들의 慈悲를 慈善行爲에 나타내는 것은 大概 貧民으로서 眞實로 利益이 되지 못한다고 認定되어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 適當한 滿足이 이와 같이 人心을 純化하며 高揚하는 明白한 傾向을 가지는 그 衝動을 根絶시키려고 하는 如何한 努力도 是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効用의 標準에 照應하여 貧民에게 가

장 有利하다고 生覺되는 慈善의 實行方法은 바로 주는 사람의 마음에 最善 最良의 效果를 맞치게 하는 方法인것을 發見하는 것은 特히 滿足한 기쁜 일인것이다. 慈善의 德은 불상히 여기는것 그것과 같이 「根據없이 施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慈善은 봄의 細雨가 스스로 땅을 潤澤케 하는 것과같이 내리는 것이다라」고 說明하여 當時 慈善組織의 批判에 言及하였다.

第一로 英國에 있어서 敎區法에 依하여 貧民에게 分配되는 莫大한 金額을 慈善이라고 부르는 것은 正當치 못하다 그것은 慈善의 가장 顯著한 屬性을 缺하고 있다. 그리고 任意的으로 없어지는 瞬間부터 그 眞髓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을 強制하려고 하는 企圖로 부터 豫期되는 것과 같이 그것이 救貧稅를 徵收當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影響은 그 分配를 받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影響은 同一하게 有害한 것이다.

이 似而非 慈善을 받는 사람들의 側에는 眞正한 救濟代身에 蓄積된 困窮과 一層 擴大된 貧困等은 주는 사람들의 側에는 愉快하다는 情緒 代身에 不斷한 不滿과 憤怒를 發見할수 있는 것이라고 救貧法의 救助를 非難하고있다.

第二로 任意的 寄附에 依하여 維持되는 大慈善組織에 있어서는 義捐金은 往往 公心으로는 종와하지 않으면서 義捐하며 그 義捐金은 純全한 慈悲의 動機에 依하여 促求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世人에 依하여 어떤 身分과 어떤 財産으로 부터 期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寄附者의 大部分은 基金의 管理와 또한 救함을 받는 個個人의 運命에 無關心하기 때문에 此種의 慈善이 그것을 實行하는 大多數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抽出한 有益한 影響을 미치게 하리라고는 期待할수 없는 것이라고 當時의 救貧法을 批判하였다.

그러나 任意的 能動的 慈善은 事實은 이것과 相異한 것이며 救濟하는 對象을 熟知하며 富者와 貧者를 結付하는 紐帶를 느끼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이 生覺되며 또한 貧者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要求를 알뿐만 아니라 그들의 習慣과 性質을 알며 시끄럽고 傲慢한 貧困者의 希望은 結局 檻樓한 生活를 免치 못할 것이라고 敎訓하며 그것을 抑制하며 不當한 壓制 밑에 일하고 있으며 말 없고 內面的인 受難者에 對하여는 充分한 慈悲를 가지고 鼓舞하여야 한다.

주는者에게 幸福이 있다는 것은 모다 此種의 慈善에 限하는 것이다. 그리고 大體로 보아서 받는 者에게 幸福이 있다는 것도 또한 거이 全部가 此種의 慈善에 限하는 것이다.

적어도 善보다 惡을 더 많이 갖여오는 機會를 招來함이 없이 多數의 金額을 分配할수 있는 慈善實行法은 이것 以外에는 거이 없는 것이라고 斷言하였다.

어느 程度까지 敎區의 役員과 裁判官들에게 附與되

고 있는 扶助를 주며 또한 制限을 가진 自由權은 任意的 慈善에 依하여 實行되는 差別的 待遇와는 甚히 그 性質을 달리하며 또한 大端히 그 效果를 달리할 것이다.

이 나라에 있어서 一定한 事情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法律에 依하여 敎區扶助를 받을 資格을 附與하는 것이다. 萬一 申請된 扶助가 附與되어도 勿論 感謝도 하지않고 받으며 萬一 그것이 拒絶되면 그는 一般에게 自身이 虐待받았다고 生覺되며 그 待遇에 對하여 怨恨과 憤怒를 느끼는 것이다.

任意的 慈善의 分配에 對해서는 이와 같은 것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받는 사람은 愉快한 感情의 마음을 일으키며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조금도 氣分을 나쁘게 가질 理가 없다. 어떤 사람이라 하여도 自己가 가지고 있는 것을 自由로 處分할수 있는 權利가 있음으로 어떤 境遇에는 주고 어떤 境遇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別로 그 理由를 說明할 必要가 없다 任意的 慈善이 되는 이와 같은 專斷的 權利는 救濟하는데 價値 있는 對象을 何等의 나쁜 結果를 가져오지 않고 가장 容易하게 選擇시키며 또한 그 專斷的 權利에 必然 附隨되는 不確實性이 있기는 하나 가장 有利한 效果를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論하여 個個 任意的 慈善을 讚美하고 있다.

그리고 被救護者는 그 道德的 義務로서 그 自身의 努力 그 自身의 勤勉과 先見이 그가 믿을수 있는 唯一한 바른 根據가 되는것, 萬一 그것들이 失敗하여도 그의 困窮에 있어서의 扶助는 單純히 合理的 希望의 問題가 될수 있는 것에 그칠것, 그리고 이 希望의 根抵까지도 그 自身의 善한 品行과 或은 自己의 怠慢 또한 不謹慎에 依하여 이와 같은 逆境에 沈沒된 것이 아니라 는 自覺等에 큰 差異가 있다는 것 등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論하였다.

그러나 큰 人生의 行路에 있어서는 그 가장 根據 있는 期待까지도 往往 어긋나는 것이며 勤勉 勤慎 및 道德도 그리 正當한 報酬를 받지 못하는 탓일지 또한 말할수 없는 危難에 逢하는수도 있다. 不幸을 避하려고 하여 最善의 努力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苦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慈善의 眞正한 對象인 것이다.

이것들을 救濟하기 爲하여 慈悲 本來의 職分 即 一般法則으로 부터 생기는 部分的 害惡을 輕減하는 職分을 行使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慈善의 方向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쁜 結果를 憂慮 할 必要가 없는것이다. 비록 救濟의 價値 없는 者는 보다 甚한 困難에 있다 하여도 以上과 같은 사람은 사람들의 資力에 따라 아낌없이 充分히 救濟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이 推論이 怠慢 및 不謹慎의 習慣과 關係가 없는 災厄으로 부터 생긴 緊急한 不幸의 境遇에 適合하

지 못함은 明白한 것이다.

人間이 手足이 부러지면 그에게 助力을 빌려주기 前에 그의 道德的 性格을 묻기 爲하여 停止하지는 않으나 이 境遇 全的으로 理致에 適合한 것이며 効用的 試金石도 全的으로 이 行動을 是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 無差別한 救濟를 주어도 決코 사람들에게 그들의 手足을 부러뜨리는 것을 獎勵하지는 않는다. 効用的 試金石에 依하면 慈善의 即刻的 刺戟에 물리어 事故로 因하여 緊急한 困難에 빠진 他國人を 救援해준 사마리아人의 行爲에 對하여 예수가 敎訓한 稱讚은 「일하지 않는者は 먹지도 마라」고 한 聖파울의 말과 조금도 矛盾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境遇에도 아마 보다 價値있는 對象에 맞나게 되리라고 하는 單純한 假設로 부터 善을 行하는 機會를 놓쳐서는 아니된다.

모든 疑問이 생길 境遇에는 慈悲의 自然的 衝動에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義務라고 하여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結果에 注意를 기우린다고 하는 理性 있는 動物로서의 사람들의 義務를 다하려고 함에는 사람들은 그 經驗으로 부터 어떤 方法에 있어서 사람들의 慈悲를 實行하는 것은 그 結果가 有害한 것이며 어떤 方法에 있어서 實行하는 것은 有利하다고 하는 結論을 끌어내지 않으면 아니된다. (말서스 人口論(第六版)下卷 伊藤秀一 寺尾琢磨共譯)

(3) 말서스의 救貧法批判

말서스가 人口論을 公刊한 때는 救貧法의 施行과 其 結果가 社會的으로 大問題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救貧稅가 萬一 이와 같이 急速度로 增加하여 간다면 將來의 豫測은 甚히 憂慮되는 바가 있다. 佛國人들은 이 救貧法을 評하여 「英國의 가장 最惡의 政治的 創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서스의 意見이 1834年의 救貧法改正에 크게 影響되었으므로 그의 救貧法에 對한 批判을 人口論을 通하여 考察하려고 한다

救貧法은 二種의 方法에 依하여 貧民의 般狀態를 壓迫하고 있다.

救貧法은 第一로 사람들을 돕기 爲하여 必要한 食物을 增加하지 않고 함부로 人口를 增加시킨다 하는 明白한 傾向을 가지고 있었다.

生覺컨데 敎區의 補助 없이는 家族을 扶養할 希望이 全혀 없는 貧民들 까지도 또한 補助를 얻어 結婚까지 하였다.

故로 救貧法은 그 扶養하고 있는 貧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第二로는 가장 價値있는 部分으로서 一般으로 生覺할 수 없는 社會員들을 爲하여 救貧院에 있어서 消費되는 食料品量을 最下層의 獨立勞動者의 食料品 量보다도 減少시켜 到底히 그들로 하여금 獨立할 수 없게 하였다.

多幸히 農民들 사이에는 아직 獨立의 精神이 殘存하

고 있다. 그러나 救貧法은 이 精神을 抹殺하는 것과 같이 痛感된다. 救貧法은 일찍이 部分的으로는 成功하였다고는 하였으나 그것이 當初 豫期하였던 것과 같은 것은 바랄수 없는 것이되었다.

救貧法은 食物 價格을 올리게 하였고 勞動의 實質上의 賃金額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勞動만을 唯一한 所有로하는 階級을 貧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一般的으로 禮儀와 節制는 小商人 및 小農民들의 顯著한 特徵이었으나 그러나 이것과 正反對의 性質을 貧民들사이에서 볼수 있게 된 것은 救貧法이 그 有力한 原因이 되었다는 것은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救貧法은 再言할 것도 없이 慈悲를 그 目的으로 하여 設定하였던 것이나 이 目的의 達成에 失敗하였던 것도 또한 明白한 것이다.

모든 事情으로 부터 生覺하여 보아도 敎區에 依하여 扶助되고 있는 貧民의 狀態는 甚히 悲慘하였다고는 하나 救貧法이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 以上の 悲慘을 免할수 없었을 것임을 生覺할 때 極貧狀態를 多少緩和하고 있음이 確實하다.

그러나 慈悲로서 주는 이 援助로 因하여 一般 百姓 모두가 憲法의 참 精神과 全然 矛盾되는 것과 같은 不愉快하고 不安하며 抑壓的인 法律에 服從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制度에 對한 하나의 主要한 反對論인 것이다. 모든 救貧 取締 事務는 現在의 改善된 狀態下에 있어서도 모든 自由思想에 矛盾되는 것이다.

말서스는 救貧法에 對하여 前述과 같은 難點을 든 後에 이것들의 모든 制度의 根本的 缺陷은 敎區의 扶助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生活狀態를 壓迫하여 貧民의 數를 一層 增加시키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點에 있다고 하였으며 萬一 오늘날 救貧法이 存在하지 않았다고 하면 極貧者의 數는 今日보다 多少 많았을런지는 모르나 一般 百姓의 幸福의 總計는 現在보다 훨씬 클 것이 틀림 없다고 斷言 하였다.

그리고 그는 救貧法을 早晚間 廢止할 것을 主唱하며 現在의 制度에 있어서 주어야할 扶助의 增加를 縮少하며 또한 阻止하고 있는 것에 對하여 어떠한 改革을 하기 爲한 豫備의 手段으로서 貧民에게 附與한 扶助要求의 權利를 正式로 剝奪하는 것이 正義와 名譽上으로 볼 때에 必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의 實現을 爲하여 法令 實施後 1年을 經過한 後부터 行한 一切의 結婚으로 부터 出生한 子女 및 同法 實施後 2年을 經過한 때 부터 出生한 私生兒는 敎區의 扶助를 받을 權利가 全然 없다고 宣言하는 法律을 提案하였다.

그리고 救貧法의 廢止에 關한 그의 提案中 私生兒에 對한 意見은 兒童問題에 關聯하여 興味가 있음으로 여기에서 簡單히 紹介하려고 한다.

私生兒에 關하여 말하면 一定 公告를 한後 에는 그들은 敎區의 補助를 要求하는 權利를 全的으로 禁止하며 個人的 慈善에 따겨야할 것이다.

萬一 父母가 子女를 버렸다고 하면 그들은 그 犯罪에 對하여 責任을 지게 할것이다. 幼兒는 比較的 社會的으로서는 큰 價値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他的 幼兒들이 卽席에서 充當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主要한 價値는 人間性에 있어서 가장 기쁜情熱의 하나 卽 兩親의 愛情의 對象이 되고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價値를 느끼고 있는 唯一한 父母에 依하여 無視되는 것을 社會가 그것에 代身할 義務는 없는 것이며 幼兒를 扶養할 義務가 있는 父母들이 犯한 遺棄 또는 故意的인 虐待罪를 罰하는 것 以上으로 社會는 兒童保護의 責任은 없는 것이다.

이 救貧法의 批判은 人口論의 第一版에 記錄되었으나 前述한 慈善論은 그 後에 追加된 것이며 第一版 때에는 論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救貧院에 關하여도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貧窮이 極度에 達한 者에 對하여는 州敎養院을 세우고 全國에 賦課하는 稅金으로 이것을 維持하도록하며 全州의 住民은 勿論이며 全國民은 누구도 自由로 그 곳에 들어갈수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너무 좋은 生活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일할수 있는 者에게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生覺컨대 그것을 困難時의 愉快한 避難所라고 하는 錯覺을 가지지 않게 하며 大端히 窮塞할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緩和하여 주는 場所로 生覺케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建物의 一部를 區分하며 또한 別途로 建物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只今까지 屢屢히 注意되었던 目的이며 그 곳에서는 누구도 區別 없이 일할수 있게하며 그것에 對하여 市場價格과 同一한 價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場所로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말서스人口論』(初版) 高野岩三郎 大內兵衛共譯(岩波文庫版))

四. 英國救貧法の改正(1834年)

以上 말서스가 論한 바와 같이 當時의 英國의 救貧法은 이것을 大改正할 必要가 時代的으로 要求되었다.

그러나 當時 選舉權을 가지는 國民은 極히 적었으며 議會는 全的으로 地主階級에 依하여 左右되고 있었다

그러나 1795년에 改正된 救貧法에 있어서는 失業者의 救濟뿐만 아니라 就業勞動者들도 그 賃金이 一定한 額에 達하지 못할 때는 救貧基金으로 부터 補給되도록 定해있기 때문에 地主階級이 自己가 負擔하여야 할 賃金의 一部를 救貧稅義務者가 租稅로서 支拂하는 것이 自己들에게 利益이 되기 때문에 一弊害를 除去하려고 하는 改革에 反對하였던 것이다.

때는 바로 美國의 獨立과 佛蘭西의 革命에 依한 民主主義 抬頭과 產業革命에 依한 商工業者 卽 資本家階級の 勃興과 서로 때를 같이하여 1832년의 第一次 選舉法의 改正을 斷行시켜 이것에 依하여 選舉 有權者數는 一躍倍加하여 議會의 實權은 地主階級으로 부터 資本家階級에 移行하여 나중에 1832년부터 同4년까지의 사이에 救貧法調查委員會의 設置를 보게되었다

이 救貧法調查委員會는 貧窮은 下層階級の 道德的 墮落의 結果인 것이며 全히 自然法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이다. 그런 故로 貧民 救助는 全然 廢止하지 않아도 可及의 警戒的인 것으로 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말서스의 理想에 依한 一般的 方針下에 다음과 같은 諸原則을 決定한 것이다.

(1) 에리사베쓰救貧法の 根本原則에 依하면 國家自體보다 地方 公共團體로 하여금 救貧行政을 行하게 하는 것이나 새로히 中央機關을 設置하여 全國의 救貧行政을 指導 監督함으로써 統一을 圖謀할것.

(2) 勞動能力者에 對한 救助는 實際上 또는 外見上 共히 最低階級の 獨立勞動者 以上이 되지 않을것

(3) 救貧院은 上記의 原則을 實行하는 唯一한 手段이며 그 곳에 收容하는 것을 가지고 要救助者의 證明으로 할것.

(4) 救貧院에서는 그 收容者를 完全히 區分하여 各其 別棟에 收容하여 老衰者 兒童 勞動能力 있는 男子와 女子를 따로 取扱할것.

(5) 院外救助로서는 醫療救助와 徒弟教育만을 認定할것

그리고 이 調査委員 九名中에는 세니오(Senior, Nassau W. 1790—1864) 및 차드윅(Chadwick, Ediwyn)과 같은 말서스 信奉者가 起草委員이며 上述한 一般原則을 비롯하여 諸 方針에서 보는바와 같이 委員會는 말서스人口論으로 부터 많은 影響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否認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드윅氏는 벤삼의 秘書이며 中央集權的 要素는 벤삼(Bentham, Jeremy)의 理論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生覺된다.

1834년의 救貧法 大改正은 이 報告에 依하여 行하여 졌으나 이 改正을 가지고 勞動者의 生存權을 侵害하는 것이라고 하여 救貧院은 「救貧法の 獄舍」라 稱하게 되었으나 十九世紀의 後半에 있어서 多少의 修正에 이르기 까지 實施되어 온것이다. 그러나 이 改正에 있어서는 救貧法の 改正은 行하여 졌으나 一般 貧困者의 救濟에 關한 法律 特히 不景氣의 境遇 失業으로 부터 생기는 貧困에 對한 救貧法 以外的 法制的 研究가 남아 있으며 그것이 그 後에 있어서의 英國 救貧問題의 重要한 課題가 된 것이다.

끝으로 英國에 있어서의 公共救貧制度의 發展過程을 概觀한다면 먼저 第一 1601년의 에리사베쓰救貧法에 依하여 貧民救濟를 地方公共團體의 責任으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1834年 改正에 依하여 中央機關을 設置하여 全國적으로 統制하며 그리고 다시 失業 養老 疾病 廢疾等の 保險年金等の 諸社會制度의 設定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筆者·梨花女子大學校 教授 本訓練院 講師)

參考文獻

H.I. Clark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ocial Work, 1947.
J. Addams a New Conscience and Ancient Evil, 1912.

J.S. Bradway, Law and Social Work, 1929.

A.S. Queen, Social Work in the Light of History, 1922.

Crane Brinton, the Story of Western Thought, 1950.

社會事業研究

山口正著

經濟制度要義

井上友一著

「아슈레」著 英國經濟史及學院

野村兼太朗著

社會問題辭典

島中雄三著

「주엔호루스트」著 社會政策

波田野鼎著

말서스의 人口論(初版) 岩波文庫版 高野岩三郎·大內兵衛 共譯



地域社會 開發事業과 社會福祉

尹 吉 炳

韓國의인 意義等を 적어 보기로 하였다. 特히 文尾에 이 글과 有關한 文獻 一覽을 制限된 範圍內에서 紹介한 것은 이 事業에 關心 있는 諸位를 爲해서 參考삼아 적어 본 것이고 外國語로된 文獻만은 直接 間接으로 有關한 冊字가 相當數로 나와 있으니 앞으로 더욱 新進學徒가 나와 積極적인 研究活動이 있기를 渴求하면서 이를 엮는다.

(一) 이 事業發達의 史的 考察

今 今 여러 나라에서 施策의 一端으로 採擇한 이 事業의 類型은 大體의으로 西歐의인 色彩가 濃厚하나 우리나라의 史實에서 구태여 類似性을 찾아 본다면 李朝 中葉의 李稟谷先生이 主唱한바 있는 鄉約이라 하겠으며 그 民主的 自治性을 提唱한바라 하겠다. 좀 性格이 다르나 日帝時의 所謂 農村振興運動 展開時의 “心田開發”이란 記憶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試圖가 存在하기 始作한 것은 1926년에 (그리스) 即 希臘에서 近東財團에서 實施한바 있었던 農村復興運動 (Rural Development Movement)에서 그 發生的 始發을 찾을수 있는 것이다.

그 後 몇年 後이지만 1935年 英國教育分科諮問委員會에서 國務委員에게 建議한 提案 가운데 “農村地方에서 教育의 效果를 實質的으로 건울려면은 農村地域社會의 各 方面 一 貧困 食生活 保健 及 衛生的 環境 文化的 知度 傳統 迷信 社會組織等等 一에서의 改善 試圖가 綜合的으로 있지 않으면 참다운 教育의 成果를 건우기가 힘 들 것이다.

여기서는 그 革新方向이 地域社會 教育에 나타 났다 하겠다.

그 後 1939年頃에는 <세일론>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社會福祉 施策의 一端으로 農村福祉館 (Rural Welfare Center)을 여러 곳에 示範的으로 두고서 여기에 그 周圍 地域社會의 여러 問題를 週期的으로나마 解決하기 爲해서 2~5人的 “스페셜리스트” 即 農事技術者 保健員 社會事業家 成人教育教導員 協同組合組織 專門家等等을 駐在 又は 派遣해서 對 農村福祉事業을 始作하는 傾向이 여기 저기서 發足을 보게되었다 (註)

序 言

- 一. 이 事業發達의 史的 考察
- 二. 地域社會 開發事業의 意義 及 原則
- 三. 우리나라의 地域社會 開發事業
- 四. 部落에서 事業 實施하는 段階
- 五. 農村地域社會에서 成就한 事業 概要
- 六. 이 事業과 社會福祉事業과의 相關性
- 七. 韓國에서 열린 國際 地言社會 開發會議의 意義

結 言

序 言

社會는 國家 發展 向上과 더부러 나날이 變遷하고 있다.

福祉國家 志向과 그 完成이 四·一九 以後에 特히 高調되어지고 있다. 많은 口號와 公約들이 發表는 되었으나 그 實績擧揚과 結實收穫의 날은 遼遠함이 今日의 實現인가 한다.

여러가지 理論이 百出하고 權威있는 書籍이 書架上 가득 차 있어도 우리나라 農民의 살림사리에 貢獻은 提供하지 못한다면은 그 何等의 存在價値가 없는 것이 되겠고 設使 그러한것이 나온다 하드래도 實用的이고 韓國의인 地域社會 發展에 適用 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深奧한 것이라면 이 亦是 無用之物일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이 掌篇에 筆者는 이 論題의 理論的 面이니, 哲學的 又は 學理的 整理나 解說 보다는 그 實用的인 面과 國內에서 現實的으로 發生하고 推進되어진 事業形態에 置重하여 적어 보기로 하였다.

다음에 別途機會가 부여되면은 이 方面에 對한 理論的 考察을 紙面이 許諾하는 範圍에서 더욱 整理하여 보기로 하고 여기에는 目次에 記錄된바와 같이 이 事業의 史的 考察, 그 意義 整理 及 部落에서의 事業推進 實際過程, 그리고 發足 以來 本 事業推進 業績 그리고 이들 事業과 社會福祉事業과의 相關性等を 살펴보기로 하였으며 끝으로 最近에 열린 同事業國際會議에 對한

1944년에 英國 政府에서 刊行한 出版物안에 成人 教育을 効果 있게 시킬려면은 該當 地域社會안에 사는 百姓 中에서 賢明한 指導者를 同和(感動)시키지 않고서는 上部에서나 外部에서의 指示만 가지고는 非效率的이라는 點을 指摘하고 그 後 英國에 所屬된 많은 後進地域에 이런 意圖가 地域社會 本位로 採擇 又は 模倣되어졌다. (註)

1946년에는 <애급>에서도 農村社會福祉館을 全國에 設置를 했다는 것이며 1954년에 全國에 150餘個所가 있어서 綜合的인 福祉事業 農村地域을 爲해서 하고 있다.

1948년에는 亦是 그리스에서의 社會部(福祉)內에 <地域社會 雇傭獎勵計劃>을 推進하는 委員會를 두게 되고 道路 築成 開墾事業 植樹運動 貯水池 등의 作業을 해 가면서 地域社會 發展을 꾀하였다.

1949년에는 아프리카주의 <골두코스트>에서 亦是 各地區에 國庫金을 令達하여 地域社會 活動에 依한 開發 發展을 도움도록 指示한바 있다.

1952年 6月에는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10月에는 印度에서 各各 地域社會開發中央行政 及 諮問機構를 設置해서 對 農村福祉事業의 綜合的 試圖를 꾀하고 드디어 印度에서는 1956년에 部로서 獨立했다.

1954년에는 필리핀에 PACD라는 名稱을 가진 大統領 直屬機構가 設立되어 今일에 이르고 있고 또한 1956年 5月에는 泰國에도 中央에 國家 地域社會開發委員會를 設置하였고, 地方組織까지 거늘고서 活潑하게 推進하고 있으며 1958년에는 마침내 韓國에서 發足を 보게 되었다.

(二) 地域社會開發事業의 意義 及 原則

第二次大戰後 많은 나라들이 名目上 自主獨立을 達成하고 그들의 宿願이던 民主主義國家 名單에는 겨우 끼었으나 福祉國家 發展은 渴求하면서도 國民들의 生存權에 對한 保障—즉 經濟社會的 側面에서의 健全한 國民으로서의 福祉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保障—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고 先進國의 每人當 年平均 收入이 2,000弗線에 오르고 내리는데 반하여 後進國의 그것은 最低 40弗에서 부터 韓國의 5,60弗線을 下廻하고 있고 특히 우리 農村에서의 이것은 40弗線의 現實에서 헤매고 있다.

따라서 後進國 혹은 前世紀 被支配國家群들이 이런 피어린 現實을 克服해 보고자 땀부림쳐 努力해 오던 中 先進國들의 經濟開發(Economic Development)이란 政策 또는 概念形態에다 社會福祉事業의 테크닉이면서 事業形態의 하나인 社會組織서비스(Community Organization)의 方法을 兼備 活用해서 後進國 經濟社

會的인 落後性과 社會的 病理現象을 治療해 보겠다는 方案으로 採擇되어서 推進하여온 것이 於焉間 約 2,30年이 되어 온다. (註1).

이 地域社會開發事業의 概念을 端的으로 表現한 바 있는 UN의 經濟社會理事會에서 採擇한 定義를 살펴 보면 「地域社會開發이란 部落民의 積極的인 參與와 더불어 그들의 創意에 依存하여 全體部落地域社會의 經濟社會, 文化的 發展에 이바지할 條件을 創造하고자 考察된 社會的過程인 것이다. 地域社會開發은 첫째, 그 社會住民들 自身の 勞動力과 物質的 資源을 活用하여 그들의 諸 共通問題를 解決하는데 住民들을 參與시키고 둘째, 住民들이 自己의 問題를 解決 處理하도록 도우려는 政府의 對地域社會 施策을 각 所管系統에서 效果的으로 導入케 하는 試圖인 것이다」(註2).

한편 미국 켄터기大學 農村社會學 教授인 I. T. 산다—스는 地域社會 開發을 한 社會가 目標를 세우고 어떤 方面으로 옮겨 가는 過程이며 또 一面에서 보면 그 社會構成員이 세운 目標를 達成하기 爲한 方法이다. 또한 그 社會의 各種 變遷과 發展을 實踐推進하는 計劃(프로그램)이며 一面다른 角度에서 보면 이는 社會的 欲求의, 成就達成을 위한 運動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註3).

한편 애급 카이로에서 美國人大學總長으로 20餘年을 지내고 現在 近東財團(Near East Foundation)의 團長으로 있는 J. S. 배도우博士의 見解를 여기 紹介하면 氏는 그 目標에 있어서 端的으로 四要素를 包含하여 이를 보고 있다. 즉

- ① 生産增加
- ② 政府 및 外部의 對 部落 各種 旣—비스, 예컨대 保健衛生的 教育的 社會, 文化的인 旣—비스의 增加
- ③ 部落民 自身の 參與 慣習의 助成
- ④ 各種 部落 問題의 共同 處理體制 또는 그 解決 機構를 마련해 주는 推進過程이라고 보았다(註4).

더욱 專門的으로 探究하는 讀者께서는 이 외에도 國內에서 그 著書가 두卷이나 翻譯 出版된 바 있는 런던大學教授 T. R. 밋덴教授의 地域社會 開發事業原論이 나와 있고 其 外에 駐韓「유승」의 한때 自문역을 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大學教授인 J. 태일러—教授의 이에 對한 講義(於서울 商工會議所 講演 1958年 12月) 抄譯 及其 原本(유승에서 入手可能) 등에서 더욱 參考하길 바라며 其他 末尾에 적어 둔 文獻에 依해 더욱 研究 있기를 바라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前述한 바 있는 몇가지 定義에 關한 諸 見解를 筆者가 보고 싶은 그대로 若干 그 主流만을 整理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理由는 런던大學의 밋덴教授도 그 著書 地域社會 開發事業原論中 그 緒論의 壁頭에서 指摘한 바

와 같이 「正確하면서도 全般的으로 通用될 수 있는 定義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말한 바와 같이 原理的 定義에 對해서 多少 整理를 必要로 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前述한 세가지 見解中에 端的으로 表現된 바와 같이 經濟的인 推進傾向을 內包하고 있는 見解와 社會學的 또는 社會改善, 事業的인 色彩가 濃厚한 角度에서 보는 見解, 그리고 國際聯合, 經濟社會理事會에서 採擇한 바와같이 이 두 見解를 합쳐서 綜合的으로 取扱해 본 見解등, 세 方向을 들을 수가 있으나 좀더 이를 要約해 보면은 最近에 支配的인 開發持論중에 하나인 經濟成長을 위한 經濟發展的인 色彩와 社會福祉國家 育成을 위한 綜合的인 社會保障制度 指向에서 오는 福祉國家色彩, 이 두 要素가 主流가 되고 農業主業國家에서 나아가서는 工業國家指向을 試圖하는 一種의 應用社會科學的인 近代的 概念이라 할수 있다.

學的인 系譜에서 그 主學問的인 主流를 찾아 보자면 이렇다 하겠으나 이에는 더욱 別途로 機會가 있기를 바라고 다만 實踐原理라 할까 最近 여러 나라에서 推進中에 있는 本事業의 推進根本原則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만 몇 項目을 마지막으로 本章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1. 이 事業은 지금까지 外部의 干涉보다도 部落自體의 創意的 計劃, 動員, 推進, 管理 蒙利面의 直接的인 參加와 受惠를 條件으로하고

2. 部落民 自體의 當面한 問題와 隘路等 그 共通慾求의 再認識 및 그 解決에 基盤을 두고

3. 部落民의 協同 精神과 自主自立的인 바탕을 마련하고

4. 部落向上에서의 리더십이 部落 內서 發見 혹은 育成 되어지고

5. 各種 人間의 自然的 可用 資源이 部落 內와 그 周邊에서 發見되어 最大限으로 活用되고

6. 既存 또는 現存 政府의 對 部落 末端 施策을 最大限으로 援用 導入해서 이끌어 주며

7. 窮極的으로는 小區地域社會에서 始作해서 國體全體의 永久한 經濟社會的 生活 安定을 保障케 하는 터전을 마련한다. 理論이나 意義를 살펴 보는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本 事業推進 狀況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地域社會開發 事業

위에 第一章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外國에서는 특히 第二次大戰 前後를 기하여 始作 되어 온 이 事業은 오랫동안 他國 政治下에 있던 印度, 파키스탄이 前述한바와 같이 1952년에 각각 政府 中央機構에서 該當部를 新設하여 着手하고 필리핀이 1954년에 그리고 泰

國이 1956년에 각각 機構가 發足되고 其他 그리이스, 세일론, 애급, 요르단등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中東, 東南亞, 南美諸國에서도 局이나 處등으로서의 機構를 각각 設置하여 이 事業을 推進 中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美國, 英國內 數個 大學과 其他 事業 推進 中에 있는 前記 各國에서는 그 形態나 名稱은 多少 다르나 現在 社會科學部系 大學 때로는 農大에서 이 事業에 關한 研究와 實務者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學科 또는 研究 및 訓練課程을 舉皆 設置하여서 研究 및 所要人材를 養成中에 있는 것이다.

一方 우리 나라에서는 이 地域社會 開發事業을 1958년에 着手하여 當時 大統領令 第1,384號로 그 機構設置를 위한 根據를 마련하고 中央廳 復興部에 本事業實踐과 諮問을 겸하는 機構를 두었으며 當年 10월에 部落派遣 指導員名과 中央職員 10餘名을 採用 訓練해서 全國 5個郡에 設定된 12個 示範部落에 이를 派遣하여 이 事業을 實施하였다. 1959년에는 다시 有關各種 大學 卒業生 多數 應募者 中에서 60餘名의 指導員을 增募해서 역시 特殊訓練과 實習을 거쳐 다시 擴張된 100餘個 部落에 내 보내고 1960년에 역시 약 70餘名을 增募하여 약 5個月間의 特殊訓練과 實習을 거쳐서 全國에 擴張選定된 150여개, 示範部落에 派遣해서 現在 道轄 全國 40個郡內에 270여개 示範部落에서 170여명의 本事業 指導員이 本事業 育成強化 및 全國의 擴大方向의 터전을 마련하느라고 나날이 땀을 흘리고 있다. 이 외에 今年度 派遣될 候補生 60餘名이 現在 水原市內 西屯洞에 있는 農村指導者訓練院에서 訓練을 받고 있어 8月上旬에는 各各 住地에 赴任할 豫定이다.

紙面關係로, 우리나라의 이 事業現況을 詳細히 記述하는 것은 其間 數次 國內 日刊新聞이나 雜誌에도 紹介도 되어져 있어서 此後의 機會로 미루고 다만 該간 의 이 事業이 堅은 收穫이라고 느끼는 점을 몇가지 여기에서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事業의 成果는 新聞에서도 數十次 取扱한 바와 같이 이 事業이 從前의 各種 對 農村開發試圖와 顯著하게 다른 점은 다른 事業이 比較的 散漫的이고 全國的으로 얇게 廣範圍하게 推進됨에 比하여 보다 더 重點的이고 地域 單位로 集約的이기 때문에 比較的 뚜렷하고 빠른 成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各種 可視的 現象一列컨데 部落內에 文化館, 遊休地開墾, 自主自立的 協同體制의 育成, 多目的 小規模農村電化事業, 共同우물, 沐浴湯, 理髮所, 生活必需品 購入 및 販賣場, 民主的인 會議方式 또는 問題의 相互 檢討 慣習의 助長, 共同搗精施設, 託兒所等 등의 出現에 隣近部落이나 面에서 相當한 刺戟 및 心理的 反應과 關心이 表明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로 이러한 可視的인 變化의 裏面에 育成 되어 가는 部落民들의 覺醒과 協同 自立精神 즉 社會心理的 變化의 樣相을 各 部落에서 뜻 있는 사람은 누구나 認知케 할 수 있다는 事實과

넷째로 官은 勿論 이 事業 地區 觀察 機會와 居住 機會를 갖게 되는 意識 있는 사람, 特히 靑壯年層의 大部分은 그들 빠져린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일단 사라졌던 農村에서의 生の 希望을 本事業 推進 地區에서 다시 찾는다는 집이라 할수 있겠다. 그래서 事業을 爲하여 뭉쳐드는 證左가 各 部落 혹은 그 周邊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과

다섯째로는 過去의 國庫金이 여러 모로 濫用 或은 壓力에 依한 支出이 되었다는 說이 있었으나 이 事業에 支出된 國庫金만은 令達條件으로 部落民 側에서 면서 可用資源의 最大限 活用に 對한 檢討와 自體 負擔으로서의 各 事業費用中 半額線 以上을 釀出 또는 用役으로 對充檢出토록 推進하는 것을 不可缺의 原則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事業體 活用 및 管理에 있어서 든든한 土堅을 檢討하고 助成하는데 相當한 時日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着手되기 때문에 事實上 令達된 國庫金의 2배 내지 3배의 效果를 나타내고 이들 國庫補助 事業 外에 各種 部落自體 事業의 全國의 結果를 集計하여 보면 現在 相當한 件數에 達하고 있다는 것을 確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成果의 反面에는 當初부터 試驗的인 性格을 띤 示範事業이었던 만큼 失敗面도 豫想하였음은 물론이었던 바 全國에서 約 1割 程度의 部落, 그 중에서도 特히 都市 又は 準都市近處에 있는 部落이나 都市化 影響을 받아온 地域에서의 成果란 永久的인 開花를 보지 못하고 無實花로 끝맺인 케이스도 露呈되었으며 科學的이고 批判的인 評價와 메스를 加해야 할 地域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事業에 對한 効用性이 絶對 大端한 것으로 判明되어 있고 不遠 除去되어야 할 事業推進上 不利한 障礙와 各種 條件의 實態도 이에 關聯된 調査 評價事業을 通하여 把握이 되어지고 있는 것 만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다만 創設期에 있어서 他國에서의 本事業 推進 經驗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의 本事業 方向을 前章 定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文化的 社會機能的인 變遷에 置重하는나 經濟的인 成長에다 置重하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의 行政的인 施策面에서 끌어갈 것인가, 또는 全國的인 運動으로서 한 過程을 마련할 것이냐에 對해서 여러 角度로 政策上 摸索한 바 있었고 나아가서 國家計劃의 이어야 되느냐, 地域的인 特殊事情과 個個計劃에 放任하느냐의 問題도 여러 角度에서 考慮, 檢討를 하고서 그 다음에 實施에 옮겨졌던 것인 만큼

今日의 結果 反應에 豫測했던 바 보다 別로 큰 誤差가 없이 推進을 보게 되니 다행이라 할 것이다.

(三) 部落에서 事業實施하는 段階

(가) 基礎訓練

한 가지 社會變遷이라도 이것을 推進하려면 技術的인 一動因提供者의 마련이 가장 重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本來부터 發展現象이 偶然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期待할 수는 누구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옆에서 支援하고 部落民과 同苦同樂하여 그 推進 바탕을 마련할 일군, 즉 社會發展 技士役을 할 人的 資源 確保를 어느 나라에서나 다 같이 대단히 重要視하고 있으며 따라서 本事業 指導員 訓練 育成에는 至大한 關心을 傾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農村愛 意識이 強烈한 大學卒業者中 世俗化가 比較的인 靑年을 모아서 特殊 訓練을 教室에서 3個月半, 現地 農村에서 實習 1個月半 合 5個月間 實施해서 部落에 내보내고 있다.

그 訓練內容으로는 이 事業이 어디까지나 人間關係를 媒介體로 하느니만큼 所謂 말 하는 社會心理學的인 分野集團을 다루는 力學的인 技術이라 할까, 그뿐다 이나믹스를 비롯 해서 社會 構造面이나 機能面을 理解하는 分野, 農村 地域社會를 分析, 觀察, 把握할 수 있는 知識, 그리고 實生活에 關聯性 있는 生産方式과 資源, 認識 및 그 利用 技術에 關한 知識, 生活의 文化化 及 健康衛生化에 關한 知識等等을 가르쳐 주는 機會, 그리고 人的, 物的, 資源, 動員 及 其 効用 知識等等 必要한 것은 大略 概念이라도 全部 집어 넣어주고 끝으로 그들의 祖國愛 一揆意로는 農村愛 觀念의 提高 覺醒等等을 重點的으로 訓練 實習하는데 置重했다.

(나) 社會 變遷 技士로서의 入鄉

對人關係로서 始作해서 對人關係로서 꽃을 피워볼 事業인 바 오랜 訓練과 知識, 精神의 鍊磨를 갖추고 自己 出身郡이 아닌 可及의 出身故鄉 가까운 곳으로 配置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技術者로서의 武裝만을 하고 金力이나 看板(名脚上, 俸給, 地位等)에 依存함을 전혀 避하고 그야말로 합바지를 입힌 開發 後軍으로서 고무신이나 짚신을 신고 「파랑새」담배를 피며 일하곶곰 指導해서 숨은 指導 活動을 始作케 하였으며 3·4個月 동안을 깊숙히 任地에 파묻혀서 于先 角度에서 必要한 各種 作業活動基盤을 닦게 되는 것이다.

(다) 入住 地域社會의 實情 把握

前述한 바와 같은 綜合的인 發展은 피하려는 以上,

部落實態의 科學的인 把握은 問題 解決의 核心을 左右하게 된다. 指導員은 擔當하는 部落의 自然環境, 營農狀況, 水源水利狀況, 土地利用程度, 營農技術, 產物去來 및 利用關係, 副業狀況, 遊休資源把握, 年中 산출량과악, 文物傳播經路의 把握 對人關係에서의 各種 既存 리더쉽의 分布狀, 小集團 形成狀況, 集團과 集團과의 凝結度 及 그 對人關係 親近距離, 革新을 先導하는 人的資源의 存在와 그에 對한 常習的 反對者 有無의 把握, 家庭狀況, 教育狀況, 各者의 主職業과 副職業의 實態, 負債의 實態, 融資 及 借入處, 農閑期 利用狀況, 既存 開發實績 有無, 各種 部落施設, 可能한 各種 政府施策의 效果의 導入方途, 疾病保有狀況, 各種 瘻, 水組協同組合等 存在有無, 地方古有의 傳統의 迷信, 將來 開發에 對한 意見이나 輿論 綜合등등의 그 入住農村 現象을 全部 網羅 把握하기 爲하여 入鄉하자 즉시 直接 間接的인 社會調查가 始作된다. 勿論 把握 技術에 있어서나 그 訓練은 別途로 시키고 있거니와 대개 近來 活潑히 利用되는 社會調查方法(Social Survey Method)과 그 技術的 過程을 밟는다. 勿論 面接을 통해서 直接的인 把握도 하지만 間接的인 日常 對話中에서나 또는 質問書를 나눠 주고서, 견어 들이는 輿論調查等을 통해서 또는 既存記錄文書등을 통해서 하는 方法등으로 各種 機會를 利用해서 實情診斷을 可及的 科學的으로 推進한다.

(라) 協同과 相互扶助를하기 爲한 組織

이런 訓練과 把握過程을 거친 후에는 하나의 開發指導員으로서 自己가 맡은 部落事業推進 方向에 對해서 多少方案이 잡혀지게 마련 이다. 그런데 어데서나 事業을 始作하기 前에 開發 活動의 母體와 胎盤이 될 社會的인면서 人的 組織이 대단히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于先 他國에서도 그러하거니와 例컨데(인디아)의 판자이앗트(비울빈)의 바리오카온실等이 그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入鄉後 約 3—4個月이 지나면 把握된 資料에 依해서 各種 리더와 派別關係 及 力量과 部落 共同目的을 爲하는 熱등을 考慮해서 綜合的인 部落 開發事業 推進委員會인 「地域社會開發契」를 部落마다 組織하고 이어서 既存 組織體인, 例컨데, 敬老會, 青年會니, 4H클럽이니, 婦女子 家政클럽이니 등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改編 또는 強化하고서 活動을 活潑化시키며 徐徐히 時期를 보아서 이들 組織이 없는 곳에는 組織을 갖게 支援하고 그 외에도 成人教育班, 婦人을 爲한 家庭問題 教育班, 保健教育, 農事技術教育 등을 實施하는 各種 機會마련 信用組合, 協同組合 購買組合等の 組織, 그리고 이런 施設의 既存地域에서는 그 活動의 活潑化와 그育成 그리고 開發에 必要하고

農村文化 向上에 所要되는 圖書備置 施設 設置 及 그 文庫利用管理, 各種 마스콤材料나 視聽覺教育的 媒介物의 揭示板 設置등등이 部落에서 所要되는 것이다. 이는 經費의 制限과 그 部落의 受入態勢 또는 部落民들의 反應을 보아가면서 徐徐히 着手해야 되는 것이다.

勿論 初期에는 많이 만들 必要도 없고, 다만 어떤 機構나 組織體를 두는게 適當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때 먼저 言及한 바 있는 部落契의 評議員들과 그리고 關心 있는 部落民 幹部들과 民主主義的 決議過程이나 會議를 하여 그 主要 活動人物과 人的 相互關係등을 考慮해서 組織하는 것이다. 間或 部落에는 如斯한 複雜多端한 組織體가 생기고 또 사람마다 問題와 事物을 보는 角度가 다르고 해에 猜忌하는 마음과 軋轢이 團體 相互間에나 또는 幹部間에도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普通 發見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事實은 依例히 어느 나라나 本 事業 從事者나 指導員들의 訓練時에 教科書에 쓰여있는 A, B, C의 事實에 不過한것이며 대개는 入鄉하고서 이런 問題를 가지고 서투른 사람은 처음에 몇 번을 골치를 앓는 것이 普通이나 入住後 半年이 지나고 계획하였던 事業이 하나 하나 推進되어 가느라하면 이러한 소소한 紛糾나 團體相互間의 相衝은 自然히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 이 事業 從事者 間에 經驗한 바에서 立證되어졌다. 韓國사람이 서로 뭉치기가 大端히 힘이 들고 도저히 團結하기 困難한 民族이다. 또는 하나하나의 힘은 사자 같아도 團體의 힘은 아주 약하다. 등등의 見解는 우리 示範部落에서와 이 事業 推進에 있어서는 그 主張 根據가 몹시 薄弱한 것으로 믿어진다.

한 團體內에 充分한 目的과 그 團體員들을 끌을 수 있는 [인센티브] 一 誘致刺戟因素 一만 充分히 있다면 그리고 서로 誠意와 共同目的 達成 爲한 相互努力로서 存在하는 組織體라면 農村이고 都市고 간에 어디서나 充分히 協同을 爲해서 建設을 爲해서 組織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다만 그게 ××黨이니 또는 ○○黨식으로 알맹이와 團體會員의 實質的 利得은 거의 없고 看板과 綱領만 내세우고 政治的 目的과 路綫에 맞추어서 끌어 나가려니까 協同을 眞情으로 원하는 조직이나 團體가 存在不能하게 되었던 것이다. 故로 誠意와 眞情 그리고 熱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도 뭉칠 수 있다고 生覺한다.

勿論 이러한 各種 團體를 二個 또는 三·四個 部落에서 數個式 組織하고 한 사람의 指導員이 이를 잘 指導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故로 指導員의 訓練期間 中에는 前述한 바와같이 集團取扱에 있어서의 所謂 集團力學(Group Dynamics)

이니 각종 會議引指法이니 파넬·디스커션—論者選出 討論法—이니 부터서 그 組織하는 방법등에 對한 素養을 갖출 뿐 아니라 이들 團體를 育成함에 있어도 하나 하나씩 徐徐히 自己 指導力量에 맞게, 그리고 그걸 適當히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리이더쉽이 發見된 다음에야 차츰차츰 組織하는 것이다.

勿論 女子部落 指導員의 경우에는 婦女層 부터 먼저 始作하고 農科大學 卒業生이며는 農事研究青年會와 같은 組織을 먼저 조직해 가면서 各者 自己 能力과 自信을 考慮해서 指導活動을 展開한다.

(五) 農村 地域社會에서 就한 事業概要

이와같은 段階가 어느 程度 지나면 各 團體別로 月間 事業 推進 計劃이니 年間 計劃등을 세우게 되고 그리하여 多事로운 本 事業 遂行은 着着 着手할 수 있게 된다. 地域社會開發 各部落契에서는 一種의 綜合的인 事業計劃을 約 半年 혹은 一年쯤의 時日이 지나면 對議 檢討하기 始作하게 되고 이 樹立方法도 各 部落에 따라 各各 틀리지만 大略 살펴보면 農事 分野, 餘他生産 分野, 協同等 經濟活動 分野, 保健衛生 分野, 靑少年 事業 分野, 婦女事業 分野, 土木建設 分野, 畜産 分野, 林産 分野, 海産·水産 分野, 社會教育 分野, 生活改善 分野, 土地開墾 分野等等 여러 分野가 있다.

그러나 이런 分野의 事業計劃이란 一朝一夕에 마련될 수는 없고 또 실지 推進方策이 없는 架空的인 計劃은 指導活動上 威信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實踐可能性이 確實한 것과 自體內에서 마련할 수 있는 用役이나 經費及 外部 導入이 가능한 各種 所要經費를 打算해서 計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計劃이 잘 遂行되게 그 바탕을 만든다는 것은 容易치 않은바 이걸 容易케 하는데는 各種 理解 促求 技術과 過程이 使用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會議, 視聽覺機材, 戶別相談, 民의 參與 및 動員計劃等 緻密한 過程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後日에 쓰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선 우리가 그간 實際로 한 事業件數를 大觀 하여보기로 한다. 初年度에 國庫補助事業이 27個事業, 次年度에 295個事業, 그리고 3次年度에 47個種目中에서 420餘個事業이 完成 또는 推進中에 있다. 이 事業들은 前記 各種 分野에서 實施되었으며 이보다 重要한 事實은 이 國庫補助事業推進 裏面에서 자라는 自主的이고 民主的인 自立精神乃至 相扶相助하는 協同精神의 顯著한 胎動이라 하겠다. 거기서 나아가 國庫補助金 없이 昨年까지에 選定된 121個 部落에서 成就된 自體開化 發展事業이 前記 各 分野에서 이루어진 것만 約 6·70餘種에 近 1800餘件에 達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參考 삼아 大部分 完成을 보았거나 또는 지금 推進中에 있는 各種 自體事業의 種類와 其間 實施한 地域社會開發 國庫補助事業 種別 集計表를 이에 添記하여 둔다

事業에 있어서 끝으로 하나 重要한 것은 事業 完了나 竣工에서 그 協同的 民主的 參與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事業의 事後 管理나 繼續 反復이 더욱 強調되어 있고 또 그 方案에 對해서는 別途 各 部落 別로 緻密한 管理規則을 設定하여 繼續 發展의 保障을 마련하고 있다는 點이겠다.

(가) 地域社會 開發部落에서 補助없이 한 各 事業 種類

農業 分野	堆肥 增産
〃	秋 耕
〃	展 示 圃
〃	共 同 裁 培
〃	農 產 物 貯 藏
〃	農 事 教 導
〃	其 他
畜産 分野	家畜病豫防
〃	家畜飼育指導
〃	畜舍改良및建築
〃	養 豚
〃	養 鷄
〃	養 兔
〃	養 蠶
〃	飼 料
〃	其 他
林産 分野	砂 防
〃	造 林
〃	林 野 開 墾
〃	種 子 採 取
〃	其 他
水産 分野	養魚 養殖
〃	水産物生産
〃	其 他
建設 分野	道路補修및擴張
〃	橋果補修및建設
〃	堤 防 修 築
〃	遊 休 地 開 墾
〃	水 利 施 設
〃	會 館 補 修 工 事
〃	레 크 레 이 션
〃	共 同 施 設 建 設
〃	住 宅 改 良
〃	其 他

社會教育分野	教育講座
"	集會及行事
"	文盲退治
"	宣傳行事
"	教育設施
"	其他
部落組織狀況	地域社會開發契
"	讀書俱樂部
"	婦女會
"	敬老會
"	4 H 俱樂部
"	青年會
"	購買組合會
"	農業研究會
"	其他
生活改善分野	賭博禁止
"	迷信打破
"	節酒運動
"	節米運動
"	虛禮廢止
"	아궁이改良
"	燃料節約
"	其他
保健衛生分野	共同井戶改良
"	便所改良
"	傳染病豫防
"	下水道整理
"	驅鼠運動
"	環境淨化
"	其他
婦女指導及 家庭分野	編物指導
"	衣類改良指導
"	手藝指導
"	家計簿實施
"	炊事場淨化講習
"	料理指導
"	育兒法指導
"	其他

(ㄷ) 4291.92.93年度別 補助事業 種目別 集計表

部門別	事業分野	年度別			合計	順位
		4291	4292	4293		
保健社會	共同井戶	9	38	42	89	2
	液肥桶設置	1	53	17	71	5
	共同浴湯	1	2	4	7	
	共同理髮所					
	焚口喫煙突改良		5		5	
	計	11	98	63	172	

部門別	事業分野	年度別			合計	順位
		4291	4292	4293		
産業經濟	搗精工場	16	65		81	4
	製油工場		1		1	
	藥品生産工場	4	7		11	
	煉炭工場		1		1	
	蓋瓦製造工場		2		2	
	단무지工場	1			2	
	澱粉工場	1			1	
	農業倉庫	1	5	14	20	9
	消費組合販賣所		2		2	
	産業會館	8	2		10	
	水力發電	3	20		23	8
	裁縫機	4	16		20	9
	農機具	6	9		15	
	灌溉事業	4	23	23	50	6
	開墾事業	1	2	6	9	
	畜産<牛>	23	59		82	3
	畜産<馬>		1		1	
	畜産<豚>	10	9		19	10
	畜産<羊>	3	3		6	
	養兔	5			5	
	養鷄	1	3		4	
	養蜂	1	1		2	
	養蠶		1		1	
共同育雛		1		1		
竹林		1		1		
有實綠化事業		1		1		
特用作物	2	4		6		
苗圃設置		3		3		
果樹園	1	3		4		
漁撈施設	2	3		9	14	
石花養殖場		1	5	6		
海苔養殖場		1		1		
養魚場	1	1	6	8		
	計	10	127	275	412	

部 門 別	事 業 分 野	年 度 別			合 計	順 位
		4291	4292	4293		
文 化	文 化 館	4	44	43	91	1
	計	4	44	43	91	
土 木 建 設	堤 防 工 事	1	2	8	11	
	農 路 新 設	1	12	13	26	.7
	橋 梁 架 設	1	9	16	26	7
	船 繪 場	1	2		3	
	電 氣 架 設	1	1	2	4	
	집 용 改 良		2		2	
	計	5	28	39	72	
合 計	30	297	420	747		

(五) 地域社會 開發事業과 社會事業과의 相關性

社會事業이 元來 被害地域 住民 又は 一般社會受難 層이나 困窮한 國民을 疾病, 貧困, 無知等の 그나라 一般福祉的인 水準以下에서 터덕이는 百姓들 부터 먼저 救濟해야 한다면은 이 事業과 그 理念的인 面에서 過히 距離가 없을 것으로 生覺되나 그러나 그 技術方法에 있어서는 後者가 더욱 廣範하고 長期的이며 또한 若干 行政的인 特色을 띄우고 있음에 그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經濟的 發展이란 色彩과 그 틀위에 各種 活動이 建築된다는 點에서 그 相關性을 發見하여 볼 수 있겠다.

그러나 事實上 地域社會 開發事業에 對해서는 그 成長으로 보아 아직 萬人 妥當할만한 定義나 方法의 確立을 보지 못하고 그를 採擇한 나라의 經濟, 社會, 政治의 背景 如何에 있어서 그 推進 形態에 많은 差異가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 基本觀點에 對해서는 이번 國際會議에 參席하였든 여러 代表들도 意見을 같이 한 바 있거니와 成人教育이나 文盲退治等에 主力을 두는 나라와 農村의 工業化, 電化等에 더 前進된 目標을 두는 나라와 農業, 畜産等 生産 第一主義를 부르짖는 나라 等等 그나라에 따라 그 程度와 理解 方向이 各樣 各色이며 採擇한 나라가 大概 新生國家이기 때문에 一般的 社會福祉事業의 地盤이나 技術이 아주 未熟하거나 또는 그 서비스가 全無한 狀態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問題는 社會事業 分野의 各種 福祉的 서비스가 잘 發達된 나라에서만 現實的으로 問題가 되고 兩事業 分野 間에 相關性이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의 核心으로 實地 서비스 보다는 訓練

面이나 그 理論面에서 比較考慮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點이 서로 相互 貢獻할 수 있다고 보아도 無妨하겠다.

即 社會事業 學徒로써 習得한 여러가지 知識 特히 地域社會組織化事業(community organization), 케이스 워크技術, 人間關係을 把握하기 爲한 各種社會學的, 心理學的인 基本知識, 家族과 아동, 老人, 癡疾者를 理解하고 또는 少年, 少女集團等을 爲한 各種서비스를 提供하는 技術과 方法 그리고 社會調查 技術等은 이 事業을 農村에서 實施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實地로 우리 農村의 示範事業 地區에는 많은 社會事業科 出身이 이미 俸仕하고 있는 緣由도 이러한 根據에 存在하는 것이라 하겠다. 其 實際的인 面을 보자면 團體組織 技術面, 特志團體 活用面 部落民會의 指導面, 各種 相談機關이나 그 機能發揮, 老弱者, 廢疾者를 要救護對象에 對한 救護 活動, 各種 크립이나 團體에 對한 서비스 供與 及 指導活動 其他 諸般 서비스 提供 機關의 調整 又は 그 惠澤의 導入 技術等 힘입을 바가 많다고 보겠으나 問題는 美國的인 社會事業의 知識과 技術이 不完全 消化되고 未熟한 그 데로 理解되어서 그 經驗과 習得만을 가지고 곧 우리 農村社會에 이바지 할 수가 없는 程度 充分할 것이나 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社會福祉事業이 그 技術面이나 서비스 面에서 아직 未熟한 段階를 脫皮 치못한데 反해서 理論的 習得만으로써 育成된 이 所謂 社會福祉學徒가 廣範圍하고 技術的으로 關聯되는 이 事業에 어느 程度 서비스를 할 수 있는나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勿論 다른 여러나라에서 現存하는 社會福祉事業 訓練機能이나 理論的 背景이 相當한 도움을 이 地域社會 開發事業界에 하고 있고 제법 그래도 密接한 關聯이 있음은 아직 否認할 수 없다.

(六) 韓國에서 開催한 國際地域社會 開發會議의 意義

끝으로 지난 5月6일부터 12일까지 國際 地域社會 開發會議가 韓國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그 會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美國等 14個國의 關係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韓國 歷史上 처음으로 이런 會議를 갖였었던바 이 事業의 重要性和 앞날의 展望에 큰期待를 하고 있는것 같이 느껴져서 그 意義만을 簡單히 이 機會에 여기에 添記해 보고저 한다.

이번 會議는 大略 살펴 보건데 新生 諸國에서의 이 事業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的 地位, 役割等을 考察 檢討하자는데 焦點을 두고 連日에 걸친 講演, 分科討論會를 통해서 行政施策으로써의 方案, 經濟的 發展을

志向하는 國家에서의 그 役割, 이 事業의 成敗에 對한 評價 研究方法, 要員 訓練方法, 所要技術의 支援方案 及 有關 行政部處의 協調等等的 各 方面에 亘하여 그 討論 및 檢討하였던 것이고 아울러 韓國의 地域社會 開發事業을 視察, 批判하자는데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번 會議의 具體的인 進行案件 日程에 對해서는 國內 日刊新聞에서 이미 屢次 詳細히 報道된바도 있거니와 여기서는 詳論을 避하고 다만 그 目的만을 살펴 보건데, 이러하다. 卽 어떤 커다란 成果를 여기서 收穫해서 이를 活用하자는이 보다도 널리 全世界 新進 國家의 이 分野 政策樹立者와 幹部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 事業의 重要性을 알리고 民主主義의 友好 善隣 方向을 強調함으로써 서로 各國의 經濟, 文化, 社會, 政治의 水準向上을 꾀하자는데 있다고 봄이 妥當하다고 生覺된다.

이러한 傾向은 于先 이 會議 日程表와 進行順序에 明白히 나타났다고 하겠다. 卽 每日 中心 論題에 對하여는 그날 첫 順序로 美國을 비롯한 著名한 人士들의 啓導的인 學術及 政策的 講演으로 부터 始作하고 그뿐만 아니라 7·8項目 中心 課題에 對한 Background Paper 解說論文이라 해들가事前에 各國 代表들에게 配付되고 其 外에도 各國의 施策과 實績을 繼續的으로 印刷해서 配付하는데서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基本 題名만 보더라도 政府의 制度로서 보는 地域社會 開發事業이니 “一國에서의 地域社會 開發事業의 位置”니 “強力한 推進活動을 爲한 政府 技術部處의 調整 活動” 또는 地域社會 開發事業의 經濟, 社會, 政治的인 含蓄性 및 聯關性” 등으로 新生 各國家로 하여금 極히 慎重을 期해야 할 基本 項目과 分科委員會 論題로써 짜여져 있다는 點에서 能히 짐작이 가는 것이다.

韓國이 이번 會議를 통해서 그대로 U·N·안에서는 다 한票씩 投票權을 行使할 수 있는 各國의 長, 次官 局長級人士들에게 우리 農村經濟의 發展과 社會的 發展에 있어서의 躍進過程의 一端과 가장 組織的으로 이걸 끌어올려가고 있는 實績을 보여주었고 一種의 未開地로서 여지껏 誤認을 받고 있는 이나라 農村과 山골짜기에 있는 農村 文化館에서 螢光燈이 켜진다는 驚異的인 事實을 보여준 것은, 文盲退治와 成人教育, 農路建設 정도에 主力을 들으로서 이 事業을 推進하겠다는 亞阿各國代表들에게 준 커다란 “속크”가 아니었는가 生覺한다.

뿐만아니라 中央과 各 部落이 經濟, 文化, 社會, 保健, 家事, 生産等 諸分野에 短期, 長期의 各種計劃을 未及하나마 樹立해서 各種의 貧困과 不安을 克服하겠다고 일어섰다는 勇敢한 모습을 보여준데 對해서는 그

야말로 우리나라에 對한 莫大한 再認識의 機會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이 國際會議를 통해서 이루어진 成果를 아래에 몇 가지로 나누어 列舉하여 보고 앞으로의 할 일에 對해서 簡單하게 적어 보고저한다.

첫째, 于先 그들 新生國 代表에게 우리 代表團과 國內實情을 통해서 韓國의 雄姿를 여러 면으로 紹介를 했고 이번 國際舞臺를 통해서 韓國을 再認識시켰을 뿐만 아니라, U·N·加入을 앞 두고 民間外交로서 國際親善을 圖謀하는데도 相當한 成果를 올렸다고 보고 싶다.

둘째, 우리도 會議運營 技術的으로 外交的으로, 그리고 社會發展에 있어서의 學術的이나 그 發展技術的인 면에서도 그 實力을 보여줄수 있는 機會였었다고 보며 이미 比律賓에서는 公式的으로 明年에 7名을 2週日式 訓練시켜 달라는 要請도 들어왔거니와, 앞으로 이러한 新生國家 地域社會 開發要員의 訓練, 見學 委囑의 機會가 우리나라에도 많아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專門知識 交換의 中心舞臺가 될 可能性도 이번에 充分히 示唆한 바이라고 보겠다.

셋째, 이번 會議를 통해서 特히 四·一九後에 많이 論議가 되어오던 바있는 對 農村施策을 다루는데 國內 國際的으로 얼마나 그 綜合, 調整을 통하여 重點的인 地域社會 開發事業推進이 必要한가 하는데 對해서 國內 各界에 相當한 認識을 提高하였고 또한 各種 政策樹立과 經濟再建 政策實踐에도 相當한 反映을 줄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넷째, 新生國家發展에 있어서 美 上院議員이며 1952 年에 美國 副統領에 出馬한 바 있는 스텝크맨議員의 演說에서 強調된 바와 같이 國家發展에 있어서 經濟發展과 工業發展, 그것보다도 이걸 주로 推進할 國民一大部分이 農民이지만 이들의 “發展開化態勢마련”이 얼마나 重要的 가를 各 分科委員會뿐만 아니라, 各種 會合에서 力說한 바 있어 커다란 教訓을 주었다고 하겠다.

다섯째, 이번 會議에서 또한 政府豫算과 人的資源의 가장 效果的인 活用的 重要性에 關해서 굉장히 많이 論議하였고, 事業의 繼續的인 評價와 그에 必要한 調查研究는 勿論 그에 從事하는 中央, 地方人員의 繼續的인 相互研究 및 그 中間訓練의 重要性이 많이 討論된 바 있음은 注視해야 할 點이다.

여섯째, 끝으로 이번 會議에서 國內外 專門家와 實務者 및 學者들이 모여서 精力을 기우린 만큼 各種 印刷物이나 報告書에 나타난 內容에 對해서 後日에 立法者, 爲政者, 政策樹立者, 經濟 各部處 實務者 及 本事業當路者들은 여기에 充分한 檢討를 해서 韓國을 福祉

國家로 만드는데 果敢한 勇斷과 取捨 選擇이 이 方面 政策面에 反映되지 않는다면 別로 그 참다운 意義를 찾아 내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이번 會議가 國內 社會科學界에 對한 一大衝擊과 刺戟을 준것에 틀림 없으리라 生覺되는만큼 더욱 이 方面에 對한 學術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서 後日에 國際的 進出에 對한 多少의 對備도 하고 아울러 國家發展에 社會科學界로서 寄與함이 要請되는 바라고 生覺된다.

끝으로 이 會議를 이 程度나마 成果를 견우게까지 한것은 우리나라 各關係部處 및 內外 記者等 人士들에게 國際人物을 다루고 큰 會議를 進行시키는데 좋은 經驗을 주었고 또 앞으로의 이런 會合의 誘致하는데도 좋은 機會를 마련한 것에 틀림 없었을 것이다.

結 言

以上에서 制限된 範圍內에서나마 그대로 本論題에 對한 輪廓을 略述하였다.

그러나 問題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닌상싶다.

四·一九革命前後를 莫論하고 現實은 深刻한 實情에 恒常 놓여있다가 드디어 五·一六의 革命이 오고야 말고 이제 더욱 더 正視하여야만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過去 荒政에 주먹구구式 農林, 內務, 保社 各部處의 對 農林福祉의 反復으로 말미암아 年年 生産高는 低下되고 物價와 外貨換率은 거듭 뛰어나고 一方 四·一九後에 民意는 自由로히 부풀을대로 부풀어서 五·一六革命을 거친 오늘날 이제야말로 積極的이고 科學的이며 具體的인 對 農林 社會福祉方案이 마련되어야만 할 골목길에 到達하였다해도 過言이 아니겠다.

地方行政의 舊態依然한 行政形態와 그 機能으로써는 이 累積된 農林社會福祉를 이끌어 갈려고 아무리 하여도 어려울 것이며 여기에 果敢한 措置가 期待되는 바이다. 아무튼 이 한토막의 글이 末端 地方 福祉行政의 갈바에 對해서 多少나마 “소금” 役割이 된다면 多幸이겠으나 그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이 정도나마 이 事業을 길러서 對農林福祉 向上에 새로운 方向을 잡어나갈려는 이 事業前途에 어느 後進國 發展 過程에서나 볼수 있는 바람이 中央, 地方 莫論하고 적게 불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 없다.

또 하나 느끼는 點은 남의나라 어떤 나라는 年間 1人 當 2,000弗 平均所得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매마른 땅하고 舊態依然한 씨름만을 國民에게 시켜야만 되느냐는 點이며 國內 社會科學界나 林畜產 農學界에서도 이번 이 國際會議가 남기고 간 衝擊에서 힘을 얻어서 眞摯한 研究와 檢討가 坊坊谷谷 學術機關이나 人士들 間에 發生 되어져서 行政界에 反映시켜 주기

를 바라며 工業發展이나 經濟 發展 部門에만 置重하려는 國內 爲政層에서도 農林社會 福祉向上 方面에 對한 關心이 더욱 提高되었으면 하는 마음 禁할수 없다.

이미 國內에서 나타난 이 方面 文獻도 ぞ늘고 海外의 各國에서 생긴 此 部門 文獻이나 資料도 많이 入手가 될수 있는 時期가 되었고 하니 더욱 이 方面에 研究함을 서로서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新生國家들이 加速度的으로 이 分野 推進發展의 熱을 높이고 있음은 하나도 남의 일 같지 않으니 孤獨하게 우리는 觀望만 하고살어야 할 것인가 안그러면 生活苦며 後進性이란 自然受難을 克服하고 支配하는데 一路邁進해야 할 것인가

오로지 讀者諸賢의 良識에 呼訴하고만 싶다.

(筆者·農林部 地域社會局 地方指導課長·本院 講師)

參 考 文 獻

本訓練院 講師

- 註1. I. T. Sanders, Theories of Community Development. Rural Sociology, March, 1958.
 - 註2. 20th Report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on Coordinat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2931, Annex III. Paragaph 1, 2 International Survey of Programs of Social Development, 1959年版.
 - 註3. The Community, I.T. Sanders, 1958年版.
 - 註4. Community Development and National Change, p.5, Summary Report of M.I.T. International Studies, March, 1958.
- 表題와 關係있는 參考書 및 印刷物.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I.C.A. 發行.
Community Development, Bulletin London University版.
The Community, the Ronald Press Co. 1958, p. 431. by I.T. Sanders.
Meaning of Community Development; Badeau J.S. Community Development Bulletin I.C.A. 發行Sept. 1956.
Rural Community Organization by Sanders' and Polson R.A. New York. Wiley 1939. p. 488.
Working with People in Small Communities, Case Records of Community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New York, Harpers, 昭和26年度版 社會福祉學, 岡村重夫著, 柴田書店發行 3年度版, 關書房地域調査, 人文地理學會版, 昭和30年 柳源書店
後進國의 經濟發展, 日本國際經濟學會論, 國際經濟第7號, 1955, 11, 日本評論社.
後進國開發理論 アジア協會編, 昭和31年 日本日刊工業新聞社版.
經濟成長의 理論, 아더·루이스原文, 韓譯版 東亞出版社, 4291年度版.
社會變動論, 小松堅太郎, 昭和28年版, 有斐閣版.
地域社會學入門 T.F. 밧넨著, 金昇漢譯, 集賢社版 地域社會開發事業原論 T.F. 밧넨著 金昇漢譯 集賢社版 農林地域社會開發에 關한 研究 朴東浩著,
地域社會開發中央委員會出版物 씨-리스 約40種.

英國貧民法變遷小考

尹 欽



1601년에 制定을 본 英國의 貧民法은 一名 엘리자베스 貧民法이라고도 부르며 이 法이 制定되기 前 約 3百年間에 걸쳐 發達해 오던 貧民救濟制度和 法制 등을 集大成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英國 엘리자베스朝는 적어도 理念的으로는 現代國家의 形態를 갖춘 것으로 보며 이때 制定을 본 이 貧民法도 그後 數百年을 두고 英國 뿐만 아니라 美國에 까지 貧民救濟發達上에 甚한 影響을 끼치었다.

時代的으로 엘리자베스朝는 中世의 終焉을 告하고 近世의 움직임이 活潑해지자 英國을 비롯한 歐羅巴 各國은 새로운 時代의 潮流에 휩쓸리게 된 때였다. 1601年 貧民法이 誕生되기 까지는 여러가지 時代的 要請이 있었고 政治 經濟 文化上의 發達經緯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 보기로 한다.

中世 歐羅巴 救貧思想의 發達과 救貧制度의 特徵

有史以來 人間은 相互 依存하며 살아왔으며 弱者나 遭難者를 救濟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뚜렷한 人間性의 하나다.

그 後 宗教의 發達로 이러한 人間性은 宗教的인 表現으로 神의 恩寵과 永生을 얻기 爲해서 살아 있는 동안 積陰 積德하며 寶賈를 하늘 나라에 쌓는 사람도 많게 되었다. 特히 猶太教과 基督教에 있어서는 救難이 教徒들의 重要한 宗教的 義務로 되어 있다. 初期 基督教徒들은 貧困이나 迫害를 當하는 同志들을 相互 救出하였으나 中世 教會에서는 慈善 行政을 地方教會의 教職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대개 6世紀 頃부터 教會 收入은 牧師나 監督의 生活費로 教會 建物 維持費로 그리고 極貧者救濟費로 各各 分配되었다. 教會 收入中 11條 獻金은 8世紀 頃부터 義務的으로 되어 가장 큰 收入 項目을 차지하게 되자 難民 救濟의 으뜸가는 資源으로 看做되었다.

基督教의 勢力이 漸強해져서 國敎로 認定을 받게 됨에 따라 修道院內에는 孤兒, 養老, 不具 또는 不依無托者 등을 爲한 救濟 施設이 생기게 되었다. 修道僧들이 施物이나 義捐金品을 모아서 飢餓 病弱等 不幸한 사람을 救濟하는 일에 積極 힘 쓰고 있었으므로 求乞 行爲는 全 歐羅巴를 通해서 盛行했을 뿐 아니라 社會

的으로도 오히려 尊敬을 받는 일로 되었다.

勿論 金品을 求乞하거나 乞食하는 것은 놀면서 얻어 먹는 式의 懶惰性도 길렀지만 그 때 社會 事情으로 보아 僧侶나 大學에서 工夫하는 學生 또는 聖地 復舊를 爲해 行軍하는 十字軍을 돕는 일이 되었으니 宗教의 勢力이 거이 絶對적이었던 그 때 社會의 同調를 받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宗教的인 見地에 對하여 國政의 方針은 相反하였다. 約 9世紀 頃부터 數次에 걸친 國令을 내려서 求乞行脚이나 施物 行爲를 禁止하려 하였다. 그것은 放浪 乞食者 中에서 생기는 強盜行爲와 莊園을 떠나 放浪하려는 農奴들을 防止하여 農村과 農民들을 保護하려는 意圖에서였다. 이와같은 政敎 間의 相反된 갈등은 中世 末期까지 存續하였다. 그 後 修道院, 修女院 등에서 實施되던 慈善 事業의 一部는 Hospitals라는 救護所로 옮겨 갔다. 이 救護所에서는 老弱者, 病者, 孤兒, 遺棄兒, 妊娠婦들에게 救護를 實施하게 되었으며 結局 中世 歐羅巴의 重要한 救護機關으로 發展하였다.

이와같은 救護所는 大概 國王이나 高官 大爵等 專制君主社會의 特權階級の 寄贈과 支持를 받아 運營되어 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制度도 要救護者의 一部分에 밖에는 容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많은 乞食者는 路上에서 彷徨하게 되어 地方과 中央 政府로서도 그 措置에 腐心하게 되었다.

宗教的 救護 機關에 依한 救護 行政上에 오는 腐敗와 非行으로 말미암아 政敎 間의 軋轢도 있었으며 가끔 市民들의 非難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結局 이와같은 實情은 政府機關이 救護 實施를 統制 監視하도록 하기 爲해서 監視機構를 設立하게 이르렀다.

그 後 歐羅巴 各國에서는 求乞行爲를 禁止하기 爲해서 嚴罰主義를 採擇하여 그것을 抑制하려 했으나 別 成功을 걸우지 못하였다. 그 後 宗教機關이 行政府에서 세운 原則을 遵守치 못하는 경우 漸次 地方 行政官廳으로 救貧行政에 對한 責任이 移讓되었다.

16世紀에 Martin Luther는 獨逸에서 各 教區마다 「共同救濟」 Common Chest를 組織하여 金品을 받아 要救護者를 돕도록 하고 求乞 行爲는 嚴禁할 것을 貴族과 特權層에게 呼訴하였다.

그 後 이와 비슷한 救護 制度는 歐羅巴 各國에서도 實施되었다. 이 때 부터 貧民 救濟에 對한 責任所在

가 教會로 부터 漸次 社會로 移動되는 趨勢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貧民의 生活 條件을 改善시키는 方向으로 옮겨 가지는 못하였다.

16世紀 頃 Spain의 哲學者 Juan Luis Vines 는 Bruega 市를 教區 基準으로 區分하고 各區 마다 2名의 評議員과 1名의 補助員을 두어 貧民 家庭에 對한 社會調查를 實施하여 從來의 救濟分配 方式과는 달리 職業補導, 就職, 再活等을 通하여 救護를 하였다. 年老者나 稼働力이 없는 者는 救護所에 收容시키도록 하였다.

Vines의 이와 같은 先見은 英國에서와 1536年 Belgium Ypres 에서 實驗되었을뿐 그 後 約 2世紀 半 即 18世紀에 Humburg에서 Busch氏에 依하여 地區組織을 通한 自進奉仕委員 制度가 생기기 前까지는 歐羅巴에서는 實行을 보지못하였다. 이것이 또 後日 徵稅를 通하여 救護事業을 國家가 보살피게까지 된 Elberfeld 制度로 發展해 나갔다.

中世 歐羅巴에서도 여러모로 難民을 救濟키 爲한 努力은 繼續되었다. 처음에는 全혀 宗教的인 動機에서 教會가 難民救濟의 本據가 되었으나 近世에 이르러 점점 그 責任이 社會로 옮겨 가자 國家的인 管理가 始作되었다.

그래도 國家가 처음부터 全擔했던 것은 아니며 다만 關心의 度가 漸高해 갔을 뿐이었다.

中世 歐羅巴에 施行되었던 救恤의 特徵을 列記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一. 國家나 非宗教機關에서 難民救濟에 對한 試圖은 全혀 없었고 教會가 專擔하고 있었으며 그 動機는 主로 宗教的인 것이었다.

二. 救貧活動을 體系的으로 組織하려는 教會의 試圖은 成功하지 못했다. 이러한 組織에서는 教區牧師를 救護官으로 하고 十一條를 救貧資金의 主要資源으로만 들려는 것이다.

三. 救恤의 거의 全部가 施物 또는 義捐金을 分配해 주는 것이었으며 그 實施에 있어서는 無差別의이었다.

四. 宗教界나 政府에서도 問題를 包括的으로 理解하려 하지 않았으며 여러 救護機關을 調整하려는 努力도 없었다.

五. 上記한 바와 같은 無差別 無計劃的인 施惠는 社會 貧窮化 傾向을 招來하고 無爲徒食者를 養成하는 結果를 자아 낼 念慮가 있었다.

六. 中世 歐羅巴의 救恤은 어떤 境遇에는 過多했고 또 어떤 境遇에는 過少하게 되는 弊를 免치 못했다. 都市에서는 應分以上의 救護를 받았는데 不毛僻地에서는 아무런 惠澤도 입지 못했다. 中世 立法의 特徵은 乞食行却의 弊를 減少시키려 애썼을 뿐 弱者의 貧困化를 防止하려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救恤方法은 亦是 貧困한 者가 집에 앉아서 救護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基督教徒들이 教會에서 모은 義捐金이나 施物을 教職者를 通해서 救恤事業에쓰게 한 것은 오랜 歷史의 背景을 가지고 있었

다.

天主教의 勢力이 넓어지고 修道院이 많이 생기게 되자 여기서 救貧事業을 맡아 보게 되었다. 教區를 責任맡은 監督이나 牧師는 修道院에서 行하는 事業에는 關與할 수 없었으며 修道院 亦是 教區에서 하는 일에 關與할 수 없었으므로 때로는 救護의 重復을 免할 길이 없었다.

修道院에서는 門前에 오는 貧者들을 救했을 뿐 아니라 가끔 修道院 가까이 있는 貧家를 訪門하기도 하였다. 無差別救恤로 因한 民生貧困化 過程이 問題가 되고 그와 같은 救貧에 對한 非難聲도 있었지만 從來로 實施되어 오던 慣習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15世紀 初期에는 救貧의 方法으로 大概 다섯가지 가있었다.

一. 教區에서 貧民에게 救護를 分配했다.

二. 修道院에서 門前으로 오는 貧民에게 救護를 實施했다.

三. 救護所 Hospital 에서 老弱者, 病者, 때로는 兒童들을 救濟했다.

四. 非宗教的이나 宗教的인 同業組合 (Guild)에서 救貧院을 세워 貧民을 救濟했다.

五. 富裕層의 個人이 貧民救濟事業을 爲하여 遺財을 하고 때로는 救濟所나 救貧院을 짓 기도 했다.

16世紀부터 現存 救貧制度의 不備와 缺陷이 確實히 들어나기 始作했다.

中世 英國의 社會實情

奴隸制度에 依한 大農場 經營이 漸次로 무너지고 封鎖 自給的 經濟制度和 軍事武斷의 政治體制를 特色으로 하는 封建的 社會가 即 英國뿐만 아니라 歐羅巴의 中世時代를 이루었다. 古代로부터 中世로 옮겨 가는 過渡期的 現象으로 群雄이 割據하여 서로 勢力을 다투다가 그中 强者가 諸弱者를 統合하여 國家統一의 基盤을 세우고 絕對 王權制度를 確立해 나갔다.

英國에서도 Plantagenet朝 (1154—1399)가 近 250年 동안 國權을 잡고 王權을 伸張했다. 이와 때를 비슷하게 해서 教皇權의 勢力도 많이 擴大되어 歐羅巴와 英國에서 몇 차례에 걸친 國王의 破門까지 敢行되었다.

11世紀 末葉에 始作된 十字軍의 움직임은 聖地回復의 宗教的인 目的을 가진 것이었지만 이 運動이 歐羅巴와 英國社會에 미친 影響은 至大한 것이었다. 實히 이 움직임은 農業經濟를 近世的인 商業經濟로 옮기게 되는 契機를 마련해준 까닭이다. 中世 封建制度下에서 莊園 領主들은 自給自足的 農業經營이 可能하였으며 그 經濟的 基盤이 增強해짐에 따라 富의 蓄積도 이루어졌다.

十字軍의 東方進出으로 交易에 依한 產物의 商品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趨勢는 封建領主權과 教會權이 모두 十字軍 運動의 뒷바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實相 이와 같은 中世 商業 開拓은 個人의 移動性과 產業의 分化를 招來하는 것과 同時에 過去 莊

園等 農業經濟에 基盤을 두었던 封建制度가 崩壞하기 始作했고 따라서 騎士階級과 封建諸侯의 沒落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은 傾向은 또한 國家的 統一을 催促하게 되었다. 英國은 14世紀부터 15世紀의 2世紀에 걸친 佛蘭西와의 百年戰爭을 겪고 또 王權繼承을 둘러싼 「장미戰爭」(Rose War)를 치른後 Tudor 朝가 王權을 確立하고 英國의 近世의 統一을 成就하였다.

이와 같은 時代의 背景으로 中世로부터 近世로 옮겨감에 따라 貧民救濟와 民衆의 依他性問題가 그 前어느 때 보다도 深刻하게 되었다. 그 理由를 時代的, 歷史的으로 綜合해서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重要的 것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經濟的으로 農業에 依한 自給自足과 政治的으로 地方分權적이었던 封建制度에 依한 領主와 農奴와의 主從關係의 確立으로 秩序安定이 이루어져 오던 것이 무너지기 始作했다.

農奴는 領主에게 勞力의 提供으로 奉仕하고 또 代價로 領主로부터 身分一切에 關한 保護를 받는 相互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漸次 商業이 發達하게 되고 小規模 手工業과 封建制度下에서 必然的으로 생긴 Guild도 모두 前期 資本主義的 傾向으로 發展해나가게 되었다. 農村에서는 莊園領主가 貨幣의 必要를 느끼게 되어 農民의 賦役보다도 現物과 貨幣地代를 要求하게 되어 많은 小作農이 생기게 되었다. 그 中에는 獨立해서 自作하는 者도 생기게 되었다. 後日 近代地主가 耕地를 買占해서 經營하게 되는 倂劇運動(Enclosure)으로 發展하게 되자 領主와 農土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많은 貧農 또는 無產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都市로 몰려들어 샴을 받아 生活을 하게 되는 手工業者들로 化하였다. 이들中 勞賃이 生計維持에 適合치 못하거나 疾病이 있을 때 生活根據를 一時에 잃어버리고 乞食치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封建制度의 崩壞가 첫째 重要的 理由이었고 都市의 팽창이 둘째의 重要的 理由이었다.

過去莊園에서 身分의 保障과 生活安定, 그리고 家族과 親戚 사이에 確立되어 있던 人間關係가 商工業이 增加되어 個人이 都市로 몰려들게 되자 그 힘이 弱해질 뿐이었다.

個人的 移動도 過去보다 훨씬 自由롭게 되고 各種職業의 種類도 불었지만 個人危機에 對處하는 아무런 保障도 되어 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實情下에서는 能力이 있는 者에게는 보다 크고 많은 經濟的 成功의 機會가 열렸지만 無能者는 失敗와 經濟的 依他를 不免케 되는 形便이었다. 이때가 곧 初期 資本主義 時代를 만드는 礎를 닦고 있던 時代였다. 즉 工場制 手工業의 發達로 資本 蓄積이 이루어지고 한편 莊園制度가 무너지기에 따라 거기에서 解放된 農奴들이 多數한 無產階級을 形成하 던時代였다. 이와 關聯한 것이지만 三째로 重要的 것은 貨幣經濟의 確立이라는 것이다. 流通貨幣

의 仲介로 過去의 物物交換制보다 去來上에 큰 便利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一方 資本의 大量蓄積이 容易하게 되었고 商利를 爲한 競爭에 不運失敗한 者는 따라서 貨幣를 獲得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앞에서 指摘한 세가지 事實은 中世가 그 末期에 가까워 오면서부터 貧民救護에 對한 對策이 重要的 社會的 問題로써 擡頭케 된 가장 두드러진 理由들이다.

14世紀에 이르기까지 英國의 朝廷이나 議會에서는 貧民救濟에 關하여 아무런 積極的인 施策을 세운바 없었다. 이 問題는 거야 全的으로 教會나 產業組合等에 一任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된 바와 같은 社會的 趨勢와 封建制度의 弱화, 마침내는 崩壞가 새로운 經濟體制로 말미암아 發展하게 되자 解放된 農奴들과 그中에서 생기는 浮浪民等을 어떻게 安定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重要的 民生問題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었다.

朝廷과 貴族層에서도 벌써 無關心하게 坐視할 수 없게 되었다. 그 後 새로운 產業, 그中에서도 毛織產業이 發達하게 되어 農地는 緬羊을 기르기 爲한 牧場으로 變해 갔다. 이와 같은 產業의 變遷은 失職農民을 多少는 吸收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經濟秩序로 쫓아져 나온 그 많은 農業 勞動者에게 過去와 같은 生活安定策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 大部分은 亦是 賃金勞動者로 化해서 이 地方에서 저 地方으로 또는 이 都市에서 저 都市로 生計維持를 爲해 移動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까닭이다. 1348년에 「黑死病」이 英國에 들어와서 全人口의 三分之一를 單二年동안에 減少시켰다. 그 結果 國內 勞動力은 不足하게 되고 勞動賃金은 올라갔다. 에드워드二世는 勞動法을 公布하여 勞動者의 移住를 制限했다. 이 法令은 稼動力 있는 者면 就業을 拒否하지 못하며 반드시 雇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各自가 살고 있는 教區를 떠나지 못한다는 居住制限을 規定했다. 이러한 處事는 모두 貧民의 浮浪과 乞食을 防止하며 荒廢一路의 農村과 農土의 廢虛化를 豫防하려는 努力으로서 이것이 英國에서 맨 처음 된 貧民法이다.

中世 英國의 救貧制度와 1601年 貧民法

社會安定을 攪亂하는 가지가지의 變動中 또 한가지 貧民救濟上에 커다란 影響을 던진 事實은 宗教改革에서 오는 餘波였다.

이때까지는 難民救濟의 거야 全的인 所任을 맡아 보던 곳이 修道院이나 救護所였다. 또 이때까지 貧民救濟에 重要的 役割을 해오던 職人組合(Guild)의 힘도 微弱해졌다. 教會의 還俗化와 헨리8世에 依한 教會財產의 沒收로 말미암아 難民救護에도 別다른 措置가 必要하게 되었다.

1536년에 制定을 본 貧民法으로 英國에서는 처음으로 政府가 管掌하는 公共 救護 制度로 創設되었다. 이 法에서는 한 地方에서 三年以上 繼續 居住한 後가 아니면 貧民救護를 받기 爲한 登錄을 하지 못하게 規定되어 있었다. 全혀 無能力者에 對한 救護는 教區에

서 責任을 가지고 있었으며 稼動力이 있는 貧民은 強制勞動을 시켰고 5歲부터 14歲까지의 그들의 子女는 兩親과 分離시켜 雇工訓練을 시켰다. 이들 難民에 對한 救護 基金은 教會를 통한 寄附金으로서 充當되었다.

새로운 經濟秩序에 따른 社會事情의 混亂으로 求乞者가 增加하게 되자 稼動力을 잃은 者에게는 求乞鑑札을 發給해서 그들에게만 求乞을 許諾했다.

또 아이가 따른 婦女子나, 兒童이나, 病弱者에게는 救護金品을 주었다.

그러나 차차 明白해진 것은 浮浪者를 處罰하거나 收容所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일으키는 여러가지 社會的負擔을 輕減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結局對策으로 講究된 것이 일 할 수 있는 者들을 集團的으로 收容시켜 일을 시키게 되는 救貧院의 始作이었다.

처음에 London 에 있는 부라이드웰(Bridewell) 이라는 오래된 邸宅을 왕이 下賜하여 救貧院으로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增加一路의 貧民救濟에 義捐金만 가지 고서는 到底히 當해 낼 수가 없어서 1563年 議會는 教區를 통해서 行해지는 救護資源을 마련키 爲해서 強制手段을 쓸 것을 決議했다. 이 法은 家口마다 그 資産과 收入에 따라 每週 寄附를 바치도록 強要했다. 이와같은 法은 이미 말한 바 있는 1536年에 制定을 본 貧民法에서 생긴 한 必然的 結果로 볼수 있다.

1536年 以前에는 貧民의 求乞行脚을 制限했을뿐 그래도 個人求乞은 貧民救濟의 重要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536年 法에서는 求乞行脚이 嚴禁되고 各 教區에서 貧民救護를 教會나 個人으로부터 받아 들이는 寄附金에 依存하게 하였다. 寄附金 만으로는 救護資金의 充當이 不可能하게 되었을 때 教區를 통한 課稅는 自然的인 趨勢였다.

1572年에 엘리자베스女王은 貧民救濟의 資源을 마련하기 爲하여 議會를 通過한 稅法을 裁可하였고 救貧官을 任命하여 이 새로운 法을 施行토록 하였다. 이 法이야 말로 自身들의 生計를 維持해 나갈수 없는 者를 國家에서 保護해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認定하게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1576 年에 感化院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救護對象者들이 毛織 麻織 또는 鐵物等의 일에 強制로 從事케 되었다.

1597年에 制定된 法에서는 治安裁判官이 教會執事와 四人의 有志들을 救貧官으로 任命토록 規定하였다. 그리고 救貧院을 세워 일할 수 없는 貧民과 老弱者, 盲者, 不具者等을 收容救護기로 하였다. 英國에 있어서의 公共 救護의 發達을 다음과 같은 三段階로 考察할 수도 있다.

各 段階가 모두 같은 程度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如何間 發展週程에 包含된 事實들이다. Leonard 女史에 依하면 1569年 以前까지는 各 市政府의 役割이 가장 重要한 時代였다. 貧民救濟의 問題가 아직 地方的인 것이 었지 國家的인 關心을 集

중시킬 수는 없던 時代였다. 1569年부터 1597年까지는 立法이 가장 重要한 일이었으며 1597年 以後에는 樞密院의 命令이 貧民法 發達上에 가장 強力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었다.

1601年 貧民法은 이때까지의 各種 貧民法을 集大成하여 만든 것으로서 엘리자베스 貧民法이라고도 부른다. 이 當時까지 父母 子息間에 相互扶養의 義務가 있는 것으로 法規化되어 있던 것을 1601年法에서는 그것을 한代 더 擴張시켜 祖孫까지 相互扶養의 義務가 있는 것으로 規定한 것이 特色이었다. 1601年法 以後 救貧制度和 法制上에도 많은 變遷이 있었으나 엘리자베스 貧民法의 影響은 길고 뿌리 깊게 英國뿐 아니라 美國에서도 그 特徵을 傳했다.

1601年 貧民法의 特徵

爲先 이 法의 줄거리를 大概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一 每年 治安 判事는 救貧官을 任命한다. 救貧官은 教會執事와 教區의 크기에 따라 二名 乃至 四名의 有志가 任名된다.

救貧官의 責務는

가. 裁判官 二名의 同意를 얻어 父母가 養育을 堪當 치 못하는 兒童을 경우에 따라 使役에 부치는 일.

나. 自活의 方途가 없는 成人들은 生計費를 별도로 使役시키기는 일.

다. 各 家庭에 每週 課稅하여 1. 貧民 使役에 쓸수 있도록 麻, 毛, 纖維 等を 마련하는 일. 2. 不具者, 病弱者. 盲者와 其他 使役에 應치 못하는 者를 救護하는 일. 3. 貧困한 家庭의 兒童은 徒弟로써 就役시키기는 일.

라. 最少 每月 一回씩 會議를 열어야하고 年末에는 年中 實積에 關한 報告書를 만드는 일.

1. 同法 第二章에서는 裁判官들에게 萬若 그 教區內에서 徵收되는 稅金으로는 救貧資源이 不足할 경우 隣接 教區에도 課稅할수 있으며 納稅 不履行者는 郡監獄所에 監禁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였다.

2. 同法 第三章은 裁判官이 少年은 二十四歲까지 少女는 二十一歲나 結婚時까지 徒弟就役을 시킬수있는 權限을 規定했으며

3. 第四章에서는 救貧院設立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4. 第五章은 課稅에 對한 訴願을 期別裁判所(年四回)에서 處理토록 規定하였으며

5. 同法 第六章에서는 父母, 子女, 그리고 孫子와 孫女들에 對한 扶養및 養育上의 法的責任을 規定하였다.

이것이 엘리자베스 貧民法의 重要한 줄거리이다. 英國에서도 이 法의 여러가지 特徵은 1834年에 본 改正法案(Reform Bill) 當時까지 別 變更이 없었다. 앞에서 추려 본 本法의 內容을 土台로 이法의 特徵을 좀더 仔細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엘리자베스女王 時代는 적어도 理念上으로는 現代的 國家體貌를 갖춘 것이라고 본다. 이 때에 三百年間이

나 試驗과 驗經을 겪고 發展해 오던 貧民法를 綜合해서 마침내 國家의 힘으로 貧民救濟의 方途를 講究하게 되었던 것이다.

첫째로 注目을 끄는 事實은 過去 教會 中心으로만 實施되어 오던 救貧 行政이 이 法에 依해서 教區內의 救貧官의 손으로 넘어 가게 되어 敎職者 아닌 行政家의 管轄下에 들어갔던 것이다.

둘째로 國法으로 課稅하여 救貧資源을 마련했다는 것은 救貧活動이 比較的 消極的이었다고 볼 수 있는 寄附에만 依存하고 있던 것을 「富의 再分配」라는 積極的인 方向으로 發展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한 教區에서 徵收되는 稅金으로 그 地區에서 必要한 救貧財源을 마련할 수 없는 境遇 治安裁判官은 다른 地區에 課稅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救貧에 對한 責任 限界의 擴大를 의미한다. 救貧에 對한 社會的인 共同 責任 限界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네째로 1601年法은 金品 救護뿐만 아니라 年少者에 對한 年季 徒弟 就役 制度를 規定하는 등 여러가지 方途를 講究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法을 一名 總括法案이라고도 부른다.

다섯째로 英國 慣習法에 없던 親族責任에 對한 概念이 이 法에서 처음으로 紹介되었다. 이 法에서는 祖孫까지의 限界로서 扶養責任 있는 것으로 規定되었다.

以上 말한 다섯가지가 1601年 貧民法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特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法은 그 後 英國과 美國 救貧史上 所謂 現代的 社會福祉의 發達을 볼때까지 主導的인 役割을 하였다. 이 法이 施行된 後부터 英國의 實情은 多少 改善되고 人間의 苦難도 減少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貧民法은 決코 英國의 社會福祉問題에 對한 適當한 解決策은 되지 못했다.

貧民法에서 由來한 것으로서 그 後 貧民救濟를 實施하는中 實地問題로써 發展한 다음 세가지 特徵은 特記할만 하다.

一. 居住期間法—즉 救護를 받게 되는 것은 그 地區의 法에 規定된 바에 따라 一定 期間以上 同居住地에 定着한 後이라야 한다는 原則이다. 美國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制限을 完全히 撤廢치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二. 對象者 劣位 原則은 救護 對象者가 받게 되는 救護는 그 當時 支給되는 最少限 賃金額보다도 적어야 한다는 原則으로 이 原則은 救護를 줌으로 말미암아 無爲徒食者나 懶惰한 者가 많이 생기는 것을 防止하려는 努力의 一端이었다. 이 原則은 또 이때까지 貧困의 原因을 社會的인 諸要素에 두는 것보다 個人的 能力과 習性에 主로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三. 救貧院 試驗은 救護對象者가 救貧院에 들어가기를 拒絶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救護를 주지 않는 原則이다. 이 原則 亦是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救貧院에 들어가서 勞役に 從事하기를 싫어하는 者는 懶惰한 者일 것이니 그러한 者에게는 救護할 必要가 없다는 생각에 立脚한 것이다.

總括적으로 말해서 1601年 貧民法에서는 民生救恤에 對한 國家的인 責任이 認定되기는 하였으나 그 實施에 있어서는 最少限으로 對象者 數를 減少시키기 爲해서 貧民에 對하여 은갖 制限이 加해졌으며 貧困의 原因을 大概 個人的인 것에 結付시키는 制度上的 傾向이 濃厚했다.

(筆者·KAVA常務 本訓練院 務勤)

和 合

남을 싫어하고 재미 없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실음을 받고 재미 없다고 待遇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不幸하다.

왜냐하면 人間의 모든 기쁨이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和合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財物이 많고 有識하고 잘 생기고 知慧롭다 하더라도 無人島에 가서 혼자 살아 보면 알 것이다. (La Rochefoucauld)

解放前 勞働者 處遇에 對한 考察



尹 甲 老

勞働者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向上된 오늘에 있어서 過去의 勞働者의 地位를 考察하여 보자는 것은 옛날의 勞働者層이 얼마나 쓰라린 位置에서 오래인 歲月을 두고 苦役에 허덕이셨든가를 回想할 때 勞働者의 今日의 歡喜가 더욱 클 것이요, 앞날의 希望과 幸福이 充滿될 것을 豫期 하여 人間社會가 그 얼마나 本然의 世界로 歸航되어 가고있는가를 알자는 것이다. 今日의 勞働者를 옛날 社會的 階級에 對比한다면 奴隸 奴婢 常人 賤人 百姓等에 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이에 옛날에 있어서의 起源과 狀態를 살펴 보기로 한다.

옛날의 社會的 階級の 發生을 一般的인 理論으로 살펴보면 무릇 人類社會의 階級은 그 起源이 이미 오래고 또한 그 形態도 多端하다. 原始的 氏族共產形態를 벗어나 私有財產의 權利가 進展함에 따라 支配者와 被支配者間에 階級이 생기고 民族移動에 따라 征服者 被征服者間에도 또한 階級이 생겼다는 것은 어떠한 社會를 勿論하고 共通한 事實이다. 貴族과 平民 自由民과 奴隸의 階級的 對立은 人類社會 發展의 必然한 階級이라 하였고 또한 經濟學的인 面으로의 理論의 展開를 들면 勞働이 充分히 發達하지 못하고 그 勞働이 自己 및 自己의 家族의 生計를 維持하여 가는데 充分한 限 다른 勞働力을 自己 所有로 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經濟的으로든 이와 같은 것을 所有하고 生計의 資料를 충분한 餘裕은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故로 이런 段階에 있어서는 捕虜는 勝利者에 對하여는 補助가 되지 않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危險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殺戮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其後 勞働이 發達하고 耕作 및 牧畜도 進歩하고 手工業도 發達하여감에 따라 自己 및 自己의 家族以外의 勞働力을 必要함에 이르러 여기에 비로소 捕虜를 죽이는 것을 中止하여 그것을 勞働에 使用하고 그것을 搾取하려 하여 奴隸制度가 成立된 것이다라고 말 하였으며 또 或은 奴隸의 發生 그것은 家長에 依한 生産手段 剩餘生産物과 그 結果로서의 富, 그리고 最後에는 『人畜=奴隸』까지도 私有化하는 傾向을 基礎로 한 것이다. 奴隸는 家長에 對한 妻子의 地位에서 그 最初의 萌芽形態를 發見한다 라고 하였고 『큰 사전』에서 奴隸制度에 對한 것을 보면 封建社會 以前의 社會制度로서 種의 階級과

이를 支配하는 貴族階級的 對立이 社會를 이루는 元體가 된 制度, 貴族은 奴隸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른바 말하는 生産手段으로 物件과 같이 다루었음에 特色이 있음이라고 쓰여있음에 反하여 經濟와 美術에 關聯하여 이렇게 말한바도 있다. 卽 勤勞觀에서 本 原來의 勞働은 이러한 것이었다고 讚美한 바도 있다 즉 19世紀는 商業의 世紀(Century of Commerce)라고 呼稱하는 時代이다. 이 世紀에 成遂된 事業은 實로 큰바가 있으나 舊時代의 善美를 破壞하고 殺風景한 商工主義의 全盛을 產出하여 이를 痛嘆하고 勤勞의 喜悅을 感得하였던 옛 時代를 讚美하면서 日常 普通의 勤勞도 하나의 藝術인 同時에 日常普通의 製作品은 美術品이 였다. 卽 다시 말하면 生存의 喜悅은 勤勞에서 表現되어 藝術品으로서 其實을 맺는다고 強調하였다. 新羅以來의 藝術品은 모다 이러한 勤勞者들의 喜悅에서 產出되었다고 하여 可히 吟味할만한 것으로 生覺된다.

그러면 이에 우리 歷史에서 볼수있는 것을 摘記하여 보면 于先 箕子八條敎 其三에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라고 하여 犯罪가 奴婢에 原因이 된 바도 있으나 좀더 時代的으로 展開하면

氏族社會……數千年에 亘하는 新石器時代(大略 西紀前 3世紀—30世紀)에는 王者도 없고 支配階級도 없이 우리 民族 祖先들의 無數한 生活群團이 存在하였다. 이 無數한 生活共同群을 우리는 氏族社會라고 하며 滿洲와 半島에 散在하였던 이러한 氏族群들은 古代 東夷種族에 屬하는 同一文化를 가진 同一血族이었으며 生産道具로서는 新石器를 使用하였고 狩獵 漁撈 農耕等은 共同이었다. 이와 같이 財產의 私有가 없었음으로 氏族間의 貧富도 階級的 制度도 存在하지 아니하였고 全員이 平等하였으며 다만 生産力을 喪失한 老衰者만이 賤待를 받았다. 또 政治的으로 氏族員의 選舉에 依한 指導者를 選出하고 漁獵 祭禮 戰爭等은 氏族全體의 議決에 依하여 行하여 졌으니 民主政治라 할수 있다. 以外에도 土地의 境界도 生産品의 交易도 모든것이 氏族의 이었다. 今日의 農家의 「두레」 「품아씨」等도 이러한 氏族共同社會의 遺痕인 것이다. 그리고 往年까지도 存在하였던 洞山 洞祭 洞會 등의 山林의 共有部落 祭部落共同會議가 다 이러한 氏族時代의 遺物인 것이다.

部族社會……우에서 말한 氏族社會가 外部的인 理由로 數個가 合친 것이 部族이고 이에 加一步 統合한 것이 部族國家이며 또한 外民族에 對抗鬭爭하기 爲하여 聯盟體가 發生된 것이다. 百濟는 九大姓이 聯合되어 成立되고 新羅는 六部村長이 會議에서 決定되고 駕洛

國은 九干會議에서 建立되는 等으로 漸次 氏族社會가 崩壞되는 同時에 石器와 金屬 併用으로 金屬이 發達됨에 따라서 對外 鬭爭은 激化되어 갔다. 馬韓 五十四國 辰韓 十二國 弁韓 十二國 等이 이례이다. 이와 같이 發展되어간 部落社會는 마침내 高句麗 百濟 新羅等 三大 貴族國家로 出現되고 不斷한 爭霸戰이 벌어지고 各自 內部的으로는 專制的인 世襲王權이 漸次成長 되었다.

奴隸의 發生……部族國家가 出現되어 貴族制度가 생기고 이에 이와 同時에 金屬使用은 生産의 成長을 가져오게 되어 生産物의 剩餘가 생기고 私有制度가 發芽 되었으며 漸次的으로 氏族共同體는 蠶食을 當하였으며 漸次 家族制度가 생기어 權力慾과 支配慾이 助長되고 政治的 關係로는 權力貴族層과 一般庶民과 奴隸의 三階級이 社會的으로 釀成하였고 마침내 私有制度의 副産物로 奴隸라는 奇怪한 階級이 發生되었으니 農具의 發達에 依한 耕地開拓 家畜增産 城柵 宮殿 道路橋梁의 築造等에 그 勞動力을 榨取하여 支配階級의 富力을 蓄積하고자 하여 奴隸獲得의 根本 目的이었다.

그리고 部族國家時代에 있어서 邑落에는 豪民이라는 階級이 있는데 이는 下戶를 支配하는 貴族層으로써 一名 上戶라고 하여 官吏 其他 重要 職務를 擔當하여 諸加들도 이들에 依하여 選出되었다. 下戶는 生産勞動의 大部分을 負擔하는 것이다. 이은들 다 農耕者 職人 牧者等 部分으로 分化되었는데 奴隸群도 이 下戶에 屬하였다. 其後 樂浪時代로서 西紀3世紀 中國 周末의 一大 動亂은 一部 漢民族으로 하여금 東方 移住를 促進하게 되어 여기서 先進文化 即 金屬文化의 所有者인 漢民族과의 接觸에서 우리의 原始社會는 本質的으로 變革을 일으키어 모든 生産部門의 發展과 私有制度의 確立에 따라 社會的 政治的 文化的으로 大轉換을 일으켰다. 이에 다시 各 地域으로 社會制度를 一瞥하면

扶餘……人民의 階級은 三等이 있으니 貴族 平民 奴隸이고 奴隸는 最下級에 處한 者인데 基 原因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戰時捕虜이고 또 하나는 死刑에 處한 家族으로서 奴隸는 다 富豪家의 僕婢에 屬하거나 名官司의 僕婢로 되고 其外 下戶라 하여 農業 又は 工業에 從事하였으니 社會의 最下等 勞動은 奴隸의 專務에 任케하고 戰時에 處할지라도 奴隸는 輜重隊로 編成할 뿐이고 直接 軍伍에 編入되지 못하였다. 또 鮮卑에 捕虜가된 扶餘人은 多數 中國北方의 都市에 奴隸賣物로 登場되었다. 또 特히 殉葬制度가 있어서 王者나 支配階級의 死葬에 百餘사람을 죽이며 殉葬 하였다는데 이 者들은 死者의 奴隸인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高句麗·高句麗 初期에 奴婢가 存在하였다고하는데 法律은 極히 單純하였으니 牢獄이 없고 罪人이 없으며 諸官이 評議하여 그 重한 者는 即時 死刑에 處하고 그 妻子는 奴婢로 沒入하였으니 盜罪는 十二倍를 徵收하였다.

沃沮·高句麗 武士階級에게 美女를 婢妾으로 提供하였다.

東濊·原始無階級 社會이었다.

馬韓·原始平等 社會이었다. 但「그 國中에 무슨일이 있는지 官家에서 城廓을 築造할때에는 모든 年少勇健한 者를 모두 背皮를 뚫고 거기에다 大繩을 끼고 또 丈許의 大木을 꽃아서 終日 歡呼 하면서 勞動을 하되 毋痛으로 生覺하지 아니함을 壯健者라 稱讚하였다」고 記錄이 있어 이것을 奴隸 酷使의 光景으로 解釋하는 이도 있다.

辰韓 韓韓·原始平等社會

肅慎·原始社會

新羅·神武王 때 唐에서 奴隸를 사왔다고 하는데 이는 海賊에게 붙들려 갔든 사람이라 한다. 이에 參考로 舊 隨錄의 記錄을 보면 周時代에 五隸之法이 있었다는데 이는 罪隸 蠻隸 閩隸 夷隸 貉隸 等이라고 한다

다음은 部族國家 乃至 貴族國家時代에 있어서의 奴隸의 種類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奴隸經濟에 있어서는 高句麗는 扶餘와 같이 奴隸經濟의 創設者로 일찍 부터 奴隸를 使用하였는데

一. 目的別 種類

耕作奴隸·官園의 耕作 直營地 賜田의 耕作 또는 墓直

鑛山奴隸·鑛物이 貨幣의 價値로 되자 功臣에 對한 賜金 支那와의 歲貢交換 金屬 石材 採掘과 加工

飼畜奴隸·牛馬를 죽인者는 奴隸로 한다.

技術奴隸·武器 皮革 金屬器具 瓦磚 製織 土木事業 (寺院 佛像 墳墓)

奢侈奴隸·婢妾 馬丁 護衛者 乳母 歌女 鼓手 樂手

戰爭奴隸·射手 輜重兵

交易奴隸·櫓擢軍 運送人 (晉 宋)

二. 原因別 種類

捕虜奴隸·戰爭 捕虜로서 金屬의 出現 財産 私有制度의 生長 및 그에 따르는 富力爭奪과 農耕地의 擴大家畜의 增産等 必要에 應하여 처음 出現한 것이고 男子는 農奴 또는 收奴 女子는 使役婢 또는 婢妾으로 한 것이다.

生産奴隸·奴婢사이에 所生은 그대로 主家의 奴婢로 李韓末까지 繼續하였다.

犯罪奴隸·單純하고 苛酷한 古代 法律은 犯罪者를 大概 酋長의 會議로써 即決하여 죽이든지 笞刑하든지 釋放하든지 하여 刑法은 至極히 簡單하였다. 그리고 奴隸를 必要로한 그들은 犯罪者를 죽이는 代身 그것을 奴隸로 하였다.

負債奴隸·負債를 갚지 못하는 境遇도 負債 代身 奴隸로써 그몸을 沒收하였다.

賣買奴隸·奴隸는 生産力을 가졌음으로 器具나 財産 同樣으로 支配階級 사이에서 賣買되었다.

歸化奴隸·外民族으로서 歸化한 貧窮者는 土地를 얻을수 없으며 흔히 奴隸가 된것이다. 高句麗에는 遊女가 많았다고 傳하는데 이러한 原始 妓女階級은 아마 大部分이 歸化한 貧民의 出身이 아니었을까 한다.

以外的 雇傭人 遊藝人 巫女 商人 手工業民 漁民 農民 等이 모다 奴隸와 함께 모두 被支配 階級에 屬하였

다.

高麗·(1) 奴隸를 賣買함에는 其 代價로 布 120 十匹로 부터 54까지 되었으며 奴와 馬를 相換함에는 奴 23 口로 馬1頭를 當하고 (2) 奴隸가 家를 有하되 正門이 없으며 禮服과 正冠을 不着하며 (3) 奴主가 觸怒할 時는 刑罰을 任意로 하였으며 (四) 病에 걸리되 醫治를 加치 不하고 死하면 埋葬하는 일 屢적였었다고 하며 全國의 奴隸數는 公賤 60萬口 私賤이 26萬口의 多數에 이르렀고 이와같이 奴隸의 數率이 增加하여 大數를 이루는 同時에 貴族의 壓迫을 反抗하는 風潮가 일어나게 되는 것 亦是 自然한 人情이라 하겠는데 이에 反抗運動을 살펴보면

第一次反抗으로 光宗朝 때 訴訟을 提起하여 無理한 壓迫을 免케 하고자 奴主裁判法이 確立되었으나 權門勢家의 巧術으로 恒常 主人을 爲한 法이 됨으로 奴隸들은 機會를 타서 叛逆의 亂을 일으키려 하고 또는 僧侶로 되는 者가 續出하였다.

第二次反抗으로 神宗元年 奴黨首領 萬積外 五人이 北山에서 奴隸大會를 열고 演說後 黃紙數千을 剪하여 丁字를 삭인 黨章을 表하고 崔忠獻 以下 各 主人을 鋤除하고 賤籍을 焚却하고 政權을 잡으려 崔忠獻家를 襲擊하였더니 崔는 이 일을 미리 알고 家兵으로 하여금 對戰케 하였다 奴黨은 烏合之率이라 失敗하였던 것이다

第三次 反抗으로 高宗 19年 正月에 蒙古兵이 忠州에 入寇하였을 때 兩班이 領率하였던 軍隊는 逃走하였으므로 僧牛本과 李通이 指導하는 奴軍의 一隊가 이를 擊退하고 此機에 兩班 富豪를 撲殺하고 이에 論功行賞으로 高宗 45年 2月에 奴軍 出身인 李公柱는 即將 崔良伯 金仁俊은 別將 聶長壽는 校尉로 登用되고 漸次 豊官高爵에 達하니 이를 南班이라 稱하게 되고 南班의 執政은 政治上 常識이 不足하므로 行政制度는 다시 一變케 되었다. 이와 같이 部族國家에서 貴族國家로 變轉되어 가는 동안에 奴隸制度는 確立되고 人間以下의 處遇를 받게되자 高麗時代에 와서는 여기 反抗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反抗이 蜂起하는데 反應되어 光宗 時에는 奴婢接檢法이 생기어 身分을 檢討하여 良民으로 轉向시키기도 하고 成宗 時에는 贖良한 奴婢를 다시 還元시키었고 顯宗 때에는 이러한 還賤한 奴婢는 다시는 良民으로 되지못하게도 하였다. 그러면 高麗時代의 下層階級을 살펴보면

農民·百姓 民庶 黎民 齊民 蒸民 細民 田丁 田民 佃丁 佃夫 佃客 佃民 등으로 불리었다

常民·白丁

歸化民·契丹 女真 日本 黑水靺鞨 등의 사람이었다.

工匠·官設手工業(公糧支給) 私設手工業(常貢, 別貢)

商人·坐商 行商

賤民·津尺(渡船員) 驛吏 鄉夫 曲丁 才人(綱渡 鳴物

歌舞 鎖護) 樂工 禾尺(揚水尺 水尺—屠崖 柳器)

奴婢·光宗 時에는 寄上 投屬 賜與 貿易 四種이 있었다 하나 이를 大別하면 男奴와 女奴로 分別되는 同時에 官庭奴婢 官奴婢 寺院奴婢 家庭奴婢 등으로 區別도 한다.

李朝·이 時代의 社會階級은 兩班 中庶(中人) 常人 賤人으로 大別할수 있는데 崔南善氏는 백성(百姓)이라 하여 記述한바를 보면 백성에 良과 賤의 別이 있으니 良은 自由民이요 賤은 奴婢를 가르키고 또 賤中에도 公賤과 私賤의 別이 있다.

公賤은 有罪沒入 또는 屬公으로 말미아마 官衙에 屬하는 奴婢이요, 私賤은 買得 其他로 말미아마 私家의 奴婢가 된 것이다. 그리고 奴婢된 者는 所屬官衙 또는 主人에게 終身服役함이 原則이며 必要 以上の 過剩者가 別居 自活하는 境遇에는 身役의 代로 米布 其他의 貢을 받쳐야 하며 또 그 所生도 世代로 奴婢노릇을 하고 敢히 逸脫하지 못하여 田土 錢穀 등과 함께 財産視하여 相續分財 乃至 寄贈 奪取하였다. 이러듯 一財産으로 爭訟이 많음으로 國家에서 掌隸院이라는 官廳이 있어 簿籍을 備置하고 是非를 判決하였다.

全國의 奴婢의 數는 主亂前 總數가 3萬7千餘名 成宗 15年의 推刷都監에서 刷出한 奴婢數는 26萬1千9 84口 諸邑驛奴婢 九萬五百八十一口가 萬百口 其後正祖初에 上命으로 推刷의 法을 罷하고 純祖元년에 內司 官房 奴婢等을 敦化門 外에 燒却 다시 高宗年에 奴婢使役의 制限年에 公私奴婢制를 一切 革罷하고 人口의 販賣를 禁하였다. 奴婢보다도 또 下級인 「백장」이 있다. 「백장」은 漢文으로 白丁이라고 하며 古代에는 水尺 禾尺라하니 「수자」는 歷史時代 以後 北方民族의 俘虜혹 投化人에서 나온 것이다.

高麗時代에는 柳器고리 製造로써 業을 삼고 그 女는 妓女 노릇을 하였다. 麗末로 부터 屠牛業을 兼하여 賤人이라 하였다. 그 中에서도 聲樂 雜伎를 業하는 倡優의 部分이 分離되었으니 이를 才人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賤人中에서도 名士가 나왔다. 秋官志 「……世之奴婢 維其多矣 百千億萬之中 豈少鄭道傳之經濟 徐起 宋翼弼之文章 白大鵬 洪世泰之詞翰哉」 記錄이 있다고 하였으며 外에도 李朝社會에 있어서의 特히 階級打破의 原因을 들어서 記述한바에 依하면 李朝社會階級の 崩壞는 特히 壬辰亂以後 民力의 疲弊와 國家 財政의 窮乏化에 따라 激化되었다. 壬辰亂 以後의 軍功 納粟匠 驛 其他 雜類로 因하여 工商의 子분아니라 賤民에 이르기 까지 免稅의 特權이 許容되고 官職에 까지 陞하는 者가 續出하였으니 이는 合法的 身分의 變更이요 이러한 身功財功에 依하여 上層의 買得이 位盛階

行되자 이것이 制度化되고 賣官賣位는 當代 社會의 한 財源으로 看做하기 까지 이르렀다. 特히 英祖時代에 職帖을 받으려고 企圖하는 者가 많았고 戶籍에는 正兵保人等으로서의 常民的인 記載가 보기도물게 되었다. 宣祖年 全國에 命하여 賊頭 一級을 얻은 者公私賤을 莫論하고 登科를 許容하였다. 이는 明白한 免賤인 것이다. 그리고 高宗年 甲午更張時에는 奴婢革罷와 免賤을 斷行하였다. 그런데 이 階級 打破의 思想을 釀成하는데 貢獻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賤人中에 卓出한 文翰家라든가 가 있어서 隱然中 階級打破의 氣運은 底流되고 있었다. 이에 例擧하면

肅宗때 李重煥은 擇里誌를 써서 四民平等을 主張하였고

英祖때 洪大容은 實學派로서 兩班制度의 不合理를 論하였고 朴趾源은 兩班을 諷刺하였으며 洪世泰는 海東遺珠編(間巷詩)을 高時彥은 庶民詩로 昭代風謠을 쓰고

正祖때 千壽慶이 風謠續選을 썼으며 當時 李彥瑱 張濕 趙秀三 李尙迪 등은 庶民出身의 文人들인 것이다.

宣光祖때 許筠은 洪吉童傳을

英祖때 春香傳

등을 들 수 있는데 以外에도 鄭鑑錄 各種 秘記識書 榜書 事件으로 많은 啓蒙과 衝激을 주었고 特히 洪景來의 叛亂 또는 東學亂의 原因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襍負商만 하더라도 一種 組織團體로서 볼 수 있는데 襍負商은 普通 襍商 負商의 合稱이라 하여 商業과 交通이 發達되지 못한 옛날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行商團이 自然發生的으로 생기 國內 各 市場을 따라 돌아다니며 遠距里에서 物貨를 調達하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 그들은 마치 西洋의 竊드 組織과 비슷한 團體를 이룬 것으로 廣範圍하게 同業者를 網羅하여 特殊한 組織과 信義와 規律과 또 整然한 統制下에 有機的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하나의 勤勞者의 團體로서 時運의 進展에 따라 發生되었지만 權益保障의 先驅的인 組織體라고 볼수도 있다. 이와 같이 李朝末葉에 있어서 人間虐待의 歷史는 무너지기 始作 하였으니 이는 또한 開化思想이 西歐로부터 潮水와 같이 밀려 들어 오자 甲午更張이 있었으나 先覺치 못한 悲運으로 日帝의 侵略을 받게 되었다.

日帝時……民族解放의 前衛로써 勤勞層은 團結하여 各自의 地位向上을 爲하여 努力하여 왔다. 當時 社會團體로써 衡平社 新幹會 槿友會 등은 反日鬭爭을 繼續 하였는데 其中에는 衡平運動은 白丁階級이

天賊의 人權을 回復하고 社會正義에 呼訴하기 爲하여 1923年 4月 25日 慶南 晉州에서 發足하고 國內에 散在되어 있는 老幼等40萬이 蜂起하고 1924年 2月 釜山에서 同年 2月 12日 大田에서 同年 4月 25日 南鮮 總同盟을 宣布하고 事務所를 서울 都染洞에 두었으나 京晉 南北兩派로 分立되었던바 同年 8月 15日 朝鮮衡平社 中央總總部로 改稱하고 서울 貫鐵洞에 두었다. 其後 朝鮮衡平青年總聯監 衡平의 新社會建設會 衡平社正衛國 衡平學友同盟屠夫組合을 또는 機關紙로 「世光」을 發刊鬭爭等 努力하여 왔으나 其後 順理치 못하여 總聯盟體를 朝鮮衡平社 總本部로 改稱하고 雲泥洞에 事務所를 두었다. 以外에도 勞動共濟會가 있었으니 釜山 大邱 晉州 豐基 馬山 安東 平壤 公州 浦項 등에서 印刷織工組合 理髮織工組合 電氣從業組合 洋服織工組合 小作組合 消費組合 등을 結成하였든 事實은 우리나라 勞動組合의 嚆矢의인 存在로 볼수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李朝時代의 社會階級을 살펴보면 兩班 四色(北人 南人 老論 少論) 中庶 中等平民 中人 庶人 常人 農民 商人工匠 帝民 賤民 八賤(奴婢 僧侶 白丁 巫堂 廣大 表舉軍 鞋匠 妓女)

七班賤人(衛前 庶孽 巫堂 僧尼奴隸 馬奴才人 白丁) 農奴(머슴) 公賤 私賤

引用文獻

- 1, 安自山 朝鮮文明史
- 2, 申采浩 朝鮮上古史
- 3, 文一平 湖岩全集 政治論
- 4, 崔南善 故事通
- 5, 李丙燾 國史와 嚮導理念
- 6, 〃 國史大觀
- 7,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
- 8, 金斗憲 民族理論의 展望
- 9, 柳馨遠 礪溪隨錄
- 10, 崔虎鎮 一般經濟史
- 11, 李相國 韓國文化史概觀
- 12, 李那煥 學術界 韓國原始社會考
- 13, 金得槐 韓國想思史
- 14, 河田嗣郎 經濟と美術 工藝
- 15, 큰사전
- 16, 百科大辭典
- 16, 朝鮮 及 朝鮮民族

(筆者·保健社會部 接護部住宅課長)



근세조선 민생구휼사업의 연혁

具 滋 憲

머 리 말

“사회사업”지 창간호에 “한국민생구휼고제의 연구”를 발표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이것은 원래 내용이 너무간략하였으므로 이번에 새로 근세사료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보충정리하여 “근세조선 민생구휼사업의 연혁”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사업”지 제2호부터 계속 실리기로 하였다.

“한국민생구휼고제의 연구”는 본지 다른 사대적 영역이 지면에 비하여 너무 넓어서 지나치게 개괄적이며 또한 요약적인 서술을 면할 수 없었고, 한편 참고한 한문원전(漢文原典)의 영향을 받아 문장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여 한문에 익숙치 못한 청년독자층의 불만을 사게 되었었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쓰기에 노력하였다.

이런 종류의 읽을거리가 거이 없다시피한 오늘날 이 조그마한 노작이 다만 자료집성의 일조로 라도 사계에 공헌한다면 필자로서는 참으로 다행이겠다.

一. 개 설

고려 공양왕 4년(서기 1392년) 7월 이태조는 고려왕의 양위를 받아 동월 17일 개경(開京) 수창궁에서 즉위하여 이조를 세웠다. 이로 부터 제9대 성종에 이르는 9왕 102년간은 이찌조선으로서는 창업선정시대로서 전조에는 하나의 이궁(離宮)을 중심으로한 한적한 도읍에 지나지 않던 서울을 새 나라의 수도로 정하여 일약 반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모든 제도 문물이 또한 이때에 찬연히 정비되고 생기있는 신흥시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민생구휼사업에 있어서도 제생원(濟生院), 구황청(救荒廳), 혜민국(惠民局), 활인서(活人署), 기로소(耆老所), 평시서(平市署)등 구제 또는 서민경제지도기관이 이 시대에 모다 설립되었으며 민생의 기본을 이루는 토지의 제도도 이때에 모다 정돈되었음은 물론, 각종 구황(救荒)과 진휼(賑恤)의 제도가 또한 정연히 자리잡힌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 시대를 여기에서는 이조시대의 제1기로서 보기로 한다.

제2기는 제10대 연산군(燕山君)으로 부터 제20대 경종(景宗)에 이르는 11왕 230년간으로 한다. 태조 이래

로 순조롭게 발달하여 오던 나라의 운세는 이때에 남북 양강(兩強)으로 부더의 외구(外寇), 즉 임진(壬辰)정유(丁酉)와 병자(丙子)의 병화를 당하여 몹시 쇠퇴하고 강산은 초토로 화하였다. 게다가 왕실에서는 외척이 발호하고 조신간에는 봉당이 시작되고 국왕은 때때로 그 총명을 가리워 국력은 피폐하고 국민들은 도탄의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때때로 국토제전의 사업도 일으키려 하였으나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구나 당쟁은 날로 격열의 도를 가하고 문운은 점점 쇠퇴해 갔다. 그러나 이시대는 한편 삼정(三政)의 문란(紊亂)을 당하여 민생을 후히 하고 국용을 풍족히 하기 위한 울곡(粟谷)의 구제경제책(救弊經濟策)등 민중생활의 복리를 위한 탁월한 현책이 많이 나타난 시대이기도 하다. 특히 제11대 중종의 장려정책 이후로 각지에서 일어난 이퇴제, 이울곡등의 향약(鄉約)의 실시는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등의 미풍을 일으켜 화민성속(化民成俗)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제3기는 제21대 영조(英祖)로 부터 제25대 철종(哲宗)에 이르는 5왕 139년간으로 한다. 이 시대의 초기에는 영조, 정조(正祖)의 영명한 양왕이 있어 모처럼 문운의 부흥을 불러고 했으나 끝내 제1기와 같이 발달(潑刺)한 성운은 보지 못하였고 대단히 적막한 시대로 끝났다. 그러나 각종 민생구휼제도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비 보완되었으니, 즉 유기아(遺棄兒)의 민가수양제도(民家收養制度)와 관부유양제도(官府留養制度)를 비롯하여 진궁(賑窮), 고조(顧助),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제(救濟), 권분(勸分)의 여러 제도가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또는 역대수교(歷代受教)에 의하여 이 시대에 빈틈 없이 정돈된 것이다.

제4기는 제26, 7대의 양제정시대(兩帝政時代) 48년간을 말하는데 이 시대에 와서 조선은 세계 열국과의 교섭이 처음으로 생겨 도원의 꿈은 깨지고 외교는 파란 증첩하고 청일, 노일 양 전쟁의 싸움터가 되었으나 나라는 500년의 구탈을 벗고 근대화 해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대원군의 집정과 동학의 난리는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하 각장에서 전기한 시대구분에 따라 대개 그 시대내의 일을 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격상 그 시대구분을 넘어 근세사(近世史) 전역(全域)에 걸쳐서 논급(論及)하게 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민생구출사업시설의 소장(消長), 통(統)과 향약(鄉約)의 제도 같은 것은 편의상 한군데에서 전부 취급하였다.

二. 제1기(창업선정시대)의 민생구출사업

1. 민생구출사업의 시설

이 시대의 민생구출사업의 시설로서는 서울에 구황청(救荒廳) 하나중에 진휼청(賑恤廳)이 되었다, 혜민국(惠民局), 활인서(活人署), 제생원(濟生院), 기로소(耆老所), 빙고(氷庫), 장예원(掌隸院), 평시서(平市署) 등이 있어 각각 독립한 기능을 갖었다. 이제 이들 시설의 설치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황청은 황정(荒政), 즉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제4대 세종(世宗)때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황정의 이름은 멀리 중국 주대(周代)의 법전인 주례(周禮)에 벌써 나타난다. 이것은 황년 기세(荒年飢歲)에 창고를 열어 진대(賑貸)하던 신라와 고려조의 법으로 계승 전래되었고, 이 조에 와서도 인정 애민(仁政愛民)과 기민구출(饑民救恤)에 힘쓰게 되었으니, 즉 태조 7년(서기1398년)에 영남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 것을 위시로 역대 이 황정(荒政)을 부지런히 행하였으나, 따로 이를 장리(掌理)하는 관청은 아직 없었다. 제3대 태종(太宗) 5년(서기1405년)에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이를 장리케 하고 제4대 세종(世宗)의 조에 이르러 비로서 구황청이라는 것을 두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의 비황(備荒)조,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진휼고(賑恤考)는 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조에는 특히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을 저술하였고, 제13대 명종 9년(서기1554년)에는 이를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여 전국에 유시(諭示)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16대 인조 4년(서기1626년)에는 기왕에 비국소관이던 구황청을 선혜청(宣惠廳)—일품관아(一品官衙)—소관으로 옮겨 속하게 하여, 상평청(常平廳)과 같이 합설하여, 8도의 구호양곡의 방출과 급식(給食)등 진휼사업(賑恤事業)을 전관케 하고, 이를 진휼청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진휼청은 제19대 숙종 3년(서기1677년)에 선혜청에 아주 합병되었다가 제26대 고종 31년(서기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때에 폐지되었다.

다음 혜민국은 태조 때에 남부 태평방(太平坊), 현을지로 2가 101번지 부근에 설치되었으며 여기에서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의(女醫)를 교습하였다. 제3대 태종 14년(서기1414년)에는 이것을 혜민서로 개칭하고 제16대 인조 15년(서기1637년)에 일단 전의감(典醫監)에 병합되었으나 곧 부흥되었다가 제26대 고종 19년(서기1882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폐지하였다. 그런

데 광무 5년(서기1901년)에는 다시 혜민원을 두고 같은 사무를 관장했으나 8년(서기1904년)에 이를 다시 폐하였다. 얼마 전까지도 그 서(署)가 있던 근방을 혜민서동이라고 불렀었다.

다음 활인서는 태조때에 서울 동부 연희방(燕禧坊)—현 돈암동—과 서부의 현 아현동의 두군데에다 설치한 것이다. 활인서는 서울 성내(城內)의 환자를 구할할 것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그 명칭은 태조때에는 고려시대때와 같이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이라 하던 것을, 제3대 태종 14년(서기1414년) 9월에 동서 활인서로 고친 것이다. 이 활인서의 역할은 중세 이후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으나 제21대 영조때, 일시 부흥했다가 제26대 고종 19년(서기1882년)에 이를 폐하게 되었다.

다음 제생원은 역시 태조때에 현 계동(桂洞) 147번지 근방에 설치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각도로 부터 매년 약재(藥材)를 수납시키는 사무를 보았다.

다음 기로소가 서울 중부 장청방(澄清坊)—현 세종로—에 태조 3년(서기1394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연령 70세 이상자를 입사시켜 때때로 연(宴)을 열고 같이 노후의 환락을 즐기게 하는 일을 하였다. 이 기로소에 대하여는 따로 노사(老社)의 이름도 있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제26대 고종 31년에 일단 폐했다가, 광무 8년(서기1904년)에 다시 세웠으나, 융희(隆熙) 3년(서기1909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다음 빙고(氷庫)라고 하는 여름의 저장을 관장하는 관서가 태조때에 설치되었으며 한강하류 두모포(豆毛浦)에 동빙고(東氷庫), 동 둔지산(屯智山) 밑에 서빙고(西氷庫)의 두군데 있었다. 동고는 여름을 제사(祭祀)에 공하고 서고는 여름을 삼복중 왕의 음식용에 바치는 한편 백관(百官)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빙고는 고종(高宗) 31년까지 존속하였다.

다음 장예원이라는 것은 노예의 부적(簿籍) 및 노비(奴婢)에 관제 있는 쟁송(爭訟)의 판결등의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서, 서울 서부 적선방(積善坊) 공조(工曹)의 남쪽, 현 광화문 우체국 근방에 설치되었는데 원래는 태조 원년에 여기에 형조도관(刑曹都官)을 두었던 것을 제7대 세조 13년(서기1468년)에 장예원으로 독립시켰다. 후에 제21대 영조 40년 다시 형조에 속하게 하여 보민사(保民司)로 고쳤다가 동 51년에 완전히 폐하였다.

이상 약설한 서울의 민생구출사업관계 문직공서(文職公署)들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모다 빈민구제, 의료구제, 클럽활동, 정의의 조정, 피서제의 분배등 사회복지적 성격을 띤 사업을 각각 독립하여 주관하였던 것이다. 서울외의 지방에서는 지방장관이 대개 전 기시설등의 기능을 겸행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용재총화(慵齋叢話)에 한성의 시장상황을 적은 것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시내에 평시서라고 하는 관아가 있어 여기서 상품의 제량이며 물가의 검사, 통제등을 주관하여 시장을 취척했었던 것이다. 이때에는

각 행랑(行廊)은 본시 관설의 시장이어서 대략 오늘날의 공설시장에 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조 초기의 점포의 상황은 제4대 세종 때에 통신사로서 일본에 갔던 박서생(朴瑞生)의 복명서에 의하여 역으로 이것을 추적할 수 있다. 박서생은 일본의 여러 시설을 시찰하고 그 혜안(慧眼)에 비친 일본의 장점을 채취(採取)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량할 사항 13개조를 들어 계상(啓上)하였다.

그 중에 점포의 개조를 논한 구절이 있다. 즉, 일본 상인은 침(簾)을 치고 상(床)을 설치하고 파는 물건을 그 위에 놓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 특히 어육요리의 유에 이르기 까지 노상에 놓아 두는 일을 하지 않으니, 먼지를 입거나 여러 사람에게 짓밟힐 염려가 없다. 그리고 고객도 또한 용이하게 전 상품을 일별하여 구입하는데 편리하다. 우리나라도 변화한 거리인 운종가(雲從街)로 부터 동은 누문(樓門)에 이르는 사이(종로가), 종루(鍾樓)로 부터 광통교(廣通橋)에 이르는 사이(남대문로)는 점포로 개조하고 액(간판)을 걸어 구획을 명확하게 했으면 참 좋을 것이다운운 이라는 것이었다(世宗實錄 第46).

박서생의 계문 중에는 또한 “일본에는 국도로 부터 연해에 이르기 까지 전(錢)—화폐—이 잘 통용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전을 주조(鑄造)통용케 하자”는 건의와 또 “일본에서는 노소를 물론하고 목욕하여 신체를 청결히 하는 것을 즐겨하고 큰집에는 집집마다 욕실(浴室)이 있고 시내에도 공동욕탕이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제생원, 혜민국, 왜관(倭館)등과 같이 백성이 밀집하는 곳에는 목욕장을 두어야 한다”.라는 글도 눈에 뜨인다. 그러나 그 후에 이 건의대로 공동욕장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2. 주택 제도

이조시대의 주택제도는 당시의 엄격한 계급제도에 수반하는 규격제도를 택하였으니, 즉 지급과 같이 누구든지 경제적 실력에 의하여 자유로 광장한 저택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대지의 넓이, 주택의 칸수, 기둥의 높이 등등에 일일이 제한을 두어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인구는 천도(遷都) 당시의 상황은 명확치 않으나 세종실록에 보면 성내 호구수(戶口數) 19,552, 성외 10리 근방의 호구수 2,339 (세종17년 7월 현재)로 되어 있어 이로써 추적컨대 성내는 일구 약 10만 내외, 성외는 약 1만 쯤 되었으리라고 보아 진다. 그렇다고 하면 1호당 스페이스가 아무리 넓어도 용지에는 궁하지 않았으리만 후술(後述)하는 바와 같이 너무나 응색한 규모로 서민의 호당 용지를 제한하여 스스로 민족성의 협소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조 초기의 주택제도를 주로 이조실록과 경국대전에 의하여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태조는 천도후 서울 시가를 5부 49방(坊)으로 나누고 방은 또 동(洞)으로 나누었다. 성내의 토지는 일체 사유를 허하지 않고 모다 국유로 하여 우선 궁궐(宮

闕), 종묘(宗廟), 사직(社稷), 관아(官衙)의 부지(敷地), 도로(道路), 구거(溝渠), 시장(市場)의 위치를 선택하고 다음에 그 나머지를 왕족이하 서민에 대해서 다만 사용권만을 주고 모다 신분에 응하여 그 넓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택지(宅地)—가옥의 대지(垸地)로 사용케 하였다. 즉

대군(大君), 공주(公主)는 30부(負)—약 2,700평
왕자(王子) 옹주(翁主)는 25부—약 2,250평

1, 2품(品)은 15부—약 1,350평

3, 4품은 10부—약 1,170평

5, 6품은 8부—약 900평

7품이하 및 양반의 자손은 4부—약 360평

서인(庶人)은 2부—약 40평

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 사용의 희망자는 우선 한성부에 신청하고 한성부는 이에 의하여 성내의 궁지 또는 차용후 만 2년 이상에 이르도록 건물을 세우지 않는 장소를 골라 회수하여 이를 대여(貸與)하였던 것이다(經國大典 參照).

그런데 이조에서는 토지의 사용권의 제한 뿐만 아니라 사서인(士庶人)에게 그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그가 주거하는 가옥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하여 함부로 그 정제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제4대 세종 22년(서기1440년) 7월에 예조에서 제한 글에 보면 “대소신민(大小臣民)이 그 주택의 사치를 다투어 상하의 구분이 없으므로 선덕(宣德) 6년(세종 13년)에 교지를 내려 1품의 벼슬에 있는 자로 부터 서민에 이르기 까지 주택의 크기에 정제를 만들어 이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건축된 대소신료(大小臣僚)의 주택을 보건대 정한 제도보다 매우 초월한 것이 많으며, 심한 것은 그 누각의 수와 기둥및 복(楸)의 척도제한을 무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가 다시 여기에 기록하여 그대로 시행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대군은 60칸에 내루(內樓) 10칸

대군의 친형제나 친자 또는 공주는 50칸에 내루 8칸

2품 이상은 40칸에 내루 6칸

3품 이하는 30칸에 내루 5칸

서인은 10칸에 내루 3칸 까지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이상은 정침익랑(正寢翼廊)의 복장(楹長)은 10척(尺), 행장(行長)은 11척, 기둥은 13척 까지 허하고, 기여 칸합(間閣)은 복장 9척, 행장 10척, 기둥 12척 까지 허하고, 누고는 18척 까지 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1품이하의 정침익랑은 복장 9척, 행장 10척, 기둥 12척 까지 허하고, 기여 칸합은 복장 8척, 행장 9척, 기둥 7척5촌 까지 허하고, 누고(樓高)는 13척 까지 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칸합의 복장 7척에 행장 8척, 기둥 7척, 누고 12척 까지 허하게 되어 있습니다운운”.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주택의 칸수, 가옥의 높이, 대지의 평수등을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규격화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소규모적인 습성을 길르게 되었을 것 같으며, 가뜩이나 진취의 기상이 왕성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을 한층 더 퇴영적(退嬰的)인 사고방식과 협소한 생활양식에 몰아 넣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나 앓았다.

제9대 성종 9년(서기1478년) 8월 공조(工曹)의 계문 중에도 이 주택의 크기의 제한을 재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 명분으로서 내세운 것을 보면

“근래 민풍속습(民風俗習)이 매우 화치(華侈)해 지고 참유(僭踰)하여 저서 가사 간합(家舍 間閤)의 척수를 지키지 않아 운운”.

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상하의 분수와 겸소한 기풍만 지키도록 강요하다가 드디어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신장과 각자의 실력에 따른 생활의 웅장한 스케일을 끝내 발전 시켜 보지 못하고 말았음은 선진의 국에는 보기 드문 예로서 뜻있는 국민의 마음을 한없이 서글프게 하여 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3. 환곡 제도

환곡(還穀) 또는 환상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종의 세민구제책으로 관고에서 곡물을 내어 춘궁기에 민간에 대부하여 익년에 이것을 환납케 하는 제도로서 본시 한편으로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수요를 공급하던 것이다. 이것은 원래 중국의 한(漢), 위(魏)시대에서부터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행하던 조적(糶糶)의 법, 즉 곡물을 창고에서 내어 민간에 분배하고(糶) 또는 민간곡을 창고에 납입하는(糶) 법인 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 또는 사창(社倉)의 법이 그 후 송대(宋代)에 와서 왕안석(王安石)에 의하여 청묘법(靑苗法)이 되어 관에서 민간에 곡물을 진대하는 일로 화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전래된 것이다.

고구려 고국천왕(故國川王)때 대해 3월서 부터 7월까지 사이에 관곡을 내어 백성의 가구의 다소에 따라서 차등있게 진대(賑貸)하고 10월에 이르러 환납케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조적의 법을 실시한 시초인 것이다. 이조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제도에 따라서 각도에 의창을 두고서 곡물을 뚫고 나누고 하였으므로 이것을 환곡 또는 환자(還上)의 상은 俗音으로 자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환곡의 예를 정식으로 정하여 시작한 것은 제4대 세종 원년(서기1419년)의 일이다. 원년 실록(元年 實錄)을 보면 세종이 교지로서

“민은 나라의 근본이요, 민은 먹는것(食)으로 써 하늘을 삼는데 때로 수한풍포(水旱風雹)의 해로 인하여 흉작이 되어, 항산(恒産)이 있는 자 까지도 기아(飢餓)를 면치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제 환곡의 예를 정하여 이런 경우에 관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진제(賑濟)케 하고 만약에 이를 시행치않는 수령(守令)이 있으면 죄로써 다스리라”

고 하여 이로 부터 환곡의 제도가 생겨 역대 성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중엽이후로 본정신을 벗어나 오히려 지방관리들의 작간 착취(作奸 擄取)를 유치(誘致)하였다.

그런데 이 환곡은 나누어 주는 곡물과 남겨 두는 곡물로 나누어 지는데 남겨 두는 것은 대개 수해(水害)한별등 불우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요, 나누어 주는 것은 진대하여 궁민의 생활에 보조하는 것이었다. 그 비율은 보통 절반은 창고에 남기고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상례였으나 때로는 3분의 2를 남기고 3분의 1만 나누어 주거나, 또는 3분의 1을 남겨두고 3분의 2를 나누어 주거나, 또는 전부 나누어 주거나 전부 남겨 두거나 또는 연수(年數)를 정해서 개색(改色)—구곡(舊穀)은 나누어 주고 신곡(新穀)을 받아드려 창고내의 곡물을 신선한 것으로 바꾸는 일—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대개 환곡은 절반을 출고(出庫)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특별히 지방에 따라 종곡(種穀)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절반 이상을 출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것을 가분(加分)—반 이상을 출고하는 것—이라 하여 도신(道臣)의 계청에 의하여 왕의 친재를 얻어서 시행토록 하고 자의대로 가분하는자는 경중에 따라서 죄를 과하는 제도였다.

곡물을 받아드리는 것을 적(糶)이라하여 가을거지 때에, 즉 10월경에 일제히 창고를 열어 걷어드리고 세 말 까지에는 창고를 봉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것도 기일을 어기는 지방관은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동북(東北)과 양서(兩西) 지방만은 대개 전곡이 조속하므로 8, 9월이라도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물을 받아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과세하여도 곡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처벌하였다.

환곡의 조적(糶糶)의 절차에 있어서 곡물을 바치지 않고서 바친 것 처럼 그것 신고하는 것을 허록(虛錄)이라 하고 또 아직 바치지도 않은 곡물을 마치 이미 바쳤다가 도로 환분(還分)한 것 처럼 해서 정리하는 것을 반질(反作)—작은 질이라고 불렀다—이라고 했으며 이 허록과 반질을 하는 자는 무겁게 죄를 주었다.

그런데 환곡에는 대봉(代俸)의 법이 있어서 흉년을 만나 작황이 불량할 때는 상당한 다른 곡물로써 적당량으로 대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경우에 도신이 계문하여 일년 후에 본색(本色)—대봉하기 전의 곡물—으로 환납케 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황두(黃豆) 1석(石)으로써 미(米) 1석을 대하는 따위의 대봉은 엄금했고, 대소미(大小米)는 서로 대하되 소미(小米)를 대미(大米)로써 대하는 경우에는 모(耗)를 면제하였고 미(米) 1석은 황두(黃豆) 2석, 조(租) 2석7두5승, 소두(小豆) 1석7두5승으로써 대할 수 있었고, 소두 1석은 황두 1석5두, 속조(粟租) 1석10두로 대할 수있었고 황두 1석은 소두 11두2승5홉 또는 속조 1석3두7승5홉으로 대할 수 있었고, 조(租) 1석은 황두 12두로 대할 수 있었고, 직미(稷米)와 서미(黍米)는 서로 대할 수

있었고, 녹두(菽豆)와 소두(小豆)는 서로 대하고 직당(稷唐)과 황조(荒租)도 서로 대하고, 진맥(眞麥)과 정조(正租)도 서로 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그곳의 대곡기준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환곡을 바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의 가을에 곡물을 바치는 것을 허가했는데 이것을 정봉(停俸)하고 퇴한(退限)한다는 뜻으로 정퇴라고 불렀다. 이듬해가 되어도 또 바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 정봉을 허가했는데 이것을 내정(仍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다시 한해를 정봉하는 것을 구환(舊還)이라고 불렀다.

환곡에는 이 밖에 모(耗)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시 서작(鼠雀)의 손실을 의미한 것으로서 백성들로 부터 원곡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그 줄어든 곡물을 보충한다는 뜻이었다. 이 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록(會錄)의 범이 생겨 모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으로 공용에 쓰고 이것을 회록이라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본읍(本邑)에 부쳐 군자곡(軍資穀)을 삼았다. 그런데 이 회록의 양이 후세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전모(全耗)가 회록이 되다시피 되고 모도 당초의 원곡의 손실을 충당한다는 명목은 어데로 가고 이핑계 저핑계로 원곡 매석당 2할 내지 4할을 모로 취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환곡의 제도가 일종의 고리대(高利貸), 헐잡(挾雜), 착취기관화(搾取機關化)하여 환곡본래의 정신인 세민구제의 원칙은 망각되고 수령속리(守令屬吏)들이 정도 이상으로 다량(多量)의 곡물을 무리로 강배(強配), 늑대(勒貸) 또는 늑징(勒徵)하는 등의 가지 가지의 폐해를 농민에게 대하여 끼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설하기로 하겠다. (이상 이조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만기요람, 목민심서 등 참조).

4. 창제(倉制)와 진휼사업

정다산(丁茶山)저인 목민심서(牧民心書)에 “고대 성왕의 인정(仁政)은 민중에게 산업을 권장하고 발전시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보양케 하여 풍년에는 때부르게 먹고 따뜻이 입어안락한 생활을 하게 하고 흉년에는 사망의 환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수령 중 기민진휼(飢民賑恤)에 용력치 않는 자는 중론(重論)한다” 고 하여 이조의 정책이 역대로 기민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황정에 주력하여 왔으며 또한 그 구휼의 책임을 지방관리에게 지운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관리가 황정의 지침으로 삼은 것은 주례(周禮)의 대사도(大司徒) 황정(荒政) 12조였다.

그런데 비황(備荒)을 위해서는 진자(賑資)의 비축이 필요하고 이 진자의 비축을 위한 창적의 종류로서는 국초에 의창, 상평창등이 있어, 의창은 본시 궁민구제의 기관으로서 평상시에 곡물을 적치(積置)하여 연흉(年凶), 대화(大火), 병란(兵亂), 역질(疫疾) 등 재변에 대비케 하는 것이었으나 이조에 와서는 이것이 환곡의 제도 속에 흡수된 상황은 먼저 말한 바와 같다. 상평창도 원래 물가조절의 직능을 맡은 기관으로서 고려시

대부터 이 제도가 있었으나 이조에 와서는 제4대 세종 때에 이를 확장하여 경기에 상평창, 경외에 상평창을 두어 각기 기본곡을 설치하고 곡물외에 포목도 보태어 곡과 포의 가격을 조절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안정된 경제생활을 즐기게 하였으나, 제16대 인조(仁祖) 때에 이것을 폐하고 잔류미를 타일 진자에 예비하였다. 이것은 병화(兵火)로 여러 창이 소실하는 등 사유로 인하여 수습상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로 부터는 환곡의 제도로 흡수되고 말았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환고에는 곡보(穀簿)가 있어 거기에 따로 진곡(賑穀)의 부(部)가 설립되어 있었으며 호조의 상진곡, 감영의 영진곡 본읍의 사진곡등으로 구분하여 이것을 가지고 진휼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창제(倉制)의 변천은 진휼실지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먼저로 도라가서 지방관리는 진휼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졌느냐 하면 지방관은 진휼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첫째로 진자를 예비할 의무가 있었고 둘째로 예외의 재변으로 다수 민중이 기아에 빠지고 관곡으로도 감당치 못할 때에는 부호(富戶)로 하여금 전곡을 의연(義捐) 또는 대여케 하여 관의 구휼행정을 돕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관이 실무에 당할 구제법(救災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즉,

1. 흥역(興役)—관에서 공공사업(公共事業)의 공사를 일으켜 그 임금으로 써 구제함
2. 발창(發倉)—진창(賑倉)을 열어 양곡을 분배함
3. 모속(募粟)—권분(勸分)을 행하여 부호로 부터 양곡을 모으는 일
4. 모승속(募僧粟)—승사(僧寺)의 권분을 구함
5. 남녀유별(男女有別)—풍기를 단속함
6. 수기아(收棄兒)—유기아를 보호수양함
7. 양병(養病)—백성의 질병을 치료함
8. 예사(예死)—사망자를 매장하는 일

등이었다.

또한 지방관이 진휼을 실시함에는 임시로 진청(賑廳)을 설치하여 사무처리에 능숙한 감리를 배치하여 술과 소금, 장(醬)과 미역을 구비하고 진패(통장)와 진기(대열표지) 및 진인(수배확인)의 도장의 제도로써 정연히 행하는 법이었다.

5. 교학, 종교와 민생구휼사업

이조시대에는 아직 현대와 같이 사회사업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치가 즉 사회사업이요 행정도 즉 사회사업이었다. 이미 전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조에서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학의 근본을 삼았으며 유교의 가르침 속에는 혜애안민(惠愛安民)의 인정(仁政) 및 구황(救荒), 보식(保息) 등 홀구행정의 정신과 지침이 모두 포함 되어 있었으므로 교학의 기관에서는 유교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시에 민생구휼사업의 교육을 겸행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학의 기관으로서 서울에 4학과 성균관,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관리는 일종의 권리행사자(權利行使者)라기 보다는, 왕도정치하(王都政治下) 왕을 대신

하여 호생지덕으로 역조창생의 생명과 안락을 맡아 보는 목민의 책임자라는 것이었으므로 관리는 현대적인 뜻의 사회사업가 내지 사회행정가의 임무와 사명을 겸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관리를 채용하는데는 과거라고 부르는 국가시험을 통하여 그 합격자으로써 충원하는 제도였다. 이제 이 시대의 교학의 시설과 과거(科擧)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학의 시설로서는 이조실록에 의하면 제2대 정종 2년의 조에 성내 동서중남북 5부(部)에 각 한교(校)씩 5교가 설치되었던 기사가 있다. 이것이 소위 5부학당인데 제4대 세종 27년(서기1445년)에 북부를 폐하고 4부학당이 되었으며 보통 이를 4학이라 불렀다. 이 4학에는 명륜당과 재(齋)만을 두고 문묘(文廟)는 설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지방의 교학의 기관으로서는 군, 현 마다 향교(鄕校)가 있었고 여기에는 문묘를 두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제는 대개 8, 9세에 서당(書堂)에 들어가서 한문의 소독(素讀)을 배우고 15, 6세가 되어서는 4학에 들어가 5, 6년간 학습한 후에 과거(科擧)에 응하고 합격자는 생원진사(生員進士)의 칭호를 얻어 성균관에 들어가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곧 관위(官位)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과거를 목적으로 서울로 집중하는 학생의 수가 많았다.

대체 과거는 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서기788년)에 당제를 시행하여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를 설치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전하는데 그 후 고려 제4대 광종(光宗) 9년(서기958년)에 시(詩), 부송(賦頌) 및 시무책(時務策)을 가지고 시험하여 인물을 채용하기 시작한 이래 과거가 인물등용의 방법이 되었다. 이조의 과거제에는 문무(文武) 2과와 문과의 예비과인 생원진사과 외에 통역관, 기술관에 대한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가 있어 이것들을 잡과라 하였다. 이 과거는 3년 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것을 통칙으로 하나 그 밖에도 국가의 경사때에 증광(增廣)이라 하여 별도로 시험을 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권세에의 등용문이라고 지목되는 국가시험의 합격율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한참 발육시기에 애를 태워 청춘의 즐거움도 있고 희색의 암기생활에 몰두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마 생각해도 전전하고 명랑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만 같다.

다음 종교와 민생구휼사업은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불교와 도교가 도입된 이후로 자비, 은혜의 사상과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관념이 민간에 보급되어 삼국시대와 고려조에는 불가(佛家)의 사회비보사업(社會裨補事業)과 각종 민간자선사업이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조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초기부터 유교(儒敎)의 배척을 받아 불교는 쇠운(衰運)을 만났고 도교도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조의 민생구휼사업이 국가의 공공구호사업(公共救護

事業)에 치중되고 민간의 종교적인 자선사업은 현저하게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이런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참고로 이조초기에 있어서 불교와 도교가 쇠퇴해 간 모양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불교에 있어서는 고려조가 망하고 이조가 일어나자 불교배척의 운동이 일어났으나 국초에는 전조의 타성으로 불교는 아직 왕성하였다. 특히 태조는 심히 불교에 귀의(歸依)하여 고승 무학대사를 왕사(王師)로 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제3대 태종(太宗)때에 이르러 배불(排佛)은 점점 노골화되고 즉위의 해(서기1401년)에 우선 궁중송주(宮中誦呪)의 중을 없애고 환관(宦官)의 지불(持佛)인 인왕불(仁王佛)을 궁궐로부터 내원사(內願寺)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 동 2년에는 사원의 폐합을 단행하여 여러 사원에 속하는 전조(田租)는 군자(軍資)에 공(供)하게 하고 노비(奴婢)는 각 관아(官衙)에 나누어 주었다. 동 6년에는 국내의 모든 사찰(寺刹) 중에서 242사를 선정하여 그외는 모다 이를 철거하고 또 한편 종파를 정리하여 재래의 11종(宗)을 7종으로—조계(曹溪), 화엄(華嚴), 자은(慈恩), 천대(天臺), 중신(中神), 총남(攄南), 시흥(始興)—주렸다. 제4대 세종은 그 6년 4월에 전기 7종을 다시 선종(禪宗)—조계, 천대, 총남—, 교종(敎宗)—화엄, 자은, 중신, 시흥—의 2종으로 정리하고 사찰 36사를 선정하여 모두 이에 분속시켰다.

그런데 세종은 그 말년에 번연(飜然)히 깊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또 제7대 세조도 또한 불교를 좋아하여 배불의 기세는 다소 완화를 보게 되었다. 제8대 예종(睿宗)때부터 배불소리가 다시 일어나 사원의 창건을 금지하고 또한 제9대 성종 2년(서기1471년)에 이르러 불교의 취체를 엄중히 하여 많은 승니(僧尼)를 환속(還俗)시켰으며 또 한편 무당이 서울 시내에 잡거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동 6년에는 서울시 내외의 니사(尼舍) 20여개소를 철거하였음은 물론 심지어는 성내에 염불소를 두는 것 까지 금지했던 것이다.

다음 도교에 대하여는 이조에서도 고려 때와 같이 도교의 공서인 소격서(昭格署)를 두어 삼청전을 만들고 성진의 제를 행하였다. 그러나 불교와 같이 이 도교도 또한 유교의 발흥(勃興)으로 말미암아 그 압박을 받아 제21대 중종 11년(서기1516년)에 일단 소격서를 폐하였으나 동 20년에 다시 일어났다가 임진왜란 후로는 아주 전폐 되었다. 지금 그 근방을 소격동, 삼청동이라하여 그 지명에 겨우 옛 면목을 남기고 있다. 이것이 서울에 남은 유일한 도교의 유적이다.

6. 통(統)과 인보사업

인보제도(隣保制度)가 중국의 본을 따서 우리나라에 창설된 것은 제7대 세조(世祖)때의 일이며 이것은 향약(鄕約)이 실시되기 보다 약 100년 전의 일이다. 이후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번 흥폐(興廢)와 변화를 겪었으며 이조 말엽에 와서 제26대 고종의 개정(10가(家)를 일단(一團)으로 함)이 있기까지는 5가로써 그 후부터는 10가로써 1단 즉 1통을 조직하여 단체인에게

인보검찰(隣保檢察)과 공동담보(共同擔保)의 의무를 지게 하였으나 간위사모(奸僞詐冒)를 방지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꾸준히 변함이 없었다.

원래 인보제도는 한 나라의 각 하급지방행정구획내를 일정의 호수(戶數) 또는 지역(地域)을 표준으로 다수의 지구로 세분하여 그 지구내의 인접각성원(隣接各成員)이 인보상조(隣保相助)와 연대책임(連帶責任)의 관념으로 자치적으로 각기 지구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고 교화를 향상하여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게 하는 국영(國營)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이것은 동양에 독특한 제도로서 일찍이 중국 주대(周代)에 시작되어 중국 각조(各朝)와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 까지도 실시되었으며 자치제 및 민생구휼사업의 진보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인보제도의 목적과 편성의 형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대체로는 경찰, 군사, 부역(賦役), 권농(勸農), 소송 및 교화의 6항목 또는 그 중 몇 항목만을 목적으로 했고, 맨 아래 단위(單位)를 대개 5가 또는 10가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리나라 세조(世祖)시대의 통의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에 보면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5호를 1통으로 하고 통마다 통주(統主)를 두고, 매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매면(面)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고, 서울은 매1방(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통의 제도는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만 시행된 것이 분명하며 즉 지방에서는 5호로 1통을 편성하고 1통마다 통주를 두고 5통마다 이정을 두어 통출케 하고 1면마다 권농관을 두어 농상(農桑)을 장려케 하였던 것이다. 이 제도는 그 후 전국에 시행되어 효과를 거두었으리라고 추측되는 바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창설 후 백수십년이 지난 제17대 효종(孝宗) 원년(서기1650년)에 비국으로 부터 발한 제문에 보면

“경국대전은 오늘의 가법(可法)이요 호전(戶典)의 <5호로써 1통을 만든다>라는 제도는 오늘 실행하면 반드시 보익(補益)하는 바 많을 것이나 이 제도가 폐절(廢絕)한지 이미 오래므로 지금 다시 이를 이르기자면 사목(事目)을 엄격히 세우지 않으면 안될것 운운.”이라는 말이 있고,

동 9년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올린 주문(奏文)중에

“5가를 통으로 만드는 법이 제정된지 이미 오래지만 지금 실행되고 있지않으니 운운”.

이라는 말도 보이는 것을 보면 이 제도의 실시는 당시 벌써 해이(解弛)하여 진지 이미 오래던 것 같다.

이와 같은 통의 제도 부활의 기운은 그 후 현종(顯宗)을 거쳐 제19대 숙종(肅宗) 원년(서기1674년)의 5가통절목(五家統節目)의 제정으로 결실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외(京外)의 인민이 많이 유산(流散)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집의 위치 즉 가병(家竝)에 따라서 통을 편성한 것인데 그 요령은 다음과 같았다.

① 조 직

이 제도는 가구(家口)의 다과(多寡), 재력(財力)의 빈부(貧富)를 물론하고 반드시 인접, 5가로써 1통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호가있을 때는 적의 근접 통에 첨부시켰다. 5가 중 지위, 연령의 상위자(上位者) 1인을 뽑아 통수로 하여 통내의 사무를 장리케 하였다. 통은 이에 속하고 이는 면에 속하였다. 각 통에는 통패(統牌)를 만들게 하고 통패에는 매호의 정남(丁男), 노(老), 유(幼), 부녀(婦女)의 구수(口數), 직업 및 문옥(門屋)의 수등을 기재하여 매 계절마다 각 통은 이로 이는 수령에게 보고케 하였다. 통내의 호민(戶民)이 타읍으로 이주할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와 이주지명을 가추어 통, 이를 거쳐서 관허(官許)를 신청하고, 허가없이 이주하지 못하였다. 신이입자(新移入者)도 전 거주지의 관허의 이문(移文)을 사조(查照)한 후 비로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었다. 이에 호구조사의 효과를 거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②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인보공제의 의무로서 경운상조(耕耘相助)하고, 출입상수(出入相守)하고, 질병상구(疾病相救)함은 물론 상보상사(相保相司), 혼상상조(婚喪相助), 환난상휼(患難相恤), 선상권면(善相勸勉), 악상고계(惡相告戒), 양송과쟁(良訟罷爭), 강신수묵(講信修睦)케 하여 선량한 인민이 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 통내에 불효, 부제(不悌), 반주(叛主), 살인, 상풍(傷風), 패속(悖俗), 도적, 부도(不道)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이, 면에 신고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치하고 그 밖에 통내에 간위(奸僞), 유도(偷盜)의 무리 또는 내력불명자(來歷不明者)가 있을 경우에는 직시 이를 고발하여 통, 이로 부터 수령(守令)에게 전보(轉報)하여 사치(查治)하는 의무를 진다.

만약 이상 사항에 관한 신고 고발에 있어서 유루, 은익, 기만등이 있을 경우에는 통내의 조합원은 공동책원으로써 처벌을 당한다.

이 제도는 그 후 어느 정도 실시되다가 75년 후인

제21대 영조 25년(서기1749년)에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속중보감에 호적5가통절목이 실렸는바 이것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은 즉 그 당시 명신(名臣)들이 보좌를 잘 해서 그런 것이고 이 법을 실행한다면 그 이익이 끝이 없을 터이나 지금은 5가통이란 이름만 전하고 그 실이 없으니 운운.”

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벌써 실시가 다시 해이 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제26대 고종(高宗) 21년(서기1884년)에 내무부는 통의 제도를 부활시켰다. 처음에는 속중의 제도와 같고 다만 동장 1인과 동내의 순포검찰원(巡捕檢察員) 2인 이내를 두고 고발규발(告發糾發)의 일을 주관케 하더니 33년(서기1896년)에 이르러 10호를 1통으로 하는 제도로 고치고 당해 통중에서 서산(書算)에 능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1인을 뽑아서 통수(統首)로 하여 이로 하여금 통내를 영솔케 하고 또 각 통으로 하여금 호적, 통표를 작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서, 부, 목, 군에 보고케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161 戶口考, 穗積陳重著 五人組制度論 第五章 第一節 418面—422面 등 參照)

三. 제2기(외구내합시대)의 민생구휼사업

1. 향약(鄉約)과 지역사회사업

(1) 향약실시의 개요

우리나라에서의 향약제도는 통(統)의 제도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도를 수입한 것인데 그 창설의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제11대 중종(中宗) 11년(서기1516년)에 경상감사 김안국(金安國)이 자수로 오륜행실(五倫行實)과 언해여씨향약(諺解呂氏鄉約)을 간행하여 도내(道內)에 반포(頒布)한 일이 있었다. 중종은 그 후 대사헌 조광조(大司憲 趙光祖) 등의 주언에 따라 중외(中外)에 명하여 향약법을 실시한 일이 있으며(서기1519년) 이때 서울 5부에 명하여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방, 이에 나누어 주었다. 중종은 또한 김안국이 만든 여씨향약언해례(諸道)에 널리 보급시켰다. 제14대 선조도 삼사(三司)의 청에 의하여 군읍(郡邑)에 명하여 향약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음 해에 직제학(直提學) 이율곡(李栗谷)이 “민생이 초책(樵樵)할때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은 시기상조”라고 주언하게 되어 왕은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향약의 전국적인 실시를 정지하였다. 이것은 율곡이 선조 4년에 이제도를 서원(西原)—청주—과 해주의 두 지방에서 시행해 본 체험으로써 다른 여러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종이래로 향약의 실시가 간혹 있었으나 대개 잠정적인 시행에 불과 하고 영속되지는 않았다.

개인적인 사업으로서의 향약은 제13대 명종(明宗) 11년(서기1556년)에 당시의 대학자 이퇴계(李退溪)가 도산(陶山)에 시행한 것을 위시로 이율곡의 서원, 해주의 향약, 유반계(柳磻溪)의 향약, 한장석(韓章錫)의 관북향약(關北鄉約) 및 김홍득(金弘得)의 보은군향약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두 여, 주 2씨의 제(制)에 준거하고 다소 자기의 창의를 보태어 증손취사(增損取捨)한 것이며, 민생초책(民生樵樵)한 당시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교화외에 상호구호에도 주력한 점에 이 제도의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종이래로 식자가 누차 향약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주장하고 또 약간의 지방에 있어서 이것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전국적으로 일제히 향약의 제도가 시행된 일은 없었다.

향약은 원래 일향(一鄉)의 주민이 교화(教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規約)이란 뜻인데 이것이 향촌의 지역적 자치단체의 설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조직자체도 향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향약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조합원 상호간에 선(善)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돕고, 간(奸)을 막고, 폭(暴)을 말려 써 지역내의 문화를 증진하고 복리와 질서를 유지하는데에 있었으므로 본질적으로 인보제도(隣保制度)와 공통된 점도 많다고 본다. 그러나 그 운영의 형식으로 이것을 보면 인보제도는 역조 일반적으로 관치제였고 또 하급의 자치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향약의 제도는 자치행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다만 조합원의 교화만을 목적으로 한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원래 인보제도가 주(周)제에 있어서는 그 단체로 하여금 일반행정외에 사법 및 교화등 광범위한 운영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제(齊), 진(秦)대에 벌써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후에 송(宋)대에 이르러서는 보갑(保甲)의 제도가 되어 주로 경찰행정이라는 좁은범위로 정리 되었으므로 교화사업은 자연 배제(排除)되었었다. 향약제도는 즉 이 교화사업에 대한 결함(缺陷)의 보정(補正)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런고로 향약제도는 보갑제도등 후세의 인보제도와 표리(表裏)가 되는 자매제도(姊妹制度)라고 할 수 있으며 양자가 같이 병행해야만 비로서 인보제도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보상조상구(隣保相助相救)는 가족제도의 유습으로 이웃사촌의 관념으로 부락마다 행하

여지고 별로 조직은 없었으나 이조에 와서 중국 송(宋)대의 남전 여씨(藍田 呂氏) —呂大防— 일문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하는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등의 사대강목을 주정신으로 해서 만든 향촌의 차치규약인 향약의 법이 도입 실시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본래 우리나라는 문벌제급의 차별이 심하고 또 각 계급간의 지력(智力)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하급 지방관 과 지방유지가 일반민지(一般民智)에 적응키 어려운 향약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과장하고 더구나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일이 많이 생겼으므로 정다산(丁茶山)으로 하여금 향약의 해는 구적(寇賊)보다도 심하다고 까지 개탄케 할 정도가 되었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향약제도는 딱저말한 바와 같이 통일적 제도로써 전국에 일제히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 학자 또는 경세가(經世家)가 여, 주 양씨의 향약을 본따고 거기에 다소의 독창을 가하여 일부지방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그 조직은 대개 각 읍의 향교(鄕校) 또는 향정을 중심으로 하여 도약정(都約正)—회장—, 부약정(副約正)—부회장— 및 직월(直月)—간사—등의 임원을 두고 향정(鄕正), 이님(里任) 등이 대개 그것을 겸하였다. 향약의 정신은 권선, 징악, 상호부조등 향촌의 양풍미속을 기르는데 있지만 그 상벌에 있어서 제급, 장유(長幼)의 차별이 너무 엄했고, 또한 토호발호(土豪跋扈)의 폐가 많았던 것은 당시의 사회제도상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향약실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여폐였던 것이다. (增補文獻備考 卷八十四 禮考三十一 禮俗 中宗十一年條, 李裕元著 林下筆記 三十九卷 中宗朝條, 柳希春著 眉巖日記草 第七冊 癸酉 八月記, 第九冊甲戌 二月記, 丁茶山著 牧民心書 第二十五 教民, 李栗谷著 石潭日記 宣祖七年 二月記, 李栗谷著 栗谷全書 卷十三 序 卷十六 雜著中 西原鄕約, 海州鄕約等 參照.)

(2) 이퇴계의 향립약조(鄕立約條)

향립약조는 제13대 명종(明宗) 11년(서기1556년)에 이퇴계가 안출하여 이를 도산(陶山)에 시행한 것이다. 이퇴계의 본명은 황(滉)이요 자(字)를 경호(景浩) 또는 퇴계(退溪)라 하고 도수(陶叟)라 호(號)하고, 중종인종(仁宗) 및 선조(宣祖)의 삼세에 역임하여 그 도학이 일세의 사표가 되어 후세에 까지 동방의 유종(儒宗)이라 경칭되었으며 선조 3년(서기1670년)에 물(歿)하였다.

약조에는 무릇 덕교(德教)에 위배되고 풍교(風教)를

어지러히 할 사항 28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3종으로 구분하고, 그 심한 자에 대해서는 중벌(重罰)을, 중쯤 되는 자에 대해서는 중벌(中罰)을, 하(下)인 자에 대해서는 하벌(下罰)을 가하기로 되어 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여, 주 이씨의 유를 따른 여러 제도가 오로지 교화 유도(誘導)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제도는 감계 징벌(鑑戒 懲罰)을 주안으로 하고 있는 점이며 이퇴계가 주자학의 조술자이면서도 이와 같이 자가독창(自家獨創)의 고안을 실현한 것은 그 견식이 뛰어난 증좌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약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혹여 내가 교(敎)를 세우지 않고 함부로 벌을 쓴다고 평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나, 본래 효제충신(孝悌忠信)은 사람의 본성에 기(基)한 것이어서 만인이 다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가 이미 상서(庠序)를 설(設)하여 이를 가르치고 이를 권도(勸導)하는 이상, 내가 감히 별도로 조장(條章)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릇 우리 향의 사(士)인 자로서 성명(性命)의 이(理)에 기(基)하여 국가의 교(敎)를 준수하고, 집에 있으나 향에 있으나 각각 그 윤리(倫理)의 규칙을 지키면 즉 왕국의 길사(吉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몰각하고 의를 범하고 예를 침하여 우리 향의 속(俗)을 파괴하는 자는 즉 하늘의 폐민(弊民)이니 벌이 없으랴 해도 어찌 없을 수 있으랴”. (陶山書院刊 退溪先生文集 卷四十二 鄕立約條序 附約條 嘉靖 丙辰 參照.)

(3) 이율곡의 향약

이율곡은 본명이 이(珥)요 자는 서헌(敘獻)이라 하고 율곡 또는 석단(石潭)이라 호하였다.

가, 서원의 향약

서원의 향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율곡이 창정하고 서원(淸州)에 시행하던 것인데 동 향약에 명(明)의 목종(穆宗)의 융경(隆慶) 5년(선조 4년)에 된 서(序)가 있는 것으로 그 창설이 그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문, 조목 및 향회독약법(鄕會讀約法)의 삼부로 되어 있고, 그 대요는 다음과 같다.

(一) 전 문

향약의 전문에는 향약협정 이전의 죄악에 대하여는 각인의 개회자신(改悔自新)을 허하고, 향약의 제재의 효력을 협정 이전에 소급시키지 않고, 또 약후(約後)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다 신제에 의거하여 논벌(論罰)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二) 조 목

조목은 여, 주 이씨의 향약제도에 없는 이율곡 독창의 소산이며 이에 역원(역원)과 규약을 규정했다.

① 역 원

1 향약은 1 장(掌) — 서원은 25장으로 나누어졌었다 — 으로서 편성하고 그 역원은 도계장(都契長), 계장(契長), 동몽훈해(童蒙訓誨) 및 색장(色掌)의 4종으로 정하고 서원 전체에 도계장 4인을 두고 그 밑에 매 장에 계장, 동몽훈해 및 색장 각 1인을 두고, 그 외에 이마다 별검(別檢)이라는 것을 두었다. 이것은 지방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당해 지방관이 그 소관내의 주군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 점등은 여, 주 이씨의 향약에서 그 지역(地域)과 지방행정구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② 규 약

규약은 21개조로 되어 있고,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선적(善籍)과 악적(惡籍)

향약에는 선적과 악적의 두 장부를 비치하고 유사(有司), 색장(色掌), 별검(別檢)이 이를 장리하였다. 약에들은 사람 중 선행(善行) 있는 자는 선적에, 과실 있는 자는 악적에 기재(記載)해두고, 매년 4맹(4철의 맹월 즉 맹춘, 맹하, 맹추, 맹동) — 맹은 孟 — 의 회독(會讀)의 날에 이를 뚫인 군중에게 피로하여 그 석상에서 추장논별(推獎論罰)하는 용에 썼다. 즉 권선징악의 취지를 명백히 할려는 것이었다.

나. 제재(制裁)

도계장은 매년 한번씩 계장을 소집하여 약법(約法)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계장이 만약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도계장은 이것을 관에 보고하여 개직(改職)하고 색장 및 별검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장이 이를 규찰(糾察)하여 개직하도록 하였다.

도계장이 관에 보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반수 즉 2인의 참회의결(參會議決)에 의할 것이며, 또 계장이 4맹의 회집 이외에 임시 관에 보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료 3인의 찬성자를 얻은 후 계원을 소집하여 상의함을 요하도록 하였다.

태(答) 40이하의 처벌은 계장 또는 유사가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단 직결처분할 성질의 죄는 4맹의 회를 기다리지 않고서 이를 논별할 수 있었다.

향약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고 타인의 과실을 고쳐주기를 주저하고 또는 향약에 위반하고서 개준의 희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에 보고하여 치죄하고 이를 향에서 배제(排除)하도록 하였다.

절도자(竊盜者) 및 정당한 이유없이 소를 도살하는 자는 이를 처벌하였다. 단 부득이하여 도살한 자는 그 이유를 계장에게 구신케 하였다.

관리 또는 관노(官奴)로서 촌읍에 와서 금품을 요청하거나 색장등이 촌민을 침해 하는 때에는 일일이 이

를 적발하여 관에 보고하여 처벌하였다. 만약에 무고(誣告)로 인하여 어긋하게 사형(死刑)을 선고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약자(同約者)가 연서(連署)하여 상관에게 신고하여 구조할 의무가 있었다.

다. 쟁송(爭訟)

동약자간에 쟁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계장 및 유사의 재판을 청하고, 계장 및 유사는 설유하여 쟁송을 끝이게 하였다. 계장이나 유사가 독단(獨斷)키 어려울 때에는 동약자 중 원로(元老) 삼인 이상과 회의하여 분석개유(分釋開諭)하였다. 그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시를 뜻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리(非理)로써 송(訟)을 즐기는 자”로서, 그 중한 자는 이를 처벌하고, 경한 자는 이를 악적에 등록하여 계감케 하였다. 그외 향 중에서 처단키 어려운 중대사건은 모두 관에 신고하여 그 재단을 기다렸다.

라. 교 육

나이 삼십세 이하의 자에게는 소학(小學), 효경(孝經),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의 책을 읽게 하고, 읽지 않는 자는 처벌하였다.

마. 상호부조

조합원의 질병(疾病), 혼가(婚嫁), 및 장상(葬喪)에 대해서는 일정의 규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으로서 부조케하였다.

(i) 질병의 경우

한 집이 질병에 걸려 농사를 폐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협력하여 이를 부조한다.

(ii) 혼 가

여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시집가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관에 신고하여 혼자의 보조를 받게 하고, 조합원도 적응하게 이를 부조한다.

(iii) 장 상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官)에 신고케한다. 만약에 풍수의 설에 혹(惑)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단미신(異端迷信)으로써 이를 다스린다. 또 상사(喪事)에 있어서 배반(杯盤)을 설하고 음주하는 것을 금하고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법경멸(禮法輕蔑)로써 논한다.

조합내에 상사(喪事)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은 각각 쌀 1되, 공석(空石) 1임을 내어 부의(賻儀)를 하고 매장에 있어서는 각각 장정 1명을 내어 조력케 한다.

(三) 향약독약법

이 약법은 주자(朱子)의 독약지례(讀約之禮)에 준거하여 정한 것으로 매년 4회, 4맹(孟)의 삭일(朔日)에 동약자 전원을 뚫아서 이를 행하였다. 그 수속은 우선

귀천 장유(貴賤長幼)의 순서에 따라 회중(會衆)의 좌석을 정하고 좌석이 정해진 후 유사가 고성으로 향약의 낭독을 하고 다음 그 글을 이해치 못하는 자를 위하여 그 뜻을 설명한다. 다음에 색장은 선적 및 악적의 두 부채를 회중에게 회람시켜서 의의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선행자는 추장(推獎)하여 더욱 선행에 힘쓸 것을 권고하고, 불선자는 책망하여 회과개심(悔過改心)을 계고하고, 중한 자는 논별하는 외에 약조의 뜻을 논강(論講)하여 명심케 하였다.

이밖에 연 1회 도계장은 각 장내의 계장, 유사, 색장, 별검등을 초집(招集)하여, 선악 2적에 등록된 자 중 특히 관에 보고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상의하고, 또 각 면의 계장, 유사로서 약조를 잘 지키고 민풍을 옹계 교화할 자 및 사폐(私弊)를 이르킨 자등에 대하여 상세히 관에 보고 하게 되어 있다. (栗谷全書 卷13 序卷16 雜著 西原鄉約, 五人組制度論 등 參照)

나, 해주의 향약

해주의 향약은 먼저 말한 서원의 향약과 같이 이울곡의 입안으로 해주에 시행된 것인데 그 내용은 “입약범례”(立約凡例)와 “증손여씨향약문”(增損呂氏鄉約文)의 2부로 되어 있다.

(一) 입약범례

입약범례는 이 향약의 전반(前半)을 이루는 것으로서 18개조의 조목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정의 대요는 다음과 같다.

① 조 직

이 규약에 의하여 편성되는 향약(조합)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써 조직하고 그 약법(규약)은 조합에 가맹한 각 조합원이 맨처음에 어느 곳(書院)에 뭉여서 협정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새로 가입하고자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약문(約文)을 보이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는가를 수개월간 생각하게 한후 가입원서를 제출케 하고 그것을 허가하고 앓고는 중의(衆議)를 물어서 결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동 향약은 지방행정구역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교화적, 자치적 유지단체(有志團體)였던 것이 명백하다.

② 역 원

역원은 향약정(鄉約正), 부약정(副約正), 직월(直月) 및 사화(司貨)의 4종으로 하되 그 중 연치(年齒), 학식높은 자 한 사람을 추대하여 향약정으로 하고 학력있는 자를 뽑아서 부약정을 삼았다. 또 조합원중 노복(奴僕)있는 자를 직월로 하고 한 회기마다 윤번으로 교대하고 그 밖에 서원의 유생(儒生)들 중에서 사화를 정하여 일년마다 교대하게 하였다.

③ 부적(簿籍)

향약에는 명적(名籍), 선적 및 악적의 세가지 부적을 두고 직월이 이를 보살폈다. 명적은 조합원의 명부요, 선적에는 조합원중 덕행이 현저한 자를, 악적에는 과실자를 등록하였다.

④ 발회서약식(發會誓約式)

향약창설 때에는 조합원 일등을 서원에 뭉아 우선 동원에 설한 선성선사(先聖先師)의 지방(紙榜)을 배(拜)하고, 다음에 직월이 미리 선정해둔 서약문을 낭독하고, 끝나서 일등으로 하여금 규약의 준수를 서약시켰다. 그 후에 새로 가맹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하였다.

⑤ 약법강독(約法講讀)

동약자는 격월마다 회집을 하고 약법의 강독을 하였다. 병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석하는 자는 미리 그 뜻을 제출케 하고 그것 신고하는 자는 범약(犯約)으로 써 다스렸다.

강독회집 때에는 그 강당에 대성지성공부자(大聖至聖孔子)의 위패(位牌) 및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이정자(二程子), 주자(朱子)의 위패(位牌)를 두어 일등이 우선 예배케 하였다.

⑥ 경조구휼(慶吊救恤)

동약자 중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선사하는 법이었으나 이것을 예의 대소후박(大小厚薄)에 따라서 하는 법이었다.

상사(喪事)에는 부의(賻儀)와 조역(助役)을 하는 법이었으나 그 액수는 약원(約員)의 상(喪)과 그 처자의 상에 따라 차도가 있었다.

동약자중 실화(失火)로 집을 태웠을 경우에는 동약자는 개초(蓋草), 재목(材木), 조력인부(助力人夫), 식량(食糧)등을 거두어 집 짓는 것을 도왔다.

이상 경조, 구휼에 관한 재물조력등의 일은 모다 직월이 보살피고 그 지출에 관해서는 직월이 사화와 더불어 향약정, 부약정의 인가를 얻어서 사화가 지출했다. 이런 재물은 향약조직때에 각 가맹자 또는 그 후신규로 가맹한 자로 부터 면포(棉布) 한필, 마포(麻布) 한필 및 쌀(米) 한말을 거둔 것과, 그 밖에 매해 최종회 즉 11월회에 전 동약자로 부터 쌀 한말을 거둔 것으로 충용케 하였다. 만약에 여미(餘米)가 생기면 이것을 대출하여 취리(取利)하였다.

(二) 향약문(鄉約文)

향약문은 이 향약의 후반부를 이루는 것인데 그 강령은 입안자인 이울곡이 직접 “대개 여씨향약을 시행했으나 절목(節目)은 같지 않다”라고 주기(註記)한 바와 같이 여씨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

속상교, 환난상홀”과 꼭 같으나 그 절목에 있어서는 여씨나 주씨의 향약보다 상세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栗谷全書 卷16 雜書 海州鄉約, 五人組制度論 등 參照.)

(4) 유반계(柳磻溪)의 향약

유반계의 본명은 향원(馨遠)이요 반계(磻溪)는 호이다. 제16대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시대의 사람으로 현종 12년(서기1671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안으로 된 향약은 “향약”과 “향약사목”(鄉約事目)의 2부로서 이루어져 있다.

(一) 향 약

향약은 이 향약의 전반을 이루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선 4대 강령을 들고, 다음에 이에 관한 절목을 자세히 풀고, 끝으로 회집독약법(會集讀約法)을 규정하였다. 이들은 주자 또는 이율곡의 향약에 준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강에 있어서 대동 소이한 것이다.

(二) 향약사목(鄉約事目)

향약사목은 이 향약의 후반을 이루는 조목으로서 전부 27개조로 되어 있고, 주자, 이퇴계, 이율곡의 향약 및 주례의 향삼물(鄉三物), 향팔형(鄉八刑)에 준거하여 규정하였다. 이 조목에 규정한 요령을 대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역원(役員)

역원은 향약정, 부약정 및 직월의 3종으로서 한 읍이나 한 향에서 연치와 덕행(德行)이 제일 높은 자 한 사람을 추대하여 향약정을 삼고, 학식과 품행이 겸비한 자 두 사람을 뽑아서 부약정을 삼고, 직월은 동약자 중 한 사람을 윤번으로 선정한다. 이(里)에 있어서는 매 리에 서민 중에서 연장하고 강근(剛謹)한 자 한 사람을 택하여 이정(里正)을 삼고 또한 근직(勤直)한 자 한 사람을 골라 색장(色掌)을 삼는다. 향약정 및 이정은 향촌의 이원(吏員)이 겸무할 수도 있다.

② 부적(簿籍)

읍(邑)에서는 3종의 부적을 비치하고 제일의 부적에는 그 읍의 사류(士類)를 제2적에는 덕업의 권할만 한 자를, 제3적에는 과실의 규탄할만 한 자를 각각 등록한다. 제1적은 이를 향적(鄉籍)이라고 하고, 다른 2적은 먼저 말한 다른 향약에 있어서의 선, 악 2적과 같은 것이다.

향(鄉)도 읍과 같이 3적을 비치한다.

그런데 이상의 등록은 사족(士族)에게만 해당되고 서민(庶民)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사족(士族)으로서 향약에 가입치 않은 자는 관에 고하여 향으로 부터 퇴거시키고 신규 가입자는 매해 봄철 집회 때에 부적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③ 강약(講約)

향약정 및 부약정은 매해 봄과 가을 두철에 향약정 이하의 제 역원을 뭉아 강약을 해마다 4맹월(孟月)의 삭일(朔日)을 기하여 향민을 뭉아 강약을 행한다.

④ 계(契)

각 향내의 촌리(村里)는 인근 2리를 연합하여 1조합을 조직케 한다. 이것을 계 또는 동계(洞契)라 하고 계장과 유사(有司)의 역원을 두어 계내 거주자는 사서(士庶)의 구별없이 모다 계적에 등록하고 경조, 상장구휼등에 관하여 동계자로 하여금 상호 공제 부조케 한다.

⑤ 상 별

향약은 우선 사족(士族)으로 하여금 실천시키고 점차 서인(庶人)에게 미치게 하여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있는 자는 회집일(會集日)에 이를 권장하고 과실있는 자는 규탄하고 벌을 줄 자에 대해서는 태(苔) 一매 때리는 형벌 10, 20, 30으로 나누어 향 자체에서 처벌하나 태(苔) 30이상은 관에 보고하여 처벌을 기다린다.

이 밖에 경우(耕牛)의 도살(屠殺)을 금하고 범하는 자는 벌을 준다. 단 부득이한 자는 관에 신고케 한다.

⑥ 쟁송(爭訟)

민간의 쟁송은 정, 부약정이 그 곡직을 가려 곡(曲)한 편을 타일른다.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는 관에 고하여 결재를 얻도록 한다.

⑦ 가취(嫁娶)

남녀가취의 길을 엄정히 하기 위하여 강포 각간(強暴却奸)하여 부모의 명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혼상례(婚喪禮)에 있어서 과도한 자도 벌하도록 한다.

⑧ 고소 및 계고(戒告)

관리로서 민간에 폐를 끼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발 고소케 한다. 또 지방관 혹은 유사에 대해서는 향약을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는 폐가 없도록 계고한다.

⑨ 구제(救濟)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근린(近隣)이 힘을 뭉아서 구제하도록 한다. 그 밖에 “한 향에 궁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취지로 사창(社倉)의 제도를 실천 한다. (磻溪鄉約, 五人組制度論 등 參照.)

— 未 完 —

(筆者 韓國兒童調查委員會 常任議長·訓練院 講師)

食母少女 生活調查 報告와

社會的 保護를 위한 所見

金 洛 中

1. 序 言

하나의 職業은 그 일에 從事하는 者가 必要로 하는 生計에 保障이 되도록 하는 面과 그 職業을 通하여 社會的으로 參與하게 되어 企劃 交易 販賣等 이러한 多岐한 活動을 거쳐 人間의 生活과 生存을 可能케하는 交互扶助의 相關性을 가지고 있음은 하나의 常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職業의 種別은 千善萬別이어서 身體에 對한 危險性을 가진 職種 機械的인 動作만을 必要로하는 職種 精神的인 活動만으로 遂行되는 것과 그 反對로 肉體만의 活動이면 足한 職種等 이것 亦 相當한 類別로 細分될수 있다.

어떠한 職種은 悅樂을 갖게하는 것도 있으려니와 甚한 苦痛을 加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特히 完全한 成長을 畢하지 못한 年少者에게는 課해서는 안될 職種이 있다. 即 그들의 成長을 阻害하거나 敢耐키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條件이 아닌 다른것이라도 人間의 待遇에서 떨어져 있거나 人間의 向上이 考慮되지 않은 것은 兒童을 保護하는 意圖에서 宜當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2. 家事 서비스 從事者라는 職業

內務部 國勢調査用 職業分類에 依하면 職種에 依하여 大分類를 하고 그것을 다시 또 中分類로 하고 이것을 細分하고 있다.

여기에 食母라는 職業은 大分類에 依해 서비스 職業 從事者로 分類된데 끼어 있다.

서비스 職業從事者를 定義지어

「建物 其他의 財産 및 個人의 身體生命의 保護 公共秩序維持 또는 個人家庭에 있어서의 一個人의 慰安 休養 및 接客運動 및 娛樂業의 從事者, 其他 서비스業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中分類에 들어가 家事서비스 從事者란 分類속의 家事婦안에 食母가 끼어 있다. 家事 서비스從事者란 「個人家庭에서 個人的 서비스業에 從事하는者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家事서비스 從事者들은 家事婦 派出婦 其他 家庭使用人 등으로 細分되어 있는데 家事婦를

家事婦, 食母, 炊事婦, 饌母, 褙母, 雜役婦, 乳兒保育員, 室內 掃除婦, 하우스걸 等を 列舉하고 있고 派出婦는 申込에 依하여 日當의 約束을 定하고 家사용務에 職業의 使用人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家庭婦 派出婦들로 細分하고 있다.

그리고 其他 家庭使用人이란 其他 家사용務에 從事를 말한다. 但 自動車運轉手는 除外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該當되는 것은 家庭教師 身邊保護人 別莊직이 家庭使喚, 保育員, 待合室案内人 侍從員, 庭園掃除夫 雜役夫, 家事監督 家事傭人 玄關직이 傭傭人 女子從業員, 物品整理婦, 客案内人等 많은 것이 列舉되고 있다.

이렇게 細分된 職種分類에 依하면 食母少女라고 불리우는 少女들은 家事서비스 從事者라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의 職業人으로 指稱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 特別이 食母少女라고 明記되어 있지는 않으나 家事婦나 其他 家庭使用人안에 列舉된 어떤 것의 하나를 말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겹쳐 일을 맡아 보고 있는 것은 事實이기 때문이다.

過去 從婢에 不適當하고 人間의 待遇의 領域에 들어서지 못하였던 이러한 業種이 하나의 職業으로 是認되는 것을 民主的社會制度의 所産이기는 하나 아직도 가장 弱한 職業隊列에 끼어 있는 것은 그들이 女性이라는 問題 特別한 技術이 없다는 問題 教育이 別로 없다는 問題와 이밖에 또 다른 問題가 있겠으나 무엇하나 社會的으로 保障되어 있는 職業은 아니다.

雇傭關係도 前近代의인 面이 남아있고 被救護者로서 慈惠的인 恩顧의 덕을 입기도 한다.

3. 食母少女生活의 實態

就學年令에 있으면서도 學校生活이란 教育的 環境에서 지 못하는 것을 비롯하여 生活을 위한 冷嚴과의 거 躡되는 對決, 이러한 동안 自身을 喪失하는 轉落 異常하게 形成된 人間觀으로 不幸에 시달리는 受難

社會의 一員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져야 할 그들은 等酷使와 過勞속에 呻吟해야 하며 일이 몸의 짐이 되어서는 아니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지기도 한다.

能力 以上の 責任을 甘受하고 이것을 遂行해야만 生

의 威脅이 輕減된다. 生의 威脅을 蒙免하기 위한 苦痛은 앞으로 쓰러려도 이것을 敢耐해야만할 哀切함도 있다.

人權을 蹂躪當해도 슬픈 諦念으로 이것을 消化해야 할 그들의 生活을 人間다운 領域으로 이끌어 올려주어야 할 問題와 暗黒속에서 自己의 肉體와 若干의 現金과를 交換하는 淪落女性으로의 轉落을 未然에 防止해야 할 問題等이 考慮되어야 한다.

實質적으로 한 家庭의 構成員속에 끼어 個人의 身體生命의 保護와 關係되는 重要한 일에 參劃하고 있던 于先 不平等에 直面해야 되고 그들의 失手는 敎化의 손길보다 私刑이 加해지고 雇用主의 一方的인 處事로 그들의 生活은 百尺千頭에서 左右되기도 한다. 人間의 人 待遇의 여러가지 條件은 그들이 成長過程에 있는 兒童이기 때문에 緊要한 것이며 많은 이들의 健全한 成長을 爲한 保護의 問題는 來日의 社會를 念慮하는데도 있다.

여기에 食母少女에 關係된 事例 두가지를 添記하면 다음과 같다.

事 例

姓名 朴 ○ ○

年齡 17歲

故鄉 ○○北道○○郡

學歷 5年前의 國民學校 3學年을 中退하여 한글만을 겨우 解讀할 程度이다.

家長의 職業

畚이 9斗落, 田이 하루반가리가 있고 農閑期를 利用한 小商으로 農村의 生活로는 그리 困窮한 狀態는 아니다.

家族關係

5男妹의 가운데로 위로 오빠가 둘, 오빠 하나는 國民學校 2學年 때 病死하였고 그다음 오빠는 入隊하고 지금 집에는 繼母와 女子 동생 둘만이 남아있다.

家庭事情

5年前 그러니까 國民學校를 中退한 當時父親과의 사이가 아주 惡化했고 그다음 母親은 끝의 어진 동생 하나를 다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

原因은 母親의 失手로 多額의 負債가 생긴 것이었는데 그것은 除隊하고 나온 外三寸의 商業資金을 데느라고 그리된 것이었다.

母親이 家出한 後 父親은 母親을 찾아 집을 떠났다. 그때 집에는 다음 동생과 둘이 남아서 지키고 있었다.

며칠 後 父親은 돌아왔으나 母親의 消息은 杳然하였고 父親은 母親에 對한 이야기를 一言半句도 하지않았다.

그때부터 家事를 맡기 시작했고 그러더라고 自然學

校도 中退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7個月이 지났다. 그러나 母親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아주 막혀 버렸다.

繼母가 들어왔다.

繼母는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便이나 아무래도 母親의 생각을 잊을수는 없었다.

出家의 動機

어머니를 찾아볼라는 마음에서 었다. 偶然히 外三寸의 居處를 안다는 邑內에 사는 M氏를 만났다. 外三寸을 찾으면 어머니의 消息을 알수 있게 될것이라는 生覺이 들었다. 그러나 서울까지의 旅費周旋은 容易치 않았다.

아버지에게 相議했으나 父親은 激怒하고 毆打를 하였다. 매를 맞은後 나는 繼母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 가지고 집을 나와 上京하였다.

M氏가 가르쳐 준 주소로 外三寸을 찾았으나 虛事였다. 이집에 사는 사람은 移廬은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고 그 前에도 여러번 살던사람이 바뀌었다. 앞이 캄캄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란 조금도 없었다. 그러니까 집을 나온지 2년이 흘러갔으며 그간 나는 食母로 살아왔다.

食母生活의 實狀

처음 가 산 집은 市場에서 紙物舖를 하는 집인데 主人 아주머니는 外出이 잦았다.

어느날 주인 아주머니가 밖에 나갔다고더니만 무엇을 한참 찾다가는 대짜고짜 나에게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있는 나를 힘껏 밀어제치고는 쓸어진 나를 발로 몇번 밟는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악이났으나 어른에게 덤벼들 도리는 없었다. 돈을 흠뻑다는 어긋한 누명을 쓴채 월급 두달치 8, 000환은 받지도 못하고 그집에서 쫓겨 나오는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집은 그러한 방법으로 몇차례가 어린식모를 내쫓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 다행하게도 그집에 드나드는 기름장사 아주머니의 주선으로 다른집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집은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 집이었는데 실존 줄넘는 젊은 주인이다. 어느날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피해 나는 집을 털쳐나왔다.

그리고는 집이 나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통행금지 시간에 걸려 유치장에서 하루를 새게되고 그 유치장에서 옥자라는 같은 ○○도 여자를 알게되었다. 유치장에서 나온 후 나는 그를 딸아 하숙집의 식모를 살게되었다. 이집은 보통 하숙집이 아니고 남자들이 자고 가는 보통집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또 그 집을 나왔다. 이러한 시달림속에서 거친 二年을 지나고보니 고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으나 이제는 갈 엄치도 없고 다시 무슨 직업이라도 다시 잡아야겠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걱정이다.

事例 2

姓名 安 ○ ○

年齡 15歲

故鄉 ○○道 ○○郡

學歷 國民學校 5學年을 修了하고 6學年 1學期中間에 退學하였다.

退學한 原因은 아버지의 病死로 移舍를 하게 되고 移舍를 한 後 母親의 힘으로는 學校를 繼續할 수 없어서였다.

家長의 職業

木手로서 겨울 한철은 놀아도 다른때는 바쁜 편이어서 生活의 곤난은 받지 않았다.

家族關係

의팔로 태어나 세 食口이었는데 아버지의 病死로 두 食口가 되었다가 母親과 헤어 지고는 혼자다.

家庭事情

父視은 술을 좋아하였다.

歸家할 때는 으레히 滿醉되었다. 어느날 아버지는 같이 일하러 아저씨에게 걸려왔다.

其後 近 24日 病床에 눕게되어 漢藥도 쓰고 洋醫의 治療도 받았으나 父親은 死亡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고장을 뜨게 되었다. 母親과 둘이 서울에 와서 「하꼬방」하나를 얻어 살게되고 母親은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때로는 동네아주머니들과 함께 쌀거리 채소장사도 하여 두 食口가 간신히 먹고 살아왔다.

食母살이를 하게 된 動機

母親의 活動만으로 生計의 維持는 어렵게 되어 母親과 따로 따로 남의 집살이를 하기로 決定하였다.

母親은 서울市 ○○洞의 어느집 食母로 나는 지금사는 집에 와있다.

母親도 나도 月給을 타면 모았다가 다시 모여 살기로 했으나 이제는 힘들게 되었다. 母親은 健康을 잃고 食母를 고만두게 되고 나는 月給이래야 한달에 2000환인데 母親의 藥값으로 보태고 하면 한푼 남지도 안는다.

食母生活의 實狀

잠을 싫것 잤으면 한이 없겠다. 주인아주머니가 신경통이 있어 잠이 들때까지는 다리와 팔을 주물러야 한다.

어떤때는 새로 한시가 넘어야 잠을 자게 된다. 아침은 보통 다섯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밥짓는 食母아주머니의 잔심부름을 해야하고 아침이 끝나면 설거지로 부터 집안소제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는 주인아

주머니의 잔심부름을 해야한다.

주인 아주머니는 신경통 뿐아니라 신경질이 심한분이다. 그래서 나는 잘 하느라고 했어도 주인아주머니는 욕설이 섞인 꾸중을 몹시 한다.

이럴 때마다 고만 두고 싶은 생각은 나나 母親의 病을 생각한다는지 제가 몸 붙일 곳을 생각하면 고생이 되 고슬퍼도 참을수 밖에 없다.

4. 두 事例에 對한 檢討

두 어린 少女의 成長環境은 그들의 人格形成을 위하여 좋은 影響이 되지는 못한다.

첫째로 그들의 身邊을 威脅하는 不幸이 間斷없이 作用하여 그들 自體로서 自身을 견주어 나가기 至難한 窮地에 놓여왔다.

家庭破綻으로 받았을 衝擊 母親과의 뜻아니한 不幸한 別居 不安定한 生活의 連續 人格의인 冒瀆의 甘受 疲勞의 繼續等等은 그들의 心身을 萎縮시키기 알맞은 惡條件들뿐이다. 그들이 그들 自身을 陶冶할 能力이나 機會가 주어지기 前에 抑壓과 酷使속에서 모든것을 喪失해가고 있다.

그들은 劣等感에서 헤여날수도 없고 언제나 自己를 쓰라린 敗北感속에 감싸고 있다. 그들이 받은 心傷을 治癒해줄 好意의 對象者는 없다. 그저 屈辱을 받아도 참아야 하고 待遇를 못받아도 當然한 것으로 看做하여야 한다.

이러한 속에서 善意의 人間觀을 갖기를 期待할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人間咀呪와 人間侮蔑의 惡德만이 培養되기 쉬운 것이다.

蔑視와 賤待는 사람을 萎縮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것에 反撥하는 調和없는 形의 造成이 可能한 것이다. 그들이 或 報復이라는 惡感情에 불탈 境遇 可恐한 非行을 거침없이 恣行하는데까지 이루르기도 한다.

어린 食母의 부서운 非行은 그가 지닌 素性도 問題러니와 이러한 人格에 刺戟한 어떠한 人間의 行爲가 問題되는 것이다.

어떠한 事實의 實際化는 어떠한 主體에 加해진 그힘의 結果로 보아야 할것이다.

純潔한 꿈을 지녀 볼새도 없이 向上에 對한 支援도 없이 不安속에서 苦痛과 日常生活한다는 것은 그 生活 自體 全部가 不幸으로만 構成된 것이러니와 人間의 尊嚴性이 傷失된 더 큰 不幸이 또 하나의 問題로서 深慮되어야 할것이다.

5. 調查의 內容

1. 年 令

2. 故 鄉

(食母 살이를 하기前 살던 고장 또는 자기가 낳은 곳)

3. 兩親關係

(1) 兩親, (2) 片父, (3) 片母, (4) 維母, (5) 父

4. 家長職業

(1) 農業, (2) 商業, (3) 技術者, (4) 會社員, (5) 公務員, (6) 勞働, (7) 無職, (8) 其他

5. 하는 일

(1) 아이 보기, (2) 설거지, (3) 소제, (4) 집보기, (5) 심부름, (6) 빨래, (7) 밥짓기, (8) 살림천란

6. 아침 일어나는 시간

(1) 4時, (2) 4.5時, (3) 5時, (4) 5.5時, (5) 6時, (6) 6.5時, (7) 7時, (8) 7.5時

7. 잠자는 시간

(1) 8時, (2) 8.5時, (3) 9時, (4) 9.5時, (5) 10時, (6) 10.5時, (7) 11時, (8) 11.5時, (9) 12時, (10) 12.5時

8. 쉬는날

一個月 (1) 없다, (2) 한번, (3) 두번, (4) 세번, (5) 때때로

二個月 (1) 없다, (2) 한번, (3) 두번, (4) 세번, (5) 때때로

9. 잠은 누구하고

(1) 혼자서, (2) 딸, * 어른과, (4) 주인과, (5) 아이들과, (5) 온식구와

10. 밥은 누구하고

(1) 혼자서, (2) 딸 어른과, (3) 주인과, (4) 아이들과 (5) 온식구와

11. 옷은

(1) 사 입는다, (2) 사줘 입는다, (3) 헌것을 고쳐줘서 입는다, (4) 아무거나 주면 입는다.

12. 목욕

한달 (1) 안한다, (2) 한번, (3) 두번, (4) 세번 (5) 네번

두달 (1) 안한다, (2) 한번, (2) 두번, (3) 세번, (4) 네번간

13. 머 리(頭髮)

(1) 화마, (2) 단발, (3) 기타,

14. 밥먹는 곳

(1) 방에서, (2) 부엌에서, (3) 때로 부엌에서

15. 이 일을 하게된 동기

(1) 부모가 안계셔서, (2) 집이 가난해서 (3) 농가일이 힘들어서, (4) 집이 싫어 나와다니다가, (5) 아는 사람의 권고로, (6) 이 집에서 떼려와서, (7) 다른 취직이 안되어서

16. 남의 집 살이 시작한 나이

(1) 8歲, (2) 9歲, (3) 10歲, (4) 11歲, (5) 12歲 (6) 13歲, (7) 14歲, (8) 15歲, (9) 16歲, (10) 17歲, (11) 18歲,

17. 이 일에 從事한 期間

(1) 0.5年, (2) 1.4年, (3) 1.5年, (4) 2年, (5) 2.5年,

(6) 3年, (7) 3.5年, (8) 4年, (9) 4.5年, (10) 5年, (11) 5.年, (12) 6年, (13) 6.5年, (14) 7年, (15) 7.5年, (16) 8年, (17) 8.5年, (18) 9年, (19) 9.5年, (20) 10年

18. 월 금

(1) 없다. (2) 1,000환, (2) 2,000환, (3) 2,000환, (4) 2,500환, (5) 3,000환, (6) 3,500환, (7) 4,000환, (8) 4,500환, (9) 5,000환, (10) 5,500환, (11) 6,000환, (12) 6,500환, (13) 7,000환, (14) 7,500환, (15) 8,000환, (16) 8,500환, (17) 9,000환, (18) 9,500환, (19) 10,000환

19. 월금은 어떻게

(1) 혼자서 써버린다, (2) 집에다 보낸다, (3) 저금을 한다, (4) 빚 놀이를 한다, (5) 계를 한다, (6) 학비로 쓴다.

20. 월금은

(1) 매월 준다, (2) 두달만큼 준다, (3) 대중없이 준다 (4) 출가시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21. 대 우

(1) 천대한다, (2) 보통이다(3) 고맙게 한다. (4) 펍 고맙게 한다.

22. 주인은 무엇이라고 부르나

(1) 감영님, (2) 서방님, (3) 마님, (4) 아씨, (5) 아저씨 (6) 아주머니, (7) 아버지, (8) 어머니, (9) 선생님, (10) 사모님

23. 학력과 글의 이해

(1) 모른다, (2) 한글로 된것은 다 읽는다, (3) 국민학교 일학년, (4) 2학년, (5) 3학년, (6) 4학년, (7) 5학년 (8) 6학년, (9) 중학교 1학년, (10) 중학교 2학년, (11) 중학교 3학년,

24. 글 쓰기

(1) 못쓴다. (2) 이름은 쓴다, (3) 편지는 쓴다, (4) 생 각 한것은 무엇이나 쓴다.

25. 책 읽기

(1) 못 읽는다, (2) 안 읽는다, (3) 책이 없어 못읽는다, (4) 틈이 없어 못읽는다, (5) 때때로 읽는다.

26. 공 부

(1) 못한다, (2) 야간에 다닌다, (3) 집에서 배운다, (4) 하고 싶지 않다.

27. 영화구경

한달 (1) 없다, (2) 한번, (3) 두번, (4) 세번, (5) 네번

두달 (1) 없다, (2) 한번, (3) 두번, (4) 세번, (5) 네번

28. 무엇이 하고 싶은가

(1) 은행원, (2) 여의사, (3) 영화배우, (4) 양제사 (5) 미용사, (6) 화장품상, (7) 포목상, (8) 식료품상, (9) 차 장, (10) 양복공 (11) 직조공, (12) 공장직공, (13) 교원

(14) 여경, (15) 여군, (16) 점원

以上과 같이 28項目에 걸쳐 調査를 行하였다.

家族關係로 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生活實態를 여러 面으로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生活에서 어떠한 方向을 指向하고 있나 까지도 알아 보고 싶었다.

6. 調査 方法

調査 內容에 記載된 細目を 各項別로 分類한것을 用紙 한장에 印刷하여 對象者에게 配付하고 該當되는 곳에 표를 하겠끔 要請하였고 이 調査를 要請하기 前에 이 調査를 하는 趣旨를 懇曲히 說明하였다.

調査의 趣旨로는 지금 自己의 家庭을 떠나 남의 집의 家事를 돕고 있는 少女들이 많은데 이 少女들이 하고 있는 일의 負擔이 過하지나 않은지 또는 待遇가 나빠서 아무런 希望도 가질 餘裕가 없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所望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므로해서 現在보다 낫은 生活을 할 라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資料가 된다면 하는 生覺에서 인데 勿論 이 調査가 國家에서 어떠한 對策을 세우기 위한 資料로서가 아니라 兒童問題를 研究하는 사람의 研究課題로서 食母少女들의 實生活을 더 좀 仔細히 알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報答없을 調査에 眞實을 다할 必要는 없다고 生覺하기 쉬웁고 食母少女들의 身分들을 社會에 暴露하여 損傷을 줄른지 모른다는 杞憂도 있겠지만 나쁜 弊端은 絶對없을 것이니 忌彈없이 眞實하게 應대 달라고 理解가 가도록 說服시킨 다음 이 調査는 進行되었으며 이 調査는 食母少女들과 親熟히 面接할 수 있는 女性으로 하여금 擔當케 하였다.

그리고 이 調査를 할 調査員에게 面接에 關한 諸般 要領과 方法을 特別 敎示 하였다.

調査는 比較的 順調로웠으며 不應하는 境遇는 別로 없었다.

七. 調査地域과 對象者人員

調査地域은 서울市內 生活狀態에 依한 住宅街를 몇 個處 選定하여 調査할 豫定이었으나 그 地域內에 居住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協調해 줄 調査員을 얻기 어려운 點等이 있어 永登浦區 ○○洞과 城東區 ○○洞의 住宅村을 對象으로 하였고 이 調査에 257명이 應해주었다.

八. 調査한 內容의 狀況과 所見

調査對象者の 年齡은 다음과 같으며 年齡이 上昇할 수록 그 數가 增加된것은 偶然이라고 하겠으나 勞動力이 많아야 하는 條件等이 考慮된 것이겠고 調査對象者中 十八歲가 적은 것은 그 年齡으로 빚추어 다른 職業으로 轉向해 갔음이 짐작된다.

查調(1) 對象者年齡別狀況

13 살	26
14 "	41
15 "	37
16 "	56
17 "	63
18 "	34

2. 故鄉은 食母 살이를 하기前 살던 故장 또는 자란 곳을 調査한 바 모다가 農村인 것이다. 都市集中의 傾向에 따르는 趨勢를 反證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離農의 問題나 農村安定에 關한 政策的인 面이 慎重히 考慮되어야 할것이다.

農民이 多數를 點한 우리國家의 實情으로 보아 農業立國의인 幅까지 모든 政策은 遂行되어야 할 切實性에서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愛鄉心의 鼓舞보다 살기좋은 生活均衡이 맞는 農村教育과 文化의 惠澤에 飢渴을 느끼지 않을 農村, 그리고 現代에서 落後되고 隔離된 非進歩 狀態의 農村이 아닌 生活處로 確立되어야 할 問題가 또한 考慮되어야 한다.

農村地域社會 開發은 어떠한 重要한 일이며 國家政策이 여기에 重點的으로 實施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緊要한 것으로 切感된다.

(2) 故 鄉

故鄉	서울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江原	濟州	其他	計
人員數	5	26	19	21	43	39	27	36	12	2	27	257

3. 兩親關係

兩親의 充分한 愛情과 教育的인 配處속에서 成長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없이 좋은 條件이나 여기 調査對象者들의 兩親關係를 보면 二五七名中 正常的인 兩親關係에 있는 88名으로 66%에 該當하는 다른 少女들은 孤兒이거나 片母或은 片父, 繼母 또는 義父關係에 있다.

端的으로 이들의 在家時 保護者가 준 影響을 斷言할 수는 없으나 結局 出家하여 他家의 雇傭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밀우어 보아 그들을 옹게 理解하고 보살피주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되고 孤獨 虐待等이 어린 그들에게 많은 마음의 傷處를 불연중 주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不調로운 家族關係에 處해 있던 그들을 옹게

理解하고 일을 시키며 激勵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酷使 冷待等으로 이들을 處遇한다는 것은 極히 삼가야만 할 일이다.

(3) 兩親關係

兩親保存	兩親無	片母	片父	繼母	義父	計
88	54	78	12	21	4	257

(4) 家長의 職業

家事的 職業으로는 斷然 農業이 絕對多數의 數를 차지하고 있다. 勿論 이것은 食母少女들의 出身地가 農村이라는데 起因한 것이니 宜當 그러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農村地域의 開發과 向上을 爲한 問題의 重要함이 다시금 痛感되는 일이라 하겠다.

(4) 家長職業

農業	商業	技術者	會社員	公務員	勞動	計
189	14	25	12	8	11	257

5. 主로 많이 하는 일

이들이 主로 많이 하는 일이란 雜役으로 어떠한 일 하나만 도 맡아 하지 않을 않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 살림전반을 맡아 보는 수나 아이보기의 수는 적고 빨래, 밥짓기, 소제 심부름 설거지等に 걸쳐 혼자하거나 거들고 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特別한 創意를 必要로 하거나 特別히 熟練된 技術을 必要로 하는 일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向上되는 것이란 없는 機械的으로 되풀이하면 되는 것이기에 興味가 생긴다든지 하는일은 期待 밖에 實일수 밖에 없다.

6. 起寢과 寢就後間

起寢時間 大概 一致하나 就寢時間은 大體로 없고 그 年齡이 必要로하는 睡眠時間을 充分히 갖고있지 못한 實情이다.

睡眠時間과 健康과의 相關性에 對한 調査 없이 斷言하기는 어려우겠으나 이들의 疲勞의 度가 加重되고 있다면 過勞와 睡眠不足을 들수있을 것이다.

普通 5時間에서 6時間이 그들의 唯一한 休息과 睡眠으로 되어 있다.

(5) 起寢時間

午前 4.30時	5時	5.30時	6時	6.30時	計
12	82	136	25	2	257

(6) 就寢時間

午後 10時	10.30時	11時	11.30時	22時	22.30時	計
7	19	92	87	34	25	157

8. 休日

다른 職場과 같이 一定한 休日이 있어 그날은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쉴수 있는 이러한 休日の 惠澤은 적다 明節때 며칠 휴가를 얻어 고향에 다녀오는 수는 있어도 이것도 고작 길어야 5日程度이고 普通 2, 3日이라는 것이다.

調査에 依하면 定期的으로 休日を 갖은 것은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쉬는것을 합쳐야 45%이니 半數以上은 두달 동안 自己가 마음껏 쉴수 있는 休日이 없이 날마다 주어진 일에 억매여 살아 나갈수 밖에는 없는 實情에 놓여 있음은 알수 있다.

(8) 休日

한 달		두 달		계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때때로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때때로	
73	89	68	97	257

9. 잡은 누구 하고

혼자 자고 여럿이 자는 것은 居處關係도 있겠으나 食母 少女이라는 資格에서 달리 取扱되고 또한 그들이 자는방도 制限될 것이다.

調査한바에 依하면 아이들과 잔다가 많으며 은식구와 같이 잔다는 것과 주인과 같이 잔다는 것이 제일 적다.

(9) 잡은 누구 하고

혼자서	판어른과	주인과	아이들과	은식구와	계
20	37	3	192	5	257

10. 밥은 누구하고

主人 家族들과 함께 床에 둘러 앉아 食事を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로 되어있다. 언제나 나중에 상을 물려받고나서야 그들은 식사를 하게 된다.

이러므로 단란한 생활 속에 물어보기 힘들것이며 孤立된 感情속에서 自身을 卑下할 때가 많아지며 劣等意識에 사로 잡히기도 할것이다.

(10) 밥은 누구하고

혼자서	판어른과	주인과	아이들과	은식구와	계
212	37	1	8	1	257

11. 옷(衣)은

옷은 사주어 입는 편이 많다. 自己의 趣味에 依한 選擇의 機會가 比較적 적은 것은 自己의 것은 自己의 담에 들게 處理하는 生活能力 培養에 支障이 되는 것이 라 하겠으며 衣生活에 있어 현옷을 다시 고치어 입는 일이 별로 없음은 質素하고 檢素한 生活의 本보기에 接할 機會가 없는 것이니 生覺해 봐야할 問題인양 竝다.

(11) 옷(衣)은

사입는다	사취입는다	현것을고쳐줘서	아무거나주면	계
89	143	12	13	257

12. 목욕

목욕의 回數로 衛生觀念에 對한 것을 尺度할수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沐浴의 回數가 적으니 이에 따라 이들의 沐浴回數는 一般人에 比해 더욱 작다. 그리고 여기에 목욕횟수는 가을 겨울 봄으로 여름은 除外된 것이다.

(12) 목욕회수

한 달				두 달			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한번	두번	세번	
137	59	22	16	23			257

13. 頭髮

그들의 頭髮은 大概가 短髮이고 파마도 있으나 年齡과 發育關係로 短髮이 어울리지 않아서인 것으로 理解되며 其他는 短髮도 파마도 아니 약간 ㅈ만 머리라든지 하는것 等이다.

(13) 頭髮狀況

단	발	파	마	기	타	계
105		63		89		257

14. 밥 먹는 곳

밥 먹는 곳으론 부엌이 많다. 일하고 있던 곳에서 편리함을 生覺하여 이곳에서 食事を 하게 된다는 그러한 理由보다는 따루 나중에 먹게되는 이러한 까닭이 큰 原因일 것이다. 방에서 여러 ㅈ구와 함께 단탈할수 없는 불행은 식사 때마다 이들의 마음 한군데를 자극 할것이다.

(14) 밥먹는 곳

방에서	부엌에서	때로 부엌에서	계
30	159	68	257

15. 이 일을 하게된 動機

집이 싫어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數가 많은 것은 ㅈ히 놀라운 일이다. 그들의 家庭關係가 그들이 安定해 있기에는 여러가지로 不適하였던 모양이다. 어떠한 動機로 보거나 不幸이 ㅈ들을 감싸고 있는 것만 은 틀림없는 事實로서 家庭에 對한 그리고 成人 특히 父親이나 母親이라는 位置에 있는 ㅈ들에게 對한 兒童愛護思想의 啓蒙과 理解를 ㅈ이 하게 하는 指導가 緊要한 것이다.

(15) 이 일을 하게된 動機

부모가 안 제서서	54
집이 가난해서	63
농사일이 싫어서	27
집이 싫어 나와서	92
아는 사람의 권으로	3
이 집에서 데려와서	2
만 취직이 안되어서	16
計	257

16. 남의 집살이를 始作한 나이

그들의 남의 집살이를 始作한 年齡으로 보면 家事補助를 할수있는 年齡 12歲以下는 없다.

12歲 以上으로 年齡이 높아 질 수록 많아지다가 17歲에서부터 줄어 18歲에는 激減되고 있다. 이것은 食母살이보다 將來性있는 職業으로 가거나 다른 곳에서 生活을 解決할수 있는 年齡에 到達했기 때문인것 같다.

(16) 남의집 살이를 始作한 나이

12歲	14	15	16	17	18	18	계
17	32	58	51	44	34	21	257

17. 이 일에 從事한 期間

오랜 期間 從事한 數는 ㅈ히 적다 希望이 없는 일이라는것과 고되서 견디기 어렵다는 것과 ㅈ피하고 마음에 안드는 것들이 이 職業을 떠나거나 다른 집으로 다시 옮겨 보게 되는 動機로 되어 있다.

(17) 이 일에 從事한 期間

1年	1.5	2	2.5	3	3.5	4	4.5	5	5.5	6	계
47	30	38	32	24	17	18	22	19	7	3	257

18. 月報酬

최고 6,000환이 9명이고 2,500환서 4,000환이 全體의 56%를 占하고 있다. 전혀 월급을 받지 않는 無報

酬가 約 一割 以上이다.

이것이 이들 어린 少女들의 休日없는 勞動의 代價인데 여기에 安定하고 있음이 奇異롭다고 生覺하게되나 農村生活서는 잘 만져 볼수 없는 現金이 있으니 대견한 일로 이로부터 金錢에 對한 欲求가 急進的으로 成長해 가는 것이다.

「돈의 맛」을 알겠다는 少女들의 述懷는 이것을 意味하는 것이겠고 그들이 月 500환의 增收를 위하여 집을 옮기는 것도 한편 自然스러운 일이라고도 하겠다.

完全히 職種을 달리할 年令까지는 이러한 되풀이로 귀여운 少女期는 흘러가는 것이다.

(18) 月 報 酬

없다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계
환	11		13	36	48	22	28	17	20	15	9	257

19. 月給의 使用處

이들의 約 5 割은 돈을 모은다든지 돈을 늘리기 위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빚노리나 제를 들어 실패 하였다고 하는 少女가 많다.

결국 巧임에 빠져 그들이 蓄積해 볼라든 意欲은 虛妄하게 되고 成人들에 對한 不信이 커진다.

(19) 月給의 使用處

무보수	혼자써 버린다	집에다 보낸다	저금을 한 다	빚놀이 한다	계를 돈다	학자금으로	계
28	79	26	32	46	43	3	257

20. 月給의 支給

約定된 月報酬는 다달이 支給되는 편은 적다.

貯金を 한다. 빚노리를 한다와 무보수의 內容에는 출가(出嫁時)나 고만들때 一括 支拂하기로 한 約束도 있다는 것이다.

(20) 月給의 支給

매월	한달걸러	대중없이	출가시	계
99	57	32	69	257

21. 待 遇

支給되는 月報酬의 高下間 理解해 주고 애겨주며 그 家庭의 食口와 별다른 差異가 없다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 自體의 主觀如何에서 評價되는 것이므로 妥當性의 餘否가 어려운 것이다.

自己 卑下의 感情과 劣等意識이 있으리라는 前提下에 이 問題는 解釋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에 對한 올바른 理解만이 좋은 待遇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21) 待 遇

친대한다	보통이다	고맙게 한다	격고맙게 한다	계
59	169	22	7	257

22. 主人에 對한 呼稱

大多數가 아저씨 어머니로 一般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呼稱을 使用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님 아씨로 부르고 있는 것이 세사람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사모님으로 부르고 있는 少女는 食母少女들 중에서는 第一 幸福한 心情의 生活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尊敬 愛情等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呼稱이기 때문이다.

(22) 主人에 對한 呼稱

아저씨 아주머니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사모님	마 님씨	계
217	28	9	3	257

23. 學歷과 글에 對한 理解能力

제대로 國民學校課程을 마친 者가 겨우 7名뿐 모두가 中退者이며 現在 夜間中學 1, 2學年의 籍을 둔 3명이 異彩롭게 있고 103명이라는 半에 가까운 數는 學校를 모르고 成長하였다.

이들은 貧困과 家庭의 沒理解로 어려서부터 逆境속 에 자랐을 것이니 그들의 心性은 調和이를 機會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23) 學歷과 글에 對한 理解能力

무학	국민 1년	국민 2년	국민 3년	국민 4년	국민 5년	국민 6년	중학 1년	중학 2년	계
103	59	34	20	16	13	7	2	1	257

이 표는 學歷과 同時에 그 程度의 冊의 글을 읽을수 있는 能力等이 包含되어 있다.

24. 文章의 記錄能力

그들의 學歷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特別한 指導를 받았거나 獨學을 하지 않아서 文盲은 별로 줄고 있지않다.

(24) 文章의 記錄能力

못쓴다	이름은 쓴다	편지는 쓴다	생각하는것은 다 쓸수있다	계
97	71	37	52	257

25. 讀 書

自己向上을 위한 讀書의 傾向은 별로 없다. 글을 理解 못하는 原因이 크고 讀書할 機會나 雰圍氣가 造成되

어 있지 않음을 十二分 理解할 수 있다.

(25) 讀 書

못읽는다	않읽는다	책없어 못본다	틈이없어 못본다	때때로 읽는다	계
102	97	13	196	38	257

註 여기에 表示된 수는 同一人이 몇가지 該當事項에 걸쳐 對應하였다.

26. 공 부

讀書에 對한 關係를 이것을 通해보면 더욱 잘 理解가 간다.

그들은 大多數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들 自體가 하고 싶어도 事情은 이를 容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는 18명은 異口同聲으로 글은 배워서 몇해오 남의 집 살이 하는게]라고 吐露하고 있다. 完全인 自己卑下와 劣等意識을 內包하고 있다.

27. 映畫鑑賞

全般的으로 즐기는 機會를 가지고 있지않다 映畫에서 받아드리는 것도 많다. 愛情倫理. 몸 가짐세 말씨 등 그리고 勿論 이 反對인 境遇도 있어 오히려 年少者의 觀劇을 積極 制止하고도 있다.

그러나 男女老少의 마음을 魔力을 가지고 誘惑하고 있는 듯한 映畫는 現代人의 生活에서 빼낼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때는 이것이 자랑거리도 되고 豊富한 話題의 素因도 되어 가본 사람은 안가본 사람의 美望의 이 되기도 한다.

如何든 健全한 娛樂의 機會가 없다는 것은 潤澤해야 할 心性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事實이 있다는 70%는 두 달동안 한번도 구경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27) 映畫鑑賞

한 달			두 달			계
한번	두번	없다	한번	두번	없다	
29	15		14	14	180	257

28. 要求職業

可能하면 現在의 職業에서 轉向할라고 하고 있다. 특히 技術分野로의 希求가 크다.

約 30%가 美容師가 되고 싶다고 하고 있다. 우선 주인아주머니로 부터 이웃집 아주머니 자기가 아는 사람은 다 美粧院에는 자주 出入하는것을 잘알고 있는 이 美容技術이야말로 女子로서 잘 해 낼수 있는 職業이기도 하고 收入에 있어서도 많은 期待를 가질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百貨店의 女店員이나 洋裁師에 많은 希望을 하고 있음도 위같은 理由이라고 짐작된다.

銀行員, 醫師, 敎員, 女警, 女軍을 希望한 數는 極히 少數로 學歷과 關係되는 職業은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루어 보지도 못할 職業을 斷念되어 있는것 같다.

재미 있는 것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13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少女들이 흔히 갖는 꿈의 表現이리다.

全般的으로 그들이 갖고 싶은 職業은 女性의 生活과 가까운 技術業이나 商業을 希望하고 있음은 이들의 生活觀을 알게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고있다.

(28) 要求職業

은행원	의사	영화배우	양재사	미용사	화장품상	포목상					
3	1	13	22	89	7	11					
식료품상	차장	양복공	직조공	교원	여경	여군	백화점원	기타	계		
5	3	7	19	4	1	2	17	53	257		

以上 28項目에 걸쳐 調査한 內容이 詳細히 밝혀보았다.

概觀하건데 食母少女들의 環境은 不遇한것임에 틀림없다. 아무런 準備도 없이 自我擴張期에 들어서야 되고 局限된 範疇의 世界에서 더 넓은 對社會的 活動을 展開해야 할 必然的인 生活段階에 서면 그들은 언제나 落後群에 또 서야하게도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生理上의 特質이나 後天的으로 形成된 心理上의 特質과 이것들에 일켜어 生成된 實際 生活에서 얻어졌다고 보아지는 後天的인 性癖은 女性으로서 또는 母性으로서 갖추어야할 德性에 얼마만한 寄與를 주었는가도 生覺해볼 問題이다.

아름다운 少女期의 꿈을 지녀 보지도 못한채 잘아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수 없는 事情에서 였다 하더라도 來日의 女性으로서 또는 母性으로서 進展途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즐겁거나 좋은 일은 못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對한 講究는 無益의 일이 아님이 自明하게 될 것이다.

九. 社會的 保護를 爲한 所見

貧困이 그 家長의 懶怠나 無節制에서 온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苦痛을 그가 宜當 繼承해야 할 아무런 責任이 없는 것이며 家庭의 不均衡이 그들에게 주는 惡影響의 諸般問題는 社會的으로 保護가 加해져야 할것이고 그들이 生活아닌 生存을 爲해 苦鬪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社會的인 保護가 끊임없이 加해져야만

할것이다.

이것은 어떤 感傷的인 人道主義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天賦的인 人權에 對한 是認에 起因한 것이며 어떠한 生活上의 落後群을 이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 그 社會가 責任져야 한다는 現代的 社會觀念에서이다.

이러한 觀念에 立脚하여 몇가지 所見을 開陳하면 다음과 같다.

一. 兒童福利法이 制定公布되어야 한다

虐待나 酷使에 對한 對備에 아울러 兒童人權 尊重的 法的保障을 確保하기 爲하여

二. 少年勤勞法의 基準 更新

(1) 現今의 實情으로 보아 食母少女의 時間制勤務란 實現不可能한 것이었으나 自我的 向上을 爲한 時間의 供與와 休息을 爲한 時間의 供與만은 確保해야 할것이며

(2) 雇傭關係에 있어서도 最少限의 保障은 이룩되어야 할것이다.

三. 公民教育의 徹底化

相當한 數의 어린 文盲者를 爲한 特別教育이 實施되어야 할것이다.

無知는 社會落後群을 輩出하는 溫床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 事實이다.

四. 職業輔導를 爲한 施設의 設置

生産力의 增強이라는 意義와 正常하고 健全한 要求에 副應해 주므로 오는 收穫은 考慮되어야 할것이다.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도 어떠한 特定한 時間이나 季節동안 一定한 教科課程에 依하여 內的인 充實과 外的인 發展을 爲한 活動은 緊要하다.

특히 이들을 爲한 職業輔導는 그들을 健全한 生活로 導入시키는데 가장 效果的인 考慮인 것이다.

五. 兒童愛護思想의 積極的인 發揚

모든 行動은 精神에서부터 結果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것은 成長過程에 있는 兒童들에게 加해진 愛護思想 如何는 그들에게 人間에게 對한 正常 非正常의 態度를 주고 있음은 두말할것도 없을 것이다.

民族의 今日이 念慮될때 흔히 來日에 對한 遠慮를 忘却하기 쉬운것이나 今日의 念慮는 事實上 今日을 爲한 念慮만으로 終止될수는 없는 것이다.

來日을 爲하여 今日을 念慮해야 하고 또 念慮되는 것이다.

六. 農村地域社會의 急進的 向上을 爲한 施策의 確立

食母少女들의 舉皆가 農村出身이라는 것과 그들의 出家나 離家를 크게 作用한것은 故郷이 貧困한데 있다.

故郷의 經濟的 貧困은 知的 貧困과 人間的 貧困을 招來하고 이 貧困이 巨大한 不幸을 釀成할 큰 素因으로 되고 있음을 等閑히 할수는 없을 것이다.

農村地域開發이 各種의 資源이 動員되어 善實히 進行된다는 것은 食母少女들을 爲하여 局限된 對策이 아니라 國家的인 向上과 發展을 爲한 最善의 施策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七. 結語

女性은 劣位에 서서 教育을 받을 機會나 品性을 陶할 機會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事情이 現今도 남아있다 一部の 女性은 그렇지도 않지만 餘他的 많은 女性群은 아직도 在來의 觀念의 存續으로 그 影響을 받아 能力의 伸長 社會的活動에 많은 阻害를 받고 있는 이런 實情인데다 더욱이 갖추어진 與件이 不充實한 食母少女는 待遇 못 받는 位置에 놓여지는 것이 가장 當然스러운 것으로 그릇 認定되고 있음은 再省해야 할 問題이다.

要是 性的 差異의 問題나 그가 現在지니고 있는것만이 問題가 아니라 이들이 모다 向할수 있는 機會나 自尊할수 있는 機會를 갖여 보지 못한채 成長된 그 結果를 더욱 問題로 關心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苦難 속에서 악적같이 成長된 人格에서 두가지 人間型을 發足할수 있다.

그 하나는 苦難을 어느 人間에게서 排除할 려는 善憐的인 따뜻한 人格이고 또 하나는 自己의 빠져린 過去의 苦難을 意識的으로 남에게 加하고 또 加하며 그런것이 人間成長에 下可缺의 要素인양 名分을 세워 人間에 對한 報復을 加하기에 泰然한 人格型이다.

價値意識과 人間愛의 高貴로움을 日常體驗하는 生活環境이 아닌데서 成長한 사람은 人間無知에 언제나 서서 不幸圈을 擴大시키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上記한 몇가지의 所見이 社會的으로 具現되고 不斷히 社會的인 움직임으로서 活動되고 있어야 할것이다.

社會의 不幸이나 人間의 不幸은 조그만한 어떠한 缺陷을 疎忽히 하는데서 생기며 人間 스스로의 自覺을 等閑히 하는데 있다.

이것은 性과 年令을 不問하고 適用 되는 것이다.

如何든 食母少女의 問題는 社會的인 保護가 必要로 되고 있음을 明白히 여기에 해두고저한다.

(筆者・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專任講師)

社 會 調 查 論

—現地調查 및 面接과 社會踏查의 諸問題—

G. A. Lundberg
曹 圭 璇 譯

第一節 序說

第二節 現地調查의 權威와 後接

第三節 現地職員의 編成

第四節 面接

1. 被面接者의 選擇
2. 面接에 對한 約束
3. 面接에 있어서 希望되는 條件
4. 面接의 技術

第五節 集團面接

第六節 파넬(Panel)

第七節 參與의 觀察法

第八節 生活史 또는 事例史

第九節 社會踏查

第十節 結論

第一節 序說

社會의 合理化를 爲한 社會의 데타(data)는 文書의 資料와 現地調查에서 獲得할수 있음은 우리가 知悉하는 바이다. 첫째 現地調查은 두가지로 大別할수 있다.

- (1) 言語行動을 包含한 모든 社會現象의 直接的 觀察.
- (2) 言語反應에 依해서 表現된 어떠한 狀態인 境遇他人의 陳述인 文書이다.

文書로된 資料追求에는 現地調查를 包含시킬 境遇도 있을것이며 이때에는 現地調查의 技術은 文書의 資料로서 調査도 할수있게 된것이다.

文書의 資料에서 데타를 얻는 技術은 歷史家들에 依해서 比較의 高度로 展開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個人, 集團의 言語, 行動과 그들의 重要한 環境條件을 통한 直接的인 觀察에 依한 社會의 데타 蒐集에 關한 技術에만 局限시키려고 한다. 有效한 現地調查의 技術 習得方法은 有能한 指導者 밑에 實際로 現地調查計劃에 參加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方法은 成功裡에 이루어진 現地調查報告書를 研究하는 것이다. 現地調查의 技術은 세가지의 觀點에서 生覺해볼수 있다.

- (1) 調査의 權威와 後接
- (2) 現地職員의 編成
- (3) 面接

說第二節 現地調查의 權威와 後接

現地調查은 그것이 어떠한 種類이든 他人의 時間, 家屋, 情報, 또는 全體로서의 코뮤니티(Community)를 侵害하기쉬운 것이므로 于先 이러한 侵害를 正當化해야 한다. 國勢調査等 公의 性格을 가진 義務를 當局에서 直接 遂行할 때는 別問題이나 私人또는 私의 組織에 依한 調査는 반드시 코뮤니티의 協力이 必要하게 된다. 研究對象인 個人 또는 코뮤니티의 協力を 獲得하는 좋은 方法은 그 研究에 對한 코뮤니티指導者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其他指導者 (例컨데 牧師, 教會等)에게도 依賴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第一로는 計劃된 現地調查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의 協力이 必要한가를 決定해야 하며

第二로는 關係하는 사람들이 그 判斷에 따르는 習慣이 있는 職員 또는 指導者들의 組織의인 協贊을 얻는 것이다. 關係하는 사람들의 最後까지의 協力は 勿論어려니와 面接, 書面 其他의 接近法 技術으로서 獲得할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個人的인 接近도 매우 容易해질수 있는 것이다. 코뮤니티 全體를 包含하는 現地調查에 對하여는 그 코뮤니티에 關係되는 重要한 利害나 活動을 代表하는 組織體의 後援을 얻는것이 또한 調査를 容易하게 할수있고 아울러 現地調查를 成功的으로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第三節 現地職員의 編成

正規的인 現地調查를 組織化하기 爲하여는 調査責任者는 事前에 一般的 計劃뿐만 아니라, 現地에 있어서의 情報의 소스(Source)에 關하여 精通해 두어야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서 必要한 職員의 規模와 型態를 決定하고 同時에 被面接對象을 決定할수 있는것이다. 現地調查員에 對한 資格이나 그 編成 또는 管理는 實施될 現地調查의 型態에 따라 左右된다.

一般的인 코뮤니티의 여러가지 條件을 調査하는 地方의 踏查에 있어서 教師, 社會事業家 또는 特定學生들 코뮤니티生活에 關心을 가지고있는 自發的인 現地調查員이 誠意있고 有能한 調査員이 될 境遇가 많다. 그러나 現地 調査에 있어서는 大概의 경우 調査員의 知的 活動인 要領 또는 創意를 必要로 하게 된다. 現地調查

面接協力及拒絶の比率表

區 分	拒絶 %	協力 %	接近不能者 %	合計
女 性	63.2	51.6	30.4	50.8
經濟的地位가 낮은者	12.3	20.1	22.5	20.2
教育水準이 낮은者	59.6	43.2	47.0	44.0
勞 動 者	21.0	28.1	44.1	28.9
젊은主婦 (20~24歲)	5.2	9.9	15.8	10.1
中年主婦 (25~44歲)	50.9	43.2	37.6	43.1
事 例 數	57	1635	102	1794

에 있어서의 데타의 本質은, 精密하고 比較가 可能해야 하며, 이는 統一된 어느節次에 依해서만 到達하게 되는 것이므로 訓練을 받지 않은 現地調査員은 避해야 할 것이다. 學校學生이 때에 따라 現地에 派遣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間或 커뮤니티속에 여러 現地調査員에 對한 깊은 偏見을 만드는 要素가 되는 境遇가 많으므로 되도록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第四節 面接

社會調査에 있어서 面接은 주로 다음의 두가지 면에서 重要性을 띠게 된다.

(1) 우리의 關心이 被調査者에 依해서 傳達되는 데타에 있고, 이를 傳하는 그의 言語行動에 있지 않을때 面接은 單只 第二次的 次에서 데타를 獲得하는한 方法에 不過하다. 國勢調査 調査員은 어느 客觀的 事實을 把握하기 爲하여 訊問한다. 이와 같이 傳達된 情報가 우리의 第一의 關心事인 境遇 모든 第二次的 次에 適用되는것과 같은 批判의 原則이 面接에도 適用되는 것이다.

(2) 面接은 또한 言語, 行動의 實驗的인 研究로서의 社會調査에 있어서도 重要할 것이다. 이 때 우리의 第一의 關心事는 여러가지 刺戟에 對한 言語의 反應 그것이다. 이러한 反應에서 精神分析家는 推論하고 結論을 맺는다.

大概의 面接에 있어 우리는 이 過程의 兩面에 關心을 갖게 된다. 이 兩面은 어느 程度 本質的으로 同一한 接近技術-面接約束을 하고 親해지고, 相對方의 信用을 얻고, 그러므로서 精神的 메카니즘(Mechanism)을 解放시키는 技術-를 包含한다.

調査者는 面接에서 얻은 客觀的 데타에 關心을 갖는 同時에 얼굴의 表情, 목소리等 言語行動에 나타나는 被面接者의 個性-그의 態度, 偏見, 嫌惡-에도 關心을 갖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科學的 觀察에 있어서와 같이 여러 場面에서 얻어진 그側面을 選擇하고 記述하여 成立되는 것이다.

1. 被面接者의 選擇.

面接을 包含한 調査에 있어서 첫째로 問題가 되는것은, 面接할 사람의 選擇이다. 이 被面接者의 選擇을 如何히 明白하게 選擇하느냐의 問題는 우리의 研究對象이 잘 定義되어있나 또는 完全한 情報의 次를 누가 把握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要는 누구를 面接해야 하느냐 하는것은 누가 最大의 信賴度로서 가장 容易하게 所要 情報를 提供해 주느냐를 決定하는 問題이다.

被面接者 選擇에 있어서 美國 코롬비아大學이 1940年度에 集計한 左記表는 좋은 參考가 될것이다.

2. 面接에 對한 約束을 할것

미리 約束을 해둔다는 것은 願하는 情報의 性質, 相對方의 人間的 特性, 相對方과 調査員과의 關係에 依해서 左右되는것이다. 時間을 經濟的으로 利用할수 있는 點에서 좋은것이다,

3. 面接에 있어 希望되는 條件

面接의 性質에 따르기는 하나 秘密은 絕對 保障되어야 한다. 私事 데타蒐集時는 第三者의 合席이 禁物이며 面接場所도 面接의 效果를 爲하여 잘 選擇되어야 할 것이다,

4. 面接의 技術

面接의 有效性은 面接員의 個性과 技巧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다. 調査員의 個性이 面接의 結果에의 影響은 다음 例로서 能히 짐작할수 있다. 即 Paul F. Lazarsfeld氏 報告에 依하면 「個人的으로 禁酒主義者인 어느 調査員은 市營宿泊所에의 申込의 62%를 飲酒에 依한것이라 하고, 7%를 產業的條件에 結附시켰는데 社會主義傾向의 所有者인 一調査員 같은 報告에서 39%를 飲酒로 23%를 產業條件에 結附시켰다」라고 되어 있는것이다. 面接하는 동안 調査員은 되도록이면 메모記入을 삼가하는것이 좋다. Pauline Young氏는 特別히 社會事業의 케이스·워크(Case Work)에 關한 自己經驗을 다음과같이 實際的 準則으로 要約하고 있는 것이다.

(A) 面接의 準備

1. 面接이 行하여지는 理由를 理解시켜라.
2. 相對方이 觀察하고 또한 質問할찌 모르는 모든 問題에 對答할 覺悟를 갖여라.
3. 可能한 모든 手段을 찾아서 相對方에 接近할 수 있도록 努力하라.
4. 萬若 時間이 制限되고 急할 時는 다른 假日目標을 세우든가 또는 面接方向을 生覺하여 두어라.
5. 事情이 許諾하는 限, 各己 獨自的인 問題에 留意하고 이를 相對方이 關係된 全場面에 聯關시켜라.

6. 모든 端緒를 通해서든지 相對方을 鑑識하라. 그러나 相對方과 接觸하고 있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되도록이면 面會約束을 請하라. 그리하여 相對方의 時間을 尊重하고 있음을 알려라.
8. 秘密을 保障하며 安樂하고 氣分좋은 環境을 만드려라.
9. 自己紹介를 하고 自己 機關과 訪問目的을 簡單히 말하라.
10. 儉素한 옷과 그때그때 適合한 服裝을 하라.
11. 眞心으로 人事를 해라.
12. 相對方의 家庭及 社會團體의 慣習을 遵守하라.

(B) 面接自體

1. 相對方이 말하는 모든 것에 關心을 表示하라. 面接으로 하여금 그에게 機會를 주라.
2. 相對方에게 마음 便하게 對하라. 그도 마음 便하게 對해 줄 것이다.
3. 對話는 천천히 하라. 그리하여 相對方의 말을 眞實히 듣고 있음을 알려라.
4. 그 問題를 理解할 수 있는 여러 事實을 알기 爲하여 時間을 充分히 잡아라.
5. 相對方의 直面問題는 相對方의 觀點에서 考察하라.
6. 相對方의 問題에 關하여 自己의 先入感, 偏見, 偏向을 適當히 參酌하라.
7. 相對方의 말씨로 答辯하라.
8. 相對方의 信賴를 얻고 持續하는 同時 이에 報答하라.
9. 같은 經驗, 같은 觀點, 같은 相互好惡을 通하여 同調하라.
10. 相對方이 直面한 問題에 對하여 同情的으로 洞察할 수 있도록 되어라.
11. 相對方에게 適合한 社會的地位를 주어라. 地位란 돈으로 살수없는 財産中의 貴重한 하나임을 잊지 말라.
12. 같은 狀態下에 自己外 自己自身에 關하여 答하게 될지라도 憤慨하지 않을 質問만을 하라.
13. 쉽게 理解하도록 質問하라.
14. 答을 包含시킨 質問은 하지 말라.
15. 無視한다든가 失禮된다고 認識을 주지 않도록 注意하라.
16. 質問은 오히려 率直하고 簡明하게 하라.
17. 迂回的으로 케네든가 相對方의 意思나 知識에 反對하면서 情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18. 相對方으로 하여금 自身の 말씨로 이야기하게 하며 時間의 餘裕를 주라.
19. 相對方으로 하여금 自己 스스로 生覺하게 하고 生覺하는 時間을 주라.
20. 그가 말하는 것, 願하는 것을 理解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自己의 願하고 있는 것을 理解하도록 하라.
21. 關心을 가지고 傾聽하라.

22. 相對方이 關心을 가지고 있는데 關한 重要的 端緒는 노치지 말고 追跡하라.
23. 相對方의 行動樣式의 흐스, 文化的 背景과 그發展을 理解하도록 努力하라.
24. 相對方이 滿足할수 있는 方途로 異議에 應하라.
25. 命令 또는 禁止하는 技術은 避하라.
26. 體面을 재워 주어라.
27. 地位를 주든가 援助를 請하든가 그 成果를 稱讚하든가 해서 緊張을 풀어라.

(C) 面接의 統制

1. 어떠한 矛盾이 없는가. 머리, 속에서 檢討하라.
2. 矛盾은 誤解로 取扱하라.
3. 「眞實은 友人에게 말하고 虛僞는 讒에게 말한다」는 俗談을 잊지 말라.
4. 相對方이 自己를 欺瞞할수 있는 機會를 주지 말라.
5. 萬若 相對方이 속일려고 함이 感知되었을 때에는 그 事例에 對한 自己의 全知識을 말하고 이야기를 繼續시켜라.

(D) 面接의 終結

1. 相對方이 疲勞하기前에 面接을 끝맺어라.
2. 相對方이 情緒의으로 마음 놓고 있을 때 面接을 끝내라.
3. 相對方이 自己일을 할려고하면 面接을 끝맺어라.
4. 다음에 다시 面接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自己가 重要的 材料를 가지고 있는 때에서 끝내라.
5. 面接을 끝내기前에 相對方이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라.
6. 이 面接이 成功하였는 가를 檢討하라.

第五節 集團面接

어떠한 目的을 爲하여는 被調査者를 集團의으로 面接함이 個個의 面接보다 더한層 信賴할수 있는 一致된 情報가 獲得될수 있는 것이다. 集團으로 面接을 받는 사람들은 말하면 普遍的인 同意를 얻을수 있는 어느面—(이는 個人面接에 있어서는 少數以外에는 生覺나지 않을 것)—에 있어서 個人의 注意를 促求하게 될 것이다. 集團面接은 어떠한 種類의 情報를 獲得함에 있어서만 適合한 것이다. 또한 이에 適合한 問題가 研究되고 있을 때 여기에 適合한 集團이 出現하였을 때에는 이 方法은 個人面接보다 短時間에 끝날수 있다는는 點에서 매우 有利한 것이다.

第六節 파넬(Panel)

大規模의 面接에 있어서 또는 各 調査마다 새로운 標本을 抽出하게 되는 境遇, 莫大한 勞力과 費用이 必要하게 됨으로 이結果 所謂 파넬技術이란 것이 生起하였다.

이 方法은 母集團의 代表標本을 注意깊이 抽出하고 이를 一種의 永久的 被調査團體로서 反覆面接하기 爲하여 그들의 協力을 確保하는 것인바, 이 技術이 그 成果를 나타내는 것은 많고 詳細한 材料가 一定 期間中 如何히 變化하는가에 對한 特殊한 觀點에서 要求되

였을 境遇이다. 이 파넬技術은 美國映畫 評論審議會等 數個 組織體에서 採用되고 있는바 이의 利點과 難點을 Paul Lazarsfeld氏와 Marjorie Fiske兩氏는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1. 어느 特殊調査에 있어서 質問에 對한 贊, 否 以上의 答에 關心을 갖고 詳細한 說明을 必要로 한다면 사람들의 協力下에 그들의 自己表現力을 增進시키에는 오랜 時間을 必要로 하게 된다. 萬一 이 努力이 成功한다면 한 集團에서 成功한 名面接 위에 累績해 갈수가 있을것이다. 放送順序라든가 雜誌 各號에 對하여 每週 다른 集團의 사람들을 使用하는것은 거이 不可能한 것이다.
2. 사람들의 意見을 그들 個人的 特性에 結附시키에 關心이 있다면, 面接의 反覆이 回答者에 關한 智識을 蓄積하는 機會를 주게 된다. 우리가 파넬에 接할 때 마다 그 情報의 一部分의 獲得은 可能한 것이다.
3. 어떠한 狀態에 있어서는 파넬, 멤바에 對한 反覆 面接의 統計의 信賴度는 一連의 다른 標本에서 얻은 回答의 그것보다 크다. 前者에서는 몇%의 變化라는 信賴할수 있으나, 後者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4. 時間的 經過와 關聯있는 어느 事件에 對한 사람들의 態度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파넬이란 가장 適切한 研究道具인 것이다.
5. 境遇에 따라서는 파넬은 對象集團法보다 좋은 成果를 招來한다. 例컨데 大統領이 敎書를 내기 前에 어느 法案에 對하여 어떻게 生覺하고 있는가를 一團의 사람들에게 質問하고 敎書를 낸 直後에 같은 質問을 같은 사람들에게 反覆함은 可能하며 또 한 이 方法이 大統領의 敎書를 본 사람과 안본 사람들의 意見을 比較하는것 보다는 妥當性이 있는 것이다.

(註) 對象集團法이란 物理科學用語로서 例컨데 農學者가 한밭의 一部에는 施肥하고 다른部分에 안했을 때 이 二部分間의 收穫差가 信賴할수 있다면 이는 肥料의 效果라고 生覺할 수가 있다.

그러나 社會調査에 있어서는 이렇게 簡單히 是 解決되지 않는다.

6. 費用이 節約된다.
7. 그러나 反覆面接의 結果로 파넬, 멤바는 더욱 批判的이 되고 파넬成員의 態度가 더욱 凍結되어 감으로서 一般사람들의 生活場面에서 離脫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第七節 參與的觀察法

觀察者가 被調査者와의 關係를 더욱 親密하게 非形

式化하기 爲하여 對象集團 속에 融化해버리는 것이다. 即 그는 그 커뮤니티에 定注하고 그 集團의 日常生活에 參與하는 것이다. 이 參與的觀察이 어느 程度 可能한가에 對하여는 研究對象으로 選定한 커뮤니티의 文化와의 關係에 있어서 調査者의 特性에 따라 差異가 생기게 될것이다. 그 例로서 애스키모人들과 같이 定住하고 數10年동안 그들 生活樣式을 採用한 探險家 라스무센(Kund Rasmussen)氏와 후로이헨氏(Peter Freuchen)가 있다. 即 후로이헨氏는 土人女性과 結婚하여 子女를 養育하고 其他 모든 生活面에 있어서 애스키모人의 生活에 參與하였던 것이다. 호로렌스·크락 크혼이란 女性이 뉴·멕시코의 西班牙語部落에 있어서의 自己體驗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參與的 觀察法을 批判說明한것은 매우 興味있는 것이다.

1. 커뮤니티成員이 놓여있는 現實場面을 觀察함으로써만 얻을수 있는 데타에 接近할수 있다.
2. 데타의 入手範圍가 擴大된다. 어느 集團에 있어서든지 어느 데타는 다른 데타보다 嚴重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3. gossip(가십)에 가장 쉽게 接近할 수 있다. 가십이란 重要한 情報조스인 것이다.
4. 調査者가 被教育의 立場에 있으므로서 데타의 範圍를 擴大할 수가 있는것이다.

第八節 生活史 또는 事例史

어떠한 種類의 生活史는 社會的 行動에 關하여 巨大한 常識的 情報조스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一般 사람들이 所有하고있는 社會的知識의 殆半이 또는 社會事業機關이 그 事業을 遂行하기 爲한 基礎知識의 大部分도 非形式的으로 普遍화된 事例史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生活史 資料를 如何히 觀察하고 分類하며 普遍화 하느냐의 問題는 거이 解決되지 못한채 있으나, 이것이 解決되지 못한다는 理由는 全然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如斯한 資料를 더욱 適切하게 記錄하기 爲한 規準을 設定하고 獲得된 資料에서 普遍化의 方法을 發達시키는 問題의 研究가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精神分析學者, 精神病理學者, 社會學者及 有能한 社會事業家가 使用하고 있는 技術 即 長時間에 걸친 面接에 依해서 個人的 內密한 生活史를 獲得하는 技術을 簡單히 要約할 수 없으나 比較的 體系的 接近方法에 對한 一般的 觀念은 다음과 같다고 말 할수 있을 것이다.

1. 研究課題는 文化系列中의 한 標本으로서 考察되어야 할것이다.
2. 어느 行動의 起因이 되는 生物的 動因은 社會的으로 關連이 있어야 한다.
3. 文化의 傳達에 있어서 家族集團의 特殊役割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4. 生物的素材가 社會的 行動까지 完全되는 明確한

方法이 表示되어야 한다.

5. 經驗은 幼年期로부터 成年期를 通하여 連續的으로 相互關聯되어 있음을 強調해야 할것이다.
6. 「社會的場面」은 하나의 因子로서 注意깊이 連續的으로 詳述되어야 한다.
7. 生活史資料 그 自體가 組織化되어 概念化 되어야 할 것이다.

要컨데 一層 體系의이며 信賴할수 있는 또한 適切한 事例記錄을 作成함은 매우 重要的인 것이다. 더욱 嚴格한 科學的 테스트를 爲한 假說을 示唆하고 現在 行爲의 原因이 되어있는 過去 情況에 빛을 보내는 同時, 매우 多様하고 實際的인 適應場面을 明白히 하는 點에 있어서 生活史資料는 多大한 價値를 갖고 있는것이다.

第九節 社會踏查

社會踏查라고 하여 前記 各節에서의 여러 方法과 다른 特別한 方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現地調查의 一方法으로서 前記 各 方法의 全部를 使用하는 境遇도 있을것이다. 社會踏查란 用語는 慣習的으로

1. 一定한 時期에 所與의 社區에 있어서
2. 어느 狀況의 여러가지 側面을 多少라도 包括的으로 探究하여
3. 어느便인가 하면 特定の 教育的, 宣傳的, 改良의 目的을 가지고 行하여지는 調査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既知 調査方法의 一部 또는 全部를 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一) 社會踏查의 一般的節次—社區諸機能의 後援을 얻는다는點, 熟達한 指揮者가 必要된다는點, 그리고 範圍의 策定인바, 이미 記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二) 今日에 있어서의 社會踏查의 通弊—要約해서 標準化된 節次의 缺如와 이에 由來하는 踏查의 比較 不可能이란 點이다. 첫째로 한가지 事實은 他事實과 關係를 맺었을 때 비로서 그 意義가 나타나는것인바, 어느 社區에 관한 踏查가 一般에게 承認된 標準에 비해서 評價를 받지 못한다면 같은 踏查와 比較되지 못하였을 때 이것에 對한 科學的 價値는 疑心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漠然히 各種의 主題(Topic)에 관한 踏查를 蒐集할 뿐인 社會踏查가 許多한 것이다. 또한 標準化된 方法을 使用한다면 그 調査 結果는 公認된 標準 또는 다른 社區의 그것과 容易하게 比較할 수

있고 따라서 價値 있게 되는것이다.

標準化된 方法의 發達과 利用에 依해서 社會踏查는 安樂이나 商業이 아니고 社會研究에 있어서 뜻 깊은 科學的 事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第十節 結論

社會科學의 發達에 따라 現地에 있어서의 踏查가 이 더욱 必要하게 될것이다.

社會學, 經濟學, 政治學의 原理는 安樂椅子의 遐想이나 人性에 관한 巨大한 哲學的 大著에서는 찾아 낼 수 없는 것으로서 實際의 集團行動을 그事實대로 客觀的으로 觀察하고 記錄하는것이 恒常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社會踏查에 있어서는 從來 個別的이며 相互關聯性이 없고 標準化된 技術이 缺如되고 熟練된 指揮者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蒐集된 踏查도 科學的 價値를 別로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直接的踏查를 大規模로 蒐集한다면 現地調查員의 選拔, 訓練, 編成, 管理에 對한 여러가지 問題가 생기게 된다. 또한 形式的인 面接의 採用如否를 無關하고 人間의 反應을 刺戟하고 觀察하고 記錄하고 評價하기 爲한 信賴할 수 있는 有效한 技術의 發達도 要望되는 것이다.

必要로하는 踏查中의 어느 것은 어느 社會現象을 그事實대로 더욱 精密하게 一般的으로 標準化된 用具에 依해서 記錄함으로써 곧 얻을수 있는것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出生이나 死亡에 對하여 現在 行하여지고 있는 比較가 可能하고 信賴할 수 있는 記錄이 모든 關聯있는 社會現象에 對하여 存在한다면 大概의 社會集團에 對한 社會踏查도 마치 會計士가 社會帳簿를 檢討해서 그 經理狀態를 報告하는 것과 같이 行할 수 있을 것이다.

要컨데 大概의 社會踏查란 不適切한 社區의 簿記(Community Bookkeeping)를 補充하는 意圖에 不過한 것이다. 社會的踏查의 不適切하고 標準化 되어있지 않는 記錄은 實際의 行政을 爲하여서도 社會科學의 發展을 爲하여서도 커다란 handicap(Handicap)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筆者 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 勤務)

訓練生活全貌



講 議



訓練館一部



見學實習



討 議



修了式記念



래 크 레 이 손



再 建 體 操

科目別時間統計表

4294.10.6

科目	年度別	4294																																				計							
		4290	4291					4292					4293																																
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社會事業概論	31	8	9	6	4	3	3	3	3	3		3	6	3	3	3	9	3	3		3	3	3	3			6	3	30	30		3		3		6		3	3	6	6	221			
社會事業法規	6		5	3		3																																					17		
社會調查					2		2																																				4		
社會行政及社會教育	2				7		3	8	3	2		2	2		2	1	1	2	5	2			3	3	3			6	15	9						8						3	95		
社會保障			2	3	5		3																																				16		
社會學及社會法						6																																					6		
韓國社會事業史																																											6		
宗教及社會事業																																												12	
兒童福祉事業	10	6	3	6	3	6	2	3	3	3		3	3	3	3	3	6	3		2				3			6	6	9	9	3		6	4		6	4		3		9	6	144		
兒童理解	34	9	9	9		3	5		6	3		3	3		3	3	6	3		6		3	6	6	6		6	6	33	30	3												3	207	
兒童教育						3	5		3	3		3	3							3			3						6	13														75	
兒童心理學			2	3	4			5						3																															35
施設管理	11	9	6		6		3		3	3		3	3		3	3	3	3						3	6			6																92	
施設の指導監督						3		5																																					14
保姆の課業										3			3		2	2		2		3								6	21	9	3														75
生活指導							3											11		3		3	3	3	3		3	3	48	63	3													164	
個別指導	6									2		2	3	3	3	3	6	3											18	15														102	
集團指導			3	3	4	3																																						165	
面接要領																																													24
非行少年問題				2	3	3	3		3			3			3	3	3	3									6	6	3	15	15	6													107
保健衛生	4						3		2	3		3	3	3	3	2	3	3		3		3	3	3	6	2	6		12	18	3	3												132	
精神衛生	6		3	3		3	3		3	3		3	3	2	3	3	3	3		3		2	3	3	3		3	3	9	9													100		
營養學	7	3	3																										15	15														68	
母子福祉					2	3		2							3																														10
地域社會開發事業				3	3	3	3	3																																					58
外國援助團體の活動相							2	1						2	3																														8
貧民定着事業											21																																		20
作訓練の意義		6						5	5	3		3	3																																34
蘇創	8			3		3	2	2	2	4		5	2	4	5	5	12	7																											10
特講	21	3	2	2				2	4	1		4	5	1	2	4	27	1		4			8	2				3	8	18	3		6	7	9	3		13	12	5	8	9	3	234	
討議					1	6	7	5	8	10		8	8	2	8	8		8		3	2	2	2	8	5	2	6		5			3	3		3	11	4	11	7	3	12			174	
實習	153						3	4	4	4	14	4		6	5	5	22	5		5	5	10	6	8	6	5	9		6																583
計	288	47	50	52	41	54	51	50	53	50	35	52	50	35	54	50	115	52	36	53	57	48	51	52	55	30	51	55	456	444	35	39	119	33	33	159	124	39	39	152	45	3364			

浮浪兒善導의 具體的方案

芳 泉

緒 論

浮浪兒 發生의 原因

本 論

- 一. 浮浪兒 善導를 爲한 家庭의 役割
- 二. 浮浪兒 善導를 爲한 學校의 役割
- 三. 浮浪兒 善導를 爲한 社會의 役割

結 論

- 一. 浮浪兒 發生의 豫防

緒 論

浮浪兒 發生의 原因

社會 一般에 있어서 浮浪兒는 큰 頭痛꺼리로 되고 있겠다. 그렇다면 이 浮浪兒 發生의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專門家들의 구구한 論議도 있겠으나 다음의 몇 가지로써 그 原因을 살피기로 하겠다.

- ① 거짓말 버릇과 癖을 앓는것
- ② 집에서나 學校에서 物件을 훔치는 버릇
- ③ 學校를 자주 缺席 하거나 外出을 자주 하는 버릇
- ④ 外泊을 자주하고 買食하는 버릇
- ⑤ 映畫 求景과 나쁜 만화책 읽기
- ⑥ 좋지 못한 環境과 동무와 노는것
- ⑦ 공연히 反抗하거나 지나친 몸 치장을 하는것
- ⑧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興味를 가지거나 手淫을 하는것

이와 같은 것들이 浮浪兒가 될 原因이라 하겠다. 簡單히 추려서 말한다면 慾望, 게으름, 동무의 유혹, 環境, 허영심과 같은 것들이다. 浮浪兒의 原因이 慾望이라고 한다면 普通 어린이 같으면 참을수도 있겠으나 意志가 弱해서 참을수 없는 어린이는 흠칫질을 하게 된다.

意志가 弱한 어린이는 그 原因이 무엇 보다도 家庭教育의 缺陷에서 온다고 하겠다. 어린이 기르는 方法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家庭環境等에 起因 되는 것이다. 또 學校를 가기 싫다 하여 자주 缺席을 하게 되면 自然이 浮浪兒와 사귀게 되고 劇場이나 遊園地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 용돈이 모자라면 집에서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여 용돈을 타 내게 된다. 學校를 缺席하게 된 原因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어린이의 實力 趣味 같

은것은 考慮치 않고 無條件 一流學校에만 보내야 된다고 돈을 드려서까지 無理해서 一流學校에를 보낸다. 그러나 實力이 없거나 머리가 나쁜 兒童은 一流學校에 入學시켜도 그 學校에서 工夫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自然이 劣等感을 느끼게 되고 學科에 趣味를 잃고 學校를 缺席하게 되고 學校를 간다하고 떼다쳐 하루 終日 놀다가 집에와서 父母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어린이는 學校가 하나의 배움터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보다 地獄과 같이 느껴진다. 이것은 父母의 虛榮心때문에 子息을 망친것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學校를 缺席하게 되는 어린이는 自然히 나쁜 周圍環境에 끌려서 浮浪兒와 사귀게 된다. 從來에 있어서의 浮浪兒가 되는 原因은 兩親이 없든지 繼父 繼母라든지 普通家庭과 다른 나쁜 環境의 家庭에서 나온다고 생각 하였든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浮浪兒를 볼것 같으면 뼈저티 兩親이있고 부유한 家庭의 子女들이 大部分인것이다. 父母가 있다고 해도 家庭의 零團氣와 家庭教育의 缺陷에 큰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家庭안에 부드러움이 없고 安定感이 없을때는 어린이가 浮浪하게 되는 原因이 된다고 하겠다.

本 論

浮浪兒 善導策은 어떤 特定한 機關에서만 擔當하여 教育시킨다는것은 成功的이라 할수 없다. 반드시 社會 一般 共同的인 責任下에 이루어져야만 가장 效果的이고 成功的인 善導策이 이루어 질것이다.

即 家庭, 學校, 社會, 全般的인 면에서 綜合的인 指導와 保護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難하며 반드시 社會全體의 協助와 保護가 必要한 것이다. 各各 三分野에 있어서의 役割은 하나의 浮浪兒 善導의 目的下에 行하여져야 할것이다.

一. 浮浪兒 善導를 爲한 家庭의 役割

人間이 母體로부터 世上에 出生한 후 처음으로 接觸하고 生活하는 곳이 家庭이며 家庭에서도 父母와의 關係가 가장 큰 것이다. 自己와 直接的인 關係와 生活의 始發點인 家庭이 溫和하고 따뜻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浮浪化가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原因으로 浮浪兒

가 된 兒童은 病者와 같이 取扱 하여야 한다. 家庭에 있어서의 父母는 浮浪兒를 爲하여 細心한 注意와 溫和한 雰囲気 그들의 慾求, 그들에 對한 個性을 把握하는 데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環境에 對한 整理와 調整을 하여야 하며 衣食住를 解決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보다 重要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理解를 가지고 子女를 保護指導 하며 어린이에게 對하여 무엇보다도 希望과 光明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浮浪兒라 할지라도 家庭에 있어서의 따뜻한 父母의 사랑과 愛情이 自己 마음 속에 숨여 들어올 때 그 頑固한 마음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浮浪兒는 父母의 愛情의 方向에 따라 性格形成에 影響을 받게 된다. 父母들은 可能한 限 家庭環境을 整理하여야 한다.

住宅難도 있겠지만 房이 비좁고 한 집안에 몇 世帶가 雜居한다거나 한 房에 父母와 子女가 同居하는 경우에 感情의 對立이 일어나기 쉬울뿐더러 性教育의 면에도 나쁜 影響을 미치는 고로 浮浪兒 善導에는 家庭環境整理가 急先務인 것이다.

이와 같이 父母로서의 浮浪兒의 問題兒를 위하여 最善의 善導의 役割과 努力을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成功하지 못하였을 때 그따위 子息은 없는셈 치자고 拋棄할 것이 아니라 專門家들로부터 科學的이고 具體的인 知能檢査를 받아야 할 것이다. 兒童問題研究機關같은 곳에 가서 兒童의 知能 및 情緒發達狀況檢査 非正常的인 行動에 對한 指導 및 治療 學力 增進과 進學問題에 對한 指導 一般的 醫師가 發見할수 없는 精神의 身體의 徵象 交友問題의 指導 이와 같은 具體的인 檢査와 治療를 한다 할지라도 父母의 따뜻한 사랑의 愛情이 없다면 病院의 힘만 가지고는 子女의 身體의 病이나 마음의 病을 絶對로 고칠 수가 없다. 病院의 힘과 父母의 愛情이 平衡되어야 할것은 勿論이다.

家庭에 있어서의 浮浪兒는 頭痛거리라고 걱정하기에 앞서 家庭은 먼저 徹底한 家庭教育의 實踐을 하는데 있어서만 家庭으로서 責任을 嚴守하였다고 보며 또한 解決의 重要條件이라 하겠다.

二. 浮浪兒 善導를 爲한 學校의 役割

學校란 家庭教育의 延長이다. 그런 故로 學校는 家庭을 變形하여 그대로 延長해 놓은 一種의 計劃的이고 組織的인 家庭의 분화이고 延長이어야 한다. 原來 學校의 유래는 家庭에서 始作 하였든 것이다. 학교는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生活訓練을 담당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適應能力을 가지게 하고 知的으로나 情緒的으로나 肉體的으로 健全하게 육성하도록 指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학교에 있어서의 주인은 학생 이어야 하며 先生은 아닌것이다. 家庭에서만 生活하던 것이 入學年齡이 되면 家庭 아닌 새로운 학교 環境을 가지게 되어 家庭과 學校라는 넓은 環境에서 生活하게 된다.

이 때에 家庭에서는 순조롭게 잘 適應 되었던 學童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經驗을 하게 될때 그 새로운 經驗에 곧 適應되지 않는 어린이는 부랑아가 되어 학교에 오지않고 열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先生들은 量的인 教育에만 열중하고 質的이고 個性的인 教育에는 等閑視하기 때문에 浮浪化될 學童에 지도를 제울리 할 경우 아주 도탄 속에 빠지고 만다. 교사들은 浮浪兒들의 心理的 變化와 影響을 理解하고 될수 있는대로 잘 學校環境에 適應하도록 도와주고 지도해 주어야 한다. 即 교사는 家庭에 있어서의 兩親과 같이 浮浪兒童들의 心理的 變化를 잘 理解하고 正確한 個性의 把握을 제울리 해서는 안되며 또한 교사는 不完全한 浮浪兒들의 品性を 完全한 品性으로 길러주는 한편 따뜻한 愛情으로서 對해 주어야 할것이다.

家庭에 있어서의 浮浪兒가 學校라는 社會環境에 잘 適應 順應하여 教師와 交友들의 따뜻한 愛情으로 因하여 그 浮浪性이 解消되어 學校生活에 趣味를 갖도록 教師들은 積極的 努力 하여야 할것이다. 教師들은 浮浪兒들에게 家庭生活에 있어서의 모든 不滿을 덜어 주고 知的인 면보다 情緒의 安定感을 길러 주는데 더 한층 큰 役割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學校에 있어서의 교사들의 浮浪兒들에 對한 善導策일 것이다. 교사들은 浮浪兒童들에 對하여 事故에 警告와 견책을 하여 교사들이 폭군과 같이 그들에게 비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젠나 따뜻한 애정으로서만이 선도의 길일것이다. 浮浪兒童들의 成立條件이란 새로운 經驗에 對한 慾求, 映畫나 만화, 小說에서 받은 자극, 모험, 英雄崇拜, 방랑, 가정불화, 오락시설 부족, 활동의 장소 等等일 것이다. 또한 그들의 활동범위란 운동경기, 놀음, 극장출입, 하이킹, 독서, 싸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等等 문제상 浮浪性을 띤 行動이 많다.

이와 같은 浮浪的인 活動을 통해서 民主的인 社會生活의 훈련과 體力의 단련, 克己 감투하는 精神의 涵養등 유익한 點도 적지 않으나 대개는 暴行, 절도, 싸움 등 浮浪行動 내지는 犯法行動을 감행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浮浪兒들의 成立 條件과 活動範圍를 잘 인식하여서 그들에게 무조건 견책과 벌만을 줄것이 아니라 가장 民主的이고 愛情의 손길로 그들에게 對하여 줄 뿐만 아니라 團體生活의 趣味 即 探險生活 登山等を 할수있는 機會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나쁜것이다 하고 그 根本的인 뜻을 理解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故로 다음 몇가지를 學校當局에 要求 한다.

- ① 學校는 좋은 「리크리에이션」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효과적인 단체생활을 육성시켜야 한다.
- ③ 학교는 가장 科學的인 方法으로 부랑아들에 對한 專門家의 知能檢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학교는 量的인 교육보다 質的인 교육이어야 한다
- ⑤ 학교 교사는 浮浪兒들에 對한 個性 心理變化에 對한 研究와 指導를 하여야 한다.
- ⑥ 학교 교사는 浮浪兒童들의 兩親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상호 지도 하여야 한다,

三. 浮浪兒 善導를 爲한 社會의 役割

家庭보다 學校보다 社會는 冷情하고 指導者도 없는 곳이다. 社會라는 곳은 善으로서의 人間보다 惡으로서의 人間으로 만들기 쉬운 好條件을 가지고 있다, 家庭이나 學校에서 착실하게 길러온 내 子息들이 社會라는 惡條件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휩쓸릴 때 고만 浮浪兒가 되고만다. 社會적으로 가장 問題中의 問題이고 無視할 래야 할수 없는 것이 이 浮浪兒 문제이다. 浮浪兒 善導를 위하여 社會적으로 많은 少年刑務所를 지어 보았대야 解決策은 되지 않을 것이다. 成人들은 모름지기 浮浪兒들이라고 等閑視하고 경멸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成人들의 좋은 點보다 나쁜 點에 더 觀心과 注意를 기우리고 있다. 一言하면 浮浪兒들은 成人들의 責任이라고도 할수 있다. 政府當局에서는 浮浪兒 即 問題兒들의 복지法같은 것도 法律적으로 아무對策이 없는 고로 하루 速히 成文化 시켜야 할 것이다.

國家的으로 어린이 문제에 對하여 相談할수 있는 官立兒童相談所 같은 것을 設立하여 專門家들 即 精神科醫師, 臨床心理學者, 社會事業家, 素質指導等의 權威者로서 恒常 問題兒에 對하여 研究하고 그 各 分野의 問題兒들을 收容할수 았는 兒童福祉機關에서 收容하되 各 分野의 專門機關에서는 專門家들이 精神적으로 心理學的으로 治療, 收容, 保護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것이 美國에서는 50年前에 日本에서는 8年前에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設立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하루速히 兒童福祉法을 만들어 國家的인 團體機關의 育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將次 이나라의 指導者요 役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도 等閑視 할수 없고 그 외 무엇보다 시급히 取扱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人口가 膨창함에 따라 都市生活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러나 無理를 해서라도 浮浪兒善導를 함에 있어서는 오락시절,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극장이 設備되어야 할것이다. 國家的으로 이와 같이 積極的인 活動이 없이는 浮浪兒의 善導의 길은 막막한 것이다. 우리는 浮浪兒들의 노리터를 더듬어 볼 때 그들은 대개 극장 주변, 번

화가, 공원 같은 곳이다. 거리에 나붙어 있는 영화 기타 상품 포스타, 간판은 너무나도 저속한 나체 그림을 붙여 부랑아들의 좋은 方向으로서의 心的인 變動보다 더 일층 도탄의 구덩이로 휩쓸어 가게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는 강경책을 써서라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자중 하여야 할 문제이다. 거리에 산재하고 있는 저속한 단화, 소설, 잡지는 그들의 善導策에 큰 障害가 되고 있으니 이것도 法律적으로 엄격히 단속 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 故로 社會는 社會로서 浮浪兒善導를 위하여 다음에 몇가지는 嚴守하여야 한다.

- ① 兒童福祉法을 國家는 제정할것
- ② 저속한 商品 宣傳板 포스타 단속
- ③ 刑務所보다 福祉機關 설정
- ④ 저속한 出版物 販賣 禁止法 制定
- ⑤ 劇場出入 엄격 단속(禁物인것)
- ⑥ 어린이 노리터 多數 創設
- ⑦ 어린이 도서관과 극장 創設.
- ⑧ 官立兒童相談所 設置

結 論

浮浪兒 發生의 豫防

어린이를 浮浪하지 않게 豫防하려면 浮浪하게 된 原因을 잘 研究하고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가 미치고 부모로서 따뜻한 마음씨가 깃들어 있다면 어린이는 浮浪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즐겁고, 집에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가라앉아 즐겁게 있을 수 있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너무 엄격하여 꾸지람과 잔소리만 하는 바람에 집에 있기가 싫어서 자연 집을 나가서 불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언제나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사들은 注意깊이 교육 시켜야 한다. 교사들은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 시켜야한다. 단체생활의 즐거움을 맞보도록 努力 하여야 한다.

家庭이나 學校나 社會나 그 어린이의 浮浪化를 일찍이 防止하려면 무엇보다도 「浮浪化의 징조」를 빨리 發見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물건을 훔친 뒤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미 늦다. 어린이의 行動에 對해서 平常時에 注意를 하여 「浮浪化의 징조」가 있으면 곧 감시를 하는것이 必要하고 豫防策일 것이다.

우리나라 兒童福祉 向上을 爲한 具體的 方案

朴 泰 臣

차 례

一 序 論

1. 妊産婦 및 嬰幼兒에 대한 시책
2. 就學前 어린이를 위한 시책
託 兒 所
保 育 所
幼 稚 園
어 린 이 놀 이 터
3. 學童을 위한 시책
4. 아 동 관
5.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시책

特殊學校(特殊學級)

6. 不遇兒童을 위한 시책
育 兒 院
職業輔導學校
 7. 兒童相談所
 8. 少年法院
 9. 兒童福祉法制定
 10. 民衆啓蒙
- 三 結 論
參 考 文 獻

一 序 論

兒童은 다음 世代를 담당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 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心身의 健全한 發達을 도모 하는 것은 全 社會 및 全 人類의 共同責任이라는 良心 的인 宣言이 이미 40여년 전 國際聯合에서 「兒童의 權利에 대한 제네바 宣言」으로 發表 되었으며 美國은 1930 년에 이땅 위에 兒童의 樂園을 實現하려고 美國의 兒童憲章을 發布 하였고 日本에서도 前記 宣言이나 憲章에 影響을 받아 1951년 兒童憲章을 正式 宣布 하였다 兒童들은 나이는 어릴망정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아 야 하고 社會人으로서의 權益의 옹호를 하자는 것이며 오늘 世界 大部分의 文明國은 憲章 정신에 따라 兒童福祉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여 兒童의 教育, 保健, 敎護, 虐待防止, 母子福祉등을 保障實現하고 있다. 돌이켜 우리나라의 實情을 보면 成人들의 封建的觀念과 無教育으로 말미암아 兒童의 獨立된 人格과 個性의 認定을 하지않고 父母의 私有物的인 取扱으로 전대 해 왔었다. 3.1運動이후 어린이의 貴함을 알고 계몽에 나선 先覺者들의 努力은 학대 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자라는 불쌍한 어린 영들을 위하여 그윽히 同情하고 아끼는 사랑의 운동으로 열렬히 전개 되었다. 이는 아동문학 운동과 민족자유 해방운동과 더불어 전개 된 것이었다. 解放이 되어 祖國을 찾고 憲法을 制定할 때에는 國民의 基本權을 闡明하여 條文化하였으

며 특히 모든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보장하려는 生活權의 基本權이 規定 되었다. 곧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 (女子와 少年의 勤勞保護) (家族의 健康을 保護받는 權利) 등이다. 一面政府는 1967년 어린이 날에 어린이 勸장을 公布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우리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옹고 짝씩하고 아름답게 育成하자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政治的 혼란과 경제 事情의 惡化, 政治人들의 無誠意는 兒童福祉法이나 社會教育法을 통과 시키지 못했다. 우리 어린이는 정말 不幸한 存在이고 보다 사랑해야할 對象이다. 政府는 福祉施策을 推進하고 一般 國民은 이에 呼應하여 外國 어린이 못지않게 幸福되게 자랄수 있게 하여야 할 일이다.

以下 廣義의 兒童을 對象으로 그들의 福祉向上策을 論하려한다.

二 本 論

1. 妊産婦 및 嬰幼兒에 對한 시책

모든 兒童은 心身이 모두 健康하게 出生되도록 妊産婦를 보호하고 嬰幼兒의 健全한 成長과 그 死亡率은 底下시켜야한다.

(1) 保健員의 巡廻診療

各市·郡·面의 公醫 산파를 動員하여 貧村山間面 無醫面을 巡廻하여 母子衛生을 啓蒙하고 産前 産後의

產母診療와 幼兒 保護에 힘쓸 것이며 極貧者의 治療費는 無償으로 할 것이다.

(2) 各市, 邑, 面은 產母의 健康을 위하여 食糧을 提供하고 嬰兒用 옷감도 줄 것(極貧者에 限함)

2. 就學前 어린이를 위한 시책

父母를 지닌 어린이라 할지라도 國民學校에 入學하기까지에는 安全하고 健康하게 자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託兒所(Day Nursery)

工場地帶와 農村地方에 設置하여 삶에 골몰하는 母親과 그 乳兒의 幸福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작은 地域 이웃 몇 坊을 中心하여 하나씩 만들게 地方公共團體는 이를 권장할 것이다.

(2) 保育所 혹은 保育學校(Nursery School)

2歲~6歲的 幼兒의 愛護를 目的으로 村落 單位(洞)로 設置하고 保社部 감독지도하에 公立으로 두되 社會施設이니만치 私立이라도 福祉法에 의하여 경비보조를 줄 것이다.

이곳에서는 日常生活의 習慣과 態度가 學習 될뿐 아니라 손 발 씻기 옷 입기 먹고 자기 배설등도 보살피 주어야하고 職員은 訓練받은 有資格者를 配置하도록 한다.

(3) 幼稚園

現下 우리 法으로는 文教部 所管下에 있으나 장차 福祉法 制定時는 保育學校와 같이 取扱하여 設置운영 되고 年齡에 따른 保育 內容을 달리 하도록 한다.

幼稚園이 결코 書物學習(Book learning)을 하여 天才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有產者들만의 剩餘施設化되어도 안되는 실로 最大多數의 어린이들의 幸福을 위한 存在가 되어야 할 것이다.

保育所를 겸한 幼稚園의 環境施設은 國家가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施設面으로 볼 때 넓은 敷地속에 綠地가 있고 遊園地를 만들수 있으며 煤烟의 被害를 받지 않는 곳을 擇할 것이며 保育室은 play room을 겸하고 벽面에는 그림책을 비치한 어린이 도서실이 되도록 하여야 되고 그림책들은 完全開架制(open shelf)로 한다. 浴室 및 洗濯室 그리고 醫務室은 반드시 만들고 戶外的 화단과 pool 그리고 놀이터도 있어야 한다. Pre-elementary Education 한 形式인 保育幼稚園의 設立 運營은 자꾸만 늘어가는 大學에 比하여 너무나 지지 부진하다. 어린이를 위한다는 새로운 감각으로 開拓하여야 겠다. 지금도 宗教단체가 若干 운영하고 있고 收容能力은 아주 적다. 앞으로는 福祉, 文教政策으로 많은 幼稚園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4) 어린이 놀이터(兒童遊園地)

都市와 村落을 막론하고 安全하고 新鮮한 곳에 地形

을 利用한 놀이터를 만들고 管理責任을 里長이나 部落 靑年에게 맡기면 운영은 쉽게 될것이다. 遊園地 시설로서는, 미끄럼틀, 廻旋台, 그네, 水平사다리, 低鐵棒 장굴집, 씨 쏘등이 필요하고 넓은 空地를 마련할 것이다. 여기서 어린이들은 뛰고 놀고 한다.

3. 學童을 위한 시책

모든 아동에게 安全한 設備 속에서 滿足할만한 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우리 社會에서는 家庭貧困, 其他 事情으로 6年の 義務教育을 받지 못하는 兒童이 많으며 就學兒童이라 하더라도 教室不足 教育施設이 貧弱하여 充分한 교육을 못받고 있다.

(1) 學童에게 學用品의 供給

義務教育을 하는 國民學校에서는 授業料를 받을수 없다는 教育法精神에 立却하여 어떠한 形式이든 補助금을 징수 하지 말것이고 教科書만은 無償으로 供給되어야 하고 其他 學用品도 극빈가정의 子女에게는 主도록 한다. 이러함으로써 취학률이 높아질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덜 수 있다.

(2) 給食

많은 絕糧農家의 아들 딸들이 缺食을 하고 登校할 때 教育위원회는 給食 대책을 세워 굶주리지 않게 할것이다.

衣服이 너무나 남루한 學童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것이다.

(3) 事故防止

老朽教室은 尙舊 學童을 殺傷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의 修繕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交通事故 溺死 火傷 災害 墜落 爆發物 事故등 위험한 環境物을 事前에 정비하여 未然 防止에 노력할것

(4) 健康진단과 양호

各種 急性 전염병의 예방 피부병 토라코마 결핵성 질환의 예방 및 早期發見과 適切한 治療를 위하여 校醫와 養護教師는 全心全力을 다할것 虛弱兒 病에 걸린 兒童은 校醫의 治療를 받게 할것 회충등의 구제 구호 약품의 비치도 완비할것.

(5) 獎學金制度的 擴充

教育法 158條에 의하여 才能있는者로 經濟的 理由로 義務教育 以上の 교육을 받기困難한 者는 獎學金을 國家가 주어서 많은 兒童이 중·고등 대학교육을 받도록 할것이다.

(6) 어린이 虐待禁止

教師 및 父母 兄弟에 의한 어린이 虐待(重한體罰), 폭언, 隣近 不良패로 부터의 保護는 國家가 責任 질것이다. 지금 國會에서 審議中에 있는 暴力行爲等 處罰 特例法案에서(婦女子 또는 14세 以下の 어린이에 對하

여 傷害, 暴行, 逮捕와 監禁등의 罪를 犯했을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는 것은 좋은 條文이고 이가 通過되고 強力히 執行되어야 할것이다.

4. 兒童館 설치

각 市, 郡 單位로 아동관을 설치하여 視聽覺教具 특히 教育映畫, 슬라이드의 上映, 音樂鑑賞, 오락시설의 利用을 하게할것이며 이 속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마음대로 열람하는 (Open shelve)로 하고 司書教師지도 下에 童話會 독서회를 열도록 할것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시의회와 教育위원회가 運營하여 市內 各 國民學校의 독서지도를 하게 하면 經濟적으로도 裨益을 볼수 있을것이며 映畫教育의 정상화 音樂교육의 共同利用에 있어서도 이 아동관은 도움을 줄것이다. 우리나라 國立도서관에 唯一의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其他 都市, 地方에는 殆無한 形편이다.

추우나 더우나 좁다란 편지나는 길목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웅크려 앉아있다. 조잡한 내용의 만화를 보느라고 골몰하다.

덴마크에서는 아동도서관이 175개소나 있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꾸고 있다니 부럽기만하고 우리나라 政治人들 行政家들의 一大분발이 요청 된다.

5.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시책

(1) 특수학교

教育法 144條 145條에 依하면 盲者, 聾啞者, 精神薄弱者, 팔다리 切斷者, 곱사등에 대하여도 教育을 받을 權利를 주었다. 이들 不具兒童도 國民이요 사람언바에야 國家는 이들을 教育시킬 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 不具兒童에게 道 單位의 1校 以上の 특수학교에서 國民학교 中학교에 準한 教育과 그 實生活에 必要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고 規定되어있다. 그러나 오늘의 現況은 規定과 멀고 실시되어지지 않고 不具者數의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國家와 公共團體가 優先적으로 마련하고 곧 실시할것이다.

그리고 各 學校에서는 身體虛弱兒, 性格異常者, 聾者 및 難聽者, 盲者 및 難視者, 言語不自由者, 精神薄弱者 其他不具者를 위한 特殊學級을 두고 治療와 教育을 겸할것이다.

6. 不過兒童을 위한 시책

棄兒, 孤兒, 戰爭孤兒, 貧兒에 對한 育兒事業은 가장 重要한 福祉事業中的 하나이며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1) 육아원

國立三育學園을 비롯하여 全國에 500여 個所의 施設이 있고 57,000여명을 收容하고 있으나 99%는 宗教團體, 社會事業家 其他 特志家들의 손에서 運營되고 있고

物價고로 運營이 갈수록 艱難한 것이다.

兒童福祉法의 制定이 時急하고 시설의 擴充 改善 管理者의 資質向上 費用補助가 要望되는 것이다. 이 育兒園 事業은 良心的인 宗教家가 담당한다 할지라도 國家의 財政 後援이 뒷받침 하고 모든 國民의 協助 없이는 圓滿한 成果를 올릴수없는 極히 艱難한 事業이다. 一時的인 溫情이나 慈善이 아니고 國家의 의무로 그들을 길러야 할것이다. 아무리 적은 市, 邑, 面이라도 그 地域 혹은 인근 行政區域과 合하여 適切한 育兒施設을 마련하고 不遇兒童을 養育할 것이다. 設備(敷地와 農地) 收容家屋 治療의 設備 食堂 運動場이 充分하고 兒童取扱이 훌륭하여 衣食生活뿐 아니라 精神健康도 유의할 것이다. 院의 運營은 民主的으로 運營되도록 그 地域社會의 各 단체의 代表者 宗教人 教育者 醫師 理髮組合長들까지 손잡고 協力(後援)을 얻어가며 運營할것

委託과 養子를 希望하는분에게는 그 家庭을 잘 검토하여 마길것

隣近 國民學校 및 中등학교의 協助下에 園兒의 教育에 丹精을 기할것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授業料 免除 措置를 할것)

院長 以下 職員은 正心적 物質的으로 우대할것 年長兒童의 職業輔導와 退院指導는 地域社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시할것

(2) 職業輔導學校

家庭貧困이나 其他 原因으로 國民學校를 中退한자, 國民學校밖에 教育을 받지 못한 兒童 또는 全然 教育받지 못한 年長兒童들을 위한 職業지도를 하는 기관을 각지에 設營해야 한다. 兒童들에게 낮에는 食母 구두담이 신문배달 등을 알선하고 밤에는 글을 배우게하며 나아가서는 生計를 유지 할수 있는 職業을 보도하고 취직을 알선해야 한다.

都市에 있는 많은 아동은 우범少年이기도 하니 이들의 生活교육은 政府의 援助下에 꾸준히 힘차게 展開되어야 할것이다. 이런 기관은 本人과 그 家族에 希望을 줄 뿐 아니라 그 고장의 少年犯罪를 豫防할 수 있는 것이다.

7. 兒童相談所(Child Guidance Clinic)

서울에 있는 兒童相談所를 본따서 각도에 1個所以上을 설치하여 兒童의 問題를 相談케하고 兒童의 健全한 成長을 기하도록 한다. 兒童의 문제는 그 家族 學校 教師 및 兒童福祉事業家에 每日 같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 指導(相談)領域은 發育狀態 非正常的인 行動 反社會的 行爲 學力 增進과 進學問題 등으로 醫學的 心理學的 教育學的 社會學的 精神衛生學的見地에서 그 專

門委員들의 team work로 判定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 郡 單位로는 專門委員이 없어서 일을 볼수없으니 設置도 困難하다. 앞으로 이런 方面을 研究하는 精神科醫師 專門社會事業家 心理學者들을 養成確保하는데 努力할 것이며 年次的으로 큰 都市에도 設립하도록 豫算을 세울것이다 (日本은 120의 相談所를 가지고 있다)

8. 少年法院

4292년도에 새로운 少年法이 實施되어 우리 少年法院(Social Worker)에서는 精神科醫 心理學者 社會事業家가 專門的인 立場에서 調查한 것을 綜合 診斷한 結果에 의해서 少年犯을 處遇하는 과정을 맑기로 되어 있다. 少年法院은 少年非行(Delinquency)를 다루는 兒童福祉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豫算을 많이 確保하고 鑑別施設을 完備토록 할것이다. 少年犯罪 對策에 있어 少年法院의 기능 發揮에 期待하는 바가 크다.

9. 兒童福祉法定

兒童憲章 제정 公布나 同胞愛호소나 外國의 救護物資에 依存하는 福祉시설로서는 所期의 成果를 올리기 힘들다.

政府는 아동福祉에 必要한 機關施設(兒童相談所 育兒院 兒童館 不具兒施設)과 職員 그리고 費用을 規定한 兒童福祉法을 速히 制定 실시 할것이다.

10. 民衆啓蒙(國民운동)

兒童福祉事業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성과를 올릴 수는 없다. 또 短時日에 올릴 수도없다. 長期的인 啓蒙이 必要하다.

啓蒙의 組織上으로는 政府에 「靑少祉福祉委員會」를 두고 國會內에도 「少年福祉專門委員會」를 가질것이고 各市, 邑, 面에도 그 地域의 醫師 社會事業家 警察署長, 市議員, 教育委員, 教育者, 宗教人을 망라한 「兒童福祉委員會」를 둘것, 여기서는 兒童衛生, 兒童虐待, 生活保護등등에 대한 啓蒙對策을 세울것이다,

教養講座를 두어 成人啓蒙에 힘쓸것,
婦人강좌, 成人강좌, 교회부인회 강연회, 育兒강좌 가정교육강좌등이다.

宣傳面으로는 신문, 방송, 잡지, 영화를 통한 大衆啓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것,

行事面으로 볼때는 健康兒 표창의 擴大, 어린이운동회 어린이날, 눈(眼)의날, 치아보호주간등에는 어린이학동에 무료 치료를 강구할것,

兒童福祉功勞者表彰을해마다 실시할것
이상의 事業은 現保社部의 兒童課의 기구로는 다할수 없으니 兒童局으로 昇格시킬것,
各 警察署에서는 兒童指導係가 設置될것,

三 結 論

以上の 各種 施策 遂行에 있어서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政府의 福祉關係 豫算이다. 現 保社部예산이 政府總예산에서 차지하는 미미한 比率로서는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나 政府는 福祉國家建設이라는 理念을 세우고 推進하면 成果를 볼수 있는것이다. 200만이나되는 失業者와 絶糧農家問題는 말할것도 없고 農家 生活水準은 너무나 낮다, Engel法則 그대로 主食費는 總收入의 71%나되고 (水原中央農業實驗所조사) 文化財 구매력이나 保健시설 利用이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새政府는 이러한 現實을 直時하고 모름직이 20世紀의 要請인 福利國家 社會國家 경제國家 扶養國家의 구실을 다 하도록 果斷性있는 施策이 있어야 할것이다,

兒童은 오늘의 민족의 꽃송이오 내일의 기둥이다, 그네들이 要求하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의 조국을 위하여 愛護하여야 한다,

眞實로 (環境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環境을 만든다) 우리나라의 現實은 어린이에게 不幸을 주고 있다 成人들의 理性과 努力으로 兒童福祉社會를 건설해야 할것이다.

이 事業은 政府와 公務員 그리고 社會事業家들이 모두 教聖페스타롯치가 孤兒學校를 經營하면서 같이 먹고 굶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랑 끈 人間愛를 본받아 施策을 세우고 실천하는 때에 좋은 結實이 오리라 고 確信한다.

參 考 文 獻

世界人權宣言
兒童의 權利에 關한 제네바宣言
美國의 兒童 憲章
日本의 兒童 憲章
우리나라 어린이 현장
당신의 어린이(your child from 6 to 12)
덴마크更生운동사
兒童保護教育提要

少年犯을 어떻게 막을것인가?
머릿받는 十代
韓國年鑑
의학대사전
교육대사전
兒童福祉法
社會교육(日本교육大學)
灰色의 十代(서울法大犯罪問題研究會세미나)

浮浪兒 善導의 具體的 方案

李 健 明

舊政權 때에도 浮浪兒 善導에 對한 輿論이 多았었
지만 別 다른 施策이 없 事實 上 放任 狀態 였 던 것 이 實
態 調查가 進 行 되 고 善 導 策을 多 角 度로 講 究 하 고 있
은 비 록 晚 時 之 歎 과 아 직 괴 도에 들 어 있 다 고 까 지
는 않 될 지 라 도 政府의 積 極 的 인 施 策 的 一 貌가 窺 知 되
어 慶 賀 함과 아 울 러 支 持 를 아 끼 지 않 는 바 이 다.

一 言 一 語로 浮 浪 兒라 하 지 만 種 類가 多 樣 하 다 無 依 無
托 한 乞 食 兒 有 父 母 하 면 서 乞 食 或은 구 두 닦 기 펜 등
孤 兒 院에 收 容 되 어 있 으 면 서 心 문 팔 이 담 배 장 수 性 格
上 的 欠 陷 으로 또 는 友 交 關 係로 不 良 化 된 兒 童……等
等 各 樣 各 色이 있 을 것 이 다.

別表 A

곳 全南S市 某 小都市 某小都市 (人口 七萬交通의
、 要地)

때 4294.4.2부터 4.5까지 日間

生 態 別

결 식					
유리증기			3	2	
극장청소 부름	1		1	1	
펜 푸					4
담배, 곰, 팔기	2		8		
구두닦기	17		7	2	
어린 학童 들의 金錢 또는 물품 갈취				2	2
절 도					
쓰 리					
종 別	고 家 아 境 원 環 경	無 依 (無 依 無 托) 父 母	有 生 父 計 母 困 하 나 難	有 生 父 計 母 普 하 고 通	無 寄 父 母 하 나 食

全國 的 人 統 計 數 字 是 算 不 出 來 的 有 何 程 度 人 的
實 態 傾 向 을 알 아 보 고 자 筆 者가 居 住 하 는 地 方 的 現 況
을 別 表(A)와 一 同 調 查 해 보 았 다. 全 國 的 으로 不 論 何
리 가 된 것 이 되 겠 지 만 實 態 把 握 上 的 一 面 이 安 되
리 라고 斷 言 할 수 도 또 한 없 을 것 이 다.

註①. 筆 者가 目 擊 한 事 實 에 限 한 것 이 기 故 而 實 際
的 인 數 字 是 몇 배 많 을 것 이 다.

② 年 齡 別 및 性 別 로 는 12 歲 ~ 18 歲 까 지 인 少 年 들
이 며 全 部 男 子 였 음 한 人 이 目 擊 한 事 實 이 以 外 同 樣
의 頻 度 가 出 來 때 特 히 大 都 市 中 以 外 說 明 不 出 來 也.

이 들 이 全 部 善 導 를 要 求 하 려 하 는 浮 浪 兒 들 이 라 不 可
忽 視 的 인 對 象 的 幅 度 가 寬 闊 하 고 또 한 많 다.

二.

이 들 의 善 導 方 案 을 論 하 기 에 先 次 實 態 調 查 를 做
고 土 臺 上 에 具 體 的 方 案 을 세 워 보 기 로 하 겠 다.

B1 原因(遠因) 및 問題의 種類別

성 別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其 他	16	13	26	21	57	43	18	11	117	88
年 少 者, 갈취	8		10		13				31	
喫 煙 시 능					1		5		3	9
浮 浪	12		18	12	24	16	2	2	7	63
難 暴 또는 傷 害	3		8	3	28	6	16	7	2	57
詐 欺 (父 母, 級 友 에 게)	9	7	7	8	43	22	7	3	2	68
竊 盜	7	2	16	6	31	22	2			56
計	55	22	85	47	197	109	50	23	14	1401
문 제 種 류	고 아 원 인	無 生 계 放 任 父 母 等 不 格	生 計 困 難	生 計 普 通	良 放 任 父 母 等 不 格	보 통 가 정	惡 友 유 혹			計

※ 年 齡 別 로 는 5·6 年 이 대 半 數 이 였 으 므 로 11~13 歲 가
되 겠 음.
※ 1 年 間 的 延 統 計 임.
※ 擔 任 및 週 番 先 生 에 게 提 供 된 것 이 다.

B₃ 知能別

上 位			
中 位	8	6	14
下 位	21	19	40
지능 적陷	2	1	3
지능 性別	男	女	計

B₂ 近因別

종 류	男	女	計
영 화 를 고	3		3
만 화 를 고	2	1	3
하 고 싶 서	3	1	4
怠 惰	2		2
常 習	3	1	4
買 喰	19	14	33
惡友 유후	2	1	3
부러 워 서	3	3	6
不 明	6	2	8
計	43	23	66

※ 위는 B₂ 조사 학급中 問題的 事件을 일으킨 兒童들의 學習하는 位置이다.

※ 1位부터 20位까지는 上位 21~60 中 61以下 下

※ 在籍數는 大概80명以上임

※ 위는 6年 男女내 學級 間의 遠因에 對한 近因의 一例임

再言하거나 範圍가 협소하고 一部 地域 그나마 部分的인테에 局限되었기 때문에 信憑度가 낮겠으나 하나의 傾向만은 잡을 수 있으리라 믿는 바이다.

이 調査表는 4千名의 在籍이 있는 某國民學校의 一年間의 生活指導決算에서 얻은 統計와 筆者가 直接 調査한 것이다.

1. 原因別 調査表 B₁ B₂ B₃

B₁의 表에 依하면 結局 좋은 環境 속에 자라야 한다는 至極히 平凡한 結論을 내릴 수 있다. 養育不良한 家庭의 어린이들의 頻度數가 斷然 優勢하고 있다. 더욱이 그런 家庭은 全體의인 百分率로 볼때 아주 높은 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次位가 孤兒院 어린이들이다.

問題別로 보면 詐欺 即 父母를 속여서 金錢을 얻는 다던가 級友를 속여서 어떤 物品을 갖는 다던가 하는 數의 나쁜 習性이다. 次位가 學習에 실증이나서 或은 教師의 꾸지람으로 學校에 오지 않고 登校 途中에 惡友들과 뽕쓸러 놀러다니는 일 級友의 學用品 또는 金錢을 竊取하는 버릇 等等이다. 이런 習性은 成長의 度에 따라 加增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진데 善導에 特別한 留意를 하지않고서는 안될 일이다.

B₂의 近因別로 보면 모든 原因이 慾求의 不充足에서 음을 理解할 수 있다.

即 買喰이 斷然 많음은 B₁表와 比較해 놓고 볼 때 도리어 측은한 感이 든다. 買食, 부러워 서…… 現實社會의 어느斷面을 보여주는 것 같은 感이 不無하다.

C₁ 希求別 調査表

문항別	문항	별론없음				별론없음				정치가	5	보통이다	11		
		섹일 섹일한꾼				돈별이				예술가	2				
		용감한 사				맛있는 것 을				공무원	7				
아무데나	12	공부 잘 하 램				유 흥				농업	8	예배한다	8		
		사운 생 활				기 술 습 득				공업	11				
		애 정 있 는 활				진 학				상업	31				
지 골 도 시	62	공부 잘 하 램				기 술 습 득				농업	8	싫어한다	31		
		사운 생 활				진 학				공업	11				
		애 정 있 는 활				진 학				상업	31				
一문	어디에 살고 싶은가	二문				三문				四문		五문		六문	
		제일 부러운 것은 ?				하고 싶은 일은				제일 싫은 일은		장래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남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 주는가	

C₂ 道德的意識

個人 家庭 社會 國家	문항	좋은 일	나쁜 일	보통 일	
		1. 동무는 내의를 두개 갖고 있다 날씨가 추운날 너는 내의가 없어 말을 하지 않고 동무것을 빌려입었다 줄생각이다.	17	11	22
		2.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일은 남이 욕을 하건 비웃건 간에 해치우는 일이다.	16	3	31
		3. 네가 갑자기 결렸는데 어머니의 일하시는 것을 도와드렸다.	41	9	
		4. 집안 사람에게 꾸중을 들은뒤에 꾸중을 한 사람의 말을 잘 안들어 주는 일이다.	6	17	27
		5.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 길가에서 용변을 했다.	18	12	20
		6. 날씨가 더워서 길에서 옷옷을 벗고 있었다.	23	6	12
		7. 미국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 물건 값보다도 좀 더 받았다.	42	3	5
8. 집이 가난해서 밀주를 해서 생활을 하는 일이다.	13	15	22		

B₃의 知能別로 보면, 知能이 낮거나 또는 學習에 興味가 적은 兒童들이 問題의 事件을 많이 일으키고 있음을 如實히 알 수 있다. 學說에 依하면 犯罪者들의 85%가 知能的 或은 身體的 欠陷이 있다는데 그와 比較해서 는 안 될 것 인지…… 研究를 要할 問題라 하겠다.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要求하고 있는가의 精神的 慾求面에서 調査해본 것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C₁ C₂表

이것은 A表의 生態別 調査時 筆者와 對象者와의 直接 問答에 依한 것이다.

C₁表의 一問은 都市集中의 傾向이 보이고 “시골에 가서 뭘하고 삽니까?”하고 되려 反問을 하는 兒가 많았다. 二問은 孤兒院生은 역시 父母의 愛情있는 家庭生活를 希求했고 “사치”도 같은 意味의 것이라 看做된다 3·4·5問엔 別로 分別이 안 보이고 六問에서 安定感이 없는 것을 곧 알 수가 있다.

C₂의 道德意識은 善惡의 分別, 判斷을 못한다고 概略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三.

以上の 斷片的이고 部分的인 것이나 實態把握의 資料를 通해서 當面된 몇가지 問題解決點을 發見해낼 수가 있다.

첫째로 廣範圍하고 正確한 實態把握을 實施해서 그 對策을 세우고 둘째로 社會的인 共同責任으로서 輿論喚起와 善導 意識에 對한 零圍氣의 造成 셋째로 浮浪兒의 收容方法 넷째로 成果를 얻을 수 있는 善導方案의 樹立等이다.

(1) 實態把握과 그의 對策

前記된 地域的이고 部分的인 實態調査書만 갖고도 여러가지 問題點이 나오는데 하물며 全國的인 實態調査를 仔細히 그러고 研究의으로 實施한다면 여러가지 具體的인 對備策이 나오리라 믿는다. 調査事項 및 實施方法에 對해선 專門的인 施策이 나오리라 믿되 筆者의 愚見을 말한다면

1. 調査事項(二重되므로 省略…… 조사서 A B₁ B₂ B₃ C₁ C₂)

2. 調査方法 및 對策

中央에 行政家 및 學者로 構成된 浮浪兒善導委員會를 두고 道市郡 洞面을 거쳐 初·中·高校 教師 및 洞面의 坊里長을 通해서 浮浪兒의 種類 別로 索出해 낸다

即感化院에 가야 될 兒와 收容해야 될 兒와 善導를 要해야 될 兒로 區分한다.

收容所에 收容해야 될 兒는 後記하기로 하고 要善導兒는 專門委員會에서 作成한 原因別 및 善導調査書(例를 들어 C₂表)에 依해서 精神衛生面에서 調査를 實施한다.

이에 依해서 地域的 實態에 알맞은 對策을 세우고 各級學校에서는 教育課程에 또는 善導體系案에 指導方案을 세운다.

(2) 輿論喚起와 社會的인 善導意識에 對한 零圍氣造成

무릇 善導는 學校나 個個 家庭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더욱이 거꾸로 선 사람이 바르게 선 사람보고 “네가 거꾸로 섰다”고 하는 現實 零圍氣에서 어떻게 善導가 되겠는가 善惡意識의 判斷조차 못하고 있다는 證明을 調査表 C₂가 말 해주고 있다.

어느 外國雜誌에서 본 이야기인데 寄稿者가 런던에 가서 電車를 탔더라는 것이다. 어느 停留場에서 高等學生 數名이 乘車를 하더니 高聲으로 雜談을 지껄리고 있자 車掌이 오더니 “애 學生들! 車中에서 그렇게 高聲으로 떠들면 紳士가 못되!”하고 젊잡게 나무래니까 곧 조용해 버리더라는 이야기를 읽었다. 이런 高度로 發達된 文明國家의 이야기겠지만 이만큼 社會的零圍氣가 造成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본까지는 못댄다 손 치더라도 言論人 文化人 할것없이 舉族的으로 一環된 指導意識을 가지면 꿈 같은 이야기만도 아닐 것이다 新生活運動과 아울러 靑少年善導運動을 일으켰으면 하는 것이 決코 筆者만의 所願일까 特히 大學 高等學校의 學生 自治團體에서 불으시고 일어났으면 한다.

이것은 바로 民族正氣를 찾는 데에도 바로 도움이 되려니 믿는 바이다.

(3) 浮浪兒의 收容問題 및 善導의 具體的 方法

여기에서 收容問題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떠돌아 다니는 浮浪兒 또 하나는 孤兒院에 收容된 孤兒들이다 後者부터 論할 때 現在 財政的인 뒷받침이 모자라 많은 孤兒院 院兒들이 구두뭉기 신문팔이 겸 담배장수 등으로 半 自活을 하고 있는 곳이 許多하다. 뿐만이 아니라 개거의 孤兒院兒들이 愛情에 굶주리고 창자에 굶주리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心身兩面

에 缺陷 있는 成長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조사표 B₁ B₂ B₃ C₁ C₂와 같이 不幸한 길을 밟게 되니 寒心之事라 하니할수 없다.

筆者는 “유-트피어”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方案을 세웠으면 한다. 浮浪兒(乞食兒)도 같이 收容한다.

即 國家에서 國家公務員으로 指導要員(收容者와 同居 指導)을 採用하고 또 大 中 企業體에서는 企業의 收益 程度에 따라 若干名식의 孤兒 指導社員을 採用케 한다. 月4萬圓베이스의 俸給으로 指導委員 1人當 5名식을 親子息 또는 親兄弟 와도 같이 起居를 하면서 學校에 就學시키고 집에 돌아 와서는 養蜂 버섯기르기 造林 事業 양계 양어等等 技術의 習得과 아울러 國家의 產業 復興事業에 從事케 한다. 調査表 C₁에 反響된 바와 같은 輕薄한 人生觀을 고치게하고 勤勞精神과 趣味의 助長과 그런 勤勞를 通해서 家族的으로 맺어진 情緒속에서 兄弟愛가 생기고 비뚤어진 性格과 情緒가 교정 되어가지 않을까 愚考되는 바이다.

一例를 養蜂에 들어 처음 그들指導員의 俸給에서 每月 1통식 사들여 5個月 後에 5통이 되었다고 한다면 3年 뒤엔 自然증가로 4.5통이 될수 있다. 3年뒤에 4.5통에서 收入된것이 통當 5斤의 꿀을 탄다고 가상하면 百餘萬圓의 收益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3.4年 後에는 그들끼리 自活하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뿐만인가 버섯 조립 양어 채소 等等 5.6年 後에는 充分히 自給自足 해가면서 獨立된 家庭人으로써 營爲해 갈수 있는 問題이다.

勿論 이것이 卓上論이요 實際에는 애로도 많고 成功을 前提로 한것과 같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國家公務員 또는 社員으로써의 보장이 있는 以上 多少의 成不成功이야 二次的인 問題이고 創意性과 誠意만 있으면야 뜻을 이룰 수는 있는 問題이다.

現在 筆者가 알고 있는 範圍內에서 前記와 같은 方法으로 財力을 얻은 사람이 數名 있다. 筆者 또한 其中의 1名이다. 要是 그런 方法으로 成就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數年 後 國家公務員職으로부터 社員職으로 부터 解職이 되더라도 5名の 兒童과 같이 自立

할수 있게 土台를 잡고 또한 그 兒들도 그러한 生活力과 技能과 家族的 愛情속에서의 成長을 圖謀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情熱的인 青年學士들을 善導指導委員으로 2.3個月 特殊 訓練을시켜 5名식의 浮浪兒를 데리고 農村 地域으로 내려보내서 家庭生活를 營爲하게 한다. 더욱이 말끔한 山野 값 싸게 사 들일 수 있는 이런 곳을 사들여 造林事業 果樹재배等단을 시켜도 몇해 뒤에는 自給하게 되고 指導要員도 必要없게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于先 1石3鳥의 成果를 얻을 수가 있다. 孤兒의 解決 失業者의 救濟 그리고 國土開發事業等等이다.

全國의 大 中 企業體에선 2.3名식의 社員을 增加시킨다고해서 事業에 큰 支障이 오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만 한다면 孤兒院 속에서 때도 굶기전 부터 많은 人員이 차디찬 規律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지 않더라도 解決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實質的인 救護策만이 그들의 善導에 푸러스가 되지 굶주림과 冷待 속에 예수의 말씀이 부처님 공자님의 말씀이 또는 주먹이 善導에 푸라스가 되리라고 추호도 믿어지지 않는다. 要善導對象者는 前述했으므로 省略하고 當務者및 社會意識層의 明徹이 있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五.

机上에서는 天下도 支配할수 있는 것이라란 實踐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더욱이 經財的인 困境이 莫甚한 現實에서 이런 事業이 容易하게 되어 갈리 없지만 내 子息을 생각하고 來日의 世代를 위할진데 寸時도 뒤로 미룰 性質의 것이 아니다 只今 이 時間에도 내 子息이 國家의 來日이 좀 먹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안드는가.

教育者는 보다 科學的인 土台위에 한번 더 돌봐주고 文化人 言論人은 그들에게 눈을 한번 더 돌려주고 爲政者는 파스한 손길로 한번더 밀어주고 社會人은 한번 더 그들의 여윈 머리를 쓰다듬어 明朗한 내일의 太陽이 떠올라기를 빌며 끝을 맺는다.

精神薄弱兒의 學習指導와 作業指導

朴 壽 熙

精神遲滯兒를 指導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具體性과 心身狀況을 알아야 할것이다. 다음에 이것들을 大略 추려보면

精神遲滯兒가 一般的으로 가진 具體性 이들 精神박약아는 心身に 어떠한 型的 變質의 異常의 缺陷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特異한 點을 充分히 究明하여 把握치 않으면 適切한 指導를 할수 없다.

정신박약아는 다음의 條件 中 하나 이상이 해당하는 高로 指導하는데 있어 個個人的 特性에 맞는 指導가 아니면 안 된다.

1. 知能에 關한 問題

學習能力이 極히 劣等하여 指導者는 經驗과 心理學的 醫學的 精神衛生的 立場에서 엄밀한 조사선택을 할것이며 標準化한 知能測定法에 依하여 IQ를 求하여 知能이 아주 낮은 者는 어떤 型的 特別指導의 對象으로 한다면 知能檢査 外에 이에 屬하는 各種의 方法에 依한 測定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社會成熟度도 調査하여 주는것이 좋다.

2. 行動上의 諸 問題

A. 性格上의 異常性

1. 感情的으로 異常한 傾向의 者, 恐怖心이 많은 사람, 異常한 內向性의 者 수치심이 過強하여 極度の 고독
2. 思考上의 障害의 것
極度の 空想 注意가 散漫하여 집중성이 없다.
3. 意志의 障害가 있는 것
집중성을 잃은 者, 極도로 意志가 없는 者
4. 反社會的인 異常을 갖는 것
反抗心이 強하여 순종하지 않는다. 極端의 嘘言裏面의 二重人格者, 盜癖・잔인성・ 파괴성이 많은 者

B. 睡眠의 障害

수면不良 夢中遊行

C. 食物嗜好에 特別異常 있는 者

極度の 貧食, 極度の 暴食, 偏食의 極甚

D. 言語의 障害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는 것, 혀가 지나치게 긴것 發音이 強한 것

E. 發作的인 障害

몽상(간질) 失神發作이 일어남, 狂亂發作, 其 外의 모든 發作

F. 神經症 및 神經的인 身體 症狀

甚한 히스테리, 心氣症, 強迫觀念, 夜尿症

G. 精神病

分裂症 其他 精神疾患의 症狀이 있는 것

以上과 같이 精神박약아는 精神的 身體的으로 여러 가지 異常이 있는것이어서 遺傳的 疾病의 外傷的인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이런 意味에서 心身상황조사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調査는 家族歷調査 既往症調査 家庭狀況調査 現在狀況調査 등을 하여 이들의 指導資料를 作成하여 이것을 참고 삼아 學習指導와 作業指導를 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 精神박약아들이 全體的으로 知能이 낮으나 部分的 能力이 正常人 以上으로 잘 發達된 點도 있다. 例를 들면 薄弱兒라 할지라도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손재주(工作 기계 다루기) 音樂에 있어 普通兒 보다 잘 하는 例가 往往 있는 것이다 비록 못난사람이라도 반듯이 쓸모가 있다. 다시 말하면 精神박약아라도 個個人的 특기가 있으니 우리는 이 특기를 發見하여 恐怖心과 劣等感을 없애버리고 氣分을 明朗하게 말은 똑똑하게 動作은 재빠르게 하게 해주며 發見된 특기를 길러주는 것이 指導 目的의 하나이다.

以上 그들의 具體性 心身狀況調査 특기등을 참고하여 指導班을 編成하여 指導하여야 한다. 指導班 編成을 보면

一. 生活指導班

生活指導班의 指導는 生活의 基本習慣 形成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即 運動機能(步行) 言語 行動 옷입는 行動 용변습관 食事行動 沐浴 및 세수습관 등을 反復 지도한다.

二. 特別指導班

一般的인 基本습관 行動은 形成되어 있으나 學科指導를 할수 없고 音樂이나 律動으로서 感覺機能 訓練 即 완구로서 오락 中 興味를 中心으로하여 事物의 판단훈련 청각훈련 물건다루기等 運動機能을 다시 한번 반복 지도한다.

學習指導

學習指導를 함에 있어서는 學科特殊班을 生覺하지 않을 수 없다. 學科特殊班은 文字나 數字 등을 배울만큼 抽象的인 能力이 發達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學科指導를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事物을 直接 보고 言語와 數의 概念 兒童과의 關係를 理解시키려는 班이기 때문에 特殊班을 따로 編成할 必要가 있다. 그 理由로

서는 普通學習班과 같이 한 班에 編成을 하면 이 兒童 때문에 他兒童까지 教育計劃 全體가 많은 支障을 갖여오기 때문에 學習指導에 임하기 前에 指導者가 心理學的으로 分析하여서 이를 利用 내지 活用하면서 家庭及 院內外 隣近의 地域社會에 對한 生活에 必要한 知識과 技能을 指導하여 學習指導하는데 豫備的인 指導를 하는 것이다.

다음에 普通學級 學習指導는 指導하는데 있어 一般社會兒童 보다 身體的으로나 知能的으로나 劣等하므로 記憶力과 適應의 程度가 낮아서 몇번식의 반복관계로 學習進度가 늦기 때문에 學習 指導日案을 充分히 研究하여 全體的인 計劃을(各個人에 適應하는 生活力, 발달하는 身體的 故障, 興味를 돌굴수 있는 明朗한 유모아, 兒童의 能力 每週 學習時間 數)하며 指導方法은 每日 一貫한 計劃 밑에 실행하여야 한다. 即 같은 學級은 每日 같은 時間에 行하여야 한다. 例하면 月曜日 첫 시간에 國語면 每週 그 時間에는 國語를 指導하며 그 時間에 다른 과를 指導하여서는 안 된다. 正常兒에 있어서도 가끔 혼란을 갖으며 正常的인 수업 같은 氣分이 나지 않으니 精神薄弱兒는 特別히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國語를 指導하는데 있어 같은 教材로서 每日 같은 方法으로 機械的인 指導를 하면 그리 좋은 成果를 기대할 수 없다. 其外 各科目도 充分한 時間을 주어야 한다. 精神薄弱兒는 進度가 늦으며 能力과 適應性 등이 各者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教育過程의 偏成은 教育活動 全體의 計劃을 適切히 研究하여 다음의 點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學力中心의 教育觀 또는 人間觀에서 벗어나 실적인 生活能力者의 形成을 教育의 中心目標로 할 것
2. 教科指導에서 生活指導로 活動方面을 指導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3. 指導法을 教科中心에서 學習活動을 中心으로 하는 綜合學習으로 이끌어 나갈 것.
4. 個人的 差를 重視하여 個別指導의 조직을 強化하여 個人的 問題를 具體的 實際的으로 解決을 할 時間을 갖어서 조금이라도 適應障害가 되는일이 없도록 할 것.
5. 聽覺 視覺 其他 모든 感覺器官으로 兒童들의 創造的인 눈이 트게하여 그들의 性格에 적응하는 소질을 길러주고 勇氣를 길러 주는데 힘 쓸 것.
6. 指導者와 兒童 間의 거리를 가깝게 하며 親切味 있는 態度에 尊敬을 갖게하고 즐거우게 學習하게 할 것.

이상과 같은 條件을 充分히 研究하여 教育指導를 하여야 한다.

勿論 知能이 低劣하다는 것이 根本問題이라고 하겠으나 그들의 個人差는 여러가지로 많은 特質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知能이 낮은 사람 中에도 比較的 良質의 것은 正常兒에 차츰 가까워 가기 때문에 계단적인 과정을 生覺치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차츰차츰 正常兒와 같은 教育課程을 밝게 하자는 것이다. 正常的인

兒童 即 一般 國民學校 生徒의 教育課程과 같은 程度의 進度는 精神薄弱兒에게는 勿論 바랄수 없지만 出發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終局의 目的은 一般正常兒와 같게 하는데 있는 故로 文敎部에서 指定하는 國定教科書를 中心으로 거기에 達할 때 까지 몇번이고 같은 學年에서 指導한다.

結局 教育課程은 먼저 말한 다섯가지와 教科書에 依하지만 여러 사람의 경험도 참조하여야 하고 兒童들에게 경험도 시켜주는 內容 또 兒童들의 要求에 適合하게 指導하여야 한다. 即

1. 社會生活全體
2. 數 또는 經濟的計算能力
3. 이야기, 듣기, 읽기, 쓰기, 글짓기
4. 예능과에 對한 興味와 能力과 간단한 기술
5. 作業을 통한 경험
6. 家庭生活
7. 簡單한 活動能力
8. 건강한 生活

이것을 具體的으로 말 하면 教科書에 依한 것으로서는 社會生活科는 人間이 社會生活을 必要로한 各種의 能力과 能力과 態度를 育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단지 將來의 社會生活에 對한 準備로서 抽象的인 知識을 준비하면서 現在의 社會生活을 發展시키므로써 그 目的을 達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學習方法도 具體的인 問題를 가지고 따라서 問題解決을 爲하여 여러가지로 活動하는 것이다. 一般으로 社會生活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
2. 人間과 自然環境과의 關係
3. 個人과 社會制度와의 關係를 理解하도록 할 것

自然科의 指導目標은 단지 科學의 原理와 知識을 얻게하는 것보다 事物를 科學的으로 觀察하여 生覺하고 다루는 能力 科學的 器機 器具를 使用하여 作業을 할 수 있는 能力을 育成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科學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는 人間 將來生活에 있어서 問題를 適切히 解決하며 살아갈수 있는 能力을 養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또 實科는 家族生活과 家庭建設의 教育이어야 한다. 家族이 社會의 기초적인 單位요 이 家庭生活에 없어서는 아니 될 能力의 態度 技術習慣을 育成하려는 것이며 實地作業을 통하여 自然에 對한 인식과 社會生活하는데 있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兒童의 興味와 能力을 心理學的으로 考察하여 그들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보고 듣고 하는 具體的 事實 中에서 問題를 解決하여 갈수 있는 能力을 길러야 한다.

以上の 세가지 教科를 包含한 領域은 共通으로 必要한 人間으로서 나가서는 國民의 資質을 養成함과 同時에 具體的인 生活上의 問題를 해결하여 나가려는 特質을 가지고 있다.

다음 國語의 目的에는 말의 解釋과 作文 읽기 듣기 를 지나 이것들로 부터 벗어나서 社會的 要求에 應한

道具로서 言語를 使用하는 能力을 기르는데 있다. 兒童 自身の 言語活動을 主體로하고 그것을 發展시키기 爲 하여서는 여러가지 教材를 選擇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算數도 또한 計算力에 重點을 두는 立場으로 부터 日常 現象에 對하여 數量 形의 明確한 概念을 주고 그와 같은 現象을 觀察 處理하는 能力을 기르고 科學的인 生活態度를 育成 하는 것이다. 곧 生活上의 問題를 算數的으로 解決하는 것이 重要的 것으로서 이런 意味에서 共通된 性格을 가지고 있다.

다음 音樂과 美術이다. 情操的인 鑑賞과 表現을 中心으로 하고 兒童의 興味와 思考와 行動을 發達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美術工作을 通하여 活動力을 기르며 따라서 무엇인가 製作하며 生産하는 態度와 技術을 養成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保健은 個人衛生에 關한 習慣과 態度를 기르고 健康한 生活에 關한 社會的 責任을 體得하는 것이다. 人間으로서의 共通된 必要를 느끼는 重要的 保健體育의 問題이다. 健全한 身體에 健全한 精神이 깃들인다는 말은 언제든지 吟味할만 하다.

以上과 같은 敎科로서의 領域 外에 科外學習活動의 領域이 組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兒童의 自由로운 活動에서 얻는바도 적지 아니 하다. 이와 같은 兒童의 日常生活에서 社會性을 기르고 좋은 習慣을 形成하여 國民으로서의 資質 民主社會에 有用한 人物이 되겠음 하는 것이다. 이들의 敎育課程은 融通性이 많은 內容과 形態를 具備하고 있는 것을 特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其 外 兒童의 保健 品性의 發達 社會에 順應 職業訓練에 있어서의 學習經驗等이 兒童의 精神能力과 基礎的 學習에 큰 影響을 준다.

이들 敎育과정을 一般 正常兒와 연관성 있고 밀접하게 하려고하는 理由는 이들이 將來 成人이 되어 實社會에 나가 職業的 生活을 할때에 不利한 立場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것으로서 될수 있는 限 正常兒와 接觸시키기 爲함이라 하겠다.

即 正常兒의 學習活動 범위 內에서 指導를 한다든가 그들과 接觸하는 機會를 많이 주면 그로 부터 얻는 利益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指導者는 敎育熱이 높고 헌신적으로 兒童에게 助力하여야 하며 理解와 깊은 同情 및 사랑을 갖고 明朗하고 快活하여야 하며 兒童의 結점을 일일히 끄집어 내지말고 감싸주며 指導하여야 한다.

다른에서도 그러하지만 特히 이들에게는 公平無私 即 차별 없이 대하여 주어야 하며 兒童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일하면 좋아 한다. 그러므로 可及의이면 이들과 接觸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주 接觸 하므로써 個性 性格 向性 適性 體力취미 등에 맞는 個別的인 指導도 할수 있는 것이다.

精神薄弱兒 作業指導

精神薄弱兒의 敎育中 最大의 重要性은 職業指導로서 이들이 社會에 나가 一般 正常人과 같이 生活하여 나갈수 있겠음 하기 爲하여 感覺訓練 生活의 適應性 指導 學習指導 其他 社會生活을 하는 準備的 基礎的인 指導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職業指導를 하는데 있어 우선 근로 生産性에 對한 精神을 길러주기 爲하여 作業指導를 하여 점차적으로 職業指導로 들어가는 것이 理想的이라 하겠다. 作業指導로서는 먼저 말한것과 같이 근로 生産성과 協동정신을 길러주기 爲하여 환경정리로 부터 始作하여 들레의 清掃 나가서는 每日은 行할 수 없지만 一週日에 一回 乃至 二회에 걸쳐 定期的으로 院外 道路 清掃 夏節에는 實習地를 利用하여 菜蔬 栽培 벼가꾸기 家畜기르기 등을 指導하며 冬節에는 室內에서 할 수 있는 作業 例를 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簡單한 봉투 붙이기 새끼 꼬기 가마니 치기 등의 作業을 指導할 수 있다. 이 作業을 指導하는데 있어서도 分團을 組織하여 分團內에 경쟁을 시키면 권태도 느끼지 않고 그 능률도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作業을 하므로써 일에 對한 經驗을 豊富히 하게 하며 社會의 여러 사람 全部가 일을 하여야 生活을 영위 할수 있다는 점을 理解시키므로써 兒童으로 하여금 社會의 귀찮은 存在가 되지않게 하는데도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때로는 作業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義務的으로 强要하는데서 오는 하나의 反撥이라고 볼 수 있는데 無計劃的인 指導를 하지 말고 먼저 이들의 心理상태를 잘 把握하여 作業을 하므로써 오는 利害關係를 투철히 理解시킨 後에 反撥없는 作業을 하게 指導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職業이 社會生活과 끊을수 없는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充分히 理解하고 豊富한 經驗과 熟達한 技術을 습득하겠음 하면서 서서히 職業指導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職業指導에 있어서는 作業指導에서 얻은 經驗을 살려가면서 그의 能力에 맞게 生活資力 即 生活的 價値있는 訓練을 시켜야 하며 同時에 兒童의 興味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學習成績과 作業成績이 良好한 兒童은 專門的인 職業補導施設에 轉院시켜서 職業敎育을 시켜 우리 精神薄弱兒施設의 最大 目標인 一般 正常人과 같이 社會에 나가 生活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다.

<筆者 國立覺心學院 勤務>

「社訓」附屬 育兒施設 院兒의

크레페린 檢査 結果에 對한 一報告

李 圭 鍾

- I. 『크레페린 檢査』의 紹介
- II. 檢査의 目的及 實施
- III. 作業曲線의 整理及 判定
- IV. 檢査結果의 評價

育兒施設에 收容된 兒童들을 身體的으로 保護 育成 할뿐 아니라, 그들의 行動과 欲求를 充分히 理解하여 社會生活에 있어서 自己의 能力을 最大限으로 善用할 수 있는 圓滿한 人格을 形成 하도록 適切히 指導를 하여야 될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들의 現在의 能力과 人格 特性을 把握하기 爲하여 知能檢査, 性格檢査, 適性 興味檢査等 各種 心理檢査와 測定을 實施하고, 그들에게 適當한 指導方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個個의 院長들에 對하여 깊은 理解와 아울러 그 集團의 全體의인 傾向을 알아 보는것도 必要하며, 特定集團과 一般集團과의 傾向의 差異를 考察하는 것도 그 構成員의 理解에 도움이 될것이다.

여기에 적는 이 글은 前에 檢査한 資料를 一部만 整理하고 대수롭지않는 것이나 檢査 結果를 傳하여 드리는 셈치고 이 글을 적어 보았다.

I. “크레페린 檢査”의 紹介

이 檢査는 여러가지 性格檢査中的 한가지인 作業檢査(Performance test)로서, “크레페린·內田 作業檢査” “크레페린·內田 連續加算法” “크레페린·內田 精神作業檢査”라고 부르는 것이나 보통 略하여 “크레페린 檢査”라고 하며, 日本에서는 많이 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兒童을 理解할 때 自然的인 분위기 속에서 行動을 觀察함이 좋으나, 그런 경우에는 行動에 나타나지 않는 人格 特性이나 性格을 알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計劃된 實驗條件下에서 被檢査者에게 一定한 作業을 주어, 結果를 客觀的으로 測定하므로, 이 檢査는 妥當도와 信賴도가 比較的 높다고 할수 있으나, 人格 特性의 全體를 나타내지 못하고 特定한 部分 밖에는 알으켜 주지않는다는 欠點이 있다.

이 檢査는 單純히 結果만을 보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作業態度, 素質, 知能, 性格 등을 同時에 診斷的으로 評價할수 있으며, 團體檢査나 個人檢査를 다 할수 있고, 正常人은 勿論 精神薄弱兒 일지라도 鉛筆을 쥐고 동그라미를 칠 程度의 能力만 있으면 實施할수 있다.

檢査用紙는 한줄에 60, 80, 120個의 一位의 數字가

前半部에 16줄, 後半部에 11줄 印刷된것이 있으나,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120型을 使用하고 있다. 檢査의 方法은 加算法과 抹消法의 두가지가 있는데 加算法은 多數를 各各 加算하여 그 答을 두數字 사이의 아래 쪽에 記入 하며, 答이 10 以上이면 1位의 數단을 적는다. 이 檢査는 加算法으로 하는것이 原則이나, 數를 加算할 能力이 없는 사람에게 主로 抹消法을 시키는데, 各數字마다 동그라미와 罅표를 그려 지워나가는 것이다.

例 加算法: 3 9 4 7 8 6 5 7.....

2 3 1 5 4 1 2.....

抹消法: 3 4 4 7 8 6 5 7.....

檢査의 實施는 “始作”하는 信號와 함께 開始하여 正確히 1分을 經過 할적마다 指示에 따라 다음줄로 올라가며, 練習에 2分間, 休憩前에 15分, 5分間 쉬고, 休憩後에 10分間 行한다. 그러나 指示 及 事項 記入에 所 要되는 時間까지 合치면 45分쯤 걸린다.

作業曲線은 줄마다 加等이나 抹消한 最終點을 이어서 긋는다. 曲線은 健康者에게는 대개 一定한 特徵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健康者 常態 定型曲線”이라한다. 休憩前 曲線은, 第1分째 作業량이 제일 많으며, 第2分째는 急히 下降하여 그以後는 漸次 低下되나 第5~6分째 부터는 또다시 漸次 上昇하나 第1分째의 作業量에 達하지 못한다. 休憩後 曲線은, 5分間的 休憩로 그 效果가 나타나고 作業에 熟達도 되었으므로, 第1分째 뿐만 아니라 全體의 作業量도 休憩前 보다 많으며, 그 傾向도 休憩前보다 빨리 興奮과 疲勞가 나타나 下降하게 된다. 異常者(P나 F로 判定된者) 曲線의 特徵은, 作業의 最初에도 作業량이 많지못하며, 作業을 계속하여도 熟達이 되지않으며, 休憩後에도 效果가 없고, 曲線에 動搖가 甚하며, 急히 興奮 하였다가 곧 弛緩하게 된다. 檢査時의 態度와 日常行動에도 正常者와 異常者의 差異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略하고, 作業曲線을 理解하는데 必要한 몇가지 事項을 적어 보았다.

II. 檢査의 目的及 實施

“社·訓 附屬 育兒施設”의 院兒들에게 이 檢査를 實施한 것은 國立 覺心學院의 院兒들에게 調査한 “크레페린 檢査”의 結果를 整理 하였으나, 精神薄弱兒인 特殊集團의 曲線 單으로는, 이들이 正常한 兒童들 보다 作業能力은 어느程度 差異가 생기며, 또한 性格面에 있어서는 얼마나 異常 傾向을 나타내는지 쉽게 알 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精神薄弱兒의 集團에 比較가

될 正常兒의 集團, 卽 對照集團(Control group)을 選定 하는데도 몇가지 點을 考慮 하여야만 되었다. 覺心 學院 院兒들의 大多數가 一般 育兒施設에서 轄院하여 왔거나, 혹은 浮浪生活을 계속하다가 入院한 兒童이기 때문에, 對照集團은 될 수 있는대로 施設 兒童들로서 質的으로 優秀하고, 被檢査者의 數가 많은것이 좋았으며, 또한 距離 關係와 같은 國立 施設이란 點에서 “社訓”을 擇한것이다.

檢査를 實施하기 數日前에 通知를 하여 드리지 못하고, 檢査當日인 昨年 8月 24日에야 서두르게 된것이다 그래서 “社·訓” 當局에서도 豫定하였던 일이 아니였으므로, 여러가지 困難한 일이 많았다. 이러한 施設에 檢査를 實施함에는 對照集團만의 單純한 役割 보다는, 同時에 有用한 資料를 얻을 수 있도록 被檢査者들의 數 年齡, 性, 學歷, 出身, 知能, 日常行動, 健康狀態等을 充分히 考慮하여 選定하는것이 좋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大部分의 院兒들이 登校하였으므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午後 2時半 頃에 講堂에다 모아놓고, 養護課 先生任들의 監督下에 抹消法으로 集團檢査를 行하였는데, 이때의 被檢査者들이 主로 年少兒였으므로, 또다시 年長兒들을 모아 같은 場所에서 같은 方法으로 시켰다. 이날의 被檢査者 數는 모두 54名이 었으나, 指示에 不應하였으므로 整理 할수 없는 것이 2枚, 또는 어떤 年層에만 지나치게 被檢査者의 數가 많으므로, 平均曲線을 作成하는데 不適當 하다고 생각된 것 12枚를 除外하고 40枚만 整理하였다.

Ⅲ. 作業曲線의 整理及 判定

整理한 檢査用紙 40枚 中에서 滿年齡 13歲 6個月까지의 年少兒 集團과 13歲 7個月 以上の 年長兒 集團으로 둘로 크게 나누었는데, 年少兒 集團은 男子가 12名 女子가 3名으로 計 15名, 年長兒 集團이 男子가 19名, 女子가 6名으로 計 25名이다. 이것을 다시 年層別로 그分佈를 살펴보면 表Ⅰ, 表Ⅱ와 같다.

表Ⅰ. 年少兒集團의 年齡分佈

滿 年 齡	類 數
8 : 7 ~ 9 : 6	2
9 : 7 ~ 10 : 6	1
10 : 7 ~ 11 : 6	2
11 : 7 ~ 12 : 6	9
12 : 7 ~ 13 : 6	1
計	15

表Ⅱ. 年長兒 集團의 年齡分佈

滿 年 齡	類 數
13 : 7 ~ 14 : 6	11
14 : 7 ~ 15 : 6	5
15 : 7 ~ 16 : 6	6
16 : 7 ~ 17 : 6	2
17 : 7 ~ 18 : 6	1
計	25

被檢査者의 個人別 作業曲線을 圖表로 나타내면 圖Ⅰ의 1~15와 圖Ⅱ의 1~25인데, 圖Ⅰ은 年少兒 集團이고 圖Ⅱ는 年長兒 集團이다. 두 集團의 傾向을 代表하는 曲線을 알아보기 爲하여, 個人別 作業量을 合算 平均을 내고 平均 作業曲線을 그리면 圖Ⅲ과 같이 된다. 作業曲線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休憩 後의 作業量이 休憩 前의 그것보다 많아 지는데 休憩로 因하여 作業能率이 오르는 比率을 “休憩 效果率” 이라고 한다. 卽 休憩 前의 全體 作業量을 1로 잡는다면 休憩 後는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曲線에 따라서 休憩 效果率이 各各 다른 것이다. 年少兒 集團의 休憩 效果率은 1,179이고 年長兒 集團의 그 比率은 1,178로서 그 差異가 없었다.

作業曲線은 사람에 따라 各各 다르나 몇개의 類型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曲線의 判定은 量的 段階와 質的 段階의 두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橫田象一郎 著 “크레페인·內田 精神作業檢査法 解説” 東京 金子書房 發行의 1949年 版에 依하여 判定 하였다.

表Ⅲ. 作業 段階 基準量

量的段階	D	C	B	A	AU
休憩 前	0~15	15~25	25~40	40~60	60以上
休憩 後	0~15	15~30	30~45	45~70	70以上

a). 量的 段階

이것은 作業量의 多少를 말하며, 表Ⅲ의 基準量에 依하며 5段階로 區分하는데, D, C, B, A, AU의 大文字로 나타낸다. 이러한 量的 段階는 被檢査者의 知能 程度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b). 質的 段階

이것은 曲線의 型과 誤謬의 多少, 脫落數 等에 依하여 다음의 5段階로 區分한다.

1) 定 型—量的 段階의 記號만을 小文字로 나타낸다.

- 2) 準定型—量的 段階의 記號에 (대쉬) 하나를 붙인다.
- 3) 準準定型—量的 段階의 記號에 (대쉬) 둘을 붙인다.
- 4) 疑問型—量的 段階의 記號에 F(大文字)를 붙인다.
- 5) 異常型—量的 段階의 記號에 P(大文字)를 붙인다.

以上과 같이 各各 質的, 量的 5段階의 分類에 依하여 모든 曲線을 다음 25種의 判定型으로 나누게 된다.

表Ⅲ. “크레페린 檢査” 判定型 表

質的 段階	定 型	準 定型	準準定型	疑 問 型	異 常 型
AU	au	au'	au''	auf	aup
A	a	a'	a''	af	ap
B	b	b'	b''	bf	bp
C	c	c'	c''	cf	cp
D	d	d'	d''	df	dp

個人別 作業曲線에 따른 判定의 結果는 圖 I 과 圖 II 에 적은바와 같다. 集團別로 各各 判定型을 살펴보면, 年少兒 集團은 a가 2, a'가 5, a''가 3, af가 2, b가 1, b'가 1, b''가 1이 되며, 또한 年長兒 集團은 a가 3, a'가 6, a''가 8, af가 5, ap가 3이다. 이것으로 判定型 頻數表를 만들면 表 V 와 表 IV 이다.

表 V. 年少兒 集團의 判定型 頻數表

AU	au	au'	au''	auf	aup
12	a2	a'5	a''3	af2	ap—
80%					
3	b1	b'1	b''1	bf—	bp—
20%					
—	c—	c'—	c''—	cf—	cp—
—	d—	d'—	d''—	df—	dp—
15	3	6	4	2	—
	20%	40%	26.7%	13.3%	—

表 VI. 年長兒 集團의 判定型 頻數表

AU	au	au'	au''	auf	aup
25	a3	a'6	a''8	af5	ap3
100%					
—	b—	b'—	b''—	bf—	bp—
—	c—	c'—	c''—	cf—	cp—
—	d—	d'—	d''—	df—	dp—
25	3	6	8	5	3
	12%	24%	32%	20%	12%

以上の 表 V 를 說明하면, 作業量이 AU와 C, D에 屬하는 兒童은 한사람도 없고 A에 12名으로 80%, B에 3名으로 20%란 뜻이다. 또한 質的 段階로는 定型이 3

名으로 20%, 準定型이 6名으로 40%, 準準定型이 4名으로 26.7%, 疑問型이 2名으로 13.3%, 異常型은 한사람도 없으며, 15는 이 集團의 被檢査者의 數가 15名임을 表示한다. 이 表로서 우리는 그 集團 構成員의 量的 段階와 質的 段階를 同時에 窺사리 알수있고, 또한 特定集團과 對照集團 間의 差異도 곧 比較 할수가 있다

Ⅲ. 檢査 結果의 評價

結果의 評價는 被檢査者 個個人的 生活史, 知能程度, 日常行動, 性格 特性 등을 考慮치 않고 個人別 評價를 하는것은 無理가 있으므로 省略하고, 集團 傾向만을 簡單히 살펴 보기로 한다.

被檢査者의 選定을 計劃의으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量的이나 質的 段階를 評價할 때 男女, 知能 優秀兒와 劣等兒, 院內의 模範兒와 問題兒, 健康兒와 虛弱兒等 여러 集團으로 나누어, 相互 比較하여 考察할 수 없고 다만 年層에 따라 두 集團으로 나누어 본것이다. 作業量은 個人別 作業曲線과 平均 作業曲線, 判定型 頻數表 등을 살펴 보면, 個人差는 있으나 精神 發達의 段階가 年層에 따라 增加함을 알수있다. 두 集團의 質的 段階를 比較하면 表 VII 과 같다. 이 表를보면 年長兒 集團이 年少兒 集團에 比하여 定型에서 異常型으로 옮겨

表 VII. 兩集團의 質的 段階 比較

質的 段階 集團	定 型	準 定型	準準定型	疑 問 型	異 常 型
年少兒集團	3 20%	6 40%	4 26.7%	2 13.3%	—
年長兒集團	3 12%	6 24%	8 32%	5 20%	3 12%

감에 따라 그 比率이 漸次 增加됨을 알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注意를 要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集團의 被檢査者의 數가 極히 적으므로 數字 그대로 評價 하기는 困難하다. 即 年少兒 集團에 있어서 한사람이 a로 判定 되느냐 혹은 a'나 하는데 따라 約 7%씩 變動이 생기므로, 被檢査者의 數가 적어도 100名 以上이 되어야만 安心하고 百分率을 낼수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檢査의 結果로서 다음의 몇가지 事實에 疑問을 갖게된다

- 1). 우연히 被檢査者의 選定을 잘못하여 年長兒 集團이 質的으로 나쁜 傾向을 나타내었는가?
- 2). 性格이 安定되고 質的으로 優秀한 院兒는 成長함에 따라 一般社會로 進出하고 性格上 多少 問題를 가진 兒童들이 남게 되었는가?
- 3). 그렇지 않으면, 一般 育兒施設의 兒童들이 成長함에 따라 大體로 性格面에 漸漸 異常 傾向을 나타내게 되는가?

1)과 2)의 理由라면 “社·訓 附屬 育兒院”에 局限된 問題이다. 그러나 3)에 對하여는 窺사리 斷定을 내릴수 없으며, 오랜 時日과 多角的인 調査, 研究의 結果를 土臺로 하여 解答을 얻어야 될 重大한 課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筆者 國立覺心學院 勤務>

肥 中 換 以名 專攻科目及學年

4534	196	837	468	579	664	895	918	941	964	987	1010	1033	1056	1079	1102	1125	1148	1171	1194	1217	1240	1263	1286	1309	1332	1355	1378	1401	1424	1447	1470	1493	1516	1539	1562	1585	1608	1631	1654	1677	1700	1723	1746	1769	1792	1815	1838	1861	1884	1907	1930	1953	1976	1999	2022	2045	2068	2091	2114	2137	2160	2183	2206	2229	2252	2275	2298	2321	2344	2367	2390	2413	2436	2459	2482	2505	2528	2551	2574	2597	2620	2643	2666	2689	2712	2735	2758	2781	2804	2827	2850	2873	2896	2919	2942	2965	2988	3011	3034	3057	3080	3103	3126	3149	3172	3195	3218	3241	3264	3287	3310	3333	3356	3379	3402	3425	3448	3471	3494	3517	3540	3563	3586	3609	3632	3655	3678	3701	3724	3747	3770	3793	3816	3839	3862	3885	3908	3931	3954	3977	4000	4023	4046	4069	4092	4115	4138	4161	4184	4207	4230	4253	4276	4299	4322	4345	4368	4391	4414	4437	4460	4483	4506	4529	4552	4575	4598	4621	4644	4667	4690	4713	4736	4759	4782	4805	4828	4851	4874	4897	4920	4943	4966	4989	5012	5035	5058	5081	5104	5127	5150	5173	5196	5219	5242	5265	5288	5311	5334	5357	5380	5403	5426	5449	5472	5495	5518	5541	5564	5587	5610	5633	5656	5679	5702	5725	5748	5771	5794	5817	5840	5863	5886	5909	5932	5955	5978	6001	6024	6047	6070	6093	6116	6139	6162	6185	6208	6231	6254	6277	6300	6323	6346	6369	6392	6415	6438	6461	6484	6507	6530	6553	6576	6599	6622	6645	6668	6691	6714	6737	6760	6783	6806	6829	6852	6875	6898	6921	6944	6967	6990	7013	7036	7059	7082	7105	7128	7151	7174	7197	7220	7243	7266	7289	7312	7335	7358	7381	7404	7427	7450	7473	7496	7519	7542	7565	7588	7611	7634	7657	7680	7703	7726	7749	7772	7795	7818	7841	7864	7887	7910	7933	7956	7979	8002	8025	8048	8071	8094	8117	8140	8163	8186	8209	8232	8255	8278	8301	8324	8347	8370	8393	8416	8439	8462	8485	8508	8531	8554	8577	8600	8623	8646	8669	8692	8715	8738	8761	8784	8807	8830	8853	8876	8899	8922	8945	8968	8991	9014	9037	9060	9083	9106	9129	9152	9175	9198	9221	9244	9267	9290	9313	9336	9359	9382	9405	9428	9451	9474	9497	9520	9543	9566	9589	9612	9635	9658	9681	9704	9727	9750	9773	9796	9819	9842	9865	9888	9911	9934	9957	9980	10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圖 I-1

姓名 김×식

性別 男

滿年令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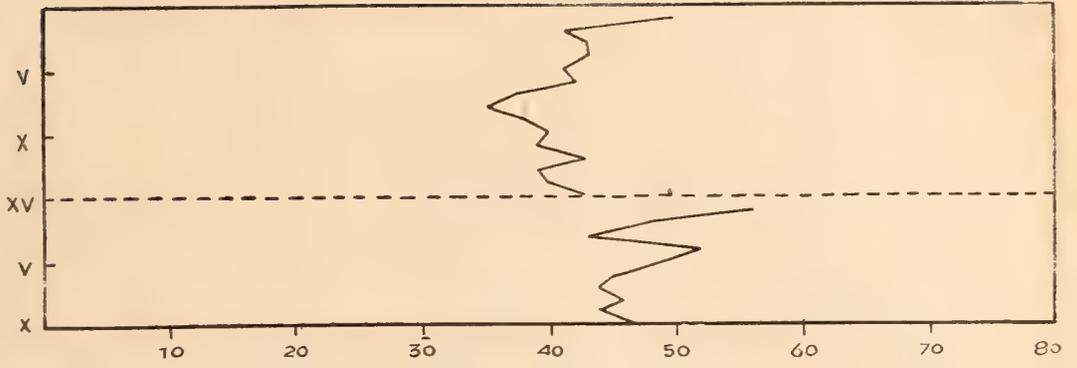


圖 I-2

姓名 이×식

性別 男

滿年令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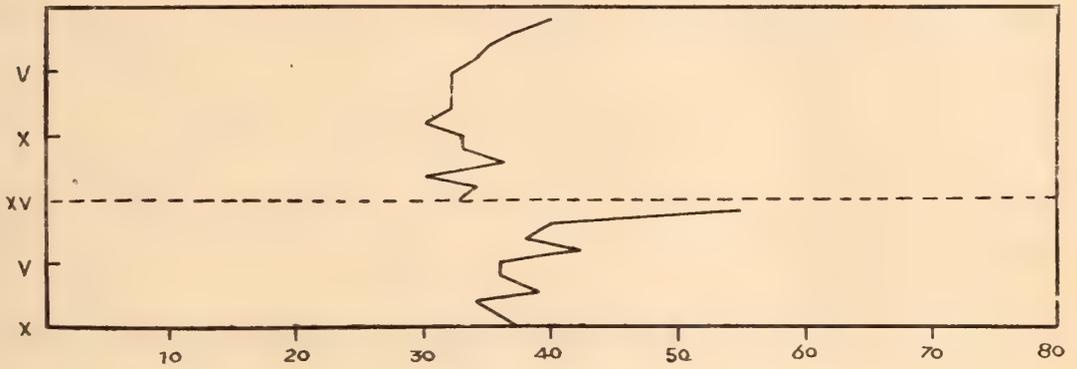


圖 I-3

姓名 오×숙

性別 女

滿年令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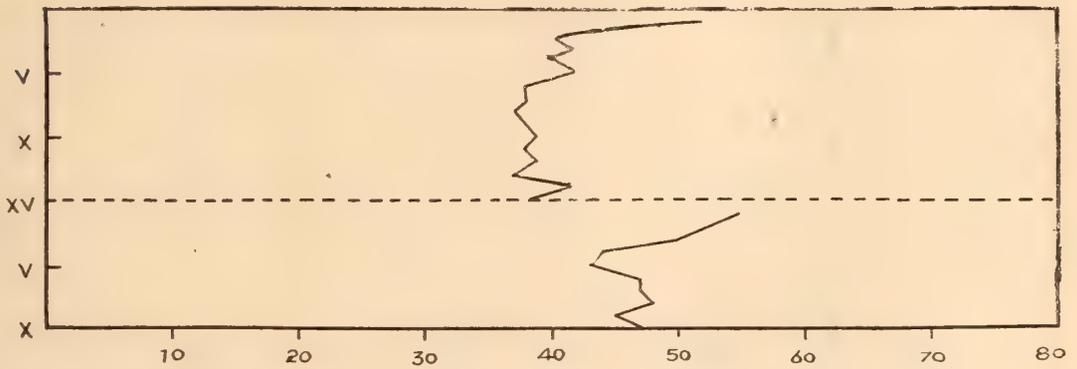


圖 I-4

姓名 이×덕

性別 男

滿年令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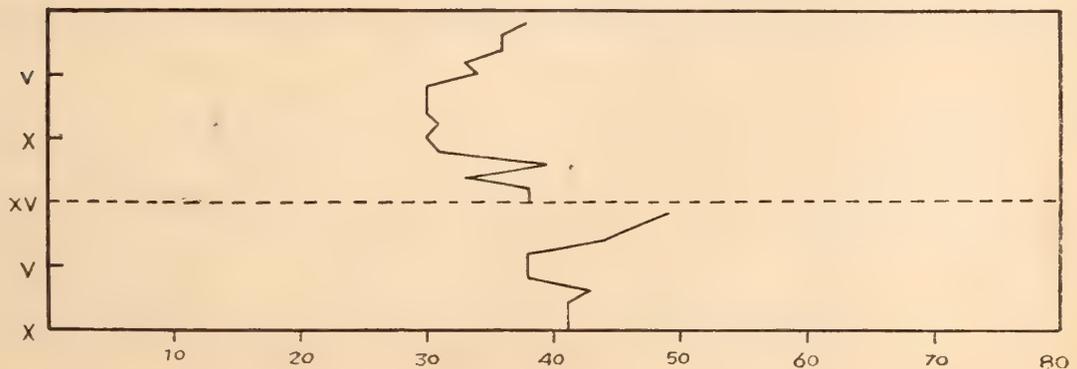


圖 I-5

姓名 박×민

性別 男

滿年令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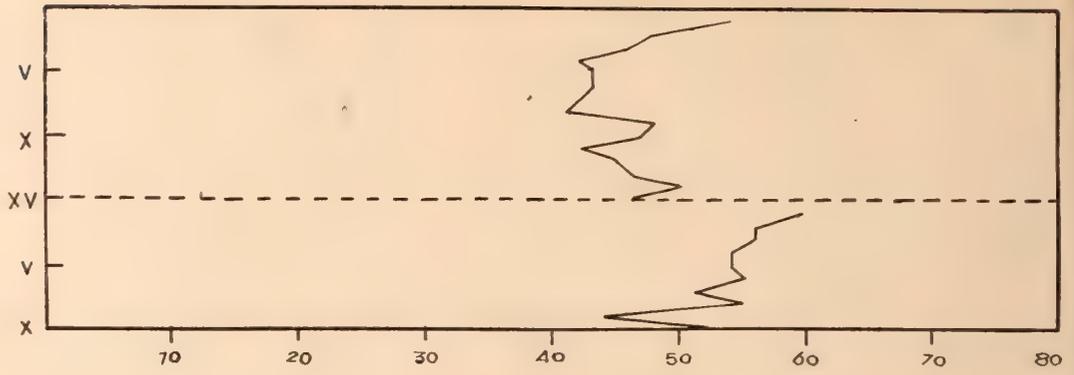


圖 I-6

姓名 김×자

性別 女

滿年令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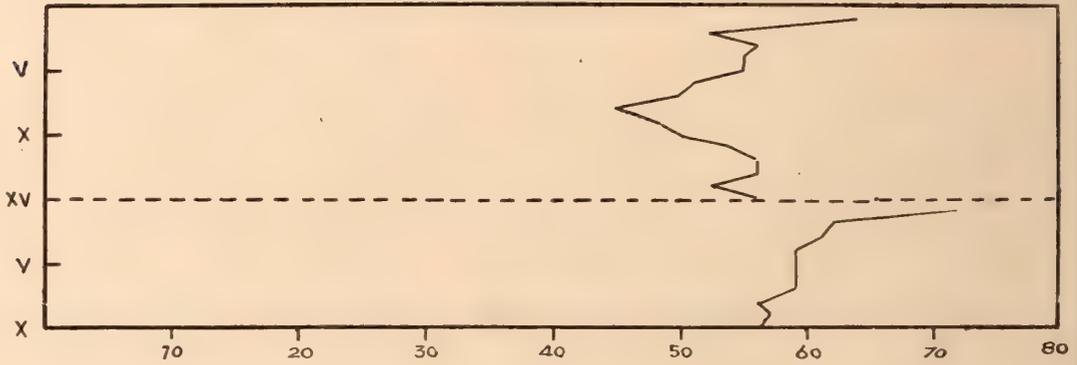


圖 I-7

姓名 이×식

性別 男

滿年令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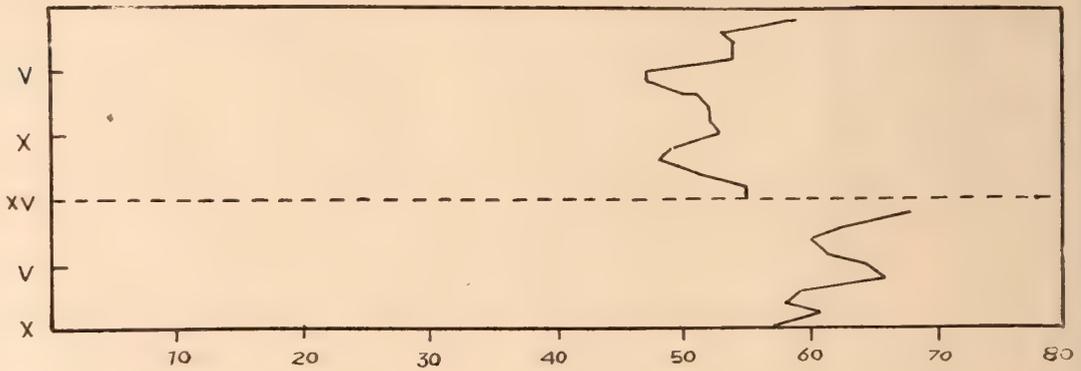


圖 I-8

姓名 안×옥

性別 男

滿年令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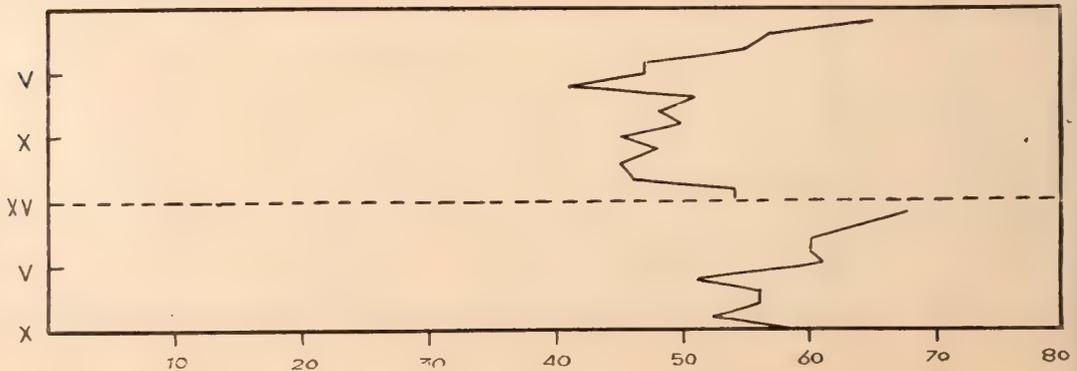


圖 I-9

姓名 김×권

性別 男

滿年令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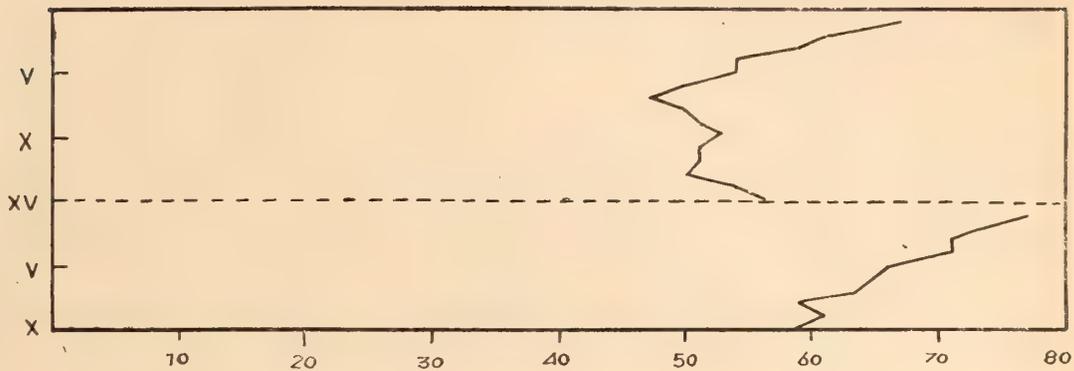


圖 I-10

姓名 이×희

性別 男

滿年令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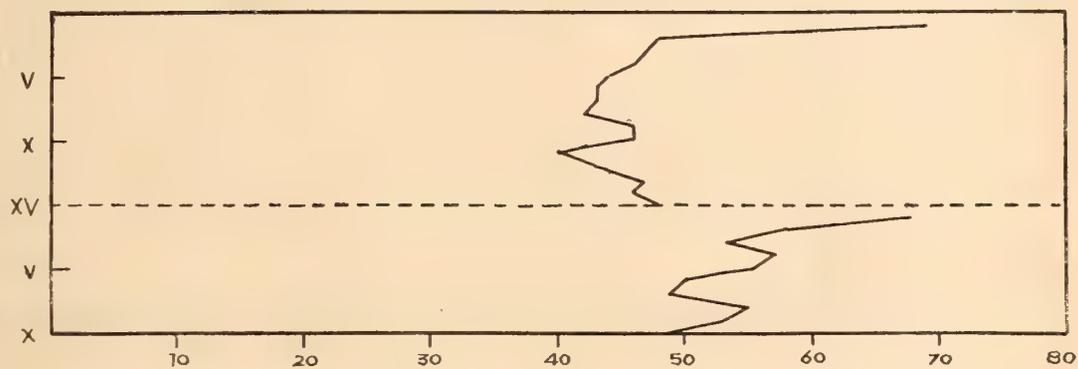


圖 I-11

姓名 감×만

性別 男

滿年令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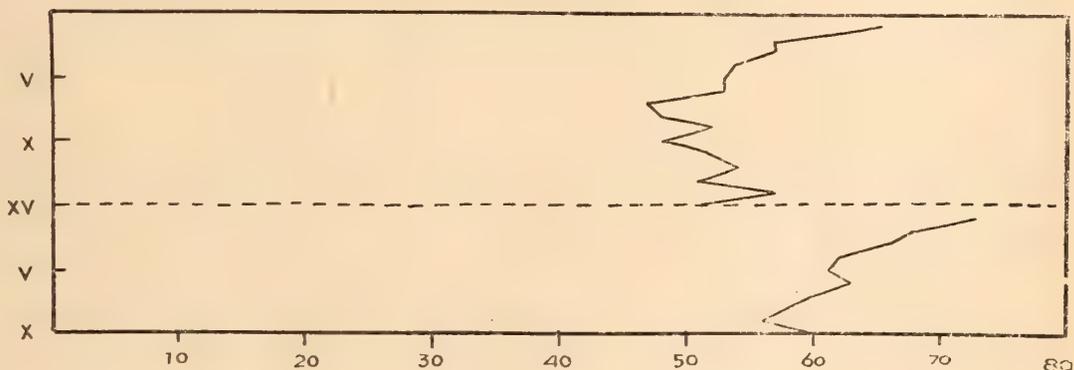


圖 I-12

姓名 유×자

性別 女

滿年令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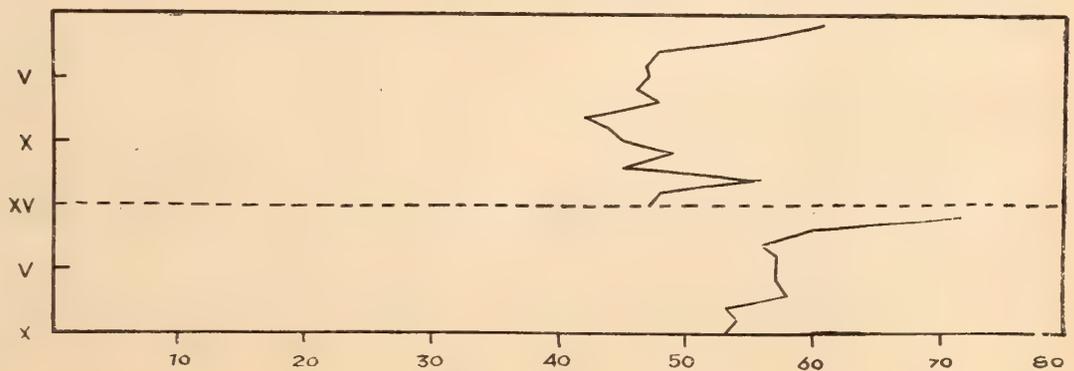


圖 I-13

姓名 朴×용

性別 男

滿年令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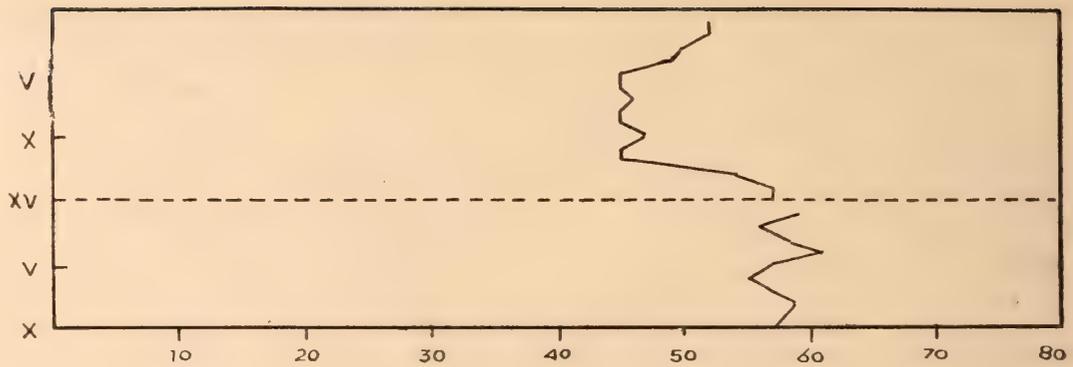


圖 I-14

姓名 권×식

性別 男

滿年令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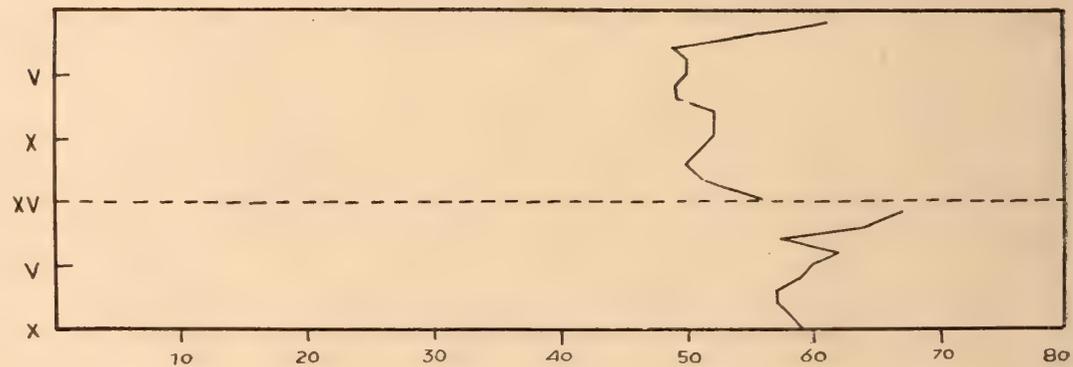


圖 I-15

姓名 서×관

性別 男

滿年令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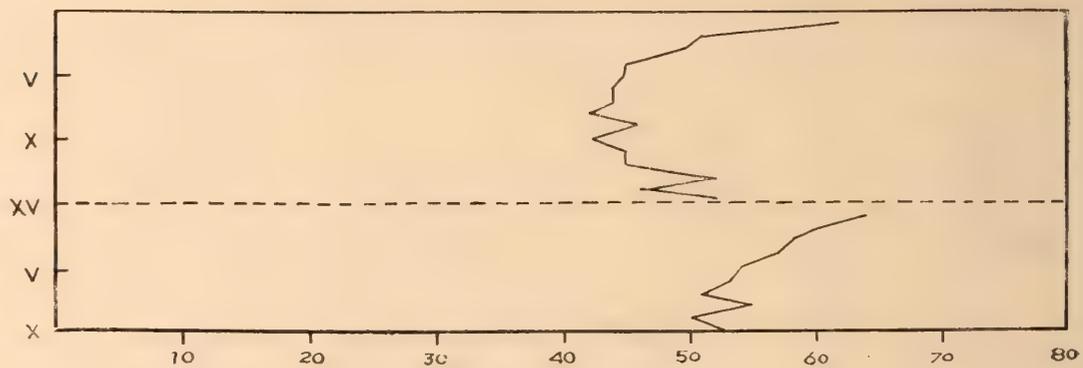


圖 II-1

姓名 최×숙

性別 男

滿年令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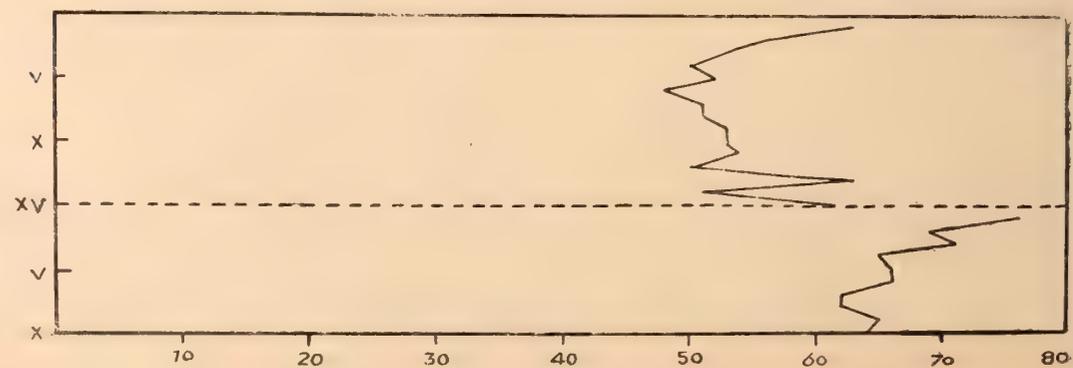


圖 II - 2

姓名 박×주

性別 男

滿年令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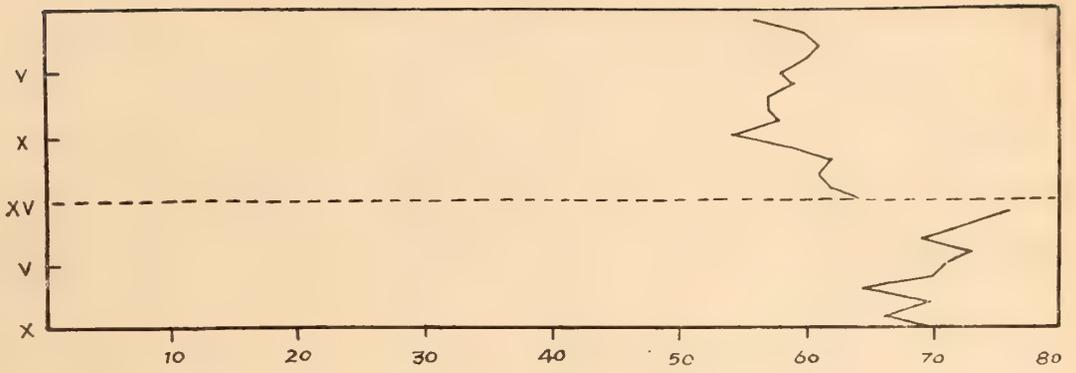


圖 II - 3

姓名 김×중

性別 男

滿年令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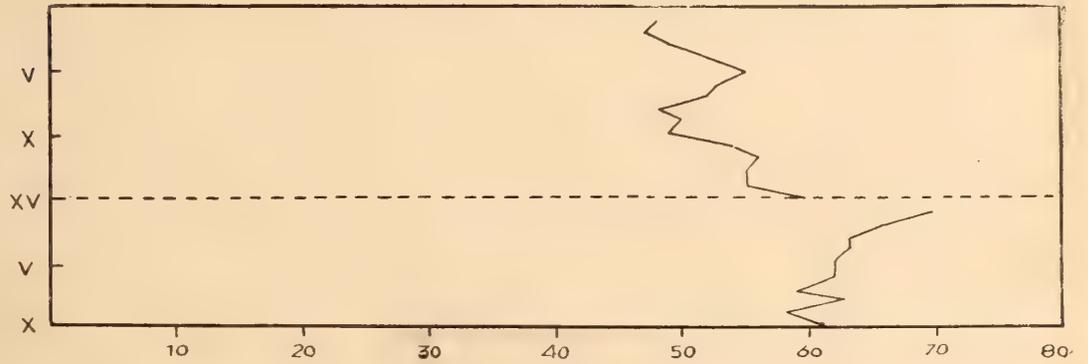


圖 II - 4

姓名 이×옥

性別 女

滿年令 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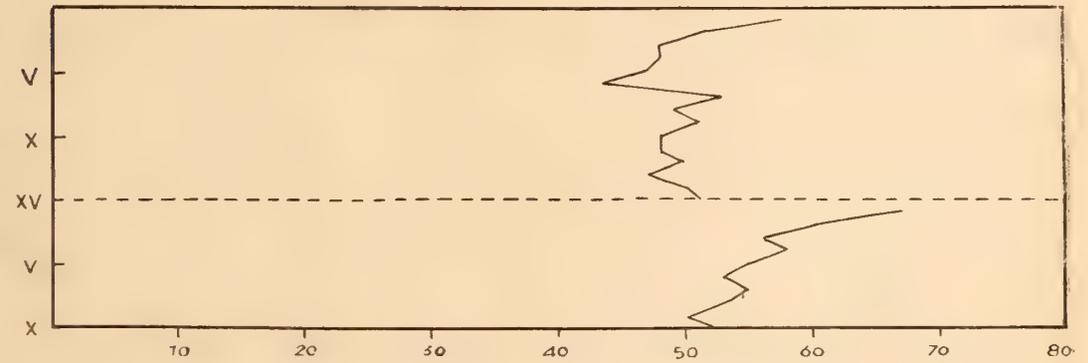


圖 II - 5

姓名 明×권

性別 男

滿年令 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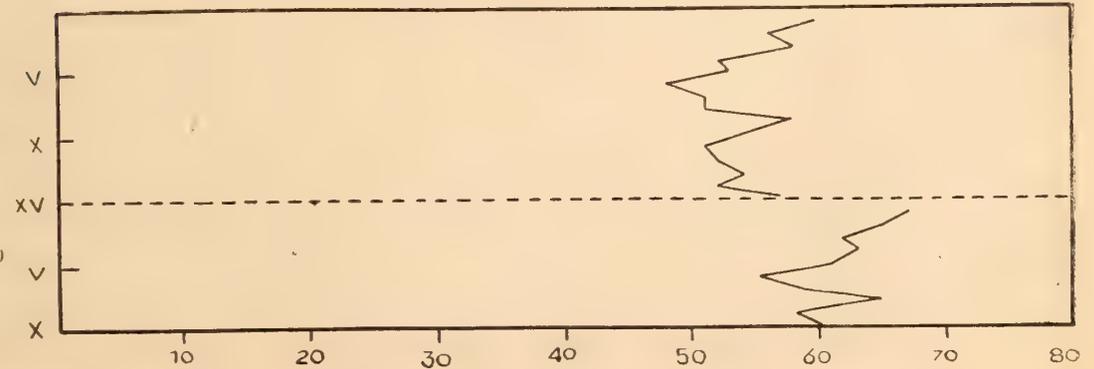


圖 II-6

姓名 박×성
性別 男
滿年令 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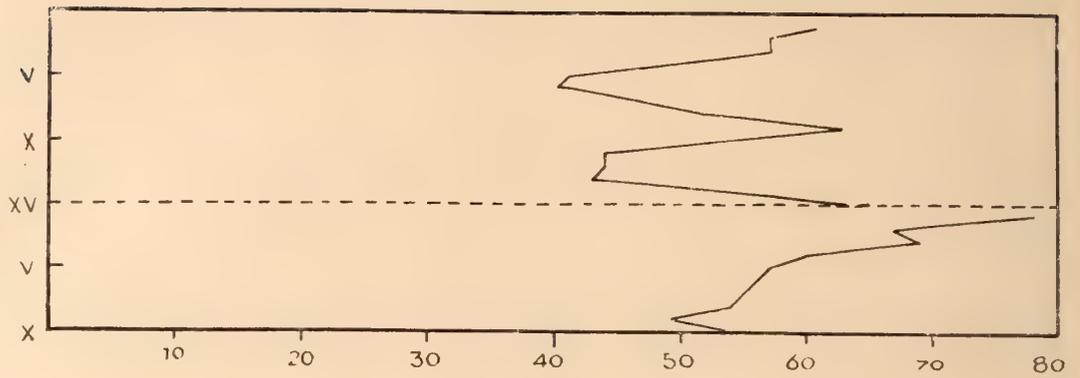


圖 II-7

姓名 오×숙
性別 女
滿年令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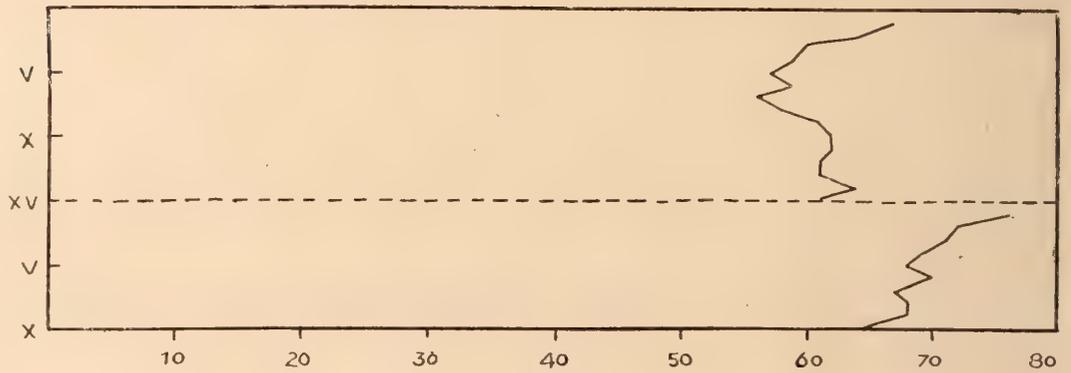


圖 II-8

姓名 김×찬
性別 男
滿年令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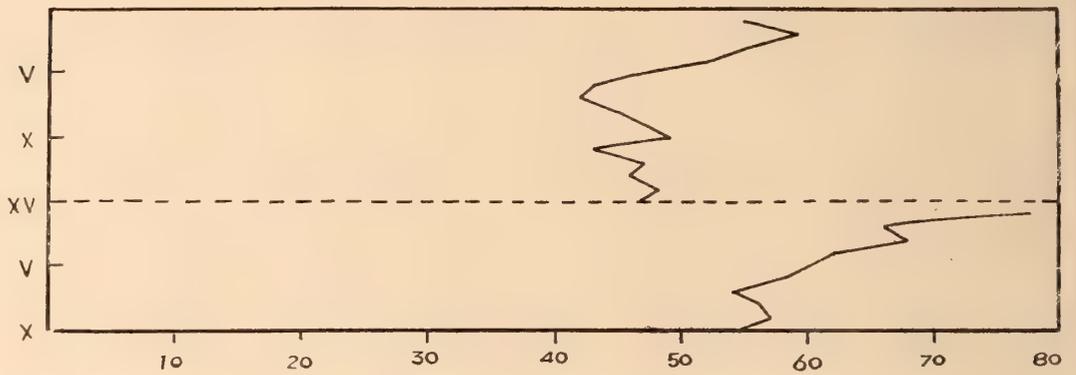


圖 II-9

姓名 정×봉
性別 男
滿年令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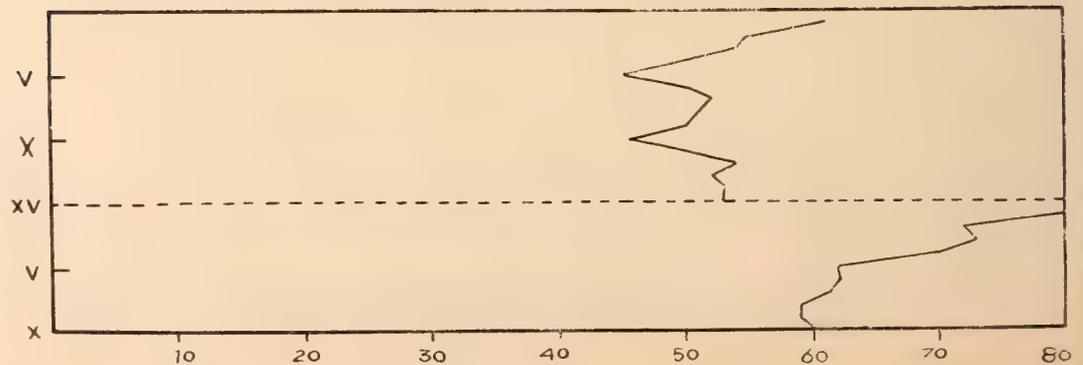


圖 II-10

姓名 劉×立

性別 男

滿年令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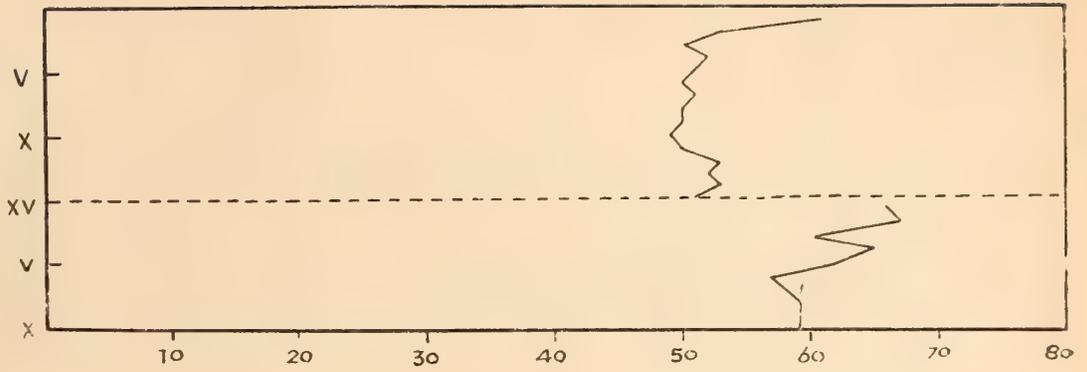


圖 II-11

姓名 李×錫

性別 男

滿年令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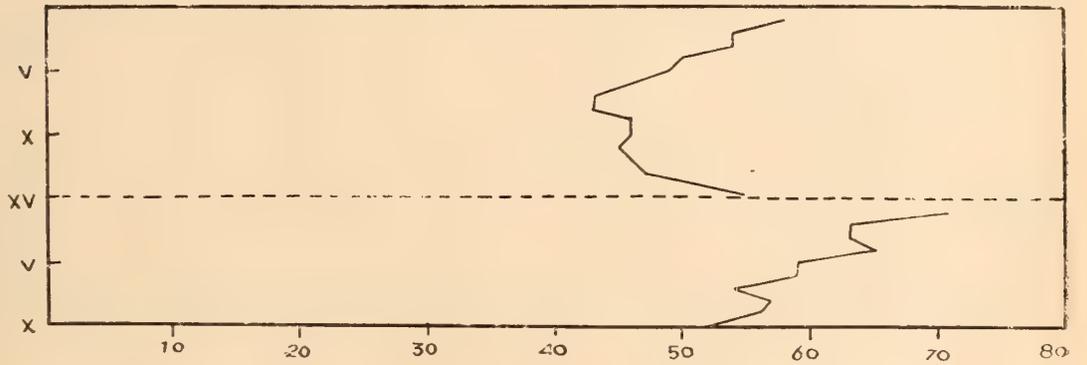


圖 II-12

姓名 閔×濟

性別 男

滿年令 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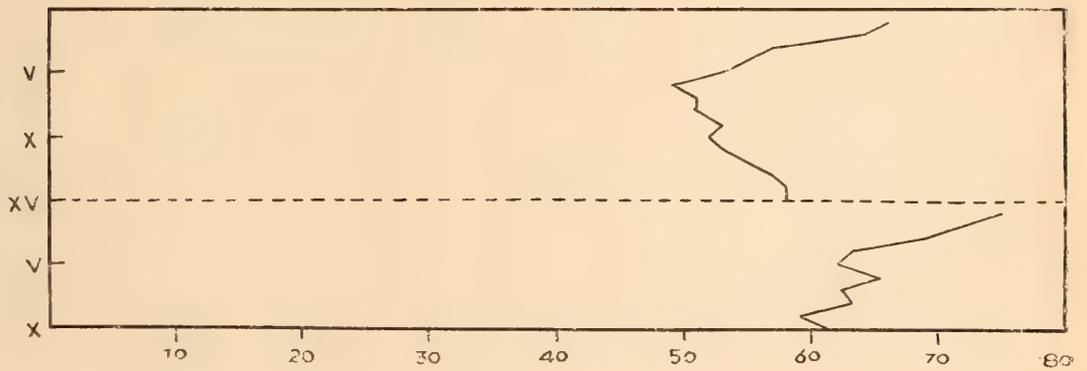


圖 II-13

姓名 朴×子

性別 女

滿年令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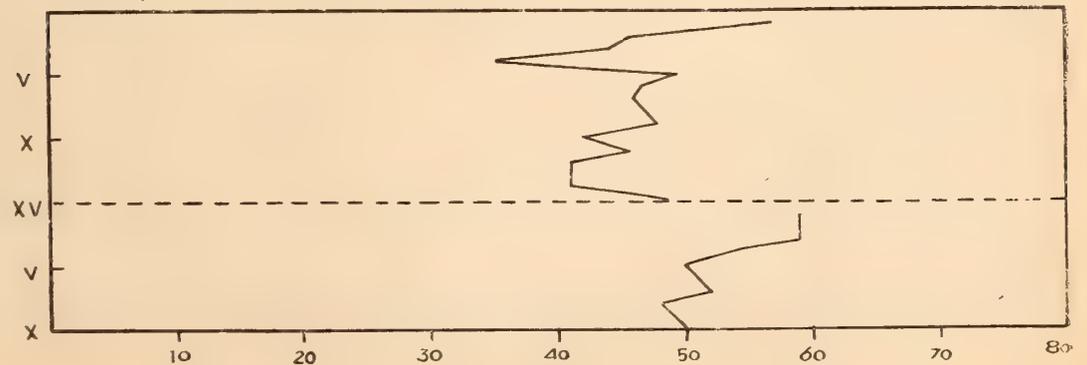


圖 II-14

姓名 김×운

性別 男

滿年令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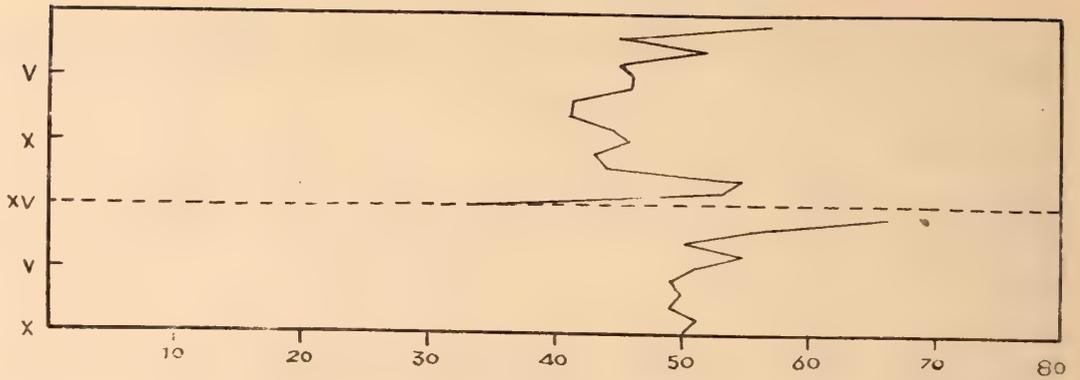


圖 II-15

姓名 이×찬

性別 男

滿年令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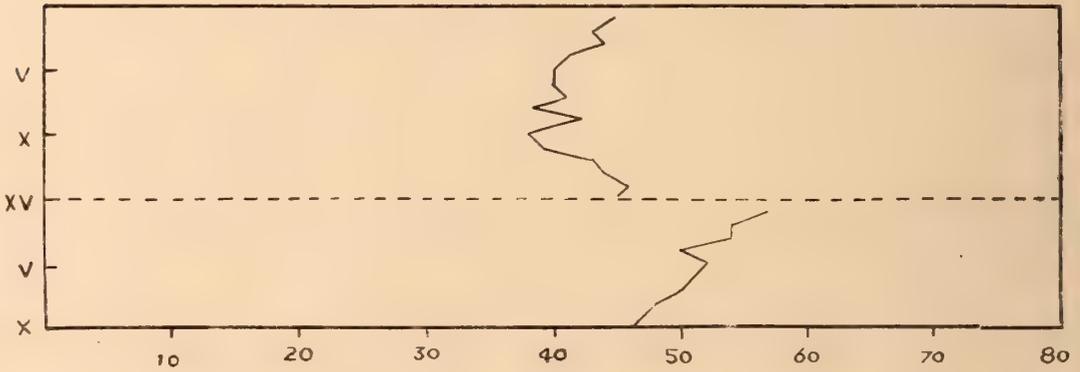


圖 II-16

姓名 제×일

性別 男

滿年令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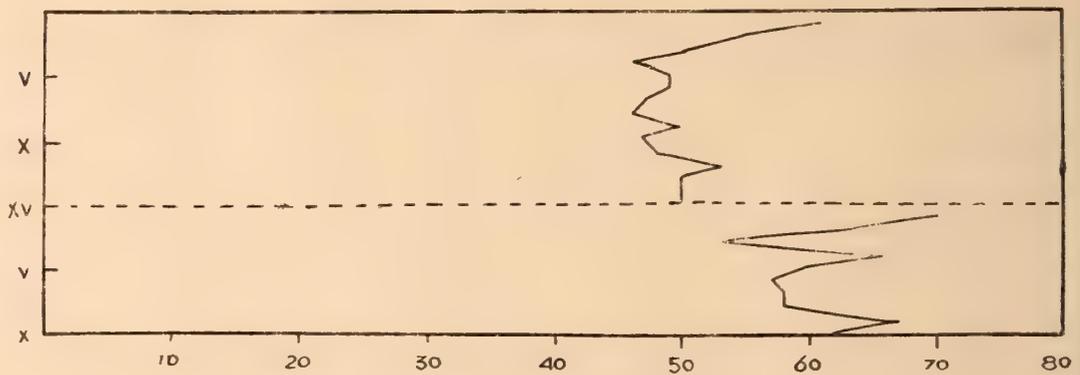


圖 II-17

姓名 김×옥

性別 女

滿年令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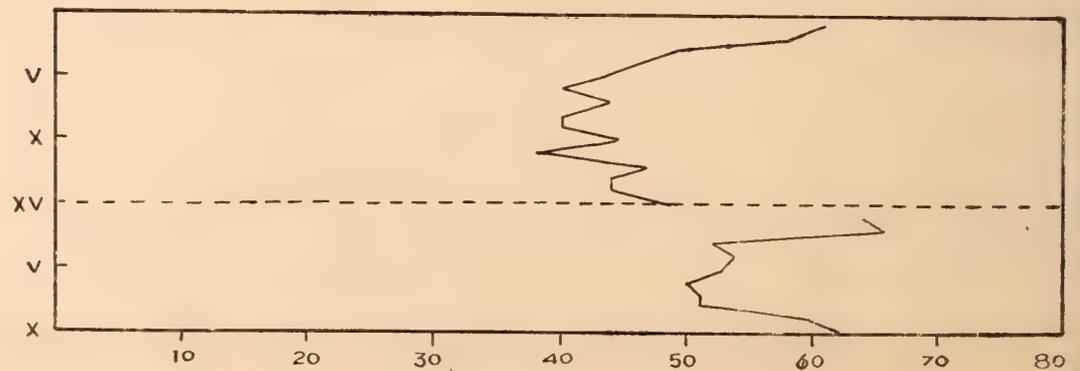


圖 II-18

姓名 강×호

性別 男

滿年令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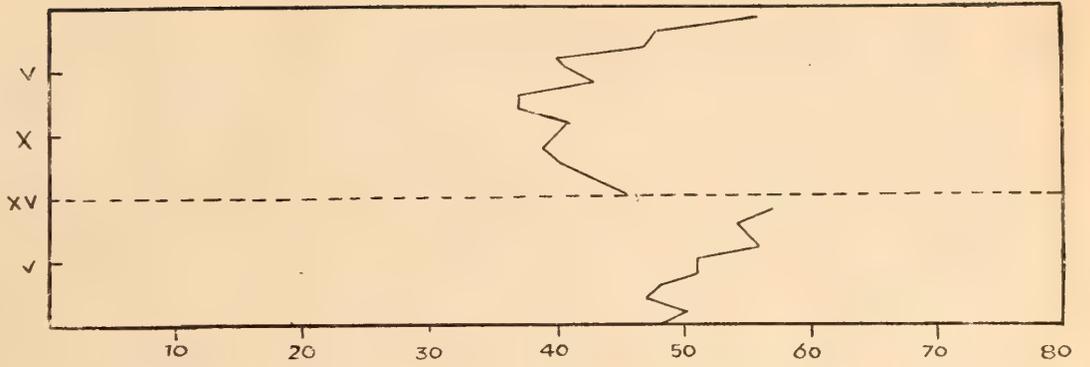


圖 II-19

姓名 박×용

性別 男

滿年令 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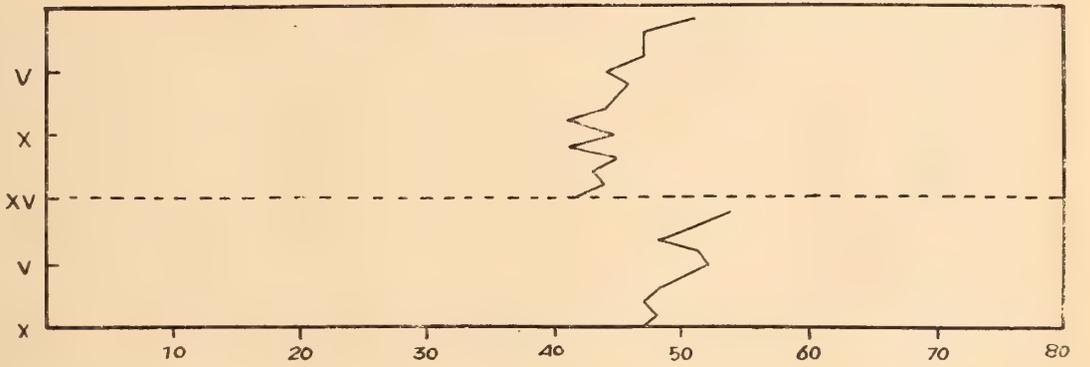


圖 II-20

姓名 김×숙

性別 女

滿年令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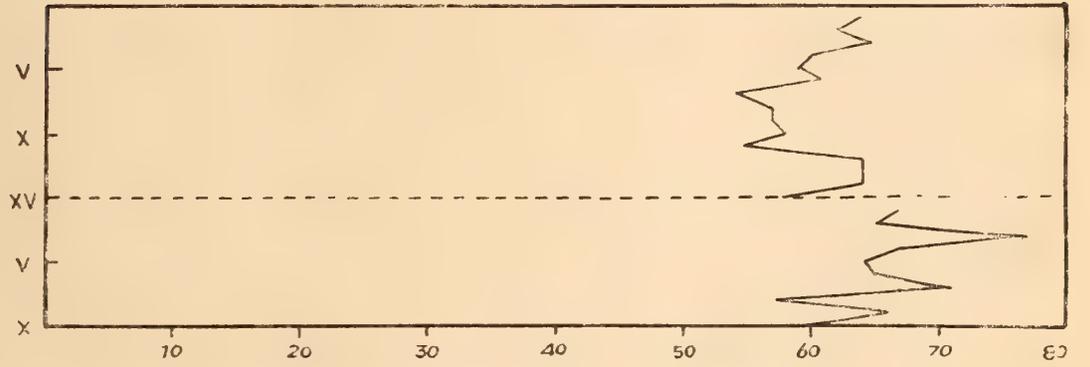


圖 II-21

姓名 이×준

性別 男

滿年令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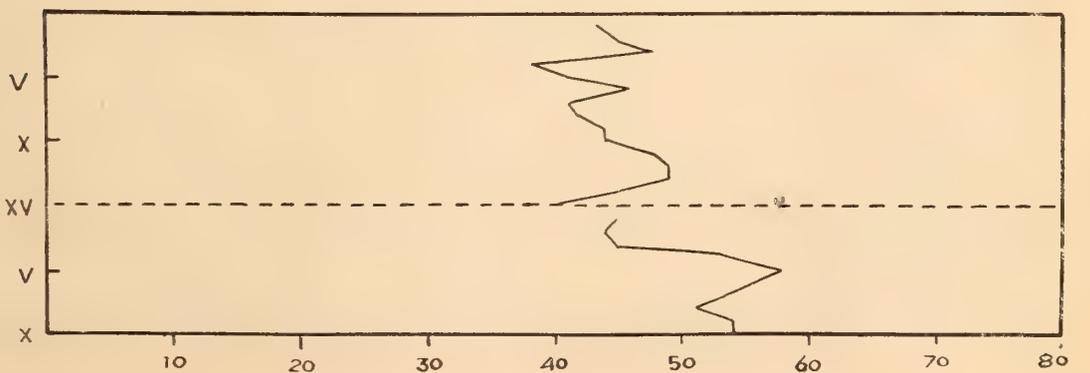


圖 II - 22

姓名 남×찬

性別 男

滿年令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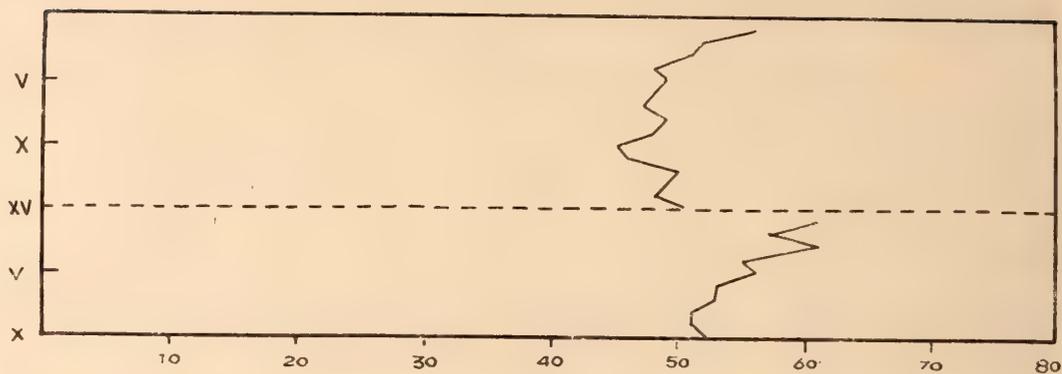


圖 II - 23

姓名 현×운

性別 男

滿年令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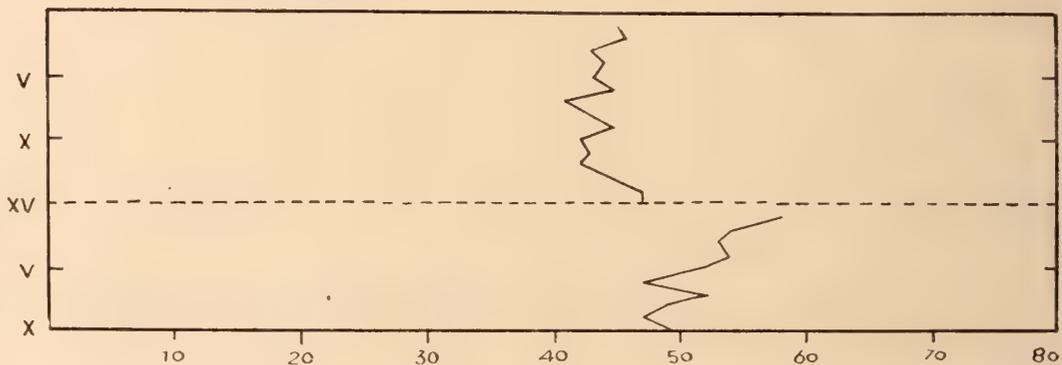


圖 II - 24

姓名 이×숙

性別 女

滿年令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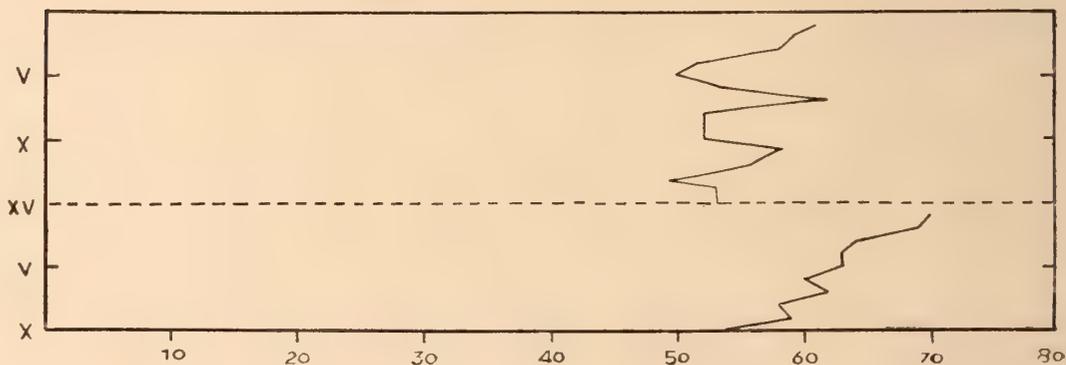


圖 II - 25

姓名 마×기

性別 男

滿年令 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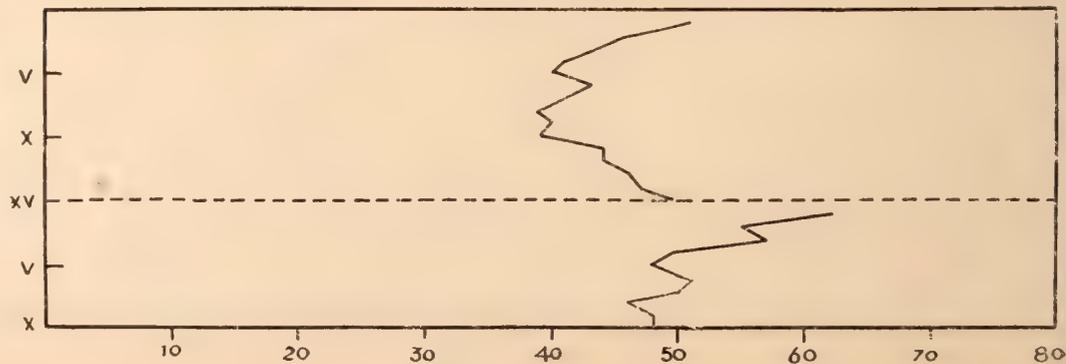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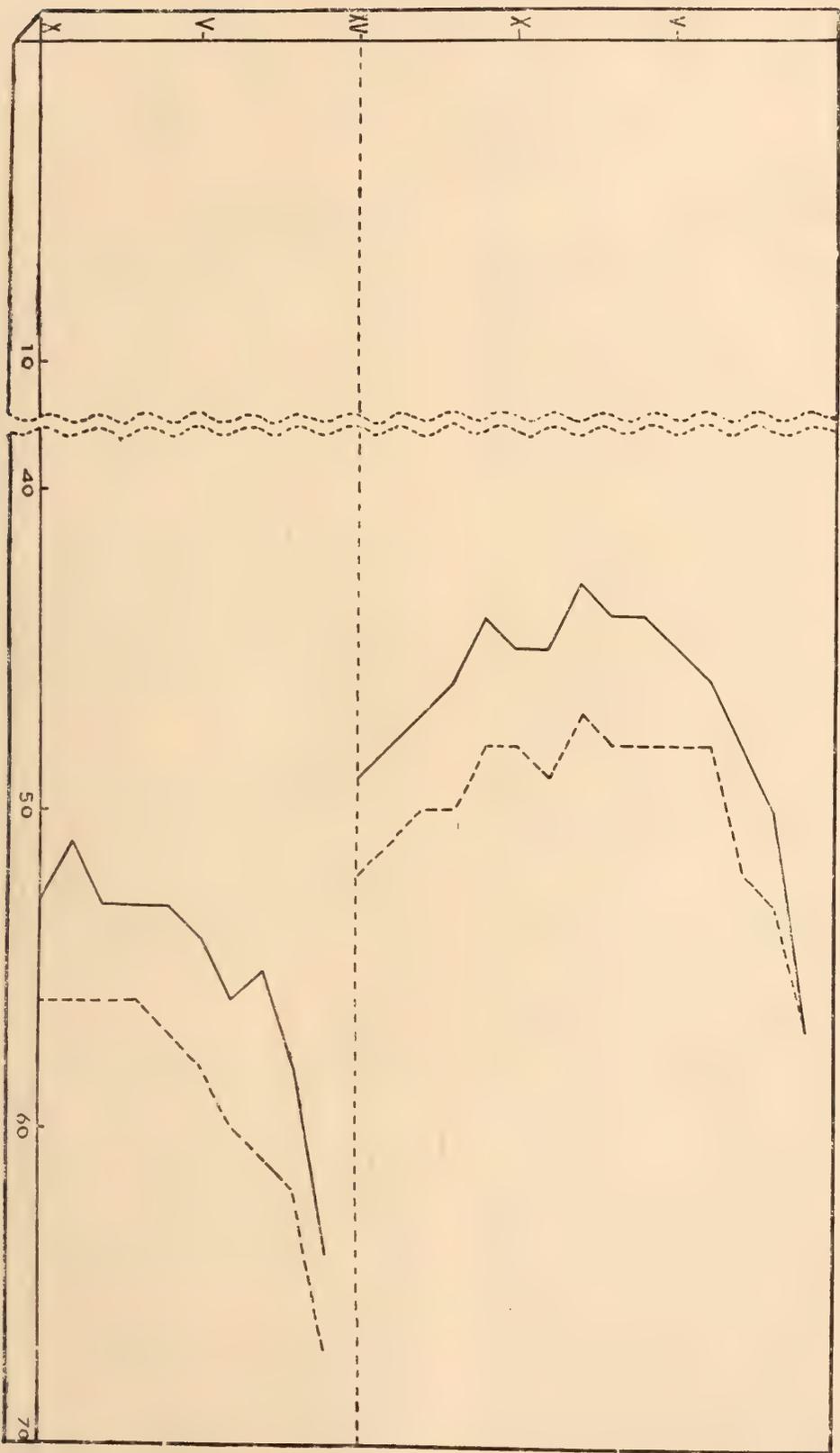


圖 III “크레페린檢査”(抹消法) 平均曲線



..... 兒童集團
 —— 少年集團

精神薄弱兒 收容施設에 對한 小考

李 德 均

1. 精神薄弱兒 施設教育의 必要性

本事業은 特殊教育인 故로 智能과 性能을 檢査하여 生活에 順應할수있는 教育的施設을 創建하여 神經精神病醫學者 心理學者 教育學者의 相互協調下에 不遇에 處한 兒童의 向上發展에 貢獻하여야 하겠다. 人類는 各者가 독특한 使命을 가지고 있다 能力이 낮은 者는 그 活動範圍가 적고 좁은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完遂함에 따라서 社會文化進展에 參與할수 있으면 個人으로서 또는 社會人으로서 幸福 할것이고 義務를 完遂하고 權利를 獲得할수 있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또한 兒童의 精神과 신체는 遺傳의天品과 後天의環境과 熏련에 따라서 差異가 있는 이상 그 能力의 差異도 否定할수 없다. 然하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를 瞥見하면 各個性의 相異한 知能의優劣의 差異를 考慮치 않고 普通아동을 基準으로 指導하는 故는 優劣兒童은 自發의 活動能力의 伸長을 沮止 當하고 普通이하의 兒童은 過重한 부담에 고통을느껴 心身에 惡影響을 받아 점점 萎縮된다.

人道的見地나 教育的見地를 떠나서 社會的見地에서 만 보더라도 정신박약아는 社會政策上 刑政學上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親友로부터의 蔑視 劣等感으로 因한 自暴自棄 혹은 誘惑 教唆를 받아 不良輩로 轉落되는 例가 적지 않다. 또 情意方面에도 缺陷이 있어 犯罪 賣春 失業 貧困等 社會問題와 不可分の 關係가 있어 職業輔導가 重大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本 教育의 完壁을 期하여 그 個人의 人格을 尊重하고 참다운 人間生活의 眞味를 맛보게 하고 將來의 社會制度와 질서유지상 많은效果를 내도록 하지않으면 아니 되겠다. 또 環境의으로 知能이 지체된자는 治療教育에 依하여 저능을 正常化시키고 情意를 純粹化시키며 先天的 혹은 生來的으로 精神이 박약케된 者는 隔離시켜 劣性遺傳을 國民 保健衛生에 미치지 않도록 努力하는것이 國家滿年之計가 아니겠는가.

2. 收容保護의 特異性

上記한 바와 같이 精神박약兒 施設은 정신박약아를 保護하여 衣, 食, 住를 提供한다는 消極的面만 아니라 獨立自活에 必要한 知識 技能을 習得시킨다는 積極的인 面도 가지고 있다.

또 精神박약아 施設은 정신박약아이라는 事實만으로 수용 對象이 되는것으로서 他施設과 다른 點도 여기에 있다.

이 밖에 정신박약아에 對한 수용보호의 意義는 教育 指導를 個別的으로 함이 가장 理想的이나 정신박약아에게는 여기에 集團指導도 亦是 必要하다.

家庭內의 1對1의 指導에 效果를 보지못한 때에 集團指導에 依하여 成功한 일이 적지않다. 即 衣食住의 原始的 基本訓練 같은것은 꼭 集團指導가 必要하다고 하여도 無妨할것이다.

그러나 白痴中에서도 至極히 程度가 낮은 者 例를 들어 體力的으로 簡單한 基本動作은 勿論 步行마저 困難한 者로서 醫療可能的 可望조차 보이지않는 정신박약에 있어서는 施設收容力이 稀薄한 現在로서는 集團指導는 不可能하며 아울러 收容保護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않다.

3. 生活指導

一般兒童과는 달리 能力上 劣等하다는 意識이 潛在하여 있어 一般兒童과 같이 衣食住의 訓練마저 쉽사리 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기에 이 施設은 多幸히 劣等意識을 이끄는 일없이 日常生活을 接觸할수가 있게된다. 따라서 가장 效果를 올릴수 있는것이 生活指導이다. 또 이것이 정신박약아 指導에 있어 努力의 根據를 둘 곳이다.

生活指導의 內容은 于先 自己自身에 局限되어 있는 衣食住에 關한 것으로 부터이며 이것은 個別指導이면서 集團에서 이루어져야할 指導이다. 其 過程에 있어 勿論 兒童에 따라서 相異하나 習得 狀況은 一般兒童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普通이다. 그럼으로 一般兒童과

같이 隊伍를 이룬다는 것은 虛望한 일이다. 要컨데 愚鈍하다든지 粗雜하다든가 하여도 于先 一般正常兒를 따라 行한다는 點에 目標을 갖는다.

다음은 될수 있는 限 社會性을 갖게하는 指導를 한 다 自己에 局限된 衣, 食, 住(基本欲求動作)에서 社會性을 띤 衣食住의 動作을 期待한다 例를 들면 食事 凡節을 지킨다는 것도 여기에 屬한다 더욱 可能한 者에게는 直接 基本欲求動作과 關係없는 積極面을 띄운 社會性 賦與에 힘 쓴다 例를 들어 人事를 할수있다는가 微笑를 지어본다든가 하는 種類의 것이다. 여기 까지 할 수 있게될려면 무엇보다 정신박약아 自身の 素質에 따르지만 우리의 努力으로서도 이 程度까지는 이끌어 올려보자는 熱意로서 指導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4. 學科指導

現下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어 모든 兒童들은 地域內國民學校에 通學할수 있으나 精神薄弱兒를 爲하여서는 養護學校 또는 特殊學級이없으면 通學은 困難하다 이러한 學習指導의 對象兒는 IQ로 50以上 이여야한다. 즉 學校教育을 特殊教育으로 可能한 兒童들이다 그리고 以下 知能指數(IQ)의 所有者는 이것도 困難하다. 이런 兒童은 施設 스스로 學習指導를 하여야 할것이다.

然이나 우리나라 精神薄弱兒에게는 이러한 惠澤은 아직 遼遠한 感이 있다.

5. 職業指導

정신박약아가 施設에서 退院하고 將次 社會生活을 하게될려면 무엇보다 職業能力을 性能에 맞추어 適切히 配慮하여야 함이 가장 必要하며 아래와 같은 目的에 行하여져야 할것이다.

첫째, 社會生活에의 自覺과 勤勞意欲을 啓發한다.

둘째, 共同生活에의 興味 造成 및 協同精神을 涵養한다.

셋째, 性能에 相應한 智識 및 技能의 習得. 이리하여 作業訓練을 通하여 性能에 應한 職業種目を 알게된다 이는 兒童 스스로 뿐만 아니라 보다 指導者가 알아내어 그에 關한 知識 및 技能을 習得할수 있는 機會를 造成하여 주어야 할것이다.

然이나 一般의인 作業訓練에 있어서는 于先 可能한 範圍內의 일로서 할수있다 할찌라도 職業으로서 能히 해 나갈수있는 限界는 어떻 하겠는가가 問題일것이다 그레야만 社會의生活과 關聯을 맺어 나갈것이다.

職業指導는 主로 作業訓練을 通하여 이루어지며 精神的面보다 肉體的으로 單純勞動을 할수 있는 科目을 對象으로 하고 年令의으로 十五歲以上의 兒童을 指導한다. 故로 科目은 農藝 家畜飼養이 主된 指導 種目이 되겠으며 簡單한 手工業도 行하여 진다.

6. 退院과 其後의 補導

精神薄弱兒의 收容養護에 있어서도 年令의 制限을 받게되며 이는 獨立自活을 爲한 準備內容을 可能한 限 充實케하여 주기爲한 사랑에 基因된 것으로 十八歲까지는 一旦指導의 손을떠어 社會生活에의 첫걸음을 밟게한다.

家庭을 가진 兒童에게는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나 여기에 措置權者 保護者와의 充分한 連絡을 取하여 退所 시킬 必要가 있다. 一例를 든다면 職場에 就業시킬 때 親友 數名과 함께 就業케 하며 職場長의 充分한 理解와 協力을 求하여 주어야 할것이다. 이밖에 精神薄弱兒 自體의 個性에 應하여 여러가지 社會復歸後의 補導가 行하여 저야한다 (兒童相談所 및 福祉委員會와의 連絡) 然이나 적당한 就業의 受諾도 없고 兒童 自身도 몹지 知能이 낮아 20歲를 넘게 되는 때는 兒童으로서의 惠澤의 對象도 되지못하는 까닭에 法律에 依하여 生活保護를 받아야 할것이다 即 이와같은 年令 超過者는 救護 施設等으로 轉院措置를 考慮해야 한다.

7. 通院(通學)式 指導

精神薄弱兒의 保護指導는 施設收容이 가장 좋으나 現在론 國立施設 하나 밖에 없고 二·三의 特殊學級이 이 넓은 땅에 있는 形便에 精神박약아 數가 (外國의 統計比率로서는 人口의 約 20%) 적지않은 現狀에 있어 그 數의 收容保護란 期待할수 없다.

그러나 家庭이 充實한 精神薄弱兒에 對하여서는 兒童養護는 家庭이 第一이라는 原則에서 施設 收容力이 不足한 現在이와 같은 家庭의 精神박약아까지 收容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이를 爲해서 晝間만이라도 精神박약아를 받아들여 從來 家庭에서 할수 없었던 集團指導를 實施한다는 것은 至極히 適切한 方法이다. 이를 爲하여서는 便利한 交通의 惠澤을 받은 곳에 施設을 두어야 한다.

以上으로 大綱 精神박약아 施設에 對하여 論述하여 보았다. 大體로 上述한바와 如한 條件을 造成하면 精神薄弱兒教育에 進展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筆者 國立覺心學院 勤務)

精神遲滯兒童의 實地教育

韓 敬 愛

精神遲滯兒童을 醫學的 心理學的 教育學的 社會學的 모든 方面으로 觀察하여 그 發生의 原因을 探求하여 그 本質을 明白히 하는 까닭은 教育的 對策을 講究하기에 必要한 까닭이다. 精神遲滯兒童의 教育은 그 個性에 依하여 實施함은 勿論이나 이에 共通되는 教育理念의 內容과 方法을 갖어야 할것이다.

精神遲滯兒童은 心身이 다 正常치 않다. 特異한 精神狀態를 가진 兒童에게는 어떠한 生活狀態를 營爲케 함이 理想的인가? 卽 將來의 理想的 教導理念을 어떠한 目標下에 들것인가를 熟考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兒童들은 여러가지 角度로 보아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나 많은 缺陷이 있는 까닭에 陶冶力이 가장 薄弱한 兒童들이다. 이러한 兒童들과 素質이 優良한 兒童들을 거이 같이 取扱하는 것은 穩當치 못하다. 學校에 入學할 때 부터 벌써 같은 年齡의 兒童들과 比較할수 없으므로 劃一教育을 받으면 반드시 그 進度가 年年히 遲延 될것이다. 이러한 童兒들을 教導할 때에는 心身을 調和的으로 啓發시켜 社會에 有用한 人格을 育成하는 形式的 目的과 民主精神을 土台로하여 大勢에 順應할 善良한 國民과 有爲하고 優良健康한 國民을 養成하는 實質的 目的을 目標로하여 邁進함에는 變함이 없다 하더라도 正常兒童 教育에 比하여 甚深한 考慮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시 말 하면 正常兒童에게는 學課나 訓練方面에 要求하고 期待할 事項 일지라도 精神遲滯兒童에게는 그렇게 할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負擔責任을 輕減시켜야 할 部面이 있는 한便에 正常兒童보다 더 一層 主點을 實生活에 基盤을 두고 實生活에 有益한 訓練을 하여야한다. 이것은 國家社會로 보든지 또는 個人으로 보아서 特殊兒童의 教導上 가장 緊要한 일이다.

指導者는 다음에 말하는 모든 主點에 立脚하여 어찌 하던 不遇에 해매는 薄弱兒童들을 가장 幸福스럽게 生活할 수 있게하며 個人 幸福을 享有하는 一便 社會에서 落伍되지않은 他位를 確保할수 있도록 社會人으로서의 基礎를 培養하기에 留意하여야 한다.

一. 健康增進

精神遲滯兒童은 一般的으로 智能이나 榮養이 正常兒童에 比하여 劣等한것은 事實이 證明한다. 肉體가 虛弱한 兒童은 精神遲滯兒童이라고는 말 할 수 없으나 精神遲滯兒童의 大部分은 몸이 虛弱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學業成績의 劣等과 身體虛弱과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또 精神遲滯兒童은 여러가지 肉體的 疾病을 가지고 있다. 이 疾病을 오랫동안 治療안한 까닭에 精神이 遲滯된 것도 있다. 夏節에는 消化器病이 많고 冬節에는 感氣가 많은 것은 寢痰의 不注意가 主要原因이며 其 外에 頭痛 皮膚病 外傷 夜尿症이 있고 眼疾 같은 것은 한 두 兒童의 患者로 因하여 不遇數日 內에 全體에 蔓延되어 豫防과 治療에 많은 苦心을 겪은 例도 있다. 이 外에 이 兒童들은 非養生의이고 不潔하며 또한 여러가지 身體의 缺陷으로 因하여 姿勢가 端正치 못하고 非衛生的 生活를 繼續하고 있음으로 健康에 障害가 있을 뿐만 아니라 訓練上이나 心身上에 큰 障害가 되는 原因이되어 充分한 教育的 效果를 見올 수 없는 境遇가 많다. 비록 不具의 몸일지라도 苦痛도 없고 弛緩도 없으면 明朗한 氣分으로 活動力을 發揮할수 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正常兒童들도 身體發育 過程에 있는 時期에 萬若 그 發育을 等閑히하면 一生을 亡칠수 있거든 하물며 身體의 精神的 缺陷이 있는 兒童에게는 더욱 더 健康 第一主義를 選擇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또 저 兒童들의 健康의 增進

을 圖謀함은 將來 生活이 身體의 持久力이 많아야 하는故로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健康增進에 絶對 留意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음은 健康의 原動力이 되는 食事に 對하여서 말하고자 한다.

現下 救護施設에서 養護를 받고 있는 兒童은 大概 過去의 浮浪兒童이나 或은 經濟的 不遇한 家庭에서 生長한 兒童으로서 困難한 食生活을 習慣化한 結果 品性까지 野卑하게 되었다. 成人의 食事は 肉體의 生命을 保持하고 活動으로 因하여 消費되고 分解된 成分을 補充하기 爲하여 必要한 榮養分을 攝取하여 心身의 慾求를 充足시키는 것이나 兒童은 全然 生活過程을 달리하여 消費와 分解된 成分을 補充할 뿐만 아니라 肉體의 生長하는 組織體를 增殖시키는 作用이 있다. 그럼으로 兒童의 給食의 目的은 그 生長 促進에 가장 必要한 食料品을 供給하여 健全한 成長을 圖謀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現時下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보아 滿足한 榮養給食은 不可能하다. 그럼으로 各 施設 經營者는 經濟가 許諾하는 範圍內에서 最善을 다하여 最大의 榮養食事を 供給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다.

二. 生活訓練

精神遲滯兒童에 對하여 教導上 가장 困難한 것은 不潔과 怠惰와 動作의 遲鈍과 行動의 本能的인 것을 矯正하는데 있다. 이것은 그 兒童들의 智能的 缺陷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實生活上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精神遲滯兒童 教導에 當하여서는 學科의 指導도 勿論 必要하거니와 그 以上 더 必要한 것은 生活訓練이다. 生活訓練이라면 大端히 漠然하나 將來 生活을 考慮하면서 現在 生活을 더 잘 指導하고 訓練하여서 將來 社會의 生活에 有利한 狀態를 招來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다.

① 衛生的習慣

洗手法과 養齒法 姿勢와 適當한 分量의 食事法 感氣와 傳染病에 걸리지 않게 努力할 것과 疾病의 攝養等 個人에 對한 清潔과 衛生 居處의 整理 整頓이며 公衆衛生에 對한 共同的清潔의 習慣 養成等に 努力할 것이다.

② 意志習慣의 養成

規律 順從 親切 敏捷 努力 禮儀等과 같은 意志反應은

習慣敎訓에 따라 養成할 可能性이 있으니 平日의 單純한 行爲의 對答이나 掃除나 심부름 같은 것을 敏捷하게 하는 것은 漸次 社會人으로서의 基礎가 되고 이 習慣이 固定되면 멀지않아 어떤 職業에 從事할수 있는 基礎工作으로 볼수 있다.

以上の 習慣은 同侪間이나 家庭 社會의 一員으로도 必要한 素因이 되고 道德的訓練의 曙光도 된다.

③ 感官練習

感覺에 對한 機能의 練習은 日常 生活上에 없지 못할 것인데 精神遲滯兒童 中에는 感官의 障害가 있는 者와 練習의 時期를 잃어 感覺機能에 缺陷이 있는 者가 많다. 그런 故로 感覺의 練習으로써 日常生活에 基礎를 保全할것이나 그 練習을 할 때에는 日常生活에 即効가 있고 또 興味가 있는 方法을 取할 것이요 生活과 懸隔한 距離가 있는 것은 效果가 적다.

④ 筋肉練習

兒童들이 8~9歲가 되면 不隨的 筋肉의 運動은 比較的 빨리 되는 것 같으니 이 期間 中에 必要한 調節 運動 即 習字나 圖畫같은 것을 練習시키는 것이 必要하나 青年期에 達하면 基本筋肉 即 다리 등 어깨等の 大筋運動이 다시 始作하여 小筋의 調節運動이 阻害된다. 精神遲滯兒童은 筋肉運動의 練習을 할 時期를 喪失함으로 運筆이 拙劣하게 되며 글씨와 그림이 拙劣하다. 그런 故로 筋肉運動 調節 練習用具를 考案하여 이 缺陷을 補充하여야 한다. 이 用具를 製作함에는 우리가 日常 目擊하는 家屋 動植物 交通機關 日用品等を 圖案化한 것으로 幾何學的 圖形과 其他 各種 圖案들의 模形으로 하고 이 模形을 用紙에 模寫하여 線도 긋고 着色도 함으로써 筋肉의 練習이 되게 한다.

이 方法은 筋肉運動 練習과 同時에 圖畫 手工의 階段도 되고 또 職業議導의 段階도 된다.

三. 學科敎育

日常生活에 必要한 計算과 片紙 쓰는 方法 같은 것은 學科敎育에서 程度가 높은 편이고 國文 글字를 알기에만도 困難한 者가 있는 故로 學科課程은 知識發達

의 頂點을 限度로 定할 것은 教育標準 그 測定에 依하여 求할 것이다. 學習指導는 實生活을 基調로 하여 行할 것은 勿論임으로 綜合的 教育法을 取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各種 教具는 分解的 形式的의 方法을 取하지 아니하면 效果가 적다.

四. 體育教育

矯正 體操로서 姿勢와 身體 各部의 異狀發育을 矯正하여 健康의 增進을 圖謀하고 意志 訓練을 主目的으로 한다. 不良性 精神遲滯兒童에 對하여서는 嚴格한 規律 下에 教練을 加하는 것은 效果가 크다. 競技에 興味를 주고 注意의 換起와 敏捷한 反應의 訓練을 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그러나 過勞에 빠지지 않도록 運動 時間에 長短을 加減하여 運動 後에는 充分한 休息을 주어 心身의 疲勞 恢復에 留意하여야 한다.

五. 音樂教育

音樂은 娛樂과 慰安을 주고 나아가 情操教育의 一助가 된다. 單一 리듬을 體得한 後 漸漸 復雜한 리듬 體得에 導入할것인데 其間 리듬 體得은 動作 上에 明朗性과 敏捷性을 더 하게 된다.

六. 情操教育

精神遲滯兒童의 智的 缺陷을 補充함으로써 漸次 情意的 覺醒을 圖謀하고 性格陶冶의 一助가 된다. 그럼으로 國家의 祝慶日이나 其他 年中 行事의 各種 儀式에 參加하여 音樂會 映畫會等을 開催하여 情操의 陶冶를 圖謀하여야 한다. 以上の 教育理念에 依하여 忍耐하고 親切하게 指導하면 된다.

七. 職業教育

우리가 社會的 生活을 營爲할 때 에는 반드시 職業을 選擇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即 兒童이 成長後 必然的으로 要求하는 것은 職業이다. 精神的異狀이있는 精神遲滯兒童도 世上에 생겨 나온 以上 當然히 어떠한 職業을 가져 自己의 生活을 營爲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다. 或은 安全한 生活의 길을 求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될수 있는 限 自己의 存在를 爲하여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럼으로 精神遲滯兒童을 敎導하는 境遇에는 그 將來의 職業에 對하여 考慮하고 或은 그것을 爲하여 敎育하며 或은 職業을 指導하는데 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有效한 特殊使命을 達하였다고 말 할수 없다. 그런데 精神遲滯兒童의 職業을 考慮할 境遇에 가장 注意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될 것은 그 兒童의 精神의 特質이다. 各自의 精神狀態에 依하여 職業을 指導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職業教育을 施行함에는 다음 事項에 注意하여야 한다.

① 作業成績이 眼前에 보여야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作業을 繼續함은 興味를 느끼지 아니한다.

② 언제든지 같은 反應을 反復함에 따라 習得 할수 있는 機械的 職業이 必要하다.

③ 注意力을 오랫동안 要하는 職業보다 짧은 時間을 要하는 職業을 擇할 것이다.

④ 手工業 中에는 一般智能과 關係 없는 特殊智能으로도 能히 할수 있는 模寫 寫字等의 職業이 있다.

⑤ 智能程度 疲勞의 度 適性の檢査 保護者 作業主任 本人의 意見 興味等을 考慮하여 그 個性에 맞는 職業을 選擇하여야 한다.

要컨데 特殊教育에 中心이 되는 것은 精神遲滯兒童의 敎導이고 中間兒童의 教育도 다음 가는 重要問題이다. 即 精神遲滯兒童을 知覺生活로 引導하고 感覺教育으로써 一般概念을 주며 抽象的 思慮에도 智能을 啓發시키며 道德的 訓育의 徹底를 圖謀함으로써 個性의 伸展을 計劃하여 그 德性을 發揚시켜 人格을 完成시키는 것이 精神遲滯兒童教育의 理念이다. 그런 故로 特殊教育에 從事하는 者는 科學的 研究를 行하여 그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焦眉의 急務이다.

(筆者 國立覺心學院 勤務)

院生 感化過程에 對한 記錄

梁 東 一

一.

어느 國家 어느 民族을 莫論하고 靑少年을 가르켜 나라의 꽃이요 民族의 希望이라 함은 그들이 歷史的인 課業을 이어받아 보다 向上的이고 發展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찬란한 文化를 創造하고 國家와 民族의 興亡盛衰를 左右하는 素因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八·一五光復을 期하여 人間의 尊嚴性을 짓밟는 強壓制度에서 벗어나고 封建社會의 生活制度에서 民主主義社會로 바꾸는 過渡期的 現狀과 六·二五의 戰傷으로 말미아마 人間 本然의 姿態인 家庭을 버리고 사랑의 對象인 父母 兄弟 姊妹를 잃고 轉轉乞食하는 浮浪兒들의 氾濫으로 因하여 日益增加 一路에 있는 非行兒童이 社會의 그늘에서 가진 惡習을 造成하고 各種의 犯罪를 자아내고 있는 오늘날 그 教化育成的 對策이 時急함은 再言을 要치않은바이다.

感化院이란 一言以蔽之하여 犯罪兒 虞犯少年 및 非行兒童等的 問題兒를 正常兒로 教化育養하는 施設이라 할 것이다.

朝鮮感化令 第一條 一項에 依하면 “年令 八歲以上 十四歲未滿으로서 不良行爲를하며 또 不良行爲를 할 念慮가 있고 適當히 親權을 行使할 수 있는 者”라고 規定 되어 있다.

여기에 不良行爲를 하며 또는 不良行爲를 할 念慮가 있다는 것은 곧 犯罪兒 및 虞犯兒를 말하는 말일 것이다 本院에 收容되고 있는 問題兒는 各樣各色的 種別로 分類할 수 있으나 特別히 Sample Suvey 即 標本調査로 選定된 特定人 C라는 問題兒를 對象으로 하여 感化 過程에 對한 記錄 하여보고저한다.

二.

問題兒 C는 檀紀4283年 3月 15日生 (當12歲)으로 本籍을 光州市에 두고 光州市 忠壯路에서 生活하였다 그 兩親은 DD라는 布木商을 하는 中流 以上の 家庭이었다 C는 光州에서 一流인 某國民學校 三學年에 在學하고 있었으나 學校에는 이름만 두고 光州驛과 光州 某

劇場을 中心으로 彷徨하는 不良少年 10餘名과 合勢하여 C自身的 家財 金錢 時計 冊等를 훔쳐내는 것으로부터 始作하여 商店의 物品을 竊取하며 通行人을 노려 淑女들의 Hand Bag을 날치기 하였으며 劇場內에서는 觀覽客의 주머니를 터는 것 등의 犯法行動이 常習이 되어 數次에 걸쳐 警察官에 連行되어 父母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것은 勿論 그 物質의 辨償을 當하는 것에 頭痛거리가 되고 있을 때 當時 社會事業機關인 某機關長 J氏를 알게 되어 C의 事情을 呼訴하고 論議한 結果氏로 하여금 本 感化院에 收容教護를 依賴하게 되었다.

C는 그 姉夫(約30歲)의 誘引作戰으로 以前에 가본 적 있는 姉夫宅(全南寶城郡茂橋邑)에 다리고 간다고 속여 檀紀4292年 12月 4日 눈보라치는 날 木浦에 到着하였다. 木浦驛에 到着하자 그 目的地가 아님을 알고 도망칠려 하였으나 그 姉夫의 손에 붙잡혀 마치 罪人과도 같이 손에 매달려 本院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가 生後 처음 보는 바다에 공포심을 갖었으며 모든 面에 戰慄的인 態度로서 어찌 할바를 몰랐다.

그는 年令에 比하여 體軀가 적고 大端히 매달라 있었으나 強骨하게 보였다. 그는 現在에 이르기까지 外傷이나 皮部病은 甚하였지만 아직 앓고 누워본 적은 없다. 그의 눈은 反抗的인 表情으로 옆으로 떠 본다 그 얼굴에는 웃음을 찾아 볼수 없으며 즐거움과 괴로움의 表情이 없다 Frustration (慾求不滿)에 찬 印像이며 그 입술은 폐지입 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말은 혀짧은 소리를 하며 모든 것을 自己 個人에게 合理化시킬려고 하며 正과 不正의 判別能力이 없으며 혼자 孤獨하게 으스스한 곳에 있기를 좋아 하였다. 그는 犯行에 對하여 泰然自若하며 「몰라라우」 「알했어라우」의 否定語가 常習的으로 使用되었다 그가 이곳 生活에 익숙하여지고 時日이 감에 따라 過去의 常習的인 犯法 行動은 再顯 되기 始作하였다. 平素의 生活態度는 우둔한 머리이며 不足한것 같이 보이지만 犯行에 있어서는 大

端히 민첩하게 움직이었다.

現在 그에게는 必要가 없는 物品을 竊取하는 盜癖性 犯行이 나타났다 그 事例를 들어보면 檀紀 4293年 4月 12日 本院에 들린 女子손님 손가방을 竊取하여 上衣 속주머니에 所持하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再犯으로 同年 5月 2日 本院 K先生 집에 들어가 방안 壁에 걸려 있는 손가방 속을 더듬어 一金 千圓을 훔쳐낸것을 附近에 있는 사람에 依하여 發見되고 同年 5月 28日 本院 B先生 집에 들어가 벽장 안에 둔 손가방을 더듬어 一金 萬圓을 竊取하여 감쪽같이 숨겨 오다가 다음날 5月 29日 本院 M氏가 낚시질 하기 爲하여 옷을 海邊 모래沙場에 벗어 놓고 바다에 들어가는 機會를 노려 下衣 주머니를 더듬고 있는 것을 事前에 發見하여 몸 搜索을 한 結果 意外的 金錢이 나타나서 調查하게 되니 B先生 집의 犯行을 自白하게 되었다.

이어서 同年 7月 25日 院長 官舎를 노려 사람이 없는 機會를 利用하여 부엌 門으로 들어가 방 안에 놓여 있는 時計 모양으로 된 羅針盤을 竊取하여 잠구어 둔 유리 창 門을 열고 튀어 나와 端緒를 못 잡게 하였다. 이와 같이 犯行 事實이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方法으로 調査를 하고 또 全院生에게 公表하여 自白할 것을 중용하였으나 이 事實을 알고 있는 兒童도 絶對 秘密을 지켜 왔으며 本人 自身이 自白하여 나타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며칠 후에 不注意로 因하여 羅針盤을 땅에 떨어트리게 되어 發見되고 말았다 그 外 飲食物 훔쳐 내는것 또 그 어린 年令에 담배를 吸煙하는것 등의 여러가지 非行 事實이 많이 있었다.

以上과 같은 犯罪의 動機를 살피기 爲하여 面接觀察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觀察內容의 正確을 期하는 面接이 進行되려면 自然스런 Rapport의 成立이 緊要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Imformation을 資料로 하여 綜合的인 考察을 하기로한다

三.

먼저 Rapport의 成立을 造成하기 위하여 C와 接觸의 方法으로 될수 있는 限 C와 많은 時間을 함께가지고 日常生活을 하는데서 그 活動 分野에 關心을 가지다 그럼으로 自己認定을 받게 되는데서 부터 面接은 始作 되었다 그의 生育 過程되는 家庭 形便부터 列擧하면 그 父母 兩親은 約 45歲로 木木商을 하며 學歷은 國民學校 卒業程度로 判斷 되었다. C의 누님은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結婚하여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그의 큰兄은 高等學校에 在學中이며 다음 兄은 C

와 같은 國民學校에 在學한다 C의 바로 밑 아우가 年令 1年 差로서 C와 다른 學校에 在學하며 그 밑으로 어린 동생 男兒 2人이 있어 모두 10名의 家族이 한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C의 叔父는 光州의 某劇場 “기도”로서 있고 그의 姑母는 光州에서 술장사(酒店)를 한다 入院當時 그의 姉夫 말에 依하면 C의 父는 繼父라고 하였으나 事實은 實父였다 繼父라고 속인 것은 子女에 對한 關心보다 社會的인 體面關係에 사로잡혀서 子息 C에 對하여는 貴치않게 여기었다고 볼수 있다. 그의 父親은 술을 잘 마시어 家庭에서는 술 주정을 하며 또는 家財道具를 破壞하여 亂暴한 行動을 보인다 또 夫婦 싸움을 잘 한다. 父는 품이 뚱뚱하여 힘도 세어서 싸움 할적마다 그 母가 甚히 毆打 當한다고 한다 이러한 家庭不和를 갖였을 때는 C는 아버지에게 對하여 戰慄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父는 C를 大端히 미워하며 때리기만 하고 用錢도 全然 주지 않으며 어린 동생만 이뻐한다고 한다. C의 말에 依하면 아버지의 뚱뚱한 꼴마저 보기가 싫으며 아버지 그런것은 必要가 없다고까지 한다. 그의 어머니는 用錢도 잘 주어 좋다한다. 그러나 그 어머니 보다는 그의 누님이 더 좋다고 한다. 이 點에 吟味할 것은 C에 있어서는 가장 渴望되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一歲 差인 동생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가 獨占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사랑即 Oedipus complex에 對한 慾求不滿을 자아낼과 同時에 그 동생을 猜忌하는 心情이 북바쳐오르게 되었다. 그럼으로 이 慾求不滿을 만족하는 方向은 自然히 누님을 따르게 되고 누님을 따르게 되면 姉夫와도 가까이되게 되어 本院에 C를 이끌고 오는데도 姉夫가 適格者가 되었다 또 아버지는 用錢을 안주는데 누님과 姉夫는 돈을 잘 주었다는데 對해서도 누님을 따르는 要因이 되었다. 또 아버지처럼 맞兄도 C를 잘 때리니 家族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그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家庭과 父母에 對한 厭症과 反撥心만 높아 갈 뿐이었다. 그럼으로 그 活動分野는 外部로 옮겨지고 外部의 接觸에서 歡心을 사기 爲하여는 物質을 必要로 하였다. 그리하여 自己 家庭의 物件을 훔쳐내기 始作하였다. 그가 活動하는 環境은 不良少年들과 連結되는 가장 좋은 條件들이다 그가 過去에 살던 鷄林洞은 光州驛과 距離가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群衆이 離合集散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곳의 不良少年들과 相從하게 되었고 또 술장사 하는 姑母宅을 往來하면서도 社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某劇場이 C의 商店과 가까이 있을뿐 아니라 劇場에 “기도”로서 있는 사람이 C의 叔父임으로 無料로 劇場에 出入할수 있는 好條件으로 자주 出入하는 過程에 이곳의 不良少年들과도 合勢되어 犯罪行爲의 길로 기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諸般 事情을 綜合 考察하여 診斷할 때 父母의 非正常的인 行爲에 對한 反撥과 不調理한 家庭 教育에서 制壓되고 사랑의 缺乏에서 致命傷을 입어 스스로의 劣等感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故로 C의 教化方案은 굶주린 사랑을 回復시키고 劣等勢識을 해소시켜 自己認定을 받는 길이었다.

檀紀4293年 8月 30日 院生 全體 消風을 갔었다. 點心時間이 끝난 다음 노래 자랑時間이 되었다. 어린 兒童들이 社會에서 듣고 배운 醜雜스런 노래를 한 曲 식하고 들어가는데 意外에도 問題의 C가 自進해서 나왔다. 여러 先生은 놀랐다. 確實히 그는 認定을 받고 싶은 心情이었다. 그리 神通한 노래 솜씨도 아니지만 入賞을 시켜 賞을 주었다. 무엇인지 모르게 C의 態度는 신바람이 나는듯이 보였다. 그 後부터 여러 先生들과 C에 對하여는 칭찬과 激勵을 機會 있을 때마다 하여 주도록 合議가 되었다. 同年 10月 15日 그는 땅에 떨어진 연필을 찾아 왔기에 여러 앞에서 칭찬을 하여주었다. 나쁜 일에는 꾸짖기 보다 차라리 理解하여 주고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된다고 親切히 타 일렀다 그는 칭찬 받는 것에 關心을 갖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關心이 自己에게 集中 되는 것 같이 되었고 모든 사랑을 自己 혼자서 獨占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 웃음으로 바꾸어 지고 튀어나온 입은 들어가고 제 자리에 잡혔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自然스런 人事가 交換 된다. 人事 할적 마다 머리를 쓰다

들어주면 더욱 滿足한 表情이었다. 이리하여 他院生과도 融和的인 活動에 젖게 되었다. 그는 무엇이나 할려고 하는 意慾의 態度를 가진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나쁜일은 안해야겠다는 마음의 態度를 갖게 되며 正과 不正의 判別能力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는 正常兒로 看做하여도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아버지 그런 것은 必要가 없다고 하며 어머니가 보고 싶고 누님이 보고 싶으며 家庭에 돌아가고 싶다 한다. 그가 歸家하게 되면 問題의 父가 問題가 된다 萬一 그가 歸家後 그 父는 前과 같은 態度로 C를 對한다면 C는 再犯의 길로 흐르지 안는다고 保證할수 없다. 그 父는 非正常的인 行爲과 家庭不和의 醜態를 보이지 안해야 하며 또 過去에 交際하였던 不良少年의 接觸을 막아야 할것이다.

上記 C의 犯行動機로 부터 그 矯正 過程에 이르기까지 內容을 叙述하였으나 우리는 먼저 問題兒의 教化 養育보다 앞서 問題兒가 發生하지 않도록 事前 豫防策이 緊要하며 于先 無知한 父母 即 問題의 父母의 啓蒙이 絕對 必要하겠다. 에기에 非行兒童 事前豫防策으로는 兒童福祉에 對한 汎國民運動을 이르게 國民 전체가 兒童指導에 關하여 깊은 關心을 가지고 非行兒童 犯罪豫防에 마음의 準備가 있어야할것은 勿論 兒童福祉를 擔當하는 機關이 協助하여야 할것이며 非行少年問題를 擔當하고 研究하는 專門的인 機關이 必要할것이다 即 一般犯罪를 取扱하는 司法機關에서만 非行少年問題를 다룰 것이아니라 非行兒童을 擔當하는 特別機關을 두어 (兒童相談所또는 家庭裁判所等) 橫的 從的인 連結을 가짐으로서 正確한 教化對策이 서야 할것으로 생각 한다. (筆者 國立感化院 勤務)

適應・調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社會라는 共同體 속에 사는 以上 社會와의 關係에 있어 調和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社會뿐 아니라 宇宙의 모든 自然法則에 對해서 適應하고 調和된 位置를 維持할 것이 必要하다.

즉 모든 自然現象에 對해서도 기쁨을 自由로히 驅使할 수 있도록 調和하지 않으면 안된다. 不幸의 意識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개 人格上으로 社會와 宇宙의 法則에 對해서 適應하고 調和하지 못하고 分裂을 일으키고 있다. 智慧와 能力을 가지고서도 그의 理想하는 바가 社會나 宇宙와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不幸한 곳으로 몰아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教養이나 才能이라는 것은 社會나 宇宙에 適應하도록 使用되어야 한다. 調和하지 못하는 知識이나 主張이나 主義는 自己 人格의 分裂을 자아낼 뿐이다.

한 구루의 나무가 시들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은 흙과 濕度와 溫度가 調和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Russell Bertrand)

職業輔導施設 職員인 나의 報告

禹 乙 福

지난 三月二十二日부터 實施한 國家公務員 社會事業, 指導者 訓練을 마치고 몇가지 느낀바와 約 四年間 年長兒童의 技術教育和 이들에 對한 就職斡旋에 實地 體驗한 바와 施設에서의 生活에 對한 小考의 一端을 開陳하고자 한다.

年長兒童皆學가 私設施設 태두리안에서 施設長의 指揮監督과 2, 3人의 補助員에 依하여 生活을 繼續하다가 待遇가 좋은 施設로 或은 조금 環境이 나은 施設로 轉院하였다. 「이들의 世帶를 細密히 調查하여 보면 約 七〇%가 直系尊屬 또는 卑屬의 二人以上으로 算할 수있다. 그리고」 이들은 좀처럼 秘密을 公開하지 않으나 이들과의 生活環境이 같은 指導者나 同僚에게는 率直함이 大部分이다. 即 自己가 眞心으로 信賴하는 벗이나 尊敬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는 時期의 差는 있으나 소감없이 過去의 生活史를 말하여 주는것이 特徵이다.

本施設에 收容되는 對象의 年令은 14歲以上 20歲未滿의 未成年 年長兒로써 가장 感受性이 強하고 反抗心이 強한 青年前期에 處해있으며 福祉施設에서의 被保護의 生活에 終止符를 찍게된다. 다시말하여 本施設에서 職業訓練을 通해 技術을 習得하고 社會進出을 爲한 第一歩인 技術教育을 받는 靑少年들이다.

그리고 이 年長兒童들의 大概는 宣明會나, 世界基督敎奉仕會, 基督敎兒童福利會 其他 養親會等 國內外 援助機關에서 보내오는 援助와 眞正한 事業家들의 惠澤을 받으면서 成長하여왔다.

이들은 各 施設에서 應試하여 合格된者(應試時에 技術訓練習得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된者)들로서 入所後 約 一個月이 經過되면 前 施設에서의 生活當時의 習性을 여기의 生活속에서도 表出시키려고 하는 一方 自己 있던 施設의 名譽를 건것처럼 主導權을 掌握하려는 慾望으로 暗鬪와 嫉妬가 往往 엮보이게 되나 元體 이들

에 對한 訓練과 指導가 徹底하므로 이네들의 所期目的은 達成하지 못한다.

그리고 入所資格은 國民學校 卒業 以上 또는 同等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 되어있으나 施設에 따라 中學校 高等學校 中退 乃至는 卒業者로 入所한者가 없지도 않다.

그러므로 學力의 差가 많으면 教育進度가 있어서도 影響이 甚할것으로 豫想되었으나 本人의 希望에 依한 科目選擇과 이에 對한 基礎的인 常識을 옮겨 習得한 者에게는 學歷의 高下가 問題되지 않고 그들이 訓練에 臨하는 態度 如何에서 優越의 差等이 생기는것이 普通이며 이들 大部分은 社會進出하여 自立自活하고자하는 確固한 決意를 가지고 授業에 臨하는 것이다.

그러나 其中에는 豫想한 期待에 어긋나거나 該科目에 對한 실증이 나면 轉科를 主로 要求하고 있는데 이들은 別로 期待될만한 成績을 올리지 못하고 彷徨하는 意志薄弱의 要素를 多分히 지닐 兒童들로 恒時 個別的인 指導와 訓戒를 相當히 必要로 하고있다.

다음은 本 訓練所 生活에 있어서의 慾求와 對策에 對한 問題로서 이네들의 慾求는 無限量 하고 無制限이다. 主로 飲食物, 衣類等 自己環境에 對한 滿足을 要求한다. 그러나 大概 充足의 不可能을 잘 알면서도 多數가 意合이 되면 되건 안되건 抗拒하거나 建議를 하여온다. 一種의 卑劣한 테스트에 不可한것으로 곧 指導者의 說得에 慾求를 調節해나가는 生活의 訓練에 이機會에 주어진다.

이네들에 對한 職業意識의 發露와 技術教育 習得에 對한 小考로써 普通 家庭에서 成長한 同年輩가 보다 誠과 熱이 大端하기 이룰데 없다. 例示컨데 흔히 社會에서 通稱하는 孤兒라면 自己環境을 언제나 빠속 깊이 간직한채 孤軍奮鬪하여 生活土臺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重大한 自己의 義務로 알고있다.

訓練 期間 中에 支給하는 各種 生活必需品를 節約하며 適所에 有効롭게 쓰는 行動은 어디서나 또는 어느 集團에서도 볼수 없는 特異한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技術 習得過程은 組織的이고 緻密하게 編成된 年間 訓練計劃表에 依據하면 進度에있어 約 10日乃至 15日 間이나 前進하는 越等한 實力을 나타내는 者가 大部分이다.

다음은 修了期가 가까히 닥치면 一般學校에도 볼수 있는 것과 같이 社會進出에 앞서 學皆는 未知의 世界 恍忽한 未來의 꿈속에서 焦燥, 不安, 歡喜 그리고 悲哀에 잠기는 樣相을 엿볼수 있다. 때로는 指導者에게 漠然하고도 無限한 質問이라던가 社會에 對한 廣範圍한 分野와 就職斡旋에 參考로서 今始 初間인 것을 들러 주기도하고 自己個性과 履歷에 對한 紹介를 새삼스럽게 하며 就職을 付託하는것도 異彩로운 現象이다.

다음은 當 訓練所에서 奉職하는 指導者로서 年間 訓練教育을 通하여 個別的으로 獲得하는 成績中 總點數를 平均하여 85點 以上인者는 어디까지나 就職을 周旋하여야하며 이것을 實踐시키기爲하여는 新入 初期부터 좀더 個個의 實力을 向上시킬 目的에서 確固한 約束을 하고 이를 貫徹토록 努力한다. 그리하여 卒業期가 迫頭하면 平素에도 그렇거니와 더욱더 指導者들은 東奔西走하여 親友, 先輩, 親戚 知面人士를 尋訪하여 自己가 擔當한 專門技術 分野에 所生들의 將來를 依賴하고 再三付託을 아끼지않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 企業人들은 施設에서 成長한 兒童 即 孤兒라는 認識을 指摘하고 無條件 拒否하는 者들에게 理解와 同調를 얻기란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修了後에 커다란 隘路가 있다.

實例으로써 短期(一年 乃至 二年)職業訓練教育을 修了한 兒童을 企業主가 보는 觀點을 論치 않을수 없으니 이는 企業主側으로서 보는 觀點과는 다르다는 것을 前提하면서 數 많은 看板을 찾아 初面不知의 人士를 尋訪하여 當訓練所의 趣旨와 使命을 說明하고 若干名이라도 採用하여 주기를 懇曲히 付託하면 孤兒라고 하여서 라기보다는 技術이 不足이니 其他 自身の 여러가지 避치 못할. 形便을 說明하면서 거의 10中 8·9는 拒絶을 한다.

이들 無依 無託한 未成年의 就職을 依賴하고 거듭 願懇하면 반듯이 衣食住를 前提로 하는 條件 即「採用과 同時에 衣食住 一體를 責任져야만 하니」하는 理由를 내세우며 拒絶을 한다. 그렇다고 前記한 企業體나 또는 그 運營者가 方今 依賴한 兒童에 對하여 衣, 食, 住의 便宜를 提供할 수 없는 形便에 處한 環境과 企業體인가 하면 大部分 그런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에는 前述한바와 같이 여러가지 理由가 있을理 없고 다만 한 가지 그것은 孤兒이기 때문이라는것과 短期 養成으로부터 오는 技術面의 未熟練 또는 素行이 좋지못할것 같다는 등의 杞憂에서이다.

事實 專門分野를 4年 乃至 8年餘에 걸쳐 專攻한 大學生도 就職의 保障을 받지 못하는 現實일 뿐만 아니라 家庭環境도 좋은 그들도 그렇거든 하물며 1年乃至 2年 間의 初步의인 技術教育을 마쳤다 하여도 不完全을 內包할 이들에게 機會가 주어지기 더욱 어려운 것이기는 하다.

이렇게 여러가지 條件으로 就職이 어려운 現實을 뚫고 東奔西走하여 知面人士 親知 新聞廣告 其他 看板을 찾아서 없는 愛嬌도 부러보고 때로는 自身이 서지않는 接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盡力하나 果敢하게 現實을 克服할수 없는 微弱한 우리에게 勸當키 어려운 要求條件을 내 세우는데는 자못 失望의 苦杯를 마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實情을 慨嘆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消息에는 原施設에서의 無知覺한 責任者들은 該當施設兒童의 前途遼遠한 希望을 抹殺시키려는 落望의인 言辭로 兒童들에게 새로운 意慾을 돌우워 주기는 커녕 訓練過程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케하는 例가 있다.

다음은 年年이 入所하는 兒童들의 質的動向의 統計를 보면 近間 一收容施設에서 成長한 兒童의 質的動向이 好轉되는 現象을 엿볼수 있음은 오로지 훌륭한 指導에서는 影響이라고 할것이며 이 影響力은 各 施設 職員을爲한 指導機關에서 一次에서 부터 每個人 3, 4 次에 亘한 再教育의 結實이라는 或者의 말을 들을 때 職員 再教育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請되거니와 또한 이 事實이 進一步하여 좀더 質的向上을 꾀하여 나아간다면 그 누구에게도 부럽지않는 훌륭한 指導者가 養成될 것이며 이에 附隨하여 直接的으로 兒童들에게 미치는

教育的 影響이 큰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또한 難點이 있으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年年이 맞이하는 訓練修了期면, 으레히 이들의 前 收容施設長으로부터 많은 非難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오로지 每年修了하는 學生을 100% 職業斡旋이라는 彼此의 慾望을 거두지 못하는대서 오는 不平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대로 1人 3役 乃激는 5役의 最高潮를 克服하려면 우리에게 너무큰 致命的인 苦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차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勇氣를 얻게되는 것은 우리들의 實情을 完全히 理解하는 分들이 해마다 增加되고 끊임없는 協助는 勿論이려니와 때로는 分數에 넘치는 慰勞와 激勵까지 아끼지 않음을 볼 때 오히려 悚懼스럽고 「좀더 努力했드라면?」하는 悔悟와 自身의 力量이 不足함을 恨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年輪이 더 하면 더 할수록 새로운 覺悟를 우리들의 唯一無二의 武器로 삼고 職責을 完遂하라는 努力에는 有志들의 絶對的인 協助와 聲援이 더욱 아쉽다.

그러므로 이 兒童들이 本機關에 收容中 專門技術의 發達過程과 또는 修了後의 社會進出에 對한 適應性等を 訓練 擔當 指導者와 有機的인 關聯을 積極的인面으로 指向하여 주었으면 하는것이다. 그러므로서 그 兒童에 對한 福祉가 더욱 敦篤하여질수 있으며 指導者들은 이와 同時에 自身에게 負荷된 義務와 使命을 더욱 切實하게 느껴지게 될것이다.

다음은 職場에 對한 小考로써 이 兒童들의 職場은 舉皆가 이곳에서 修得한 專門分野에서 雇傭 또는 自立으로 開拓하고 있는데 이따금씩 機會 있는대로 우리들은 이 兒童들의 職場을 尋訪하여 必要한 助言과 激勵도 하여준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로소 一般人과의 同等한 權利와 利益을 主로하는 限界가 確固하여지기 때

문이다.

여기서 前記한 提言을 強調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들이 職場을 通하여 처음으로 社會生活環境의 第一步를 直接 目擊한 그대로는 元來 가장 感受性이 빠르고 自身에 對한 劣等意識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一般社會兒童과는 달리特異한 性格을 지닌 탓도 없지는 않을것이며 또한 職業의 種類에 따라 勞動 時間의 限界가 다르다는 것도 또한 無視할수 없는 現實이다. 그러나 이네들이 품은 共通的인 不平을 充分히 理解하면서도 한편 그 職場에서 同年輩의 一般兒童들 보다 酷使하는 편이며 勞動의 代價로서 支給되는 報酬가 또한 懸隔한 差가 있을 때 이네들의 心情은 한層 더 自身의 卑劣感은 勿論, 쓰라리고 아플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差別待遇를 하고있는 企業主의 處事에는 抗拒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企業主가 全般的인 아니라고 極少數 일지라도 이러한 企業主 밑에서 이의 出世를 爲하여 差別이 甚하면 甚할수록 努力과 은 精力을 傾注하여 언제나 獨立的인 生活를 確保하라는 意慾으로 充滿한것도 事實이며 社會의 갈치른 苦難을 克服하려는 決心을 가지고 勤勉하고 不平없고 着實하다는 好評을 받는 兒童을 볼수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爲하여 善獎育成하는 企業主가 있는가 하면 이와 正反對로 自己의 利益과 物慾에만 偏重되어 人權을 無視하는 不得한 傾向도 있다.

끝으로 浮浪兒의 善導策에 對하여 여기에 거듭 強調하는바는 訓練期間을 거쳐 教育修了와 同時에 이 機關을 떠나는 年長兒에게 주어지는 無限한 抱負와 慾望을 刺戟的인 冷待와 無關心으로 對하는것은 絶對로 삼가야할 것이 責任을 銘心하고 絶望의이고 致命的인 言動을 삼가하는 同時에 親子徑이나 동생을 對하는 때 뜻하고 福되게 引導하는 것이 이들을 指導하는 사람은 勿論 社會全般이 지닐 尊貴한 責任임이 切實히 느껴진다.
(筆者 國立少年職業訓練所 勤務)

남 에 게 먼 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몸도 나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라.

내몸만이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중하다는 것을 잊지말라.

그리고 내가 남에게 바라고 싶은 일을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하도록 해야 한다. (孔子)

未感兒童에 對한 새로운 認識의 緊要性

文 炳 元

一

未感兒童이란 癩患者의 子女로서 癩病에 感染되지 않은 어린 兒童을 말한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未感兒童을 患者와 同一視하는 傾向은 이에 對한 國民의 理解가 없는데서 온 것이며 過去는 不治의 病이라 했으나 至今은 癩病을 治療豫防하며 患者의 子女는 그 病源이 遺傳이 아니기 때문에 患者와 關連하여 生覺할 것이 아니다. 筆者는 簡單하게나마 未感兒童에 對한 새로운 認識의 緊要性을 目提高하고자 한다.

二

1874年 노루웨이 微生物學者 한젠氏가 癩菌을 發見하기 前까지는 學者間에도 癩病의 原因이 全然 알려지지 않아 유전병으로 보고 門疾이란 것이 支配의이었던 것이 1874年 以後의 癩病은 遺傳病이 아니고 一般慢性 皮膚病과 같이 皮膚傳染病으로 確定되므로 癩病은 不治의 病이 아니라는 것이 確定되므로 化學療法 物理療法으로 能히 治癒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傳染을 豫防하기 爲하여 于先 患者를 收容하고 그들의 子女인 未感兒童들을 嬰兒때 부터 兩親과 隔離하여 保育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醫學上 이들은 健康兒 일뿐 癩病과는 其實 아무런 關係가 없다. 國家는 이들에 對하여 別途 保育과 教育을 주고 있음은 將次 그들은 健全하게 社會生活을 할 수 있는 者이기 때문이다.

檀紀4293年 2월에 保健社會部에서 發行한 癩社會問題 專門委員會 報告를 보면,

『올바른 社會活動은 合理的 態度에 基礎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癩病은 豫防과 治療가 可能한 疾病이며 傳染病中에서 가장 傳染率이 적은 病의 하나라고 한다. 癩病에 對한 理解가 進歩된 以上 社會問題로서 癩病과 直面한 社會의 努力은 다른 疾病과 同等한 位置에서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癩病은 許多한 疾病中의 하나에 不過한 것이고 異常한 것으로 看做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의 主要

한 目的은 癩病에 特別한 奉仕를 恒常 必要로하는 特異한 疾病이라는 觀念을 拂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社會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爲하여 一般 社會事業家는 勿論 舉族의으로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다른 疾病과 同等하게 福祉的인 奉仕가 癩患者와 그 子女에게도 配慮가 隨件하여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前記報告를 보건데 癩病이 무서운 病이기는 하나 遺傳病도 아니며 天刑病은 더구나 아니니 自身이 알거나 모르거나 外部 接觸으로 因한 傳染病일진데 그 子女들에 對하여는 傳染을 最善의 努力을 기우려 豫防케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施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隔離收容된 未感兒는 月 一次式 檢診을 받고 病源이 그들에게 感染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確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名稱이 未感兒가 아닌가 이렇게 確實性 있는 未感兒는 社會에 接觸해도 無關하다.

例 하나를 더 들거니와 同 專門委員會報告에 『癩患者의 兒童을 正常的 環境에 두기 爲하여 모든 努力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入院하기 爲하여 兩親이나 親族으로부터 分離되는 境遇에 그 兒童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 이런 境遇에 癩病뿐만 아니라 自尊心을 傷하기 쉬운 어떤 施設의 生活로부터 이 兒童을 救하는 것은 社會의 義務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希望하는 親族에 依해서 좋은 家庭的 保護가 可能한 것으로 보이는 동안은 兒童에게 좋은 人生의 出發點을 주기 爲하여 可能한 限의 것을 하여야 할 것이다.

特殊한 保育所가 훌륭히 運營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兒童에게 汚名을 쓰지 않는 境遇일 것이다. 多少라도 이 危險이 있는 境遇에는 兒童을 一般 寄宿學校나 幼稚園에 두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重要한 것은 그들이 多少라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取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前記와 같이 未感兒童이라면 그들의 父母中에 누구 한 사람이 患者라 할지라도 그 子女는 어디까지나 健康한 兒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不拘하고 社會人の 遠視 또는 冷待 때문에 못살게 되니 父母가 있는 患者地帶를 그리워 하는 일이 있고 마침내 患親에게로 돌아가는 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不辛한 일이라. 直接 未感兒童의 保育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들은 緻密한 科學的 檢診에 依해서 未感兒童은 健康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徹底해야 할 것은 그들이 先生으로부터 隔離收容되어야 하는 것이다. 癩病은 前記한 바와 같이 傳染病이므로 그 傳染의 豫防을 徹底히 하고 다음은 그들의 人間的 地位를 同等히 取扱해 주는 것이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未感兒童은 그들의 父母가 患者인 만큼 가장 接觸하기 쉬운 位置에 있으므로 嚴密한 計劃에 依한 科學的 管理가 問題되는 것이다.

三

柳駿博士의 調査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

『患者 2,509名에 59.2% (1,484名)는 發病前에 他患者와 接觸한 記憶이 없었으나 40.8% (1,025名)는 接觸한 記憶이 있음을 報告하였으며 後者中 276名 全患者의 15%는 特히 家族內의 他患者로부터 傳染되었다고 生覺되는 者라고 한다.』

또한 李康淳先生의 調査에는 『多患者家族(2名以上이 同居家族中의 患者가 있는 家族) 104名에 對하여 初發病者(家族內의 最初發病者)와 後發病者(同居家族內에 最初發病者가 생긴 以後에 發病된 者)의 緣故關係를 보면 初發病者가 父 혹은 母 또는 兩親인 境遇가 首位로서 52.1% 다음으로 兄弟姊妹인 境遇가 26.8% 子女인 境遇가 4.1%이며 夫婦間에 傳染된 境遇는 겨우 1.6%에 不過한 것이라고 하였다.』(癩學會誌 1卷 1號)

上記와 같이 柳博士와 李教授의 調査結果를 보아서도 未感兒童은 患者인 父母와 密接하게 接觸하기 쉬워서 傳染의 機會가 많은 患者와의 사이에 出生한 子女

는 可及的 早速히 患者인 父母와 隔離시켜 別途로 養育함은 癩病의 感染을 減少시킬 수 있는 것이며 根本的인 未感兒童管理法인 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現在 確實한 數字는 未詳이나 (4292年 保健社會 統計年報에는 癩療養所 收容患者 21,504名 在家 1,738名 合計 23,287名이라 하였음) 約 10萬名 程度로 보는데 其中 未感兒童은 相當數에 達할 것으로 보다 完全히 隔離 養育中인 未感兒童은 國立 私立의 癩療養所에 收容된 患者의 子女 2,097名(4291年 保健社會 統計年報) 程度뿐 其外에는 모두 患者와 同居하고 있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因此로 未感兒童의 即時 隔離를 爲하여 各 癩療養所마다 嬰兒部의 設置가 先行되어야 하겠고 癩患者의 動態를 把屋하여야 하며 特히 未感兒童을 爲하여 妊娠婦에 對하여는 細心한 注意로 觀察하여 分娩 即時 患親으로부터 隔離함이 重要な 일이며 이렇게 하므로서 『印度 Nasik療養園의 患者間에서 出生한 兒童 24名을 直時隔育하여 養育한 結果한 사람의 發病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모르카이島의 患者間의 子女 121名은 分娩即時 隔離養育한 結果單 1名의 發病者가 있었다고 한다.』(癩學會誌 1卷 1號) 調査結果와 符合될 수 있겠다. 以上の 例로 보아 癩病 豫防은 早期隔離가 先急問題인 것은 再論할 必要도 없거니와 檢診醫師는 未感兒童에 對하여 徹底的 檢診을 하여야 하며 未感兒童에게 癩豫防의 方法을 指導하여 그들로 하여금 自己 몸의 健康을 爲하여 基本的인 知識을 習得케 하여야 할 것이요 이런 過程을 겪어온 未感兒는 確實히 健康한 것을 社會가 認識해서 過去의 危懼觀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健全한 社會의 一人이 될 수 있도록 指導하여야 하겠고 따뜻한 情을 배푸려 주어야만 할 것이다.

(筆者 國立三育學院 勤務)

被保護兒童의 教育問題

李 東 英

目 次

- 一 序 言
- 二 被保護兒童의 意義
- 三 現行教育의 缺陷
- 四 合理的인 教育 (一人一技教育)
- 五 結 言

一 序 言

우리나라 憲法中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憲法 第十九條)고 明示하였다. 이는 人間의 生命을 가장 尊貴케 여긴다는 證示로서의 表現이다. 즉 生活能力이 없는 鰥寡孤獨한 者를 保護하는 것이다.

論議의 對象은 身體와 精神이 正常이면서 家庭이 없어서 어느 期間까지 國家의 保護를 받고서 社會에 나아가 生活할 兒童들의 教育問題에 對하여 現狀을 批判하고, 實効있는 方法을 求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被保護兒童施設에 奉職해서 얻은 經驗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論述이 한갓 常識論이거니와 무슨 일이나 現實의 形便에 맞추어서 차츰차츰 發展시키는 것이 目的을 早速히 達成하는 要諦일 것이다. 그리고 보면 經驗은 眞理이고 常識은 衆知의 表現이니 筆者의 經驗과 常識의 論議가 獨斷이 아니리라.

二 被保護兒童의 意義

이제 筆者가 對象한 被保護兒童들을 말하자면 우선 用語부터 무슨 深奧한 學術的 根據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序言에서 밝혀진 國家의 保護를 받는 兒童을 總稱해서 筆者의 便利上 이름 지어 쓴 것이다. 그리고 說明과 理解를 위하여 먼저 國立·私立의 保護施設을 불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兒童福祉施設調査表

施設名	施設數	備 考
嬰兒施設	42	
育兒施設	472	(同上 2)
感化施設	1	(同上 1)
精神薄弱兒施設	1	(-)
肢體障害兒施設	10	
浮浪兒施設	38	
虛弱兒施設	1	
職業輔導施設	14	(同上 1)

이런 施設中에서 被保護者가 精神의 身體的 障害 때문에 一生을 施設內에서 마칠 경우와 어느 時期까지 保育과 教育을 받은 後에는 社會에 나가서 生活해야 할 被保護者와를 區分해야 하고 따라서 兩者의 教育問題는 달라진다. 이리하여 一生을 保護받아야 할 前者의 問題는 本稿의 範圍밖이므로 말하지 않기로 하고 一定한 期間을 두어서 그 期間의 保護를 마쳐서 社會에 나가는 被保護兒童의 教育問題를 論하는 것이다.

三 現行教育의 缺陷

人間을 保護하는데 單純한 生存(Live) 즉 存在해 있는 事實만의 保護와 生活한다는 事實上의 保護가 있겠다. 後者가 眞正한 意味의 保護이다. 왜냐하면 人間이 生活한다는 것은 價値를 創造하고, 知性을 向上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生活하는 能力을 가져야 하고 保護에는 生活하는 힘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被保護者에게 靜的인 存在로서 認定하는 것이 아니고 動的인 生活力을 주는 教育이라야 옳은 保護인 것이다. 거듭 말이 되거니와 장차 自身이 社會에 나아가 活動해야 할 어느 時期까지 保護를 받는 兒童에게 주는 現行 教育은 어떤가 그 實態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위에 列舉한 施設中에서 正常兒童의 保護施設의 그 管理를 傾聽해 볼 때 職業輔導施設을 除外한 兒童施設에서는 兒童에게 實施하는 教育이 大體로 人文教育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施設에 收容되는 兒童들이 收容될 어떤 原因이 있음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一般兒童과 對比하여 缺乏된 條件을 充足시켜 주는 일이 대단히 重要하지만 오늘날 社會事業의 實態가 모두 財政的 貧困으로 因하여 理想대로 되는 것이란 하나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指導者가 施設兒童을 學理的인 理想論대로 理解해 줄 수 있으나 결코 그것도 現實과는 안맞는 것이다. 施設이 하나의 集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家庭과 같은 사랑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集團의 教育에 있어서는 人文보다 生産性的인 教育이 實効를 갖여온다. 또 그렇게 하므로 이들에게 收容期間이 끝나서 社會에 進出하더라도 自活할 수 있는 自主力을 주는 것이 되고, 그들을 永遠히 살게 하는 길인 것이다. 그렇거니와 오늘의 施設에서는 그것을 實施치 않고 있다. 筆者가 奉職하고 있는 國立三育學園의 경우로써 말해 보겠다. 이곳은 未感兒施設인데 未感兒는 現代醫學에서 遺傳이 아니고 傳染임을 判斷하였으므로 嬰兒를 患親으로부터 隔離하여 保育하고 있고, 그들의 適合에는 三育學園의 中等學校課程을 履修시킨다. 이 教育課程이란 社會一般學校와 同一하게 授業되고 있

다. 都是 施設兒童에게 一般學校의 人文敎科를 授業하는 自體를 是正하기를 主張한다. 더 말하자면 未感兒는 父母中 한 사람의 癩患親으로 緣由하여 施設에 收容되는데 그들이 保育所에서 오는 경우와 嬰兒院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리하여 未感兒의 最高學業을 履修하는 收容所로서는 三育學園의 中等課程3年間の 敎育이 있을 뿐이다. 다음에 正常的으로 進出할 施設이 없기 때문에 卒業과 同時에 施設生活도 마치는 것이다. 未感兒는 여기서부터 社會에 나가게 되는데 그들의 올바른 進出이란 실로 어렵다. 이들이 社會에서 獨自의 生活을 하다가 못살아 問題兒童이 될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으니가 患親에게 되돌아 가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이 그들의 悲劇이다. 國家의 莫大한 財源을 消費하여 이러한 結果여서는 保護한 意義가 無意味한 것이다. 그래서 最近 案出한 方案으로 이들을 새로이 國立職業輔導 施設에 依賴해서 한 1年間の 技術을 習得시키는 것이었다. 以後에 볼것 같으면 이들이 短期間에 얻은 技術의 習得으로 社會에 나가 自活할 能力이 되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就職斡旋에 있어서 形便이 좀 손쉽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資質이 充分치 못하고 더구나 未熟한 技術이고 하니 큰 期待는 가지지 못하나 그래도 무슨 技術을 習得한 것으로써 밥은 먹게 되는 모양이다.

오늘날 社會가 失業者를 大量 吸收하지 못할 形便이다. 이중에 또한 未感兒는 家系의 條件이 남 다른 바 就職이 約束 되다가도 그들의 身分을 안 뒤에는 꺼리는 難堪한 傾向까지 있다. 이는 아직까지 未感兒가 健康兒와 同一하다는 理解가 없어서 그렇거니와 이리므로 더욱 國家의 計劃下에서 이들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 주는 한편 國家가 이들을 利用하는 方法을 써도 좋을 것이다. 이 길은 被保護兒童들에 對한 現行敎育을 바꾸는 일이다. 이것이 未感兒의 경우에는 더욱 絶迫한 形便에 있음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一般社會를 말하더라도 人文敎育이 過剩에 있어서 大學의 卒業者가 職業을 얻지 못하는 現實에서 施設兒童이 中學程度의 敎育을 履修해서 文字事務란 不可望의 일이니 그러므로 결국은 技術系 職工되기를 志望하고, 그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며 또한 그렇게 求職이 된다. 筆者의 所見이 곧 施設兒童들은 그들이 片紙쯤 쓸 수 있는 學力이 된 후는 곧 技術敎育을 가르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條件이 現行敎育의 是正 없이는 그들을 保護하는 일이 無謀하고 無意味한 것이다.

四 合理的인 敎育

被保護兒童에 對한 合理的인 敎育이란 結局 一人一技敎育을 實行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現實을 살아갈려면 무슨 技術이라도 좋으니 技術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세상이든 빈 말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없을 것이며 그 살아갈 만한 일을 참으로 하여야 사는 세상이니 사는데는 한가지 이상의 專門의 技術을 갖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被保護兒童들에게 人文敎育을 實施하여 살아갈만한 한 能力을 주는 것은 現實로서는 도저히 不可態한 것이다. 反面에 技術을 가르쳐서는 可能할 수 있으니 技術에는 手工業에서부터 選擇한다면 능히 短期에 完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保護 期間中 오로지 技術을 가르쳐서 社會에 내놓게 되면 人文敎育을 實施한것 보다는 아무래도 就職이 容易한 것이며, 또 自己生活만은 훌륭히 堪當하리라 믿어진다. 現今 敎育方法의 變更에 있어서도 어려울 것이 없을 줄 안다. 現行敎育에서 消費되는 經費를 바꾸어 計劃을 세우고, 그 밖의 事務的 節次가 復雜하다 할찌라도 그것 때문에 根本이 忘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前項에서 敎育의 不合理性을 많이 指摘하다 싶이 勤勞能力이 喪失者를 保護하는 것은 좋지만 勤勞能力을 배울 수 있는 者에게 能力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옳은 保護가 못된다. 뿐만 아니라 一生을 保護 받지 못할 兒童에게 짧은 時間동안 人文敎育을 주어서 그것으로 期間이 完了되었다 해서 施設에서 내 보내는 것은 社會의 混難을 造成하는 結果를 가져 올 것이다. 거듭 三育學園의 例를 들거니와 未感兒가 中學校年을 卒業하고는 갈 곳이 있진 없진 三育學園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들은 社會를 轉轉하다가 살 수가 없으니가 不得已 患親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을 施設에서 保護하는 동안 그들에게 社會에서 自活할 수 있는 實技敎育이 없었기 때문에 自體의 創造力도 不足하고 施設內에서의 依他心이 社會에까지 延長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들에게 合理的인 敎育이 實施되도록 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五 結 言

지금까지 말 해 온 것을 綜合하면 施設에서 일정한 期間까지 保育되어서, 社會에 나가는 被保護兒童들에 對하여 施行하고 있는 現行敎育을 人文敎育에서 부터 技術敎育으로 바꾸자는 主張이다. 人間의 不平은 살기 어려운데서 나오는 것이니 自活할 수 있는 能力을 가르치고 職場을 주는 일이 賢明한 方法이다. 老齡 疾病 其他의 四顧無親者를 保護해 온 制度는 三國時代때 부터이다. 그때의 窮民救恤制度는 儒佛道의 仁義 博愛 慈悲등의 思想으로써 施行되었으나 現世는 그 方法이 다를 뿐 아니라 保護의 根本精神과 相反되는 경우가 많다. 이리므로 이들의 保護가 形式的 行爲가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將來性 있는 計劃을 樹立하여 保護에 缺陷을 止揚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現存 諸機關의 實態를 調査해서 現實과 符合되는 管理와 現實과 符合되는 敎育으로 改善할 것이 時急하고 重要한 것이다. (筆者 國立三育學園勤務)

施設兒童의 레크리에이션

趙堯燮

- 1. 保育의 使命
- 2. 레크리에이션의 理解와 必要性
- 3. 레크리에이션의 活用

兒童들은 누구나 다 工夫나 일, 食事 그리고 睡眠을 爲하여 一定한 時間 外에는 自由時間 即 餘暇가 있을 것입니다.

이 時間을 兒童들에게 自由스럽고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指導上에 重要한 問題인 것입니다.

이에 兒童들에게 心身에 休養을 爲하고 來日의 準備을 爲하여 有効 適切한 레크리에이션 (餘暇善用)의 活用을 強調하는 것입니다.

1. 保育의 使命

保育이라는 말은 保護하고 育成 한다는 意味일 것이며 育成시킨다는 意味는 또한 教育시킨다는 意味도 包含되어 있을 것입니다.

兒童은 어떤 面에서 自己의 身體를 管理할 힘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린 乳兒는 全部가 他人(保護者)에 依해서 生存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가 營養을 攝取한다든지 衣服을 입는다든지 病에 걸리지 않도록 注意한다든지 全部가 自己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의 學力과 힘과 精誠을 기우려서 만이 身體의으로 圖滿한 成長을 갖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憲章에도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임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貴히 여겨 옹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 써야 할 것을 強調하고 있습니다.

故로 第一은

兒童이 自己 自身을 表現하고자 하는 要求를 育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兒童은 自己가 經驗한 것을 무엇으로든지 表現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말로 通하고 어떤 때에는 玩具를 가지고도 表現시키고 또는 樂器나 娛樂를 통해서 自己를 表現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兒童의 새로운 創意가 솟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第二는

兒童 自身이 여러 問題를 解決해 나가도록 힘을 길러 주어야 하겠읍니다.

自己가 希望하는 意圖를 達成시키기 爲해 여러가지 問題에 逢着했을 때에 곧 어른들의 손을 빌릴 것이 아니라 自己가 理解해 가면서 自己의 길을 開拓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한 것이며

第三은

他人을 理解하고 他人과 協同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兒童끼리 싸움도 할 것이고 같은 場所에서 놀고 할 때에 다른 兒童에 存在를 認識할수 있으며 다른 兒童에게 親近한 感도 가질 것이니 여기에서 社會關係에 基盤도 伸長될 것입니다.

以上 말한 것과 같이 兒童의 生活를 保障해 주는 것은 施設教育에 있어서의 使命이며 나가서 國家의 使命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레크리에이션의 理解와 必要性

레크리에이션이란 餘暇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일 없는 사람이 娛樂이나 하면서 時間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取扱한다는 것은 큰 誤解이라 生覺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은 그 範圍가 넓을 뿐더러 우리의 피곤을 풀고 元氣를 回復하여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더 豐盛하고 潤澤하고 餘裕있는 生活를 하게 하는 活動이기 때문입니다.

先進國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이 一般의 通用語가 되어 있으며 學校나 施設에는 專門的으로 擔任한 先生이 있어서 兒童들에 餘暇活動에 任하고 있다고 합니다.

大體로 人格을 完成시키고 圓滿한 人間이 되는 길은 嚴格한 訓練과 教育이라고 生覺하고 一般的으로 愉快하게 논다는 것은 罪惡視하는 傾向을 볼수가 있는데 오늘에 世界思潮는 이 兩者가 相互補充의이 되어서 人間을 健全하고 有益한 人生을 營爲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西洋 俗談에 “人間의 尺度는 그 사람의 餘暇利用을 보아 알수 있다”고한 예기도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個人의 性格形成에 重要한 役割을 하며 레크리에이션의 選擇 如何에 따라 人格의 內容을 決定하는 要素가 된다고 보아 틀림 없을 것입니다.

특히 兒童의 레크리에이션은 兒童에게는 心身の 健全한 發達에 큰 役割을 할 것이며 絶對적으로 必要한 것입니다.

萬一 兒童에게서 레크리에이션이을 剝奪해 버린다면 兒童의 心身の 發育을 阻害하고 그 結果는 좋지 않은 個性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3. 레크리에이션의 活用

育兒 施設에서는 모름지기 레크리에이션의 프로그램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美國에 施設에서는 專門의 訓練을 받은 레크리에이션의 指導者나 코-취를 두는 傾向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現段階에서는 어려운 일이라 生覺합니다. 그러나 施設 職員으로서는 이 方面의 技術과 指導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理解와 마음 갖임은 絶對적으로 必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크리에이션에 對한 無關心한 職員은 兒童들이 때로 高喊을 지르며 愉快하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不快한 表情으로 그만 두겠끔 한다든지 어떤 때에는 兒童들의 創意를 窒息시키는 換言하여 재미 없는 強制 壓迫에 時間으로 만들어 버리는 傾向도 있는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은 兒童들 間에 親近한 關係를 맺어 주며 그 關係를 維持 發展시켜주는 理想的인 機會인 것입니다.

兒童과 함께 親近하게 놀수 있는 職員은 兒童에 마음 속으로 부터의 慾求를 또한 發見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施設에 있어서의 레크리에이션 活動의 危險中에 하나는 集團의으로 每日 定해 놓다시피한 規則이라든지 兒童의 活動을 너무나 組織化 하거나 또는 過度한 強制는 氣分을 좋게하는 것이 아니라 心身に 被勞를 갖여오게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에 對한 근심을 負擔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것이어서 甲이란 사람에게는 勞動과 일이 되는 것이 乙에게는 레크리에이션이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重要한 것은 레크리에이션 活動에 參加하는 사람의 動機입니다.

이 動機가 레크리에이션인가 아닌가를 決定하는 것입니다.

文筆을 쓴다는 것은 文筆家에게는 苦役이 될수도 있을 것이나 文學的인 素質을 가진 젊은 學生에게는 餘暇에 文學的인 하나의 創作을 만드는 즐거운 時間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兒童에 適合한 레크리에이션의 種類는 많이 있어서 그 中에 어떤 것이 育兒 施設에 適當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한 設備을 하면 좋으며, 하루에 兒童들을 爲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은 次後로 미루고 兒童 各 個人의 慾求를 어떻게 滿足

시켜줄 것인가에 對하여 生覺하려 합니다.

美國 東部の 어떤 施設에 12歲된 少年이 여름 철에 收容됐는데 이 少年은 社交性이 豊富하고 아주 快活한 少年이 었다 합니다.

그런데 院兒들과 함께 푸-리 에 水泳하러 간 때면 이 少年은 宿舍에 남아 있다든지 트라프노리를 한다든지 하지 푸-리엔 가지를 읽는다고 합니다.

院長은 二, 三回 함께 가기를 勸해 보았으나 效果를 못 보고는 얼마동안 이 少年의 行動에 對해 無關心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열흘이 지난 어느날 院長은 이 少年과 雜談할 機會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이 少年은 自己가 水泳하러 가지 않는 理由는 水泳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고 또 동무들에게 그런 事實을 알리기가 싫어서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기를 들은 院長은 水泳先生과 相議하고 午前 中年 少年한 兒童들이 水泳하러 나갈 때 水泳先生의 助手格으로 每日 푸-리에 보내고 特別한 指導를 받아서 1週日後에는 同年輩들과 함께 水泳할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兒童을 最初부터 同年輩들과 함께 無理하게 水泳을 시켰다면 아마 劣等感에 사로 잡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放置해 두어서 施設에 있는 동안 結局 水泳을 배울 機會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의 프로그램을 作成하는데에는 選擇에 自由가 있어야 하겠지만 보다 融通性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勿論 目的은 相互 人格의 調和에 있는 것이지만은 集團中에는 個性에 差異가 있는 까닭에 指導者는 그들의 個性을 잘 알고 그들의 必要만을 滿足시켜 준다는 것은 容易한 것은 아닙니다.

換言하면 蹴球나 排球 野球 등 運動의인 面에 興味를 갖고 있는 兒童이 있고 反面 讀書나 音樂 같은데 興味를 갖고 있는 兒童이 있는데 無理하게 그 둘 中에 한 곳으로 兒童들을 이끌고 갈것이 아니라 좀 넓은 範圍의 趣味 活動을 시켜서 圓滿한 性格의 調和를 이루도록 留意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施設에는 얼마나한 레크리에이션의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大體의인 日課의 內容이 兒童들이 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수 있으며

起床 해서 就寢 할때 까지 保姆의 監督下에 이것 저것 行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勿論 監視의 必要도 있어야할 때가 있겠으나 兒童을 自由스러운 自己만의 時間을 주는 때가 없겠끔 된다면 혼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自主性이 없는 兒童이 되는 수도 있을것입니다.

施設에 있는 兒童들에게 보다 많은 自由 時間을 주어 自己가 좋아 하는 時間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리하여 兒童에게 自立的인 精神을 培養 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筆者·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 勤務)

兒童의 讀書指導

金 貞 玉

人間은 讀書를 통해서 自我를 再體制化한다고 하였다. 卽 人間의 意思가 古今人의 個個人에게 傳達되고 發展되는 文化的 尺度는 이 讀書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兒童은 人格形成의 途中에서 自我를 完成하려는 그들은 더욱 그 意義가 클 것이다.

兒童은 一般的으로 成人과 같이 논다는 것과 일한다는 觀念이 뚜렷이 區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兒童에게 標準한 讀書物을 어떻게 供給할 것인가가 問題되는 것이다. 또한 兒童은 讀書를 함에 있어서 그 內容을 客觀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그것이 곧 行動에 影響을 크게 주는 것이다.

兒童이 成長發達함에 따라 차차 읽게 되는 順次도 높아가게 할 것은 當然한 것이다. 이 上昇에는 文章의 面과 內容의 面과 다 한번 그 基準을 해야 文章을 兒童의 言語能力의 發達에 맞게 應하게 하여서 읽기 쉬운 것에서 점차 困難한 것으로 內容은 兒童의 生活에 있어 發達の 課題의 推移에 따르는 未分化된 것에서 점차 分化된 것으로 配列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讀書의 範圍가 規定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分節해 보면,

一. 社會的適應을 資料로 한 것.

1. 民主的 態度를 培養한 것.
2. 社會正義를 體制한 것.
3. 家庭生活 安定의 指導標準書.
4. 交友關係 安定을 指導한 것.
6. 國勢를 理解하고 愛國心を 養成시키는 것.
6. 國際理解를 資料로 한 것.

二. 科學的 敎養을 資料로 한 것.

1. 科學的 興味를 일으켜 探究心を 갖게 하는 것.
2. 科學的 研究法을 指導한 것.
3. 合理的 思考의 態度를 養成한 것.
4. 自然機械에 관한 知識을 준 것.

三. 生活의 合理化를 爲한 것.

1. 勤勞合理化를 資料로 한 것.
2. 職業의 知識을 준 것.
3. 地域社會 및 國家의 産業을 理解케 한 것.
4. 個人의 經濟生活을 爲한 것.

四. 情緒涵養을 爲한 것.

1. 古今東西의 名作을 鑑賞케 한 것.
2. 豊富한 趣味를 養成하는 것.
3. 아름다움과 에치켈을 指導한 것.
4. 生活美化를 資料로 한 것.

五. 健康增進을 資料로 한 것.

1. 健康과 安全의 知識을 주는 것.
2. 性的 適應을 指導한 것.
3. 運動에 관한 것.
4. 公衆衛生을 理解케 한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選定한 圖書를 標準讀書(Standard Reading)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兒童이 있게되는 個個의 學校나 施設의 實態調査에 依하여 確實히 特殊한 要請에 應한 圖書도 包含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讀書指導에는 適書·適者·適時(The sight book for the sight pessor at the sight time)의 原理로서 出發해야 할 것이다. 各 學校에서 家庭에서 이러한 標準讀書를 選定해서 이것을 印刷해서 兒童에게 주며 이 目錄中에서 冊을 읽게 하는 것이 讀書指導를 爲한 일의 計劃일 것이다.

다음으로 讀書의 方法을 어떻게 指導할 것인가에서, 一. 讀書와 人生— 讀書가 人生에 주는 影響을 理解시킨다.

二. 圖書構造— 圖書의 各部의 名稱과 그 機能을 理解시키고 活用할 수 있게 한다.

三. 圖書選擇— 目的에 依한 圖書 選擇方法을 납득케 한다.

四. 讀書衛生— 讀書에 關連한 衛生에 對한 理解와 實踐을 시킴.

五. 圖書愛護— 冊을 所重이 하는 態度와 그 方法을 가르친다.

六. 辭典·百科事典·特殊參考資料— 各各의 利用에 숙달케 한다.

七. 書名作成— 研究할 主題에 따라 參考될 文獻의 目錄을 作成 計畫의인 讀書를 하게 한다.

八. 讀書의 目的에 應한 讀書法— 다음과 같이 各種 讀書方法을 熟達케 한다.

1. 情報을 알게 되는 읽기.
2. 全體의 印象을 잡을 수 있는 읽기.
3. 主意을 잡는 읽기.
4. 內容의 系列을 추궁하는 읽기.
5. 全部를 究明하려는 읽기.
6. 指示에 따른 읽기.
7. 批判的인 읽기.

九. 노트記載法— 읽은 內容을 노트에 記錄하는 方法을 指導한다.

十. 圖書館利用— 圖書館 利用하는 것을 가르친다. 等を 適當히 教科에 編入시켜 指導하는 것이다. 이렇게 指導함으로써 讀書의 技術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讀書後의 指導에 對해서 말할 것 같으면 勿論 冊을 읽으면 그것으로 兒童의 일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讀書의 效果를 더욱 強化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指導計畫이 實施되어야 한다.

一. 讀書記錄

讀書記錄은 읽은 冊의 著者·書名等 書誌의 事項과 읽은 날자와 讀書狀況을 次次로 記錄해가는 樣式으로 된 簡單한 方法이다. 이렇게하여 읽은 兒童도 또 指導하는 教師나 父母도 讀書活動의 傾向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爲한 一種의 星取表를 만들면 有效할 것이다.

讀書에 있어서 偏讀하는 버릇은 이 表로써 一見하여 알게 된다. 따라서 다음 冊을 읽을 때에 選擇에 留意하게 되는 것이다.

讀書記錄에는 이 外에 圖書의 內容을 쓰는 樣式도 있다. 概要를 쓰던가 特히 感銘한 個所를 빼쓰기던지 한다.

이렇게 하면 읽은 內容을 더욱 明確하게 잡는데 效果가 있다.

低學年에는 글쓰기 能力이 發達되어 있지 않으니까 內容을 그림으로 그리게하는 方法도 있다.

또 讀書記錄에는 讀後의 感想·批評·意見같은 것을 쓰는 樣式도 있다. 여기까지에 이르르면 읽은 內容이 兒童의 經驗體制에 編入되어짐을 強하게 알 수 있다. 低學年에는 「재미있었다」 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줄은 모르겠지만 讀後의 感想을 묻는 習慣을 기르기 爲해서도 역시 쓰게하는게 意義가 있을 것이다.

以上은 兒童에게 負擔이 되지않게 마음을 기우려야 하겠다. 冊한권을 읽는데 귀찮게 記錄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重任을 느껴 일부터 쓰지 않고 고만두던지 처음부터 읽기를 回避하려 들기도 한다. 特히 쓰는것이 없는 內容의 冊은 書誌의事項만에 끌이고 特히 쓸必要가 있다고 느끼는 冊에 限하여서만 內容이나 혹은 感

想을 써서 두도록 自由롭게 해두는 것이 무방하게 生覺한다.

二. 이야기를 주고 받기

읽은 冊에 對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는 것도 理解를 깊게하는 效果뿐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社會的 關係를 觀察化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兒童이 다른 兒童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于先 읽은 兒童에게 그 內容을 發表하게 해서, 다른 兒童들이 모르는 대목을 읽은 兒童에게 質問해서 서로의 感想과 批評을 交換시킨다. 이런 것이 形式化된 것이 이른바 讀書會이다. 또 指導者와 個別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教育的인 效果가 있을 것이다. 讀書指導의 本道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있다고 본다.

이야기를 나누는 技術에 對해서는 面接의 技術로서 研究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三. 適用活動

讀書에서 얻은 것. 創作(製作)活動에 利用할 것이다. 他的 行動의 指針으로 應用하게도 또 다음 讀書의 動機에 適用하게 하는 것 모두가 所重한 指導이다.

以上の 말은 모두 指導의 過程中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말들이다.

讀書를 兒童中에서는 그 讀書活動이 正常이 아닌 兒童들이 있다. 이들을 讀書問題兒라 한다. 이런 것은 讀書人格發達이 되지 안했던지 或은 變態에서 그런지 人格適應이 不健全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早期에 發見해서 治療하는게 必要하다.

讀書異常은 讀書能力의 發達의 異常에서 오는 것과 興味 그 外 他的 條件에서 오는게 있다.

그 主된 類型은 다음과 같다.

1. 讀書遲滯

讀書能力이 낮고 知能도 낮은 아이 이런 兒童들은 學習活動에서 劣等生이라 돌보지도 않고 讀書도 不能하여 除外되기 쉬우나 이런 兒童도 그 實力에 依하여 맞추어 주고 또 讀書力의 發達을 促進할 指導를 加하면 늦으나마 徐徐히 發達을 어느 程度까지 遂行하고 쉬운 책을 親하게 해준다.

2. 讀書不振

知能이나 다른 方面은 다른 兒童보다 뒤 떨어지지 안는데 讀書力이 뒤떨어져 있어서 이 不振狀態를 指導하여 向上시켜야 한다.

3. 讀書偏向

讀書力은 있는데도 不拘하고 쉽고 편리한 것만 읽으려고 하는 兒童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모르는 것도 자꾸 읽으므로 알게되는데 興味를 느껴 자꾸만 읽으려고 하겠끔 해야 할 것이다.

4. 讀書不安定

어떤 兒童은 讀書을 하는데 있어서 닥치는대로 읽고 제법 재미 있는 것은 못 읽는 習慣과 不安定性에 對應해 나가지 못한다. 이런 面이 일어나는 原因이 生理的인 缺如에서 오지 어떤지를 파악해서 安定狀態를 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讀書早熟

讀書力이 異常하게 發達해서 맞지 않는 水準의 것을 읽어 知能水準보다 讀書水準이 높아 어쭙게 知識을 주체 못하는 傾向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도 잘 調節하여 平均된 知識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6. 讀書過多

讀書活動이 生活의 調和를 깨칠 定度로 많이 읽는 것을 말한다. 讀書偏重・讀書早熟・讀書分裂・亂讀의 傾向을 의미하는 것이나, 生活의 興味가 讀書에만 있어 다른 生活面에 支障이 되는 程度이므로 이도 역시 잘 kontrol해야 할 것이다.

7. 讀書分裂

讀書에 異常한 興味를 갖여 自己를 잊고 書中의 人物이 되어 讀書偏向・讀書早熟의 빠지기 쉬운 것이나, 따라서 精神的 健康을 잃고 臨床心理學의 對象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讀書問題兒의 治療는 于先 正確한 原因을 구명한 후 그 治療에 對한 具體的인 計劃을 세워 效果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治療時 特別히 유의할 點은 本人에게 어떤 不安感이나 다른 兒童과 격리 취급이 눈에 띄이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런 兒童에게는 治療者가 充分한 時間을 가지고 여유 있게 對해 주어야 할 것이다. 治療方法으로는 個別的인 것과 協力的인 두가지의 方法이 있으나 이 두 方法이 다 쓰여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教師가 여러 兒童을 상대 할때 그 問題兒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때 個別的인 指導와 同時에 他兒童들의 協力的인 面이 있게 活動하게 하면

좋은 것이다. 最初에 이런 兒童에게는 그 能力에 맞겠끔 되는 資料를 주어 成功한 感을 주어서 能力을 向上시켜야 하며 이 能力이 向上함과 더불어 점점 어려운 것을 增加시키도록 해야만 적절한 治療가 된다. 또한 進歩가 正確히 測定되어 記錄上으로 나타나야만 兒童도 自身을 갖게 되는 것이며 兒童의 特秀한 點과 成功은 檢出되어져야 한다. 이에 教師의 態度는 樂觀的이고 激勵的이어야 하며 兒童이 너무 걱정하게 하던지 不當한 勞力을 하지않게 助力해 주어야 하며 治療實施時間을 分散해서 疲勞나 권태가 생기지않게 하며 活動에는 變化를 갖여오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세워진 계획이 좋은 結果를 못가져 올 때는 곧 中止해야 한다.

個別指導는 兒童의 改善된 技術이 잘 習慣化될 때까지 繼續되어야 한다. 또한 兒童에게는 넓은 讀書을 하겠끔 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多方面의 것을 얻게 된다. 반드시 教科書에 好成績을 낸 兒童만이 將來에 좋은 讀書人이 된다는 規定할 수 없다. 學習을 爲한 讀書, 娛樂를 爲한 讀書等 가지가지로 合쳐 指導해야 한다.

끝으로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讀書을 一種의 노리로 生覺하는 지도자들의 思考方式을 고쳐야 하겠다는 點이다. 예를들어 兒童이 冊(教科書以外的 것)을 읽으면 成人들은 하라는 工夫는 많하고 小說만 읽는다고 야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전염으로 兒童은 冊읽기를 한 노리로 알고 지루한 줄 모르고 읽는 것이다. 그리곤 단지 읽었다는 데에서 끄치는데 이 點을 앞서 말한 여러 指導法에 適應시켜 상세히 指導해야지 健全한 讀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 것이다.

參考書籍

- | | |
|-----------|-------|
| 1. 讀書指導 | 坂本一郎著 |
| 2. 兒童心理講座 | 右同 |

集團的 狀況

集團의 封鎖的인 機能은 大端히 弱화되고 있는 同時에 集團의 移動(Group locomotion)이라는 事實이 明白해 진 것이 近代社會가 가진特徵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하루의 最初는 家族 集團이란 속에서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는 集團의 舞臺는 或은 職場 學校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生活에 組合이나 무슨 團體 宗教上의 集會로 옮겨간다. 멤버間的 討議 팀을짜서 競技하고 어떤 卍一클에서 合唱하고 한 그룹이 되어 하이킹을 한다.

公園을 散策하는 사람들 通勤途上의 거리를 가는 群衆 映畫館의 觀衆이나 講演會의 聽衆 이러한 것들의 場面이 모다 個人의 意識과 行動에 있어 集團의 狀況이다.

수용시설의 위생문제

배 은 엽

의료사회사업의 모체인 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시립아동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당원은 다행히 현내적 시설을 자랑할만한 숙사의 완비로 집단적 전염병의 발병은 아직 없었으나 그렇다고 낙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절에 흔히 있는 쓰리 봄에 흔히 발생하는 백일해 지푸테리아 성홍열등은 해마다 극소수이나 발생하여 조기발견으로 치료예후의 간호로 큰 사고는 아직 없었다. 원 숙사 주위가 산으로 포위되어 있고 분산되었던 부락이 집단화 되어가고 인구의 증가 유원지의 근거리등 제 조건하에 하절에는 뇌염의 전염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해마다 불안 속에서 D. D. T.의 살포 잡초의 제거작업등 예방책을 세워 왔다.

간혹 발생하는 위장병 호흡기질환등은 각개인의 부주의로 기인되는 병으로서 사회제도하의 사회사업계와 의료사회사업계와는 분리 발전도상에 있는 지금 소수를 수용한 아동시설내에 가정적 질환을 위한 의료시설을 말함은 불필요한 것이다. 육아시설 내의 위생시설(의료)이란 결핵 전염병 기생충 환자의 조기발견 그의 예방과 외상환자의 응급조치에 국한된 임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료사회사업체만을 의존한다는 것은 물상식한 일이다. 육아시설내의 위생종사원은 환자의 발견과 의료원에 입원동의 사후대책보다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염병 발병기의 예방주사 실시, 소독약품 살포, 구급 의약품의 상비, 춘추동절의 목욕탕의 활용, 세탁소와 건조장의 완비, 춘추 산도닝 복용, 용모의 단정을 위한 이발소의 완비, 체력의 증강을 위한 체육의 장려, 적기의 우물의 청소작업과 소독, 근시에방을 위한 야간전등의 부활, 모기 파리 쥐의 박멸을 위한 현상주기 경쟁 별초작업의 철저, 하수도의 배수작업, 변소의 분뇨제거작업과 소독의 철저, 영양을 주로한 주부식의 메뉴-개선등이 당원 위생시설의 당면과제인 것이며 전염병의 원인 전염경로, 질병의 지식과 위생관념을 수용아동에게 계몽경주시키는 것도 예방을 위한 기본이기도 한 것이다. 당원에는 시청각교육을 목적으로 비치한 영사기가 있음으로 관계기관에 의뢰 자료를 공급받아 시청각을 통한 위생강좌 교육등으로 올바른 교도와 참다운 아동복지 사회건설에 맡은바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치료상황통계표 自 4293. 4. 11 至 4294. 3. 3

병명	치료상향	원외 의뢰	원내 치료	입원 치료	사망	치료중	기타	계
위 장 질 환			106					106
호흡기질환		2	132					134
결 핵				1		2	1	4
백혈구균병				(1)	1			1
성 홍 열		5						5
마 라 리 아			5					5
안 질			24					24
이 비 인 후			26					26
총 치		2	5					7
의 상			173	1				124
기 타			20	1				21
계		9	491	3	1	2	1	507

(筆者 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勤務)

이 환 월 별 통 계 표

自 4293. 4. 1. 至 4294. 3. 31.

병명	4	5	6	7	8	9	10	11	12	1	2	3	계
위 장 질 환	4	5	7	22	18	13	6	5	4	5	6	9	106
호흡기질환	7	9	7	5	3	4	7	17	19	18	17	21	134
결 핵	2		2										4
백혈구균병	1												1
성 홍 열											4	1	5
마 라 리 아				2	3								5
안 질	2	1	3	2	4	2	1			2	3	4	24
이 비 인 후	1	2	1	2	3	6	4	1	1	2	1	2	26
총 치	1	2	1	1				1			1		7
의 상	9	12	15	13	14	17	15	18	21	17	11	12	174
기 타	2	2	1	6		1	2	1	3	5	2	1	21
계	31	33	37	48	45	43	35	43	48	49	45	50	507

1. 머 리 말

우리의 어린이들을 나는 한포기의 가냘픈 花草로 生覺한다. 날마다 물을 주고 다듬고 매단지며 모진 바람에 軟弱한 가지가 붙어질새라 따거운 벌에 데일새라 알뜰히 자리를 가꿔가며 걷우어준다.

오늘도 來日도 健實하게 자라나고 또 번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때가는 모질고 칼날 같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기도 할 것이며 또 어느때인가는 줄기차게 비가 내려퍼붓기도 하며 때로는 숨과 같이 보드러운 햇살이 그를 감싸주기도하고 激勵도 하여줄 것이다 毒에 찬 왕벌이 날라와서 쏘기도 할것이고 심술 꾀은 굼벵이가 뿌리를 물어 끊어버리려고도 할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 싱싱하게 자라 아름다운 結實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任務을 다 해야한다는 것이다.

地域의 東西나 時代의 古今을 莫論하고 國家의 將來를 雙肩에 걸머진 어린이를 保護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健全한 成長이 國家의 興隆을 左右하는것이라 여기에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期待하는 深 意義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이제 싹터 나와 자라나고 있는 花草인 것이다. 精誠스리 가꾸워진 것에는 그윽하고 아늑한 香氣 그리움속에서 예쁜 꽃도 믿음직한 結實도 보게 되는 것이다.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그 課程이 아름다우면서도 危險하고 이룰데 없이 貴重한 時期인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世界는 꿈의 나라이며 터없는 구슬이고 깨끗하면서도 자칫하면 더럽히기 또한 쉬운 때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 指導의 位置에 서있는 自身들은 兒童의 位置를 캐어보고 그속에 묻혀 全人的인 生命體의 扶養과 指導에 全力을 다 해야 할것이다.

2. 兒童 生活 指導에 對한 小考

世界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童心의 世界는 한결같다. 이들은 事理에 分制을 하기 前에 미처 生覺치 못한채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에도 사뭇건 燄탕의 사나운 물살속에서도 뛰어들다. 危險을 불구하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人類社會에서 이들 天真한 兒童들을 貴여히 育成함에 온갖 苦衷을 다하여서 그들이 굳건할 眞實한 人間이 되어주기를 渴望하는것은 先進 後進 國家를 가리지 아니하는 共通된 所望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指導法에는 一定된 形態를 갖출수는 없는 것이다. 各自가 지녀진 어느 環境 속에서 適應되어야

겠으며 各個別의 性格 能力 素質等を 잘 參酌하여 그의 人格을 尊重하며 키워야 되는 것이라고 生覺하는 것이다.

다사로운 陽地작에서 포근한 손질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든 어린이들은 뜻하지 않던 戰禍에서 애처로움게도 孤兒라는 烙印을 찍힌채 거리를 流浪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國家의 따뜻한 救出이 없었던들 그 얼마나 큰 不幸이 擴大되었을지 모를 것이다. 이는 戰災孤兒 뿐 아니라 그 외에도 家庭不和에서 오는 破綻속의 孤兒 貧困 生死不明等の 悲運 속에서 그들은 萎縮된 成長을 하였을것이며 이로 因한 犯罪가 繁多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危殆로움 속에서 救援을 얻어서 모여진 兒童들을 키워내야 하는 무겁고도 貴한 責任을 느끼며 이들과 童心의 世界에서 苦樂을 같이 해야만 된다.

3. 生活 指導의 考察(方法과 實踐)

人間은 自己가 豫期하지 못한 일을 當하고 또 치르고 있다. 勿論 이런일의 結果가 어떻게 나타날것인가를 生覺해 보고나서의 終結은 제쳐놓고 無意識中에 닥드린일이 無意識中에 結果를 가져오는 일이 許多한 것이다. 特히 이들 發展課程에있는 그 世界는 緻密한 觀察을 갖추운 속에서 옳은 判斷과 깊은 理解와 洗練된 技術로서 引導해야 될것이다. 人間은 남의 干涉을 極히 싫어하고 自身의 解放과 自由를 찾고자 努力한다. 이것은 行動으로 나타나는데 이 行動에서 자칫 흐려지기 쉽고 事故行爲에 接하는 率이 많은것이다. 다시 말해서 教育을 道德教育 生活教育 宗教教育 情緒教育等 이 외에도 그 指導法이 많으나 大別하여 知識本位와 生活中心의 指導로 나누어지겠으며 生活指導에서 訓育과의 關係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生活指導라 함은 日常에 있어서 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教育을 말하는 것이고 한말로 訓育이라고 말할수 있다.

人間에게는 지켜야할 法規도 또 實踐해야 할일이 많다.

無斷히 兒童이 院을 떠나 數日동안 消息이 없을 때 이는 어린이 自體가 自身의 離脫이 어느 結果를 招來하느냐의 判斷을 갖지 못하는 때문이다. 이러한 行動의 裏面에는 반드시 原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根源이 갖어오는 結果의 움직임을 들켜로 하고 어린이가 나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으나 그는 어리기 때문에 每事를 判斷 할수 없는 未分化의 世代이니

기르고 監督할 責任을 가지고 있는 指導者의 不誠實한 愛情의 罪로도 보겠다. 그래서 兒童自身이 그 位置를 透徹히 認識토록 해야한다. 父母의 불 같은 또 애뜻한 愛情에서 헌신짝 같이 苛酷한 運命에서 동맹이쳐진 이들 어린이들은 무엇 보다도 흐뭇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포근한 愛情이 몹시 그리운 것이다. 우리는 그들 매마른 가슴속에 또는 生活속에 愛情을 부어줄 수 있는 方法과 實踐 또는 機會가 있는데 까지 努力하며 理解와 包容으로서 그들의 能力을 發展시키며 참다운 人格培養을 爲하여 꾸준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1. 第一먼저 마음의 安定을 주도록 하는 것
2. 生活에 適應할수 있는 兒童이 되도록 하는 것
3. 眞實하고 誠實한 사람이 되도록 할 것
4. 個別의 趣味와 希望을 合理化하도록 할 것
5. 勤勉으로서 남에 앞설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외에도 그들에게 갖추어주어야 할 일이 限量이 없으나 數많은 것을 實踐하기에는 참으로 缺乏한것이기때문에 몇가지만 生覺해본 것이다.

어린이들이 不美行爲를 하게되는 動機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欲求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收容施設인 集團에서 欲求를 充足 하기에는 참으로 困難한데에서 背信行爲를 하게되며 自己 責任을 等閑히 하는 同時 獨自의인 行動을 恣行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無理하게 行하여지는 일은 漸次로 不美한 現象을 일으키고 급기야에는 過誤를 犯하게 되며 한便 紊亂한 霧圍氣를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指導者는 그 方法 技術로 아낌없이 個人에게 接近하여 特殊方法을 세워서 그 方面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熱誠과 따뜻한 治療法으로서 有效適切한 方策을 세워보는 것이다.

兒童世界에서 생겨지는 脫線行爲는 그 大概가 冒險心 또는 未分化에서 오는것이며 또 無意識의으로 일을 저지르코야 마는 心理等의 여러가지를 볼수가 있다.

4. 指導者 自身の 生活과 態度

외로운 生活속에서 成長하고 있는 兒童들을 爲하여 指導者가 取해야 될 몇가지를 生覺하여 보기로한다.

1. 自身이 童心의 世界에 들어가서
2. 兒童들의 意思尊重
3. 兒童들에게 母性愛로서
4. 叱責과 賞讚의 結果
5. 善行을 發見했을時

위에 列舉한 바와 같이 指導者 自身은 教師의 立場에서 떠나 그들과 함께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너무도 嚴한 規律로 인한 여러가지 難點이라는 것은 모든 秘密로서 自然化하려 들게 되며 또한 生覺치 아니한 卑屈을 도우는 結果가 될수 있게 됨으로 이러한 終末을 막기 爲하여는 그들과 함께 兒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

한 生活에서 그들의 計劃과 動態를 알게되며 無分別한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努力하여 理解할수 있고, 間隔이 없는 先生과 兒童의 사이를 만들도록 하는것이 重要한것이다. 거죽이 없는 그들의 呼訴를 包攝하며 이 欲望을 참된 사랑으로 引導하여 理解시켜야겠다. 다음에는 兒童의 意思尊重이라 하겠는데 即 그들의 人格을 重要視하는데에서 指導하는 方法을 生覺해본 것이다. 人間은 그 指向하는 바에 差異가 許多하며 또 그 基盤과 思考도 未成熟과 成熟으로 區分하게 되겠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生活無經驗에서 不完한 人格이라 生覺하겠으나 어린이들 自身으로서의 自己의 生覺이 至極히 所重한 意見이오 가장 이 길이 正當하다고 生覺하는것이다. 여기에서 指導者로서의 特別히 注意할 點은 그들 未成熟한 思考를 親切히 理解시키며 그 正當不正當의 判斷을 明確히 敎示해야 된다는것이다. 自己本位의 欲求만으로서의 人間社會에 適應할수 없음을 認識토록 하는 것이 또한 重要한 것이다.

셋째로 그들에게 母性愛로서 對하는 것이다. 이들은 누구를 꼭 信賴할수 없는 霧圍氣 속에서도 누구 하나 만이라도 아버지 같이, 어머니 같이 또는 兄이나 누나 와도 같이 마음을 지탱할 곳을 몹시도 찾으려 남 모르게 서글픔을 갖고 있건만 그 對象이 누구인지를 몰라 彷徨하는 것이다.

人間社會에서 그 愛情部類가 各體이나 이것이 缺乏된 生活이란 참으로 沙漠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우리 院의 兒童은 서로가 多情하고 親切하여 이로서 서로 依持하고 生覺하는 일을 別로히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絕對로 傍觀視한다든가 疎忽히 하여서는 안된다. 나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다. 그것은 비록 血肉을 나누운 自己의 子女는 아닐망정 多數 兒童을 家庭에서 養育되고 있는 小數 兒童과 같이 每事를 綿密히 돌보아 줄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같은 愛情을 못가지라는 法은 없다. 指導者의 個性이 다 各各임으로 愛情의 深度表示의 方法은 다를것이다.

K라는 兒童이 한 宿舎에서 살고 있다. 그는 어느새 인지도 모르게 나와 가까이하고 싶어하며 또 自己가 認定을 받고 싶어 여러가지 方法으로서 接近하여 온다. 제사랑 제등에 지닌다는 옛 말과 같이 나를 따르코저 하는 兒童에게 冷情히 할수는 없는 것이다. 自然히 어린이와 어른은 唯一한 빛이 되고 母子가 된 것이다.

어느때인가 K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엄마라고 부르려는 수집어 한다. 或時 先生님께 辱이라도 먹을까 두려워서인지 어색하여서인지 구석으로 숨는다. 이러한것을 보아도 받고싶은 엄마의 사랑을 先生님에게서 찾아보려 하는것이다. 나도 모르게 K어린이가 애처로웠다. 틀림없다. 缺乏된 愛情의 欲求를 行動으로서 음길 때까지의 그 苦悶이 그에게는 썩이나 컸을것이다.

부등켜 안어 주고 싶음을 抑制하면서 머리만을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엄마가 되어줄까?” “정말요?” 참 기뻐하던 그눈 빛이 너모도 歷歷히 나의 머리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外面으로 나타낼수 없는 現實生活이라서 그를 偏愛할수는 없었으며 그러함으로서 그의 位置가 不利할것을 念慮하여 表現못한채 마음으로서의 사랑을 주고 있다. 지나가는 때에 내가 불르며 아는채 하는것만으로 그는 기뻐하며

「단추를 끼워야지!」

「그것이 뭐야?」

하던 얼른 단추를 끼우고 간다. 어떤 때는 일부러 어깃대며 속을 뒤집어 놓는다. 나에게서 自然히 말이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은 自己와 말을 주고 받기를 願함에 틀림 없는 것이다. 이런때에 指導者가 冷淡하다든가 怒氣를 띠우게 되면 여태까지의 그가 애쓰고 接近해온 行路에 絶望을 주게되고 다시 쓸쓸한 心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小小한 예를 든것 뿐이나 이와 같은 心情으로서 그들은 벗을 依支하고 先生님을 어머니같이 生覺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울 때에는 같이 울어줄수 있는 사람 그들이 기뻐할 때에는 어린이와 같이 함께 좋아하여 주면서 그들 生活에 生氣를 주어가며 能히 指導할수 있는 自身の 技術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엄마! 하며 서슴치 않고 품안으로 기어드는 兒童을 만들어주고 싶은것이다. 이것이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誠心 誠意로서 엄마가 되어주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넷째로 叱責과 稱讚이 주는 影響이다. 어느 누구를 莫論하고 꾸지람보다는 그사람의 잘 한것을 發見하고 稱讚하여 주는 것을 願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恐怖에 쌓여 退避行動을 하고져 함은 當然한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에 彷徨하는 兒童을 몹시 꾸짖거나 體罰

을 주는것은 後悔와 反省을 갖게하기 보다는 反抗心만을 더욱 助長시키게 되는 것이다. 勿論 體罰을 加해서 自覺하는 兒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웃는 달으로 指導者 自身이 對하여주며 兒童과 같은 位置에 서서 그 原因을 조용하고 따듯이 캐어 自發的으로 自白하게 하는 것이다. 頑強한 兒童은 即時 告白치는 아니려나 時間의 餘裕를 주어 마음의 安定을 갖게하고 다시 親切하게 對한 後 묻게 되면 거짓으로 始作했다가도 끝에 가서는 本心은 吐露하게 된다. 바른 말로 自己의 잘못을 뉘우치며 뜨거운 苛責의 눈물을 스스로 갖게끔 하는것이 또한 指導인 것이다.

끝으로 善行을 發見했을 때 稱讚하여 주는 것이다. 조그만일에도 그것을 認定해주고 激勵하여주어야 한다 自己는 남에게 稱讚받고져 行動한것이 아니요 無意識中에 한일이라도 남이 추켜주고 讚揚하여주면 부끄러움에서 이것을 拒否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였나?」하며 自身도 愉快하여질 것이다. 이러한때서 勇斷이 생기며 더 여러 벗들에게 좋은 印象을 주려고 努力하게 되며 또 善行할 材料를 生覺해 내는 것이다. 勿論 남에게서 指摘 받고 表彰을 받는 것을 目的하는 것은 不可이나 거듭되는 동안에 그 兒童은 善하게 될수 있는 것이다. 모든것은 指導者의 有能한 技術과 誠心으로서 各個人의 人格 素質 道德을 向上시키도록 하여주어야 된다고 生覺한다.

五. 結 言

指導者의 使命은 그 限界가 廣汎한 것이다. 兒童을 明朗하고 率直하게 眞實하고 善良하게 才智있고 슬기롭게 勇敢하고 剛直한 人格의 所有者로 育成하여 나라의 堅固한 礎石이 되도록 하려는것이 指導者의 當面한 任務임을 더욱 自覺하여 한포기도 한잎도 꾸밈없이 熱과誠 慈와 愛로서 自己의 맘과 몸을 받쳐야 할 것이다.

〈筆者・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 勤務〉

施設兒童의 被服管理

鄭 順 姪

우리 日常生活에 있어 一般 家庭이나 施設을 莫論하고 衣生活은 食生活 住生活과 더불어 人間生活에서 떠날수 없는것이다. 衣服은 食物과 住宅에 比하여 사람의 形態的 方面 活動的 方面을 代表하고 食住보다 一般性 普遍性을 가지고 있으며 其 本質은 保健에 있다. 한 家庭의 主婦가 子女 3·4名 程度의 옷 시중도 萬全을 期하기 困難하거든 하물며 施設兒童의 多數收容과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障害로 因하여 갈되어 있지 못한 形便이니 이의 改善에 注力해야만 되겠다.

施設兒童 保護 擔當者들은 세끼 食事 提供도 重要하지만 被服 시중도 세끼 食事 못지않게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한다. 施設의 對象은 兒童이고 兒童들의 服裝은 한 標本이 되어 施設 自體를 尺度할수 있는 것이니 兒童 保護 擔當者들은 兒童 衣生活 向上을 爲하여 恒常 細心한 研究와 注意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에 衣生活에 對하여 몇가지 生覺해보기로 한다.

1. 日常生活과 衣服의 使命

食住生活은 個個人的 資力과 嗜好에 따라 質과 量을 달리고 있음에 比하여 衣生活은 歷史的 傳統과 時代的인 生活方式과 一般 社會에 影響을 많이 받고있는 것이다. 服裝이 그의 形態로 말미암아 行動의 影響을 주고 그의 色彩가 美術的 意識을 나타내며 衛生思想의 經濟的 觀念과 禮儀觀念 등을 엿볼수 있는 重要한 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衣服은 社會生活 理想을 宣明하는 重大한 所任을 맡아가지고 있는 同時에 文化生活의 程度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그 關鍵이 되는것이다.

2. 施設兒童들의 特徵

集團生活에는 物的 人的 環境의 設備가 그 兒童에게 適合하게 具備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特히 衣生活에 있어서 不便한 點이 許多하고 個個 兒童들의 不注意 또는 無關心이 甚도 있으며 또 水準에 있어서 各其 差異가 있는 兒童들이 한데 모여 있는 까닭으로 作亂이 甚하고 自他的 物件에 對한 嚴格한 區別을 하지못하고 서로 바꾸어 입고 또 紛失하기도 하고 하는等 衣服의 간수를 잘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夏節에는 옷을 벗어 아무데나 놓고 잃어버리고 신이 벗어지면 그대로 입고 가는 아이들의 있는가 하면 反面에 아주 얇전해서 自己 物件을 잘 간수하여 物件에 對한 愛着心이 強하여 端正히 입고 다니는 兒童도 있다. 特히 女兒에게 如斯한 兒童이 있음을 볼수 있다. 이런 兒童들은 옷을 두고서도 아주 보기에 檻褻한 것을 입고서 泰然하게 다니는 兒童도 있으며 自己 옷을 있는대로 몇겹씩 겹쳐 입고 다니는 兒童도 있으며 옷 全部를 自己 몸에 지니고 다니는. 甚하게 말하면 街頭에서 거지와 같은 모습을 演出하는 兒童이 間或 있는 것이다. 服裝이 端正치 못하여서 다른 옷을 가라 입도록 命令하면 即時 듣지도 않고 恒常 또 새것을 要求하며 洗濯할 때에는 옷을 잘 벗지 않음으로 強制로 벗기다시피 해야만 되는 等 實로 兒童의 衣生活의 시중이 至極히 어려운 일이라고 生覺한다.

3. 가름옷은 어떻게 줄 것인가

本 施設에서는 夏服 冬服 各其 한벌씩이고 內衣는 두벌씩 주게 되는데 한참 장난꾸레기 아이들에게 걸 옷 한벌 가지고는 不足한 點 어려운 點이 많다. 洗濯하기에도 支障이 많다. 勿論 其中에는 乖게 정하게 입는 女兒들은 2,3年 維持하는 수도 있으나 그것은 不過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特히 甚하게 더럽히고 해여뜨리는 兒童에게는 全體的 一律的으로만 다스리는 以外에 個人差를 考慮하여 適當한 機會에 補充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集團生活에 있어서 이와 같은 徹底한 措置는 어려운 것이다(家庭에서 같은 兄弟들 中에도 한 아이만 衣服을 해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된다.

4. 兒童 옷장 設置가 必要하다

自己 物件은 自己가 잘 간수할 수 있으며 스스로 保管하여 整頓할 수 있게 옷장을 製作하여 주었으면 安心하고 自己 物件에 對해서 所重히 生覺하지않겠나 한다

5. 옷감은 質이 질겨야 되겠음

勿論 옷감은 튼튼하고 질겨야만 되겠지만 變色도 아니 되는 것이야 하겠음. 裁縫도 튼튼하고 實用的이며 合理的으로 製品한것이 適合하겠다.

6. 端正한 옷차림을 가질수 있게

他人의 옷차림을 보고 좋은 點은 取해서 端正하게 입는 習慣을 기르도록 하여야 되겠다. 每週 月曜日 容儀 審査를 통해서 自己 옷차림에 對하여 無關心한 아이들도 그 크룹에서 指彈을 받게 되어 自然 옷차림에 注意하게 된다.

7. 修理해서 입도록

해진것은 언제든지 잘 기워서 端正하게 하며 손질을 잘 해서 새것 같이 입어야 될 것으로 안다. 修理를 하고 改造를 하는데도 恒常 研究를 해서 兒童 衣生活의 明朗化 端正化를 期하여야 한다.

간단히 施設兒童의 被服管理에 對하여 적어 보았다.

榮 養 及 健 康

李 起 香

食物은 生命의 原動力이요 體力 또는 健康도 食物에 依해서 左右된다. 그리고 精神的面인 頭腦에 活動 知的 活動도 食物에 影響을 받고 있습니다.

原始種族이 오랜 進化에 過程을 거쳐 現在 文化의 到達된 것처럼 食生活의 發展과 榮養學의 發達は 이에 따라 向上되고 合理的으로 進展되어 왔읍다.

食物은 또한 一家團樂의 中心이 되고 吉凶祝祭 社交等에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相互間 親密과 愉樂을 가지하고 文化敎養을 높이는 意味에도 큰 役割을 합니다. 그래서 正確한 食生活方法을 研究하고 이것을 合理化하여 生活과 文化의 向上에 寄與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食生活에 基礎가 되는 榮養學의 諸問題, 食品의 知識 即 분간할수있는 方法 貯藏 保存法等等에 있어 꼭 알아둘 必要한 基本的問題를 研究해서 正確한 食生活에 理解를 一層 올리는것은 重要하다고 生覺됩니다. 榮養素와 食品이 몸에 끼쳐주는 役割을 理解하고 또 食品群의 榮養的 特徵을 再認識하여서 目的에 適合한 食단을 만들 수 있는 能力을 갖도록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攝取하고 있는 飲食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의 健康 體溫 呼吸循環 消化成長 繁殖運動等 여러가지 生活現象을 나타내고 있나에 對해서는 注意 깊은 關心을 갖어야겠습니다.

體 내에서 分解되고 消耗된 物質 일 할 때 運動할 때의

必要한 熱과 힘을 내는 物質을 끊임 없이 補給하여 가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必要한 物質을 우리들은 飲食物에서 攝取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몸에 있는 各種의 成分은 飲食物에서 取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食事は 우리의 健康을 左右하는 것인데 우리는 每日의 食事を 잘 갖추어서 하여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食事時間은 一家團樂에 第一 즐거운 時間이며 좋은 食事は 우리를 健康의 源泉이 되고 즐거운 食事は 우리의 마음에 糧食이 되리라고 生覺됩니다.

우리가 活動을 함으로 消耗되는 에너지를 飲食物을 먹어서 補充하게 하고 또 자라는데 必要한 榮養素 即 蛋白質 비타민 無機質을 한층 더 많이 먹도록 하여야 합니다.

榮養素를 많이 가진 食品이라면 흔히 값진 食品이라는 生覺을 갖기 쉬운데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고싼 經費로 많은 榮養價値가 있는 食品을 入手 할 수 있다. 우리가 每日 먹는 食品에는 곡식 채소 고기等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끔 가지고 있는 榮養分은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食品을 잘 調査해서 料理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여기에 理想的인 食單과 施設에서의 最大限의 營養供給과를 生覺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복합의 食單)

食 副 別	主事食材		副食品 및 材料, 量, 熱量				一日 熱量 計				
	主食 및 材料, 量, 熱量										
朝 飯	白米 1合 496cal	밥	배추국	배추	156.0g	21.6cal	主 1,964cal 副 730cal 計 2,694cal				
	精麥 3勺 143cal		머루치	3.75g	12.5cal						
點 心	白米 1合 496cal	밥	된장	37.5g	54.3cal	콩나물무침		콩나물	156.0g	59.3cal	
	精麥 1勺 143cal		김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머루치	3.75g	12.5cal
				고추가루	0.75g			0.2cal	파	7.5g	1.9cal
				간장	18.75g			3.9cal	김치	배추, 무우	123.0g
夕 飯	白米 1合 496cal	밥	무우국	무우	175.5g	31.6cal	복어조림	복어	49.5g	165.3cal	
	精麥 1勺 190cal		머루치	3.75g	12.5cal	김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된장	37.5g	54.3cal						
			파	7.5g	1.9cal						

(여름의 食單)

食 事 別	主 副 食 材	主食品 및 材料, 量, 熱量	副食品 및 材料, 量, 熱量	一 日 熱 量 計
朝	飯	白米 1合 416cal	감 자 국 감 자 175.5g 31.6cal 며 루 치 3.75g 12.5cal 간 장 18.75g 3.9cal	主 1,964cal 副 358cal 計 2,322cal
		精麥 1勺 143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點	心	白米 1合 496cal	조 기 국 조 기 187.0g 119.7cal 고추가루 1.12g 0.3cal 파 7.5g 1.9cal 간 장 18.75g 3.9cal	
		精麥 1勺 143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夕	飯	白米 1合 416cal	호박찌게 호 박 43.0g 17.1cal 며 루 치 3.75g 12.5cal 된 장 37.5g 54.3cal	
		精麥 1勺 143cal	오 이 김 치 오이, 배추 123.0g 24.6cal	

食糧事情을 潤澤하게하는 方法으로서는 農地開拓 增產方法 酪農業 養豚 養鷄 漁業等을 진흥하여 實施하도록 努力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健康을 維持하려면 여러가지 維持해 나가는 飲食物을 適當히 攝取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第一 必要한것이라고 生覺됩니다. 그럼 榮養分이 많은 飲食을 먹도록하여 健康을 維持할수 있게 할려면 施設에서 豫算을 考慮한 좋은 食單計劃을 세워야 합니다.

健康을 維持할 수 있는 食事を 하기 爲해서 여섯가지의 基礎食品을 基本으로 하여 每日의 食事を 榮養上으로 生覺해 볼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調理를 잘하는 能力을 기르도록 해

야 할것이며, 둘째로는 栽培와 飼育에 對한 知識을 가지고 그것을 實踐함으로써 家族의 榮養을 補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는 食品의 갈무리 하는 方法을 알아 가지고 家族의 榮養 補充과 食費를 節約하여야만 합니다. 어떤 食品이 健康에 必要한 食品이 될지 生覺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健康하고 튼튼한 몸을 만들려면 于先 榮養分이 많은 飲食을 먹어야 할것입니다. 即 말하자면 機械에기름을 주어야만 機械가 힘있게 그리고 연하게 잘 돌아가서 좋은 것을 많이 生産해 낼수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每日의 食事に 여섯가지인 基礎食品을 잘 섞어서 配合시켜 값 싼 것을 榮養分의 損失 없이 맛있게 먹도록 調理해야 하겠습니다. 榮養分이 많은 飲食

(가을의 食單)

食 事 別	主 副 食 材	主食品 및 材料, 量, 熱量	副食品 및 材料, 量, 熱量	一 日 熱 量 計
朝	飯	白米 1合 496cal	콩나물국 콩나물 93.5g 35.5cal 며루치 3.75g 12.5cal 된장 37.5g 54.3cal 파 7.5g 1.9cal	主 1,964cal 副 813cal 計 2,777cal
		精麥 3勺 143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點	心	白米 1合 496cal	헛부라 오징어 33.75g 93.8cal 밀가루 56.25g 200.0cal 기름 26.25g 235.9cal 간장 18.75g 3.9cal	
		精麥 3勺 143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夕	飯	白米 1合 496cal	소내장국 쇠내장 35.25g 35.2cal 무우 165.5g 31.6cal 파 7.5g 1.9cal 고추가루 0.75g 0.2cal	
		精麥 4勺 190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겨울의 食單)

食 事 別	主副食料		主食品 및 材料, 量, 熱量				副食品 및 材料, 量, 熱量				一 日 熱 量 計			
	主	副												
朝	飯	밥	白米 1合	496cal	무 우 국	무 우	175g	31.6cal	며 루 치	375g	12.5cal	主 劃 計	1,964cal 501cal 2,465cal	
			精麥 3勺	143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된 장	37.5g	54.3cal			
點	心	밥	白料 1合	496cal	미 역 국	미 역	11.1g	27.0cal	며 루 치	3.75g	12.5cal			
			精麥 3勺	143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된 장	37.5g	54.3cal			
夕	飯	밥	白米 1合	496cal	비 지 찌 게	비 지	75.0g	54.7cal	며 루 치	375g	12.5cal			
			精麥 4勺	190cal	김 치	배추, 무우	123,0g	24.6cal	파	7.58g	1.9cal			
								치 스	31.2g	120.3cal				
								간 장	18.75g	3.9cal				

物이라는 것은 무슨 사치스러운 高級料理가 아니고 우리들의 研究와 努力으로 적은 經費로라도 榮養分이 많고 맛이 좋도록 料理하여 榮養의 效果를 充分히 낼 수 있는 것을 再次 말하는바입니다. 食品에는 各其 包含된 榮養素의 種類가 달라서 編食을 하게 되면 健康에 좋지 못함으로 여러가지 飲食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食品을 먹어야 할것을 生覺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색깔있는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시금치 배추 쪽갓 호박 오이 홍무 도마도 이외 또 여러가지가 있을터이지만 빨강고 노란색이있는 채소를 먹음으로서 健康과 發育을 도우고 눈병을 막아주며 또 傳染病에 對하여 이겨낼수있는 低抵抗力도 길러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健康하게하는 비타민A와 비타민C와는 榮養을 攝取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要素는 더운 물에 끓일 때 榮養力이 없어져 버리기 쉬운 性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食品을 料理할 때에는 더운물에 오래 오래 끓인다든가 또 물에 담가 둔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도마도 굴 딸기 우유 무우 콩나물 같은 新鮮한 野菜 또는 果實을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와 칼슘등의 無機質이 들어있는 비타민C도 成長과 發育을 도우는 일을하며 또 이와 잇몸을 健康하게하여 출혈을 먹여주며 특히 無機質은 뼈를 組織하며 자랄수 있는 要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도 熱에 매우 약함으로 물에도 녹기 쉬우므로 오래 물에 씻거나 하지않도록 注意하여야 합니다. 이런 싱싱한 野菜나 果實은 이같이 우리 健康에 必要한 要素가 들어있습니다. 셋

째로 玄米와 밀가루 감자 고구마 보리 소간 새간 같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食品에는 우리들의 몸의 體溫과 일하는 힘을 만들어 주는 炭水化合物이라고 하는 榮養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각기病을 防止하는 비타민B1이 있고 成長을 도와주는 비타민B2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속에서 잘 손실 되므로 씻을때 注意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콩 낙화생 깨 우유 계란 생선 조개 새고기 같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피와 살을 만들어주는 흰자질과 기름기가 많이 있는것을 먹어야 자라는 어린이들과 또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이런 飲食을 많이 攝取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뼈채 먹을수 있는 물고기와 소고기 또는 海草같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에 소중한 뼈를 만들어 주는 칼슘분과 흰자질이 들어있으므로 자라는 어린이들과 授乳어머니들은 많이 먹어야 합니다. 萬一 榮養分이 不足하면 뼈가 구부러지는 수도 있고 또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뼈터 간유 말린버섯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할수 있는 힘을 내 주는 기름과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비타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식품에 제각기 우리몸에 必要하다는 養分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榮養素를 골고루 充分히 攝取함으로 健康을 維持할것입니다.

一般 國民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施設兒童들의 主副食에 所要되는 經費가 增加되면 이에 따라 營養供給도 달라 질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으나 如何튼 健康은 營養의 뒷바침 없이 이루어질수 없는 것입니다.

(筆者 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 勤務)

保姆의 生活手記

洪 沃 堉

動亂以後 수 많은 孤兒들이 거리에 범람하여 그 누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 시울에 뜨거운 장면을 보이고 있는 現實이었다.

이미 누구나가 아는 바와 같이 많은 孤兒와 不良兒가 생기므로 戰爭의 발자국을 역역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곳이 育兒院인 것이다.

나는 불과 6個月의 經驗으로 붓을 든다는 것은 모험보다도 경솔한 일인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한체 나의 6個月間의 經驗談을 털어 놓까 한다.

내가 本院에 발을 디딘것은 4293년 8월 1일 그야말로 社會事業의 첫 스타트를 걸은 셈이다.

本施說은 나라에서 세운 곳으로 모든 必要한 物資物品을 國家에서 供給받고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私設과 달라서 아이들을 맡으면서 事務담당 까지 하나 나는 별로 맡을 것도 없어서 女子 아이들 22名(好)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自己子息 3名 키우기도 힘든 일인데 10名도 아닌 22名의 어머니 役割을 하여야 되니 그 일을 구구히 說明 안해도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을 안하려 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할어 들면 정말 일이 끝이 없고 또 끝을 낼수 없는 職業이다.

여기 하루의 日課를 간단히 紹介한다면 아침 6시에 起床해서 6.20분에 朝會를 하고 청소 그리고 아침 食事を 한 다음 다시 청소를 하고 學校 갈 準備를 한다.

노트도 챙겨주고 옷매무새를 고쳐주는등 바쁜 時間이 계속되는 것이다.

保姆는 아이들이 學校에 登校한 以後에야 겨우 크게 숨을 쉴수 있으나 바쁨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다.

먼저 마음의 整理를 해 가면서 9.30분에 事務室에 나가서 職員會결 여러 先生님을 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日課表를 紹介한다면

1. 6 時 起床
2. 6.20 朝會
3. 6.30~8.00 조반 및 청소
4. 8.30 登校
5. 9.30~10.00 職員朝會
6. 12.30~1.30 점심
7. 3.00~4.30 리크레이션(recreation)指導
8. 4.30~5.30 自由時間
9. 5.30~6.20 저녁食事
10. 6.20~7.00 自由時間

11. 7.00~7.30 담임면접時間

12. 7.30 自習

13. 1 時 소등

으로서 하루의 日課를 마치지만 틈틈히 保姆가 하는 일은 쉬지않고 계속된다. 職員會가 끝나면 自己 宿舍로 돌아와서 다시 宿舍를 한 바퀴 돌아보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의 양말 옷을 기우기도 하고 그 外 時間이 있으면 自己의 일을 整理하기도 한다. 12時가 되면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모두 돌아온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食事を 한 後 學校에 보내고 1.2學年 宿題指導를 하며 3時부터 리크레이션指導를 한다. 보다 더 効果的인 Group wrok을 하기 위해서 1.2學年을 한 크럼으로 3.4學年을 한 크럼으로 5.6學年을 한 크럼으로 해서 指導를 한다. 指導하는 先生님은 여러가지 資料를 수집하며 온갖 技術을 發揮해서 예를 들면 童話를 할때 거기 등장되는 짐승의 소리라든가 울음소리 새소리등을 흉내 내면서 실지와 비슷하겠끔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재미없는 童話內容도 손짓 발짓으로 興味를 돋우게 하는 것이 目的이며 이 時間을 通해서 情緒의으로 感情을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양과 품성도야에 主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5.30分부터 저녁食事が 始作된다 저녁을 마치면 잠시 後 學習指導를 하고 10時에나 겨우 자기 자리에 돌아와 두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그야말로 自由로운 保姆의 時間을 갖는다.

이 時間이야 말로 保姆에게는 가장 重要한 時間이다. 充分한 수면으로서 무거운 피로를 깨끗이 씻어야만 다음날 日課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 어느 職業보다도 바쁘고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이렇게 하루의 日課를 마침으로써 完全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아이들 中에서는 門題兒가 大部分이다. 말하자면 오줌싸기 反抗兒 그리고 고집이 심한 아동 그외 여러가지로 保姆를 괴롭히며 울리는 兒童들을 위해 case wrok(個別指導)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中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宿舍에서 Leader格인 아이다.

하루는 늦잠을 자느라고 朝會에 참석치 않고 또 소제를 하라 해도 들은척도 안하며 아이들을 先生님 앞에서 때리는 눈에 거슬리는 일이므로 아무도 없을 때 내방에 불러놓고 여러가지 좋은 말로 타일렸으나 잘못이란권 조금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反抗을 하는 問題兒인 것이다.

그 어느 先生님계도 매 한번 맞지 않고 자란것을 오

히려 자랑으로 알고 누가 뭐래도 코 방귀만 튀긴다.

勿論 이 아이의 말이려면 다른 아이들은 그 누구도 저역지 않고 順應하며 오히려 先生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듣는다.

어떤날 宿舍에서 必要한 비를 사라고 500환 주었는데 비는 2個(200환)만 사오고 아무 소식이 없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져오라 했더니 아프다는 핑계로 나중에 가져 오겠다고 하길래 장부정리로 다른 아이를 시켜 가져오라 했으나 그래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픈데 어떻게 가져 가요? 先生님은 아픈데 다닐 수 있어요? 孤兒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하면서 生覺지도 않는 말 대답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다.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허지만 모든 것을 참고 하룻밤을 지냈다. 하룻밤을 꼬박 새운것은 勿論이거니와 아침도 돈체 만체 그 아이의 거동만 살펴보았다.

或은 아침에 찾아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으나 기대에는 어긋나고 오히려 내가 문안을 드릴 형편이었다.

午後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나만 슬슬 피해다니며 눈치만 보는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시켜 봐도 대답도 하지 않으며 나를 멀리 하려고만 든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고민했다. 그야말로 첫 테스트에 걸린 셈이다. 그래서 生覺끝에 兒童을 불러 앉히고 한참 킴목을 지키다가

「○○야 이젠 다났니?」

하고 물었더니

「다 났으니까 다니잖어요?」

「그래……」

「너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니?」

「……………」

나는 울음이 북바쳐 울었다. 어린이를 끌어 안고 울었다. 나의 눈물이 그애 머리우에 떨어졌다.

나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조용히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정말 서운 하다.」

이렇게 하소연 하였다.

「내가 너에게 부족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나는 힘껏 너를 훌륭하게 자라도록 도와왔는데」

어느덧 나는 그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비로서 잘못을 사과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는 勿論 다시 좋은 옛모습으로 되돌아갔다.

社會事業이란 반드시 사랑과 技術이 必要할것이다. 그리고 한 아이를 바르게 指導하려면 肉體的으로 精生的으로 많은 고초를 이겨내야 될것이다.

이와같이 한 兒童을 바른 아이로 만든 後에야 그 기쁨은 이루 形言할수 없다.

아마 이런 기쁨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나

가는가보다.

保姆의 가장 기쁜일은 兒童들이 잘 順從할 때이다.

내가 처음 問題를 당했을 때 이곳에 들어옴을 後悔도 했지만 그동안 6個月間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滿足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틈틈히 時間을 利用해서 宿舍別 리크레이손 指導를 한다.

이 時間을 통해서 우울하고 말이 없는 兒童의 性格을 고치기도 하고 兒童들의 個性도 파악하며 또 실질 效果를 많이 보고 있다.

때로는 思春期 兒童들에게 女子가 지킬 예의도 가르쳐 주며 男女 교제에 對한 態도와 경우에 따라서 처리하는 方法에 對해서도 많은 指導를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내 自身 兒童들 立場에 서야되며 或은 兒童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故로 保姆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되며 신랄해야 되고 理解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될것이다.

그래야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곳 없는 孤兒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수 있으며 바르게 인도할수 있을 것이다.

孤兒들의 궁핍은 무엇보다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어도 무조건 받으며 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계하며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없고 불평 불만에만 가득찬 그들이다. 이런 孤兒들을 바른 길로 指導하자니 다만 사랑만 가지고서는 이끌어 나갈수는 없다.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며 그리고 自己의 생활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것이다.

만드시 眞心에서 이런 行動을 취한다면 그들도 같이 움직여 주고 따라온다.

이와같이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24時間을 근무하는 職場은 保姆뿐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위해 כות은일 마른일(빨래, 청소, 아이들을 씻겨주는 學課指導)을 서슴치 않고 일하고 있으나 오히려 保姆를 멸시하고 人間的인 待遇는 커녕 保姆의 存在를 너무도 無視하고 있다 社會가 올바른 이해를 갖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한 대가가 다른 職業에 비해 좀더 나은 보수를 급여한다면 모르지만 너무나 차이지는 5000~10000에 불과하니 더 說明하지 않아도 얼마나 最低의 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食生活을 解決하는 根本問題부터 시정되어야만 되겠습니다.

勿論 過去에 保姆는 國民學校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食母 겸 保姆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保姆에 對한 認識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待遇가 형편없었지만 앞으로 前과 같은 認識을 새로이 고쳐 激勵과 認定을 해주어야만 더 能率的인 活動을 할수 있을 것이며 社會事業에 對한 關心도 확대될것이며 외롭고 불쌍한 그들을 바르고 참된 길로 이끌수 있을 것이며 保姆들이 지닌 희생精神이 옳게 反映될것이다.

<筆者 國立社會事業指導者訓練院 勤務>

社會事業訓練實績과 展望

李 奎 輝

5·16 革命以後 社會의 모—든 腐敗와 不正을 一掃하고 頹廢된 社會의 諸問題를 整備하여 健全하고 明朗한 福祉國家를 建設하고자 國家再建課業은 果敢히 進行中에 있습니다.

이 再建課業은 各種으로 分類되어 各各 事業內容과 特質을 달리하고 있으며 各己事業들을 縱橫적으로 有機的連絡이 取하여지므로써 各己事業은 勿論이고 全體 事業目的達成에 歸納될때에 完全한 成功을 보게될것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社會事業分野에서 차지하고 있는 分量과 比重은 實로 큰바 있으며 이 比重과 分量은 全體 再建課業完遂에 있어 그 位置와 尺度가 重大하다고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各厚生施設의 革期的인 運營改編, 浮浪人 및 浮浪兒의 輔導, 淪落女性善導, 定着事業의 合理化, 生活改善을 爲한 國民啓蒙, 公共扶助 및 失業者救濟事業等 一聯의 諸社會事業은 國家再建事業의 重要한 部分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시 이것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은것으로

- 어린들이 위한 社會事業.
- 婦女子를 위한 社會事業.
- 貧困한 사람을 위한 社會事業.
- 特殊한 條件을 가진 사람을 위한 社會事業.
- 勞働者의 福利를 위한 社會事業.
- 農民의 向上을 위한 社會事業.
- 保健醫療에 관한 社會事業.
- 經濟의 發展을 圖謀하는 社會事業.

이렇듯 重要한 事業을 效率적으로 完遂함에 있어서는 먼저 專問的인 知識과 充分한 訓練을 받은 要員이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事業解決 및 向上方策과 事業 趣意에 透徹하여야할것은 勿論이고 現代的인 새로운 理論과 技術을 完全히 習得하여 事業遂行에 있어 直接 이를 充分히 活用할줄 알아야만 될것입니다.

특히 事業內容이 一般水準以下에 低落된 問題가 된 人間을 그 水準以上으로 向上시키는 일인 만큼 人間에 對한 充分한 理解와 人間을 相對하는 技術을 배워 이 들을 도와주고 指導할수있는 力量을 가지므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있다고 믿는바입니다.

위와 같은 事業目的 遂行을 爲하여 本 訓練院은 檀紀 4290年 10月 發足한 以來 3年10個月間에 걸쳐 全國 各地域에서 社會事業에 關與하고 계신 人士1034名을 모시고 訓練을 끝마치었고 回數로는 41회를 거듭하였 습니다.

全體 社會事業家에게 더 많은 機會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本訓練院의 施設關係와 社會事業家의 時間的 繁悶等이 考慮됩니다만 社會事業에 從事하고 계신 人士 들이 一堂에 모여 研究하고 相互討議하며 理論과 技術을 研鑽하여 우리나라 社會福祉 確保發展에 貢獻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며 慶賀할일이라 하겠읍니다 全國의 社會事業訓練對象은 其數가 龍大하여 短期間內에 全員訓練은 不可能하므로 年間 1,000名을 訓練기로 하여 年次의 計劃下에 全 對象人員을 訓練하고자 諸般業務를 進行中에 있습니다 訓練은 指導者, 從事者訓練 및 養成訓練으로 區分하고 있으며 中央 및 各地方 社會 行政公務員도 本訓練을 받아 社會行政의 現代化를 促求하고 있습니다.

訓練科目과 訓練期間에 對하여는 檢討를 거듭하고 實質的인 問題를 爲主로 短時間內에 社會事業에 對한 知識과 技術을 習得할수있도록 按配하였으며 全社會事業家들의 活動의 背景을 이르게하고 있습니다. 社會事業에 從事하고 있거나 또는 從事코져하는 분에 對하여는 一定한 期間內에 所定の 訓練課程을 履修토록하고 자 합니다.

以下는 當訓練院 發足以來 現在까지의 訓練에 對한 各種統計로서 이를 더 具體化한 各種統計資料는 本誌 次號를 通하여 收錄 掲載코져 하는 바입니다.

(筆者·國立社會事業訓練院 訓練課長)

訓練對象統計表

對象種別	人員	備考
社會行政公務員	2,982	
厚生施設従事者	5,938	
難民定着事業場指導者	2,820	
生活改善部落指導員	500	
労働團體要員	1,000	
新規養成	5,000	
合計	18,240	

4294年度訓練計劃表

1. 厚生施設従事者訓練

施設種別	参加人員	計劃人員			1回當期間	延日數	備考
		1回當人員	實施回数	總人員			
育兒施設	院長級	40	2	80	10	20	
育兒、嬰兒施設	保姆級	50	2	100	30	60	
母子施設	院長級	30	1	30	10	10	
浮浪兒保護施設		30	1	30	10	10	
養老不具者施設	"	30	1	30	10	10	
厚生施設	"	40	2	80	6	12	
計 (綜合)		—	9	350	—	122	夏季、冬季 現地訓練

2. 事業場従事者訓練

種別	参加對象	計劃			期間	延日數	備考
		人員	回数	總人員			
地域社會開發事業	指導員	40	3	120	30	90	
難民定着事業場	"	40	2	80	7	14	
軍警援護事業	従事者	40	1	40	7	7	
生活改善模範部落	指導員	50	1	50	10	10	
計		—	7	290	—	121	

3. 國立所屬機關公務員訓練

種別	對象	人員	回数	總人員	期間	延日數	備考
社訓、少年院、 感化院、覺心學院	保姆、保健 職業輔導擔 當公務員	20	1	20	7	7	
計		—	1	20	—	7	

4. 地方社會擔當公務員訓練

種別	對象	人員	回数	總人員	期間	延日數	備考
社會行政公務員	서울特別市、 道社會係長、 區社會課長	45	1	45	7	7	
婦女行政公務員	婦女係長、 婦女課長	45	1	45	10	10	
計			2	90	—	17	
總計			實施回数 19回	参加人員數 750名	實施總日數 267日		

期別別訓練修了者統計表
市道別

4294年 10月 6日 現在

年度別	種別	市道別	國立	서울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江原	濟州	計	
4290	從事者	小計	1	13	6	5	4	5	4	5	4	1	1	53	
			13	6	5	4	5	4	5	3	4	1	1	53	
4291	指指指指指 導導導導導 者者者者者	2	—	1	2	—	—	2	2	—	2	1	1	11	
		3	4	2	2	1	3	1	2	—	4	1	—	20	
		4	1	2	2	1	1	1	3	—	3	1	1	16	
		5	2	4	4	2	3	1	3	4	3	2	1	29	
		6	6	3	5	—	3	2	1	—	3	2	—	25	
	小計	—	13	12	15	4	10	7	11	4	15	7	3	101	
4292	指指指指指 導導導導導 者者者者者	7	1	3	4	1	2	1	2	—	1	1	—	16	
		8	—	2	4	2	1	3	2	3	3	2	—	22	
		9	1	4	2	—	2	2	2	4	4	1	2	—	20
		10	—	5	2	1	3	4	1	13	1	2	—	32	
		11	—	4	3	3	3	5	3	3	3	3	1	—	31
		12	—	3	5	1	3	3	1	6	9	1	—	—	32
		13	—	1	3	—	2	1	1	9	5	2	—	—	24
		14	1	12	—	—	1	1	—	18	3	—	—	—	36
		15	—	1	6	1	—	1	3	2	—	—	—	—	14
		16	1	3	2	1	5	3	4	9	9	—	2	—	39
		17	1	2	8	2	4	3	—	4	6	1	1	—	32
		18	—	1	6	—	2	4	—	8	3	—	—	—	24
			小計	—	5	41	45	12	28	31	19	79	44	14	4
4293	公指難指指 務導導導 民導導導 者者者者者	19	—	4	3	2	3	4	4	6	7	—	3	36	
		20	—	5	3	1	—	2	2	2	2	—	1	14	
		21	—	—	7	4	6	—	1	1	4	5	1	—	28
		22	—	5	3	1	2	—	—	—	1	8	—	2	24
		23	—	—	1	—	2	—	—	2	7	—	1	—	13
		24	—	7	—	—	1	—	1	—	3	—	—	—	12
		25	—	5	6	1	2	3	1	1	—	3	1	—	30
		26	—	—	2	1	6	5	5	—	3	3	7	1	31
		27	—	3	3	—	3	3	1	3	—	—	—	—	13
		28	—	3	2	—	3	2	1	2	—	—	1	1	16
		(1)	—	6	6	3	1	1	—	—	2	—	—	—	21
		(2)	—	9	—	1	3	2	1	—	—	5	—	—	21
			小計	—	—	45	36	14	32	23	16	32	42	11	8
4294	公指從指難 務導導導 民導導導 者者者者者	29	18	—	—	—	—	—	—	—	—	—	—	18	
		30	—	2	4	—	5	1	1	—	—	—	—	14	
		31	—	—	—	—	—	—	—	18	24	—	—	—	42
		32	—	2	8	—	1	—	—	—	—	—	—	—	11
		33	—	6	5	2	9	4	4	—	2	2	1	—	41
		34	—	8	8	2	6	3	6	2	2	4	—	—	37
		35	—	—	21	8	—	—	—	—	—	11	—	—	40
		36	—	5	1	—	2	1	—	7	—	—	—	—	16
		37	—	3	1	1	1	1	1	1	10	—	—	—	19
		38	—	8	12	3	2	3	3	5	13	2	—	—	38
		39	—	7	3	1	1	1	4	3	3	1	—	—	23
			小計	18	41	63	14	19	19	18	41	44	20	2	299
		合計	指從公難 務導導 民導導 者者者成	15	83	94	20	46	38	38	93	77	28	9	541
14	27			36	8	16	16	15	32	39	10	2	215		
20	14			14	9	10	13	12	16	16	7	5	136		
—	6			14	7	18	14	20	9	10	10	2	100		
—	15			6	4	4	4	3	1	2	—	—	—	42	
	總計	49	145	164	48	94	84	76	152	149	55	18	1,034		

學歷性別修了者統計表

4294. 10. 6. 現在

年度別	期別	學 種 別	歷 性 別	國 卒			中 卒			高 中 退			高 卒			大 中 退			大 卒			合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4290	1	從 小	事 者	—	1	1	5	8	13	—	2	2	19	10	29	1	1	2	4	2	6	29	24	53		
				—	1	1	5	8	13	—	2	2	19	10	29	1	2	2	4	2	6	29	24	53		
4291	2 3 4 5 6	指 指 指 指 指	導 導 導 導 導	1	—	1	—	1	1	—	—	—	1	2	3	—	—	—	5	1	6	7	4	11		
				1	—	1	3	1	4	—	—	—	1	2	3	—	—	1	9	2	12	15	5	20		
				—	—	—	1	1	2	—	—	—	—	—	5	2	7	2	—	2	3	2	5	21	5	16
				5	—	5	9	—	9	8	1	9	—	—	—	—	—	—	—	6	—	6	28	1	29	
				1	—	1	6	2	8	—	—	—	2	4	6	—	2	2	7	1	8	—	6	16	9	25
				8	—	8	19	5	24	8	1	9	9	10	19	3	2	5	30	6	36	77	24	101		
429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2	—	2	14	1	14	—	—	—	3	3	6	1	—	1	5	1	6	11	5	16		
				4	—	4	2	1	3	—	—	—	2	2	4	2	—	2	4	1	5	14	6	20		
				—	1	1	4	3	7	—	—	—	6	3	9	2	—	2	4	1	5	14	6	20		
				3	—	3	4	3	7	—	—	—	2	7	9	—	—	—	10	3	14	19	13	32		
				5	—	5	15	1	16	—	1	1	4	—	4	—	—	5	—	5	29	2	31			
				2	—	2	7	—	7	—	—	—	3	5	8	2	2	4	10	1	11	24	8	32		
				1	—	1	7	—	7	—	—	—	3	1	4	2	—	2	7	1	5	20	4	24		
				—	—	—	6	1	8	—	—	—	2	1	3	4	1	5	13	8	21	25	11	36		
				—	1	1	2	2	4	—	—	—	3	1	4	1	—	1	4	—	4	10	4	14		
				1	—	1	7	2	9	—	—	—	6	3	9	1	—	1	18	2	19	32	7	39		
2	—	2	5	11	11	—	—	—	—	16	16	—	1	1	—	2	2	—	—	—	32					
17	—	—	3	5	5	1	—	1	3	1	4	4	—	4	6	1	7	21	3	24						
18	—	—	20	5	25	69	24	13	1	1	2	37	41	78	18	4	22	82	20	120	227	95	322			
4293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公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務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4	—	4	15	—	15	2	—	2	10	—	10	1	—	1	4	—	4	36	—	36		
				1	—	1	—	—	—	—	—	—	—	—	—	3	3	1	—	1	5	1	6	7	7	14
				9	—	9	5	—	5	2	—	2	4	—	4	1	1	1	2	—	2	28	—	28		
				—	—	—	1	1	1	1	2	3	3	1	4	2	4	6	6	4	10	12	12	24		
				1	—	1	1	1	1	—	—	—	2	4	6	—	—	5	—	5	8	5	13			
				—	—	—	1	1	2	—	—	—	3	3	6	2	—	2	—	2	8	4	12			
				—	3	3	2	—	2	—	—	—	5	6	11	—	—	12	2	14	19	11	30			
				11	—	11	7	—	7	1	—	1	4	—	4	—	—	3	—	3	31	—	31			
				—	2	2	1	3	3	—	—	—	4	6	6	—	—	—	2	2	—	—	13			
				—	—	—	1	3	4	—	—	—	4	1	5	1	—	1	5	1	6	11	5	16		
				—	—	—	—	—	—	—	—	—	—	18	18	—	2	2	—	1	1	—	—	21		
				—	—	—	—	—	—	—	—	—	—	18	18	—	2	2	—	—	—	—	—	21		
				21	6	27	31	10	41	6	4	10	40	60	10	8	16	44	11	55	160	99	259			
4294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公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指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導	—	—	—	2	3	5	—	—	1	1	2	—	1	1	11	11	15	12	6	18			
				—	—	—	2	13	13	—	1	1	3	3	6	—	—	—	1	1	—	—	6	8	14	
				—	27	27	—	—	—	—	—	—	—	—	—	—	—	—	—	—	—	—	—	—	—	42
				—	1	1	2	—	2	—	—	—	—	—	1	1	2	—	4	4	2	5	7	11	11	
				2	—	2	25	—	25	—	—	—	—	5	5	3	—	3	6	—	6	41	—	41		
				—	—	—	7	7	—	—	—	—	—	—	25	25	—	2	2	3	3	—	37	37		
				—	25	25	13	13	—	1	1	—	—	1	1	—	—	1	1	—	—	—	40	40		
				—	—	—	2	—	2	—	—	—	—	1	1	—	—	1	—	—	—	—	—	—	16	
				1	—	1	—	—	—	—	—	—	—	6	10	16	—	—	8	—	8	16	—	16		
				—	—	—	—	—	—	—	—	—	—	6	10	16	—	—	8	—	8	16	—	16		
				1	—	1	1	8	8	—	—	—	—	23	23	—	—	1	—	5	5	—	7	12	19	
1	—	1	1	1	2	—	—	—	—	3	2	5	2	1	2	9	3	12	16	7	23					
	計		4	55	59	32	45	77	2	2	19	68	87	13	4	17	37	20	57	105	194	299				
	總 計		63	67	130	156	92	248	15	10	25	124	189	313	43	19	62	197	59	256	598	436	1,034			

(編) (輯) (後) (記)

●燈火可親의 季節입니다.

●하늘은 맑고 드높아 高雅의 境地가 眼前에 펼쳐 있습니다. 말은 살지고 五穀은 무르익어 豐饒를 자랑하는 結實의 季節이기도 합니다.

社會事業 第二號誌는 이런 좋은 季節에 出生하여 賢賢들의 硯北에 놓여집니다.

●5·16革命은 滔滔히 흐르는 濁流를 清水로 淨化시킬 靈藥입니다.

빛나는 榮光 祖國에 가득히 차지이다.

비는 마음! 三尺童子로부터 高齡白髮까지.

●社會事業分野도 歷史的인 躍動期에 즈음하여 같은 前進으로 이땅 위에 執居하는 不遇를 除去하고 調整

하는데 果敢한 役軍으로서 힘찬 活動이 못내 期待됩니다.

幸福한 民族이 서로 抱擁하고 幸福된 祖國을 부르는 노래와 아름다운 旋律과 함께!

●玉稿를 주신 여러 先生님과 研究物을 發表해준 同僚諸位에게 感謝를 들이며 거듭 幸福과 精進을 祝願합니다.

●쓰내기처럼 들리던 말매미 소리를 들어가며 社會事業誌 出刊에 盡念해 주신 前 金阿燮 院長님과 前 宋伯圭課長님 그리고 編輯을 여러모로 보살피 주신 金洛中先生님께 紙上을 통해 謝意를 表합니다.

●社會事業家諸賢과 讀者諸位의 清安을 빌며 本誌를 위하신 熱烈한 鞭撻을 기다립니다. (李奎輝)

社 會 事 業

第 2 號

發 行 國 立 社 會 事 業 指 導 者 訓 練 院

發 行 人 鄭 正 謨

編 輯 人 李 奎 輝

印 刷 日 檀紀 4294年 9月 25日

發 行 日 檀紀 4294年 9月 30日

印 刷 所 光 明 印 刷 公 社

THE SOCIAL SERVICES

Volume 2

CONTENTS

Message to the "Social Services"	HI SUP CHUNG, M.D., Minister of Health & Social Affairs... 2
Preface	JUNG MO CHUNG,... 3
Academic study of Social Work	YOON CHEE..... 4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Social Welfare	KIL BYONG YOON... 15
English Poor Law-1601	HUM YUN..... 25
Treatment of Laborers Before the Liberation	KAP NO YOON..... 30
A Study on the Public Welfare and Relief Services in Yi Dynasty	CHA HON KOO..... 34
A Report on the Living Conditions of Housemaids and my Opinion of the Social Protection for them	NAK CHOONG KIM... 46
Summary of Social Research	KYOO SUN CHO..... 56
Practical Methods For Guidance of Vagrants	CHUN BANG..... 61
Practical Way of Improving Child Welfare Services in Korea	TAE SHIN PARK..... 64
Practical Methodss for Guidance of Vagrants	KUN MIUNG LEE... 68
Guidance in Stuby and Work of Feeble-Minded Children	SOO HEE PARK 72
Report on the test of the Children in- the Home attached to the Social Workers, Traning Institute	KYN CHONG LEE... 75
An institution for Feeble-minded children	DUK KYUN LEE..... 90
Practical Education for Mentally returded	KYONG AE HAN..... 92
Records on How they have been Corrected	TONG IL YANG..... 95
My Report as a Staff of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EUL BOK WOO..... 98
Urgency of New Understanding to the Uninfected Children	BYNOG WON MOON•101
Education of Children Under Institutional Care	TONG YONG LEE.....103
Recreation for the Children Under Institutional Care	YO SUP CHO.....105
How to Guide Children in Reading	CHONG OK KIM.....107
Sanitary Problems in Welfare Institutions	EUN YOP PAI.....110
How to Guide Children in their Daily Life	YONG NAM WON...111
How to Manage Clothing Problems of the Children Under Institutional Care	SOON IM CHUNG...114
Nutrition and Health	KEE HYANG LEE...115
My Note as a Housemother	OK SOON HONG.....118
Results and Prospects of Social Work Training	KYOO HUI LEE.....120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KAVA)
Seoul I.P.O. Box 1641 Tel: 2-2259; 2-9187

September 5, 1962

CHANGING PHASES OF KOREAN FAMILY PATTERNS:

A recent survey conducted by the post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veals interesting and significant facts about Korean families that have been facing a change from an extended family system to a conjugal family structure.

In size of a family, it is noticeable that there exists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number of members in a family and what appears in the official family registration. Families with 5-6 members in a family make the largest single group of all families,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while some of them still have up to 20 or more people registered as a single family.

In rural areas, 9% of all families have 2 members or less in a family; 26%, 3-4 members; 32%, 4-5 members and 27%, 6-7 members in a family. In urban areas, trend is more or less similar to that of rural areas.

Following are changing views of the people in regards to marital arrangements and relative responsibility of dependents. 30.4% of the statistical population expressed their view that choice of a spouse should be made by those directly involved pending consent of their parents; 42.9% desired initial choice of a spouse by parents pending consent of the son or the daughter. This indicates explicitly the people's desire for an agreement by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a marital arrangement.

14.9%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one has a kinship responsibility for a support of dependents only within the limit of ascendant and descendant families of name line, while 24.3%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view of an extended scope of the kinship responsibility, including collateral families.

To keep pace with the realities of family structure and kinship consciousness in the present day Korea, we hear the government has top level study committee for recommendations of revisions in civil code in order to make it congruous to the changes.

MEETINGS:

September Board Meeting of KAVA will be held as follows:

Date: Wednesday, 19 September 1962
Time: 9:30 A. M.
Place: Seoul YWCA Building

The KAVA Executive Committee Meeting will be held:

Date: Tuesday, 18 September 1962
Time: 9:30 A. M.
Place: Seoul YWCA Building

TAX CLASSIFICATION OF KOREAN EMPLOYE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inance letter to KAVA, Korean employees of KAVA agencies are subject to class A wage and salary income tax.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rend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regards to the matter states that only those Korean employees working for foreign organizations which enjoy diplomatic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will pay in class B scales.

OPERATION HANDCLASP SHIPMENT:

A shipment of operation handclasp arrived in Pusan on August 4, aboard USS SKAGIT and the goods are now stored in the Pusan customs warehouse.

It is hoped that agencies that had been notified will pick up theirs as quickly as possible before the warehouse storage charge become heavy.

INFORMATION MATERIAL AVAILABLE:

Embargo List: USOM translated the Ministry list of items that were prohibited from importing and made the translated copies available to KAVA. This list will be given out to KAVA delegates at the next KAVA meeting on September 19.

CD Booklets: Following USOM published booklets on Community Development are available in KAVA. They may be obtained at the KAVA office.

1.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in English)
2. Four Korean villages (Ethno-sociological Report, in both English and Korean editions)
3. Seven case capsules from Korea's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GENCY COMMUNICATION:

The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 in Taegu had its dedication of a new hospital there on 22 August 1962.

This new hospital is called the Fatima Hospital and is located in Sin Am Dong 302-1, Taegu.

COMINGS & GOINGS:

Miss Esther Park of YWCA left Korea on August 14 for about 6 months trip to the United States. While there, she will spend much of her time at the YWCA headquarters in New York.

We hear that our long time friend, Miss Anne Davison is leaving the country in coming December. She will work as Associate Secretary, Council for Social Service in 400 Jarvis St. Toronto, Canada. For the I.S.S. in Korea, Mr. Gardner Munro will replace her.

The Catholic Relief Services - NCWC welcomed a new staff member - Miss Tedda Ronnen Kamp. We hope she will enjoy her stay in Korea..

WORDS OF GREETING BY THE AMBASSADOR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 am grateful to you for this opportunity to offer greetings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Greeting you in this fine Youngnak church today, I am humbly conscious of the long history of friendship and association between the American diplomatic mission and this great church, representing Korea's first and largest Protestant denomination. Our diplomatic mission and your religious mission started together in Korea within a year of each other. When the first missionary and the first resident Presbyterian, Dr. Horace N. Allen, entered Seoul on September 22, 1884, he was at once appointed physician to the new American Legation which had itself been established in Korea the year before. Dr. Allen was subsequently appointed Secretary in the American Legation in 1895, Minister Resident and Consul General in 1897, and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in 1901, a post which he held until 1905. I feel his spirit must somehow be among us as I give my greetings to you today. He symbolizes, more than any other man, the closeness between us.

Since that day, the Presbyterian Church has played no insignificant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West and Korea. As an American, I am especially pleased by the deep interest and constructive concern shown by a succession of American Presbyterian Boards. Your representatives have displayed a continuity of interest and devotion to this country of which any American must be proud. Among those with us today, I think of Samuel Moffett, your Commission Representative, whose father was the first Moderator of your Presbytery; of Horace Underwood, whose grandfather was the first Moderator of your General Assembly elected fifty years ago; and of many, many more. No one can think of records such as these without humility and gratitude.

Yet even more important than any individual achievement has been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itself. It represents, today as it has for fifty years, one of the first operating democracies in Korea. 275 delegates are here today. Each is elected from the Presbytery which is itself elected by your thousands of churches and represent your 375,000 members. Western in origin, democratic in concept, this Assembly has long since become uniquely Korean. Since Dr. Moffett relinquished his place decades ago, all your Moderators have been Korean. Your new Moderator, the Reverend Yi Kee Hyuk, stands before us not only as a church and spiritual leader, but as a linear representative of what is, probably, Korea's oldest institutional democracy.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you have given me to share this great anniversary with you. I extend this morning my congratulations and my highest hopes for the future of this church and of you all.

Samuel Berger
United States Ambassador to Korea

G. White

Presbyterian Mission,
Chulla Nando,
Soonchun, Korea.
September 1, 1962.

Dear Friends:-

Have you ever wakened about midnight from a sound sleep to hear thousands of wailing and screaming voices, sirens blowing, no sign of fire but a torrential fall of rain and pitch black darkness! ? (the electricity had gone off). That is what we heard in our fair city of Soonchun at midnight August 27th, 1962. No doubt you have read in the Newspapers and heard over the Radio of the flash flood that descended upon Soonchun and neighborhood causing death and destruction to homes, business places, Churches and Schools.

The latest statistics we have heard are the following; 182 dead, and many people still missing; 1900 homes destroyed, 8,700 people who have lost all and many, many who have sustained damage to their property. Our Station Compound sustained no damage. For those of us who have never experienced such a catastrophe it is hard to take it in-- but to see people wading in mud, scrapping about trying to find some familiar article with a look of utter frustration and dazement on their faces, it is something we will not soon forget-- for many of the sufferers do not know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reliance upon God.

Our East Presbyterian Church was in the center of the flood. This is a comparatively new Church, one which our beloved Dr. Hyung Mo Kim has Pastored for the last few years and has enabled it to get out of debt, buy a Manse and Call a Pastor. This Church building is not extensively damaged, although the water was quite high in it and it was filthy. Some of the people cut a hole in the ceiling and climbed to the rafters and safety, but 22 of their Congregation lost their lives, 23 houses involving 115 people were totally destroyed, ten houses, involving 65 people were partially destroyed, 12 houses, involving 52 people were water soaked and belongings lost. One family of eight lost seven of their members; another family of nine, only two remain. Three other nearby Churches are greatly damaged, and one little new Church was completely wiped away. This is a very, very small part of the total destruction and the drama will continue on and on for a long time.

However, soon the City Authorities and Church Pastors and Officers had things organized and help and needed supplies began pouring in by Helicopter and truck. We and the people in charge of the distribution of Relief greatly appreciate the gifts of Medical Supplies, clothing, bedding, food and money that our Sister Stations, Church World Service, Young Nak Church in Seoul,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merican Army have already sent and we solicit your continued help in alleviating the distress and losses sustained in our City and neighborhood.

Sincerely,

Soonchun Mission Station,

Gladys P. Byers - Sec.

to imagine that a large number of less distinguished *yangban* descendants did indeed lose that status. In view of such evidence, it is really open to serious question if *yangban* status in the early Yi was gained strictly through hereditary ascription.

The crucial factor that distinguished *yangban* from commoners was, in my opinion, whether or not one was enrolled in a Confucian school, for student status would confer the privilege of military exemption. Thus, in order for a *yangban* family to retain its status, it was essential that it produce a son who acquired a formal Confucian education by enrolling in a public or private school and who maintained a minimum scholastic standing. In view of the enormous power, prestige, and privilege enjoyed by the *yangban*, they understandably made every effort to preserve their status by motivating their descendants to take up Confucian studies as a profession and by making economic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to them to pursue such a goal. This factor, more than anything else, explains the strong tendency that existed in Yi society to perpetuate the *yangban* class.

In conclusion, the Confucian state established by the Yi depended largely on the examination system for recruitment of state officials. Both in ideology and in practice, the civil examinations were conducted on a competitive basis, placing primary emphasis upon the candidates proficiency in Confucian studies and moral cultivation. Contrary to a belief widely held by scholars in our time, the civil examination system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Yi dynasty was not closed to all who were not members of the *yangban* class. It was open to commoners who qualified by devoting their energies to Confucian scholarship. While it cannot be denied that one's *yangban* lineage background and membership in a certain influential clan offered clear advantage in the civil examinations, there was at the same time no restriction against men of commoner origin taking part in this important state recruitment system. If a large proportion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were drawn from *yangban* family background (as may very well have been the case), it was not because of restrictions or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oners. We have to look for causes elsewhere. What is significant, however, is that the early Yi state did admit men of commoner origin, who comprised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to the civil examinations,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rise beyond the social status into which they were born. Since this major channel of upward social mobility was open to qualified commoners, the talented and ambitious among them could climb the ladder of success by first taking up Confucian scholarship and then by successfully passing a civil examination. As a consequence,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arly Yi Korea was probably not as rigid as has been once believed and the class barrier between commoners and *yangban* was less insurmountable. The role assignment at the crucial level of selecting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was not totally based on ascription orientation, but individual merit and achievement were important factors. In view of the new evidence establishing the incidence of participation by commoners in the civil examinations and their subsequent advancement through the powerful and prestigious bureaucratic ranks, it is justified to call for a new interpretation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long tenure of the Yi dynasty.

KOREA: Social - Agriculture

Korea has 67,000 sq. miles of mountain + unutilizable land &—
only 18,000 sq. mi. of cultivatable land

- James H. van Rensselaer MEM 11.7.481 p. 13

Marriage lines

	South Korea	North Korea	West Germany	East Germany
Population 1989 m	42.4	22.4	62.0	16.4
GNP per head 1989 \$	4,500	400	19,300	4,500
Labour force in agriculture % latest	20	35	5	11
Total trade 1989 \$ billion	110	5*	610	28
% of total trade with socialist countries 1989	3	71*	5	56
Defence budget as % of GNP latest estimate	5%	30%	3	8
Passenger cars per '000 population latest	27	1†	450	220
T.V. sets per '000 population latest	170	10†	360	360

Sources: World Bank, FAO, IMF, IISI, PlanEcon, OECD, Commerzbank, UK Dept of Transport. *The Economist* estimates * 1988 † rough estimate

(London) *The Economist* 10/20/90, p. 34

better than it had hoped. The Soviet Union, having made its peace with China last year, had, it seems, concluded that the North no longer had any great geopolitical importance for the Russians; and, second, that South Korea would make a much more promising economic partner than the Japanese, even if the Russians'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could be promptly settled.

Hence the Soviet Union's swift embrace of South Korea. China would still offer ideological support to its old friend, but Mr Kim, who made a hurried visit to Beijing after he got word of the Soviet brush-off, could expect no money to replace Russia's. As the North began fading economically, South Korea confidently reasoned, it would have

North are likely to be honoured.

While the South longs for reunification, it does not want it yet, please. Officials talk of a gradual process that would lead smoothly to union in, say, 2000. They argue, persuasively, that not only does the North need a controlled decompression from its present, highly unnatural state; the South would be strained almost unendurably by the burdens of a quick reunification.

South Korea has been perhaps the world's most successful developing country over the past 30 years, but it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Its GNP of about \$4,500 per person is modest. It has inflation (consumer prices will rise by 8-10% this year), its central bank is weak (money supply has been allowed to rise, at the government's behest, by 21% and more a year), its industrial structure is too concentrated, its financial system primitive. It has no welfare system to speak of. Its society is riven, its

young democracy is unproven. The South Koreans are a pretty unimpressive lot. No West Germany, confident in its weather the gales blowing off the other half.

The South's emissaries fervently want to believe it will be like China. North Korea cannot be economically without abandoning authoritarianism. Asia is not ready, say; Seoul itself was under a curfew as recently as a few years ago. The South is still a fairly raw democracy. Even a political explosion, if it comes, some southerners, will lead to a change of regime, not of attitude towards absorption by the South.

But poking holes in a tight container is an unpredictable business. A high southern official says the South government has begun studying how best to cope if the North succeeds. The South and the North are both smaller than the world's anti-communist superpower, bigger than both of them.

A taste of glory

THE colonial powers did bring something with them. The English taught the Indians to play cricket. The French taught the Vietnamese *la gloire*. After the young Le Duc Tho left his French-

people, economic collapse and death. Tho was also in charge of Cambodia in 1978, and he greeted Vietnam's withdrawal later. The French had tended



Commoners in Early Yi Dynasty Civil Examinations: An Aspect of Korean Social Structure, 1392-1600

YÖNG-HO CH'OE

THE idea that government should be conducted by men of virtue and wisdom is intrinsic to the Confucian tradition. As one distinguished modern scholar puts it, "When Confucius' whole system of thought is analyzed, it is obvious that he regards rule by the wise and virtue as the very foundation of good government."¹ The Yi dynasty of Korea, which replaced the tottering Koryŏ in 1392, was founded by scholar-officials imbued with the ideals of Neo-Confucianism and dedicated to realizing the ideal world envisioned by the Confucian sages. Indeed, the zeal of Yi dynasty scholar-officials for Neo-Confucian idealism had rarely been matched even by their counterparts in Chinese history. "The key to governing the world and the state lies solely in the use of men," wrote Chŏng To-jŏn, one of the principal architects of the dynasty, in laying down the basic guidelines for the new dynasty in his *Chosŏn kyŏnggukchŏn* (Codes for governing the state of Chosŏn).²

It was to recruit such men of wisdom and virtue, according to the Confucian yardstick, that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were developed in traditional China and Korea,³ and the Yi dynasty, from its inception until 1894, depended on competitive examinations as the major channel of recruitment. One study of 352 officials who served as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Ūijŏngbu*), the highest posts in the central government, indicates that 304, or 86.4% rose through the higher civil examination.⁴ Table 1 gives a breakdown of the highest rank attained by all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graduates from 1392 to 1600, tabulated from *Kukcho munkwa pangmok*, a comprehensive list of higher civil examination graduates.⁵ More than one third of all the graduates eventually rose to the coveted *tangsanggwŏn* (senior officials of the upper senior third rank and above), and a full 90% of the pre-1600 graduates reached the sixth rank or higher. In other words, success in the

Yŏng-ho Ch'oe is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¹ Ping-ti Ho,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 Aspects of Social Mobility, 1368-1911*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2), p. 5.

² *Sambongjip* (Han'guk saryo ch'ongsŏ No. 13), comp. by Kuksa P'yŏngh'an Wiwŏnhoe (Seoul, 1961), p. 209.

³ Although a system of examinations to recruit state officials is known to have existed in Korea as early as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the full scale Chinese-style examination system was not formally introduced into Korea until 958, when a Chinese expatriate from the Later Chou of the Five

Dynasties, named Ssang Ki (Shuang Chi in Chinese), conducted the first examination. See, *Koryŏsa* (Tongbanghak Yŏn'guso edition, Seoul, 1955), 93, 23 a-b.

⁴ Kim Yŏng-mo, "Yi-jo samŭijŏng ūi sahoecjŏk paegyŏng," *Han'guk sahoehak*, I (1964), 40.

⁵ The particular edition I used is in the Kyujanggak Collec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atalogue Number 106) and is believed to have been compiled ca. 1760. See, June-ho Song, "The Government Examination Rosters of the Yi Dynasty," in *Studies in Asian Genealogy*, ed. by Spencer J. Palmer (Provo: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71).

TABLE I—CLASSIFICATION OF HIGHEST RANKS ATTAINED BY MUNKWA GRADUATES, 1393-1600

Classification	Ranks	Number who Attained	Percentage
Senior Officials	1a - Upper 3a	1,583	36.7
Middle-rank Officials	Lower 3a - 6b	2,295	53.3
Low-rank Officials	7a - 9b	104	2.4
Unknown		327	7.6
	Total	4,309	100.0

SOURCE: Kukcho munkwa pangmok (Kyujanggak Collection No. 106).

higher civil examination all but assured the graduates successful careers in the civil bureaucracy of the early Yi dynasty.

The prevailing belief among modern scholars has been that these civil examinations were open exclusively to men of *yangban* birth and that they were perforce closed to all others, notably the commoners. The late Professor Yi Sang-bae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rote: "There was an important restriction based on one's social status, and, in principle, no one but *yangban* possessed the qualifications allowing them to participate in the civil examinations."⁶ Scholars in North Korea have taken a similar stand, as is seen in *Chosŏn t'ongsa* (A general history of Korea), written under the auspices of North Korea's Academy of Sciences:

Especially for the civil examinations, only those who held *yangban* status were permitted to apply, and men of all other statuses were not allowed, in the first place, to receive the education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xamination.⁷

Accordingly, it has been believed that because of this social restriction the Yi dynasty examination system, unlike its Chinese model, worked to rigidify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⁸ A corollary to this assumption is the notion that *yangban* status during the Yi period was strictly hereditary and that the whole social order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a virtual caste society.⁹

Are these assumptions correct?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these all-important civil examinations? Was there in fact any restriction based on social status? W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examinations determined by birth? These are extremely important questions, and yet little work has been done to find definitive answers.

⁶ Yi Sang-baek, *Han'gukŏsa: Kŏnse chŏn'gi p'yŏn* (Seoul: Chindan Hakhoe, 1962), pp. 278-79.

⁷ Chosŏn Minjujuŏi Inmin Konghwaguk, Kwahagwŏn, Yŏksa Yŏn'guso, *Chosŏn t'ongsa*, Vol. I (P'yongyang, 1962), p. 557.

⁸ See, for example, Han U-gŭn, *Han'guk t'ongsa* (Seoul, 1970), pp. 254-55.

⁹ Pow-key Sohn, "Social History of the Early Yi

Dynasty, 1392-1592: Emphasis on the Functional Aspect of Government Structur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3), p. 89, n. 4. This dissertation provides an extremely perceptive analysis of the power structure of the early Yi government, centering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yangban*.

We do not even have a satisfactory definition for the term *yangban*, for example. Since the civil examination system was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nel for elite formation in Yi society, at least partial answers to some of these questions may be obtained by determining what social groups were permitted to take part in the examin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civil examinations were open exclusively to *yangban* and closed to commoners. An answer to this question will throw more light on the nature of Korean social structure during the Yi period,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formation of the *yangban* class. In view of the complexity of these questions, this study is confined to the earlier part of the dynasty, from 1392 until about 1600.

Broadly stated, society under the Yi comprised three large social groups, the *yangban*, the commoners, and the "mean" people. The term *yangban* meant originally state officials in both the civil and military services. But, as the term came to be used in the late years of the dynasty, the *yangban* class includes not only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but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ir legitimate descendants as well. Implied in this broad generalization is the widely accepted notion that *yangban* was a hereditary status given as a birth right. This view, however, will be challenged later in this paper.

Commoners known as *yang'in* or *p'yŏngmin* made up the majority in Yi society. They were mostly engaged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bore the main load of taxation. Among the various forms of taxation imposed on them was military duty for all male adults between the ages of sixteen and sixty. Also, among the commoners was a small number of people engaged in trades such as commerce and crafts. Because of the Confucian contempt for such activity, they were, as we shall see later, barred from the civil examinations.

At the bottom of society were the people known as *ch'ŏnmin*, men of "mean" status or low birth. Most were in bondage, and they included, among others, public and private slaves, female entertainers (*qisaeng*), and butchers. Legally, the social status of these people was hereditary, and, in theory, they remained in bonda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three-class stratification is a simplified but commonly accepted description of Yi social structure. Some may add one or two categories or call attention to gradations of status within the three main groups, but for our purpose this simple classification is adequate.

To enter the civil bureaucracy, three regular channels were normally open to qualified aspirants. One was to pass the civil examination. The second was to receive a protection appointment (*ŭm*) through the special privilege accorded certain officials, who were permitted to nominate certain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 government posts.¹⁰ The third channel was appointment through a recommendation, known as *ch'ŏn'gŏ*. By this system, meritorious and virtuous men were recommended to the Board of Personnel and, upon meeting certain qualifications, were appointed to

¹⁰ Merit subjects and those holding the second rank and above were allowed to nominate their sons, grandsons, sons-in-law, brothers, and nephews for *ŭm* privilege. Officials holding the third rank could nominate their sons and grandsons, while those who had served in the Boards of Personnel and War, in the Military Command, in the three

censorate offices, and in the Office of Royal Aide-de-Camp were permitted to nominate their sons. Those nominated, however, had to undergo certain tests before they were given official posts. See *Kyŏngguk taejŏn* (Chŏsen Sŏtokufu Chŭsŭin edition, Seoul, 1934), p. 153.

government posts.¹¹ Of these three channels, the civil examination was by far the most important means of recruitment. Young men of talent and ambition, even when they were eligible for a protection appointment, characteristically avoided the *ŭm* privilege and preferred to compete in the regular civil examination.¹²

The civil examination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sama* or lower examination (*soḳwa*) and the *munkwa* or higher examination (*taekwa*). The lower examination, also known as the *saengwŏn-chinsa* examination because the degree awarded was either *saengwŏn* or *chinsa*, depending on the candidate's choice of subject, did not automatically qualify the recipient for an appointment to a government post. Instead, he was merely permitted to enroll at the National Academy (*Sŏnggyun'gwan*), where he could study further in preparation for the higher *munkwa* examination.¹³ This practice was relaxed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and holders of *saengwŏn* and *chinsa* degrees were considered for appointment to minor posts.¹⁴ Although not automatically guaranteed an official post, winners of *saengwŏn* and *chinsa* degrees were accorded sufficient honor and prestige to make them eminent members of the social elite during the most of the Yi period. Most important of all the examinations, however, was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munkwa*. It was this examination that qualified successful candidates for major state offices.¹⁵ For *munkwa*, there we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examinations; they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three categories: the regular examination given triennially (*singnyŏn-si*), the supplementary examination given infrequently on certain felicitous occasions (*chŭnggwang-si*), and the special examination offered irregularly between the triennial examinations (*pyŏl-si*).¹⁶ Although the curricula covered in these examinations were somewhat different, the graduates all carried the same power and prestige.

To see who took part in these civil examinations, let us first examine the legal stipulation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applicants. The basic laws governing various aspects of Yi society are codified in the basic state statutes, *Kyŏngguk taejŏn* (Great Codes for Governing the State), compiled in the mid-fifteenth century. On eligibility to take part in the civil examinations, the Great Codes stipulate that a person in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is to be barred: (1) one who, having been convicted of a crime, is permanently excluded from government service; (2) sons of corrupt officials; (3) sons and grandsons of remarried widows and of immoral women; and (4) descendants of concubines.¹⁷ These stipulations, the only statutory limits on examination candidates, clearly place no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by commoners.

There was, however, one important practice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evidence of a prohibition against men of non-*yangban* origin participating in the examinations. This was the requirement that each candidate present to the examination offic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the names of his "four ancestors" (*sajo*)—that is, father,

¹¹ See *Chŭngbo munhŏn pigo* (Kojŏn Kanhaenghoe edition, Seoul, 1957), chapters 198 and 199 [hereafter, *MHPG*].

¹² *Ibid.*, 229, 19b.

¹³ *Kyŏngguk taejŏn*, pp. 240-41. *T'aejong sillok*, 9, 7a.

¹⁴ *Taejŏn songnok kŭp chuhae* (Chŏsen Sŏto-kufu Chŭsŭin edition, Seoul, 1935), p. 16.

¹⁵ If successful candidates were new recruits having no previous service in the government, they

were given government posts ranging from 6b to 9a ranks in the order of performance in the examination. If they had previously served in the government, they were given promotion up to the lower 3a rank from the previously held ranks. *Kyŏngguk taejŏn*, p. 156.

¹⁶ *Kugyŏk taejŏn hoet'ong* (Seoul: Koryŏ Tae-hakkyo, 1960), pp. 254-58.

¹⁷ *Kyŏngguk taejŏn*, pp. 207-208.

paternal grandfather, paternal great grandfather, and maternal grandfather. The purpose of this was the removal of anyone belonging to those social groups whom the state deemed undesirable.¹⁸ But one must not at this poin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this constituted a restriction on commoners as a whole.

A memorial presented by the Office of Remonstrance (*Saganwŏn*) in 1417 identifies the groups considered most undesirable. The memorial stated that the recruitment examinations not only examined the abilities of candidates but also scrutinized the lineage of the candidates in order to bar persons belonging to any of four groups: artisans, merchants, shamans, and descendants of low-born people. In other words, among the commoners, only artisans and merchants, whose trades had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mean by Confucianists, were excluded from the civil examinations. Significantly, no other social group with commoner status—peasants, in particular—were excluded from the examinations.¹⁹

Regarding the “four ancestors,” a further stipulation was later added in the *Taejŏn husongnok*, which appeared after the *Taejŏn songnok* in 1543. This important stipulation bears quoting in full.

If a candidate, when registering [for the examination], does not have anyone among his “four ancestors” who is a well known public official, he must present an endorsement, if he is from a province, signed by three members from his county liaison office in the capital, and, if he is from the capital, signed by three members of appropriate public offices, before he is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²⁰

How are we to interpret this? Undoubtedly, some will read it as an exclusion of all but men of *yangban* origin from the civil examinations, and, indeed, a superficial reading of the text might seem to justify such a verdict. However,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is new law, as recorded in the *Sillok* (the Veritable Records), indicates otherwise.

A Censorate criticism in 1537 opened the long debate on the question of scrutiny of candidates' lineage by arguing that many ineligible candidates participated in the civil examinations illegally by falsifying the records of their “four ancestors.”²¹ In the following year, the Office of Inspector-General (*Sahŏnbu*), deploring the increasing laxity in adherence to examination rules, pointed out flagrant abuses of the purpose of registering “four ancestors.”

The recruitment examination is of major importance to the state, and candidat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only after their four ancestors have been screened. This [screening] is aimed at differentiating the lineage backgrounds [of candidates] so that the channel of recruitment may remain untainted. Recently, however, public morality has deteriorated, and men born of concubines, descendants of merchants and artisans, and men of low birth, completely disregarding their positions, illegally take part in the examinations, either by fabricating their family registries or by falsely including a governmental official among the four ancestors, or, in the cases of men born of immoral women, forging names of their sponsors. . . . Because of these abuses, the civil examinations came to be held in low esteem, the channel of recruitment became desecrated, and the rectification of names became seriously compromised.

¹⁸ *Sŏngjong sillok*, 179, 11b-12a.

¹⁹ *T'aejong sillok*, 33, 17a-b.

²⁰ *Taejŏn songnok kŭp chuhae*, pp. 165-66.

²¹ *Chungjong sillok*, 85, 40a-b.

The Inspector-General's Office went on to explain that these abuses took place because the Registration Office, charged with screening the "four ancestors," was unable to carry out the task fully, being swamped with as many as three to four hundred candidates a day. Therefore, it was proposed that a stricter rule be established to prevent abuse of the examinations.²² Echoing the Censorate, many other high officials voiced similar views and proposed enactment of a new measure to forestall the participation of ineligible candidates.²³ It was by following these discussions that the new stipulation requiring many candidates to present an additional letter of endorsement signed by three officials was added in the *Taejŏn husongnok*.

What is significant here is that the discussions about ineligible social groups illegally participating in the civil examinations contained no reference to commoners, except merchants and artisans. Assuming the civil examinations were open only to men of *yangban* birth, are we then to believe that commoners never even attempted to enter illegally while those of an even lower social status frequently infringed upon the examination rules? It is more likely that the commoners were not included among those ineligible in the first place simply because there was no legal bar against the bulk of them.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additional endorsement was aimed at screening out merchants, artisans, men born of concubines, and others of low birth—not ordinary commoners, who did not belong to any of these categories. To be sure, this requirement must have been an extra burden for most commoner candidates; but one must also keep in mind that the same rule was also applicable to many candidates of *yangban* status who also did not have a "well known public official" among their "four ancestors." Thus, there is no evidence of statutory class restriction against commoners participating in the civil examinations.

If there was no legal restriction, is there evidence that supports actual participation of commoners in the civil examinations? Let us first examine the state educational system, which was an integral part of the examination scheme, to determine whether commoners were in fact allowed in the state-supported schools. Since nearly all the examination candidates were drawn from these schools, except perhaps a small number who attended private academies (*sŏwŏn*), th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ether commoners did indeed participate in the civil examinations. In addition to the National Academy and the Four Schools (*sahak*) in the capital, the Yi dynasty maintained a network of state-supported public schools (*hyanggyo*) in every county from the remote northeastern border to the isolated island of Cheju in the southwest. From the *Kyŏngguk taejŏn* we can calculate that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authorized to be enrolled in the state educational system was 15,750.²⁴ This number does not include those students enrolled in private academies, which became important after the late sixteenth century, or boys below the age of sixteen who attended the privately run village elementary schools (*sŏdang*).

In accordance with Confucius' injunction that "in education there shall be no class distinction,"²⁵ Yi officials made dedication to scholarship the main criterion for enrollment in the state schools. At the pre-*hyanggyo* elementary level, the School

²² *Ibid.*, 88, 18a.

²³ *Ibid.*, 85, 40a-b; 88, 18a; 93, 62a.

²⁴ *Kyŏngguk taejŏn*, pp. 240-43.

²⁵ *The Analects*, XV, 38.

Regulations for the Capital City and Provinces (*Kyŏng'oe hakkyo chŏlmoḵ*), promulgated in 1546, directed instructors (*tongmong hundo*):

. . . to assemble not only sons of literati families but also sons of the commoners from the ages of eight or nine through fifteen or sixteen and to teach them at first the *Sohak*. When students become able to clearly comprehend punctuations and sentences, and become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meaning to some extent, they should then be taught the *Great Learning*, the *Analects*, *Mencius*, and the *Doctrine of the Mean*. After this, they are to be advanced to the county schools.²⁶

These regulations state with clarity that sons of both the literati (*sajok*) and the commoners (*min*) were to be educated on the elementary level.

In 1582, Yi I (Yulgok), on order of the king, presented another set of school regulations in which the following stipulation was made concerning admission to state schools:

Except for *saengwŏn* and *chinsa* degree holders [who were to occupy the higher dormitory of the National Academy], all those who have set their determination on scholarship are to be enrolled, if they reside in the capital, in either the lower dormitory [of the National Academy] or in the Four Schools. In the case of those who live in the provinces, all those who study the Confucian teaching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rom the literati families or of humble origin, are to be enrolled at the county schools (*hyanggyo*). At the time of first registration, the student is permitted to enter after he is recommended by ten fellow students vouching for his scholastic determination and after he has been given an examination on the classics. Anyone . . . who is not registered at a school is not permitted to take part in the recruitment examinations.²⁷

One may argue, however, that while the door of state educational institutions may not in theory have been closed to commoners, in practice the indigent among them could not gain entry because of economic factors. To a certain extent, this may have been true. To send a boy to school, a family would have to have some economic resources above the level of abject poverty. But this limitation is not peculiar to traditional Korean society; it is still a negative characteristic of almost every society. In this connection, it should be observe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all commoners under the Yi lived on the margin of poverty. Not all were affluent, nor were all commoners indigent. Moreover, there usually was scholarship aid available for the education of promising young men. The state endowed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generously to provide economic protection for students,²⁸ and "educational chests" called *hakkye* were maintained by many communities and clan organizations in order to finance the education of needy members.²⁹ Most important, officially enrolled students received many privileges, among them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and other burdensome duties, which will be discussed below.

In certain cases, persons whose social status was even lower than that of com-

²⁶ *MHPG*, 203, 8b. See also another regulation presented by Song Chun-gil in 1659, *ibid.*, 209, 5a.

²⁷ Yi I, *Yulgok chŏnsŏ* (Seoul: Taedong Munhwa Yŏn'guwŏn, 1958), 15, 42a. *MHPG*, 207, 16a. See also *Yŏnsan'gun ilgi [silloḵ]*, 25, 22b.

²⁸ *T'aehak chi* (Seoul: Yulgok Munhwawŏn, 1970), I, 559 and II, 1-28. *Nosan'gun ilgi [Tan-*

jong silloḵ], I, 29a-b.

²⁹ *Milchu chingsin noḵ* (Miryang, 1936), 2, 5a. [R]yŏksa *kwahak*, 1965, No. 1, 63-64. Zenshō Eisuke, "Chōsen ni okeru kei no fukyū," *Chōsen gakuhō*, VII (1955), 91-92. *Chōsen no shūraḵu*, III (1933), 448.

moners were also encouraged to enroll in schools. The eligibility of the *paekchǒng* during the reign of Sejong (1418-1450) is a case in point. The *paekchǒng* were a nomadic minority group from the north who made their living by such trades as butchering and leather tanning.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even by the commoners and eventually sank to the level of outcastes.³⁰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Yi period, however, the government attempted, although without much success, to assimilate the *paekchǒng* into ordinary Korean life by providing them with land for settlement and by encouraging intermarriage with commoners. Then, in 1432, the Board of Rites advised the king: "Since the *paekchǒng* are now living among the commoners and intermarry with the commoners . . . it is requested that sons [of *paekchǒng*] who wish to study be permitted to enroll in the county schools." The *sillok* records that the king approved this request.³¹

There are also accounts by foreigners who visited Korea attesting to commoners' enrollment in the schools. In 1488, Tung Yüeh, leading a Chinese embassy, visited Korea and, after returning to China, wrote a book, *Chao-hsien fu*, depicting the life, customs, and institutions of Korea. In it, he described the social background of students housed in the two different dormitories of the National Academy:

The hall where *saengwǒn* and *chinsa* degree holders reside is called the upper dormitory, while the hall where those students who are advanced from the local schools reside is called the lower dormitory. . . . Those who are advanced from the local schools are commoners who are superior in intelligence and talent.³²

A Dutchman, Hendrik Hamel, reached Korea in 1653 when his ship was wrecked during a storm in the South China Sea. He and fifteen other crewmen were forced to remain in Korea for fourteen years, during which time they travelled widely and lived among all ranks of people. In 1666, Hamel and seven others managed to escape, and upon returning to his homeland, he wrote an account of the shipwreck and a description of Korea. On education, he wrote:

The Nobility, and all Free-men in general, take great care of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put them very young to learn to read and write, to which that Nation is much addicted. They use no manner of rigour on their method of teaching, but manage all by fair means, giving their Scholar an Idea of Learning, and of the Worth of their Ancestors, and telling them how honourable those are who by this means have rais'd themselves to great Fortunes, which breeds Emulation, and makes them students.³³

"Free-men" here, of course, refers to *p'yǒngmin*, or commoners.³⁴

Since there is no systematic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social background of examination candidates to confirm the participation of commoners, one must search for individual cases in which men of non-*yangban* origin competed successfully in the examinations. Although the *ch'ǒnmin*, men of "mean" status at the bottom of the

³⁰ See Kang Man-gil, "Sǒnch'o paekchǒng ko," *Sahak yǒn'gu*, XVIII (1964), 491-526.

³¹ *Sejong sillok*, 58, 3b.

³² Tung Yüeh, *Chao-hsien fu* (Chǒsen shiryō sōkan, no. 15), ed. by Chǒsen-shi Henshūkai (Seoul, 1937), 18b-19a.

³³ Gari Ledyard, *The Dutch Come to Korea*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71), p. 218.

³⁴ Yi Pyǒng-do, tr. and ed., *Hamel p'yoryu ki* (Seoul, 1954), p. 80.

social strata, were officially barred from the civil examinations, there were a few examples in which men of *ch'önmin* background were successful candidates.

In 1480, Ch'oe Sō passed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with highest honors and was immediately appointed to a sixth-rank instructor's post at the National Academy. The censorial offices, however, refused to issue *sōgyōng*, an endorsement finalizing the appointment, on the grounds that his maternal grandmother was the daughter of a lowly musician. But after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of senior officials, the king permitted Ch'oe Sō to remain in office,³⁵ and he eventually rose to become a magistrate of a prefecture (*ḡunsu*, rank 4b).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Ch'oe Sō had previously passed the lower civil examination and entered the *munkwa* examination as a *chinsa*.³⁶ Although his social background became an issue with regard to the higher examination, he was allowed to enter the lower examination without apparent challenge.

Ch'oe Ip (1539-1612) was once a slave because his mother was a slave, even though his father was a *chinsa*. He was later manumitted and passed the *chinsa* examination in 1555 and the *munkwa* in 1561.³⁷ Because of his widely known literary skills, he was given the director's post (*chejo*) in the Office of Diplomatic Correspondence (*Sūngmunwōn*) during the invasion of Toyotomi Hideyoshi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This was an important post since efforts to gain Chinese aid for the war depended on the skills of this office. When Ch'oe Ip declined the appointment, giving his humble birth as reason, the king is said to have replied, "Your literary fame is known to the present generation and how can there be an issue on account of your family background? Do not decline."³⁸ Ch'oe eventually rose to become the Vice Minister of Punishment (*Hyōngjo ch'amp'an*). His son, Tong-mang, also passed the *chinsa* and *munkwa* examinations.³⁹

Perhaps the most prominent man who rose through the examination system from slavery was Pan Sōk-p'yōng (?-1450). He was a private slave of a high official, who, recognizing Pan's talent, taught him and later entrusted him to a childless rich family, concealing the boy's slave status.⁴⁰ He became a *saengwōn* and in 1507 passed the *munkwa*.⁴¹ During his official career, however, the fact that he had been a slave was revealed, and on at least two occasions, in 1514 and 1516, his appointment was criticized by the censors on account of his low birth. In 1516, when Pan was given a post in the prestigious Office of Special Counselors (*Hongmun'gwan*), the censorial offices protested that his "family origin is one of lowly mean status,"⁴² but the protest was overruled, and Pan subsequently held governorships in all eight provinces and rose to become Minister of Punishment.⁴³

These are only three of a dozen or more cases I have uncovered in which men of low birth were advanced through the examination system. They are admittedly isolated cases and are, no doubt, exceptions to the rule. But they are nevertheless significant. These former slaves and descendants of slaves did take the examinations

³⁵ *Sōngjong sillok*, 114, 1b; 130, 2b; 143, 5b-6a.

³⁶ *Kukcho pangmok* (Seoul: Kukhoe Tosōgwan, 1971), p. 58a.

³⁷ Yi Ik, *Sōngho saesōl* (Mun'gwang Sōrim edition, Seoul, 1929), Chapter 9B, p. 42.

³⁸ *MHPG*, 221, 31b. See also *Sōnjo sillok*, 76, 7b.

³⁹ *Chōsen jimmei jisho* (Seoul: Chōsen Sōtokufu, 1937), p. 1372.

⁴⁰ *Sōngho saesōl*, Chapter 9A, pp. 22-23. Yi Kūng-ik, *Yōllyōsil kisul* (Seoul: Minjok Munhwa Ch'ujinhoe, 1967), pyōlchip chapter 13, X, 894-85. Yu Mong-in, *Ōu yadam* (Kohūng, 1964), Chapter 1, pp. 38-39. *Chungjong sillok*, 20, 3b.

⁴¹ *Kukcho pangmok*, p. 79a.

⁴² *Chungjong sillok*, 20, 3b; 24, 18a.

⁴³ *Chōsen jimmei jisho*, p. 1675.

and as a result did hold major government posts during a period noted supposedly for its extremely rigid view of class structure. It is evident that occasionally, though rarely, both rulers and officials valued an individual's competence above considerations of low birth.

A comparison of the social positions of *hyangni* (clerks in local magistracies) and commoners will also throw new light on the latter's standing in the examination system. Hitherto *Hyangni* have been regarded as a special social group occupying an intermediary position in the social hierarchy, above the commoners and below the *yangban*. This may well have been the case during the latter years of the Yi, but this view finds no support in the first 200 years of the dynasty. They were classified, along with *yǒngni* (post station attendants), *yǒngan* (laborers in the salt works), and *mokcha* (horse grazers), as *sin-yang yǒk-ch'ŏn*, that is, their status was that of a commoner, but the duties they were assigned to perform were those of "mean" men.⁴⁴ The *hyangni* were not officially remunerated for their labor, and their duty was hereditary. According to one official, "the duty of *hyangni* is so oppressive that everyone wants to get away from it."⁴⁵ The *Taejŏn songnok*, the 1492 supplement to the *Kyŏngguk taejŏn*, classifies *hyangni* as "men of lowly 'mean' status" (*pich'ŏn chi in*), along with artisans, merchants, servants, and post station attendants.⁴⁶ Thus contemporary sources clearly place the *hyangni* a grade lower than the ordinary commoner. This is further substantiated by the fact that a *hyangni* might be promoted to commoner status as a reward while a commoner could be reduced to *hyangni* status as punishment.⁴⁷

An understanding of the *hyangni*'s social position permits a clearer determination of whether commoners were allowed entrance into the examinations. A stipulation in the *Kyŏngguk taejŏn* says, "Those who have passed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the military examination, and the lower civil examination . . . are permitted to leave the *hyangni* duty along with their descendants."⁴⁸ This leaves no doubt that *hyangni* were officially permitted to enter the examinations, but there is additional evidence to bear this out. From the lists of successful candidates for seven of the thirty-two lower civil examinations given from 1513 to 1603, I have identified at least eleven graduates who held the position of *hyangni* at the time of examination.

Of those *hyangni* who passed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at least two cases must draw our attention. Yi Sun-myŏng, a *hyangni* from Kobu, was already a *hundo* (ninth rank instructor) when he passed the *mun kwa* in 1474.⁴⁹ When he was promoted in 1495 to the post of *changnyŏng*, the powerful Third Inspector (rank 4a) in the Office of Inspector-General, one junior officer in the same office protested:

The censor Yi Sun-myŏng comes from humble origin and, after he passed the examination, abandoned the wife who shared poverty with him. He is a heartless man and is unfit for the Censor's Office. It is requested that [the appointment] be amended.

⁴⁴ *Chungjong sillok*, 13, 35a-36b. *Sŏngjong sillok*, 166, 6b, 8b-9b.

⁴⁵ *Sŏngjong sillok*, 162, 1a.

⁴⁶ *Taejŏn songnok*, p. 105.

⁴⁷ *Sejo sillok*, 22, 24a. See also *ibid.*, 46, 21a; 50, 8a; 62, 18a.

⁴⁸ *Kyŏngguk taejŏn*, p. 165.

⁴⁹ *Kukcho pangmok*, p. 54a.

The king, rejecting this protest, replied, "In ancient times, a man rose from a cow-barn. How could mean origin be a reason for not employing a man?"⁵⁰

The plight of another former *hyangni*, Yi Tūk-chŏn, who passed both *chinsa* and *munkwa* examinations in 1504,⁵¹ is briefly illustrated in the *Sillok* as follows: "Yi Tūk-chŏn is originally a *hyangni* from Ch'ŏnan. He liked to study books, but his family was extremely poor, so much so that servants in the county office took pity on him and gave him clothing and food."⁵² He was later appointed several times to influential censorial posts in spite of opposition based on his humble *hyangni* origin.⁵³

In addition to the *hyangni*, the social status of another group was similarly ambiguous. These were the *sugun* (seamen), who belonged at best to the category of *sin-yang yŏk-ch'ŏn* and in many cases were viewed as "mean." A *Sillok* entry in 1420 explains the status of the *sugun*:

Those seamen with commoner status were assigned seamen's duty because, at the time of separating commoners from the "mean" men, their records on social status were not clear as to whether they were commoners or "mean" men, causing difficulty. This law is very fair. Now, however, because there are cases where these seamen escape to dodge their duties, they are classified as "mean" men.⁵⁴

By the time the *Kyŏngguk taejŏn* was compiled in the late 1470's, this classification was hereditary.⁵⁵

But in 1450, when the final palace examinations for the triennial *munkwa* was completed, one Kim Ūi-jŏng, the son of a *sugun*, had placed first among the thirty-three successful candidates. Just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however, the king altered the list, making Kwŏn Nam, the grandson of the distinguished scholar-official Kwŏn Kŭn, the highest, or *chang'wŏn*, graduate and placing Kim Ūi-jŏng second. The *Sillok* gives this account:

As Kim Ūi-jŏng placed first in the examination, people all clamored that because Ūi-jŏng comes from humble origins and has no reputation and even if he had answered the policy question [i.e., the final test that decided the ranking of candidates] well, he should not be permitted to head the successful candidates.

At midnight, the king ordered the paper of Kwŏn Nam presented to him and read it personally. Impressed by Kwŏn Nam's paper, he then made him *chang'wŏn*.⁵⁶ The *Sillok* historian entered this comment:

In all the *munkwa* examinations, when the candidates' ranking is decided, the examiners are not permitted to read the names of the candidates and only after having read the paper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rankings are they allowed to open the list to see the names. This is to demonstrate impartiality. Although the [Kwŏn] Nam affair was first initiated by the king and handled fairly, public opinion expressed a fear that this may have damaging consequences in later days.⁵⁷

⁵⁰ *Sŏngjong sillok*, 292, 1a-b. See also *ibid.*, 183, 10a-b; 184, 10a.

⁵¹ *Kukcho pangmok*, p. 74a.

⁵² *Chungjong sillok*, 33, 33a.

⁵³ *Ibid.*, 20, 33a; 21, 2b, 36a; 24, 46a; 37, 54a.

⁵⁴ *Sejong sillok*, 9, 11b. See also Yi Sang-baek, p. 231, n. 6.

⁵⁵ *Kyŏngguk taejŏn*, p. 417.

⁵⁶ *Munjong sillok*, 4, 24a-b.

⁵⁷ *Ibid.*

In the end, Kim Ŭi-jŏng, the lowly seaman's son unjustly placed second in the graduating class, did achieve an appointment as a local magistrate.⁵⁸

It is clear, then, that men of *sin-yang yŏk-ch'ŏn* status, such as *hyangni* and *sugun*, were openly admitted to the civil examinations, even though the number who were successful appears to have been relatively small. The social status of these men prior to receiving their degrees was clearly below, at the very best equal to, that of the commoners.

Convincing evidence of the participation of commoners in the civil examinations can also be found in a statutory guarantee made to post station attendants in P'yŏngan and Hwanghae provinces. While most post station worker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were drawn from the *sin-yang yŏk-ch'ŏn* group, those of the two northwestern provinces came originally from the families of well-to-do commoners, presumably because they could provide more reliable service along the major routes to China. Because the work was, in general, regarded as lowly, employees in these two provinces evidently required assura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at they remain secure in their status as regular commoners.⁵⁹ The *Taejŏn husongnok* gives this assurance:

Those who are permanently assigned as the post station attendants in P'yŏngan and Hwanghae provinces are originally commoners (*yangmin*). Their descendants with no blemished records are permitted in the *munkwa*, the military, and the *saengwon-chinsa* examinations.⁶⁰

The use of the term *yangmin* in this statute leaves no doubt that the law permitted the participation of men of commoner background in the civil examinations.

Skeptics may argue that even if no legal restriction had been placed against commoners participating in the examinations, there still may have been practices. However, not a single instance has yet been uncovered in which the social status of a commoner became an issue in the civil examinations, nor is any case known in which a candidate's qualification was challenged on the ground of his commoner origin during the period under study.

If indeed *yangban* status was a prerequisite for a person either to take part in the civil examinations or to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re must have been at least some instances in which commoners were elevated to the status of *yangban*, just as a number of men of "mean" status are known to have been made commoners. But, interestingly, not a single case has been found in the 200-year period under study in which a commoner was specifically raised to the status of *yangban*. This indicates that *yangban* status was not necessarily a prerequisite for eligibility for the civil examination or for becoming a government official.

There is, on the other hand, evidence that commoners were actually given official ranks within governmental service. The case in point is a law enacted in 1460 to encourage people from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to settle in the sparsely populated northern regions. The pertinent part of this law reads as follows:

For commoner volunteers from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those who move from Kyŏngsang and Chŏlla provinces to P'yŏngan province will be promoted

⁵⁸ *Kukcho pangmok*, p. 30b.

⁵⁹ See *Sŏngjong sillok*, 166, 6b-10b, 13b-16b.

⁶⁰ *Taejŏn songnok kŭp chuhae*, p. 199. See also *Chungjong sillok*, 20, 20a-b; 25, 25b.

with five higher grades whether they previously held offices or not, those who move [from the same provinces] to either Kangwŏn or Hwanghae province will be promoted with three higher grades, those who move from Ch'ungch'ŏng province to P'yŏngan province will be promoted with four higher grades, those who move [from the same province] to either Kangwŏn or Hwanghae province will be promoted with two higher grades. Those who wish to become officials in the aboriginal office will be allowed to do so. Those volunteers from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who are public or private slaves will be manumitted and be made commoners in perpetuity, and they will thereby become eligible to serve as government officials.⁶¹

Here, we have unmistakable evidence attesting to the fact that commoners were indeed rewarded with government ranks and that freed slaves who became commoners were declared eligible for government service.

There are also on record examples of men of humble social origin who gained government posts by way of the regular civil examinations. One such instance is the case of Ko Hyŏng-san (1453-1528). According to the *Sillok*, he came from a humble family in Hoengsŏng. When he passed the *munkwa* in 1483, he was "not known by anyone and was assigned, as was customary, to administer a county, and there he achieved great success." He was later regarded as an expert in military and fiscal matters and ultimately ascended to the post of Left Vice State Councillor (*Chwach'ansŏng*, rank 1b).⁶²

Pang Yu-ryŏng (?-1529) also came from a similar background. A native of Hapch'ŏn, he passed the *chinsa* and *munkwa* examinations, the latter in 1489. When he was appointed to the powerful post of Inspector-General (*Taesahŏn*, rank 2b), in 1518, however, the censor officials opposed him. Whereupon, according to *Sillok* historians, "He sighed and said: 'Though born of a humble family, I passed the examination and reached the second rank grade. This is as high as a common person can hope to rise.'" He then returned with his family to their farm in the countryside, the *Sillok* says.⁶³

There is also the case of An Chung-son, who came from Kosŏng, where he worked by day in the fields, studied at night, and attended the National Academy after each autumn's harvest was gathered. In 1513, past the age of forty, he passed the *munkwa* and acquired the important post of *changnyŏng* (rank 4a) in the Office of Inspector-General.⁶⁴

Ch'oe San-du was of *kunbo* (military provisioner) origin, and his relatives had served on military duty for many generations. After he took the *saegwŏn* degree in 1504 and the *munkwa* in 1513, he served in the prestigious Offices of Special Counselors and of Inspector-General.⁶⁵

These instances refute the notion that the civil examinations and official careers were open exclusively to the privileged *yangban* class during the first two centuries of the Yi dynasty. Although belief in the exclusion of commoners is widespread

⁶¹ *Sejo sillok*, 18, 19b. See also *Sejong sillok*, 62, 18a.

⁶² *Chungjong sillok*, 64, 30b. *Yŏnsan'gun ilgi*, 54, 2a. Kwŏn Mun-hae, *Taedong ūmbu kunok* (Seoul: Chŏngyangsa, 1950), 4, 73a.

⁶³ *Chungjong sillok*, 29, 43a-44a; 31, 49a.

⁶⁴ *Ibid.*, 29, 56a; 54, 46a. *Kukcho pangmok*, p. 82a.

⁶⁵ *Chungjong sillok*, 18, 19a; 34, 4a. *Yŏllyŏsil kisul*, Chapter 8, II, 731. *Kimyo pogyŏn nok* in Vol. II of *Taedong yasŏng* (Seoul: Kosho Kankŏkai, 1909), p. 525.

among Korean scholars, one distinguished historian in North Korea, Kim Sök-hyöng, has come to a similar conclusion. In his important study of the social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 he writes that "Even during the Yi dynasty, those who were commoners according to feudalistic social status were permitted to enter the recruitment examinations and could become *yangban*." He goes on to conclude:

Throughout the Koryö and the Yi dynasties, in practice, official posts in the state were given not merely to *yangban* of prominent lineage, but also to commoners, who were also legally eligible to receive posts. . . . Not only were the commoners not barred from the recruitment examinations, but even *hyangni*, whose social status was lower than that of commoners, were permitted to enter the examinations.⁶⁶

Although Kim Sök-hyöng does not provide full documentation, the evidence presented here fully supports the conclusion that commoners were permitted to compete in the civil examinations and, once having acquired degrees, to move upwardly through the ranks of the civil bureaucracy.

Regrettably, there is no way to determine the actual number or proportion of men of non-*yangban* origin who successfully took part in the civil examinations. Although there are several versions of examination graduate lists, unlike the Chinese lists, they contain no clear information o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graduates. One version of the comprehensive list of *munkwa* graduates does, however, include information on graduates' ancestors who had also passed the *munkwa* examination. From this, we can at least determine whether a candidate came from a family that had previously produced a *munkwa* graduate. Table 2 contains information on the ancestors of candidates who graduated between 1421 and 1630. A "*munkwa* family" here refers to a family that produced one or more *munkwa* graduates among a candidate's ancestors.

More than half of all *munkwa* graduates during this period came from families with no record of any previous graduates. This is not to say these were all families of commoners. Some may have produced government officials who did not hold the *munkwa* degree or held only the lower civil examination degree. Nevertheless, this kind of evidence supports the contention that the civil examinations were not closed to commoners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Yi period. We can also observe that the percentage of non-*munkwa* families, which is very high prior to 1500, begins to decrease after 1500 and drops to even lower levels from the late sixteenth century on. This trend suggests that, after the middle of the sixteenth century, it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candidates from non-*munkwa* families to place successfully in the *munkwa* examinations.

There is another aspect to be considered, and that is the role of clan organizations in the civil examinations. Obviously, this question is too vast to be treated completely in this paper, but there are certain features in the development of clan organizations that throw some light on the question of participation in the examinations. One such feature is the history of the compilation of clan genealogies.

In contrast to the proliferation of clan genealogies during the last half of the

⁶⁶ Kim Sök-hyöng, *Chösen höken jidai no kai-kyü kösei*, tr. by Suematsu Yasukazu and Yi Talhön (Tokyo, 1960), pp. 156-57. See also Cho

Chwa-ho, "Asia-jök kwanin chibae üi Han'guk-chök chönt'ong," in *Han'guksa üi pansöng* ed. by Yöksa Hakhoe (Seoul, 1969), p. 75.

TABLE 2—MUNKWA AND NON-MUNKWA FAMILY BACKGROUNDS OF CANDIDATES
IN THE 30-YEAR PERIODS

Period	Father Only ^a	Munkwa Family		Any Ancestors ^c	Non-Munkwa Family	Total
		(%)	Four Ancestors ^b			
1421-50	49(12.3)		53(13.6)	73(18.4)	324(81.6)	397
1451-80	172(23.6)		209(28.6)	260(35.6)	470(64.4)	730
1481-1510	156(25.0)		223(36.0)	306(49.3)	316(50.7)	622
1511-40	148(21.3)		252(36.2)	356(51.2)	340(48.8)	696
1541-70	143(21.7)		259(39.2)	326(49.4)	334(50.6)	660
1571-1600	189(24.6)		338(43.9)	427(55.5)	343(44.6)	770
1601-30	306(31.6)		462(47.8)	585(60.5)	382(39.5)	967
Total	1,163(24.0)		1,796(37.1)	2,333(48.2)	2,509(51.8)	4,842

SOURCE: *Kukcho munkwa pangmok* (Kyujanggak collection No. 106)^aGraduates whose fathers hold munkwa degree.^bGraduates whose families produced munkwa degree holders among their "four ancestors," including fathers.^cGraduates whose families produced munkwa degree holders among any of their ancestors, including the "four ancestors."

dynasty, the first two centuries showed surprisingly little interest in such compilations. The first known compilation of a clan genealogy took place in 1423 for the Yu clan of Munhwa.⁶⁷ Thereafter, as far as I can determine, only two other clans, the Andong Kwŏn clan and the Namwŏn Yang clan, published their genealogies during the fifteenth century, in 1476 and 1482 respectively.⁶⁸ The preface written for the Andong Kwŏn clan genealogy by Sŏ Kŏ-jŏng (1420-1488) includes this comment:

Our country, from ancient times, has maintained no clan law or clan records. Even prominent families of great clans keep no family history. There are those who do not even record the names of great-great grandfather, great grandfather, grandfather and father, as the several generations pass by. Their descendants become gradually estranged and unable to recognize relatives of four generations. . . .⁶⁹

The preface to the Namwŏn Yang clan genealogy has a similar statement: "Very few families of scholar-officials nowadays preserve their genealogies."⁷⁰ The postscript of the 1565 edition of the Munhwa Yu clan genealogy contains this statement: "Even among those who, in the present generation, claim themselves that they are exalted families and great clans, there are innumerable cases where no records of the names of fourth or fifth generation ancestors are kept."⁷¹ When we move into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e bibliographer Kim Hyu (1597-1639)

⁶⁷ *Munhwa Yu-ssi sebo* (1803 edition). I am grateful to Dr. Fujiya Kawashima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Tokyo, for providing this information.

⁶⁸ Sŏ Kŏ-jŏng, *Sagajip* (Koyang, 1929), 13, 9a-11a. *Sedŏk ch'ongyo*, 1, 12b (Handwritten. Har-

vard-Yenching Library Collection). Yang Sŏng-ji, *Nulchejip* (Seoul, 1938), 6, 98b-100a.

⁶⁹ *Sagajip*, 13, 10b.

⁷⁰ *Nulchejip*, 6, 100a.

⁷¹ *Munhwa Yu-ssi sebo*, preface 3a.

lists genealogies for only fifteen more clans in his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Korean books, the *Haedong munhŏn ch'ongnok*.⁷²

From the small number of genealogies and from comments in the prefaces and postscripts to them, we can conclude that the close-knit network of clan organizations and the publications of genealogies that may have been important resources for political and social power in late Yi society were limited to only a handful of clans in the early part of the dynasty. The Japanese scholar Inaba Iwakichi believes that the formation of the clan system did not materialize until around the time of the Hideyoshi invasion and bases this assertion on the fact that none of the important Neo-Confucian scholars of the early Yi period, such as Kim Chong-jik, Yi Ōn-jŏk, Chŏng Yŏ-ch'ang, and Cho Kwang-jo, mention anywhere in their very considerable writings anything about a clan system.⁷³

With this in mind, let us examine the distribution of *munkwa* graduates among various clans during the first 200 years of the dynasty. In Table 3, based on calculations made by Edward Wagner of Harvard University from the *pangmok* appendix to the *Chōsen jimmei jisho*, we can show that at least 757 different clans were represented among the *munkwa* graduates, excluding 377 whose clan affiliations are unknown. Only two clans produced more than 100 graduates each:

TABLE 3—DISTRIBUTION OF MUNKWA GRADUATES BY CLAN AFFILIATIONS: 1392–1591

No. of Graduates by Each Clan	No. of Clans Represented	Total No. of Graduates
110 - 119	1	112
100 - 109	1	103
90 - 99	0	0
80 - 89	0	0
70 - 79	2	148
60 - 69	4	257
50 - 59	7	376
40 - 49	2	88
30 - 39	11	378
20 - 29	20	481
10 - 19	51	703
5 - 9	62	424
1 - 4	596	734
Sub-total	757	3,804
Clan origins unknown		377
	Total	4,181

SOURCE: "Munkwa Statistics From Chōsen Jimmei Jisho Pangmok "
by Edward Wagner.

⁷² See pp. 474–89. Compiled shortly after the Hideyoshi invasion, this important bibliography lists with annotation more than 670 titles of books that had survived the devastating war. This book, photo reproduced in 1969, is very useful in know-

ing the books publishe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97.

⁷³ Inaba Iwakichi, "Chōsen chujin kō," *Tōa keizai kenkyū*, XVII (1933), 196–97.

the Andong Kwŏn, who placed 112 graduates, and the royal clan of Chŏnju Yi, who produced 103 graduates. Unfortunately, there is, at least at this time, no way of knowing the total membership of any of these clans.

If we define a clan that produced fifty or more graduates as a highly successful clan, one that produced ten to forty-nine as moderately successful, and a clan that produced fewer than nine as less successful, the following table can be assembled:

Clan	No. of Clans (%)	No. of Graduates (%)
Highly successful	15 (2.0%)	996 (26.2%)
Moderately successful	84 (11.1%)	1,650 (43.4%)
Less successful	658 (86.9%)	1,158 (30.4%)
Total (excluding those whose affiliation is unknown)	757 (100%)	3,804 (100%)

From this, we can see that 26.2% of the graduates came from only fifteen clans and that only 13.1% of the total number of clans represented produced 69.6% of the graduates. It is obvious from these figures that membership in certain influential clans was a favorable factor in success in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While the importance of clan affiliation can not be denied, it should not either be overlooked that 30.4% of the graduates were recruited from the less successful clans. This fact casts doubt on the notion that the early Yi examination system may have been monopolized by powerful clans. Moreover,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clans which may be regarded as less successful, surprisingly 596 clans or 78.7% of the total, produced fewer than four candidates each, many producing only one. These figures indicate that the major avenue to positions in the civil bureaucracy was accessible even to members of obscure clans.

Why, in the face of this evidence, has the misconception regarding the commoners' eligibility to take part in the civil examinations persisted? It may be at least partly due to the ambiguous nature of available data on the examination candidates. One source of such ambiguity is the term *yuhak* (幼學), a title claimed by almost all—roughly 90% by my estimate—of the lower civil examination candidates. Except for a small number called *kongsaeng* (i.e., *hyangni*) and *hŏ'tong* (i.e., men born of concubines who obtained special permission to take part in the examinations), the *yuhak* was the lowest social position for civil examination candidates. The question, then, is what is signified by *yuhak*? It has been defined vaguely as a scholar who has not yet held an official post.⁷⁴ Could a commoner claim this title, or was it reserved exclusively for men of *yangban* status? If the title was given only to one born into a *yangban* family, then we can safely assume there was no upward social mobility for commoners, in view of the fact that nearly all the lower civil examination candidates were *yuhak*.

According to Watanabe Manabu, a Japanese specialist in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yuhak* refers to one who has completed his study at the *hyanggyo* (county school) and has not yet passed the *saengwŏn* or *chinsa* examination."⁷⁵

⁷⁴ See, for example, Yi Hong-jik, ed., *Kuksa taesajon* (Seoul, 1969), p. 1044.

⁷⁵ Watanabe Manabu, *Kinsei Chōsen kyōikushi kenkyū* (Tokyo, 1969), p. 166.

This is so far the best (and the only) explanation made by a twentieth-century scholar.

But Cho Kük-sŏn (1595-1658), a seventeenth-century scholar-official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cal education, gives us a positive definition of *yuhak*. "In our country," he remarks, "all students who take part in the examination call themselves *yuhak*."⁷⁶ This definition is substantiated by the great nineteenth-century scholar, Chŏng Yag-yong, who writes: "Because there is no law on local examination, unqualified men intrude into the examination site, and, thereby, they all call themselves *yuhak*. Even public and private slaves illegally assume [the title by this means]."⁷⁷ It is evident that *yuhak* was not a hereditary title and that, although by the nineteenth century anyone who managed to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s took the title, in the earlier centuries of the Yi the term may have identified those who had completed the preparatory school for the examinations.

According to Cho Kük-sŏn, not only the examination-candidate students but their fathers and grandfathers too were called *yuhak*. He explained: "When a candidate lists his four ancestors, if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are alive and have no office, he always lists them as *yuhak*." Cho then comments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ntrinsic meaning of *yuhak* (young or elementary student) and its expanded usage:

Even those candidates who have repeatedly failed in the examination, and who are already past the age of forty or fifty, still call themselves *yuhak* and this is nonsense. . . . As for calling one's father and grandfather *yuhak*, is there anything more ridiculous than this?⁷⁸

The term *yuhak*, while it refers to examination-candidate students, does not offer us any clue to the student's social background. Whether he came from a family of commoners or from *yangban* lineage, he was, as an examination candidate, a *yuhak*, unless he was one of those infrequent candidates who were *kong-saeng* or *hŏt'ong*.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e title was not given on account of birth but was one acquired by those who pursued scholarship in preparation for the examinations.

That *yuhak* was not a hereditary title for a *yangban* is clearly demonstrated by the case of Yi Sun-sin, the great naval hero of the war during the Hideyoshi invasion. Yi Sun-sin was born into a family that could be regarded as *yangban* by any standard. His direct ancestor in the fifth generation had held the post of Director (*Taejehak*) of the *Hongmun'guan*, perhaps the most revered position in the Yi government. One of his elder brothers, Yo-sin, became a *saengwŏn* in 1573,⁷⁹ although Yi Sun-sin himself earned no degree at all until he was thirty, when, in 1576, he finally took the military degree. The diploma awarded for this degree has survived and is now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museum of the recently constructed shrine for Yi Sun-sin in South Korea. From it, we learn that when he took

⁷⁶ MHPG, 45, 31b. See also Yi Yu-wŏn, *Imha p'ilgyŏng* (Seoul: Taedong Munhwa Yŏn'guwŏn, 1961), p. 467 c-d.

⁷⁷ Chŏng Yag-yong, *Mongmin simsŏ* in Vol. II of *Chŏng Tasan chŏnsŏ* (Seoul: Munhŏn P'yŏnch'an Wiwonhoe, 1961), 6, 10a-b. That the assumption

of the title *yuhak* is related to the examination is also implied in a 1708 ruling; see, *Sugyo chibyo* (Chŏsen Sŏtokufu Chŭsŭin edition, Seoul, 1943), p. 297.

⁷⁸ MHPG, 45, 31b-32a.

⁷⁹ *Mansŏng taedongbo* (Seoul, 1931), I, 103a.

the military examination, his status was that of *poin*.⁸⁰ A *poin* was a military provisioner, a classification that,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applied in general to commoners. It is a mystery how a man like Yi Sun-sin was reduced to *poin* status. Significant for our study, however, is that the evidence of different designations of social status, even among brothers—*saengwŏn* and *poin* in this case—raises serious doubt about the popular notion that *yangban* status was hereditary.

What, then, made *yangban* different from commoners? Is it possible to draw a line of demarcation that may have distinguished *yangban* from commoners? Although a satisfactory answer to these important questions must await further studies, at least a partial clue may lie in the Confucian studies within the education system. All students enrolled in the *sahak* (Four Schools) in Seoul were called *haksaeng*, while those registered in *hyanggyo* (county schools) were known as *kyosaeng*. Whether all these students could be regarded as *yangban* or not is difficult to determine at this time. But in view of the fact that nearly all the candidates in the lower civil examination for the *chinsa* and *saengwŏn* degrees were drawn from these schools, it is safe to classify them at least as potential *yangban*. Within this category of potential *yangban*, we can include those commoners who were formally enrolled in these state educational institutions. On this matter, the seventeenth-century *Sirhak* scholar Yu Hyŏng-wŏn (Pan'gye) remarked:

Schools are for the purpose not only of enabling scholars to study but also to teach all men throughout the world, so that no one is left uneducated. County and prefecture schools are for superior students selected from village level schools. . . . The distinction between scholars and commoners is first determined here.⁸¹

In other words, whether one became a scholar or remained a commoner depended on his admission into the county level school, according to Pan'gye. If he was admitted, he would be well on his way to becoming a scholar and would be eligible for the lower civil examination, whose *saengwŏn* or *chinsa* degree would make him an eminent member of the *yangban*.

Moreover, those officially enrolled students received an important privilege—namely, exemption from military duty.⁸² To qualify for this privilege, however, each student had to maintain a minimum scholastic standing by passing periodic tests given to local students. If he failed such a test, he was liable for burdensome military service,⁸³ which would reduce him virtually to commoner status. It was as much a duty as a privilege for a student to keep up his Confucian studies. When state control over the local schools became lax after the Hideyoshi invasion,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creasingly became, because of this privilege accorded to students, favorite places for the idle to flock in order to escape military service.⁸⁴

⁸⁰ See also the photo reproduction of Yi Sun-sin's military diploma in Chōsen-shi Henshūkai, *Chōsen shiryō shū shin zōku* (Seoul, 1937), plate 49.

⁸¹ Yu Hyŏng-wŏn, *Pan'gye surok* (Seoul: Kojŏn Kanhaenghoe, 1958), 9, 34a-b.

⁸² Although no specific stipulation exempting students from military duty can be found, evidence cited below makes it quite clear that this was so. See also Yukkun Sagwan Hakkyo Han'guk Kunsu

Yŏn'gusil, *Han'guk kunjesa*, I (Seoul, 1968), 26-27.

⁸³ See *T'aehak chi*, I, 548, 575. *Yulgok chŏnso*, 15, 29b-30a, 40b. *Hop'ae samok* (1625 edition, Kyujanggak collection No. 12344), 3b-4a. Yu Hui-ch'un, *Miam ilgi ch'o* (Seoul, 1936-38), III, 110. *Myŏngjong sillok*, 23, 54a.

⁸⁴ *Chungjong sillok*, 29, 41b. *Injo sillok*, 13, 44a-b; 14, 2b; 21, 9b-10a. *Sukchong sillok*, 49, 10a. Yu Su-wŏn, *Usŏ* (1969 reprint, Seoul), 27d.

In the meantime, military service itself became more and more demeaning and eventually, by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one scholar-official decried, "once one is reduced to bear military duty, he is removed from the scholar's status."⁸⁵ Thus, those students who neglected their Confucian studies were confronted with a rather bleak alternative.

Scions of even the most distinguished *yangban* families were not spared from such a dilemma. An episode in the life of the great-grandson of Kim Chong-jik is revealing. Kim Chong-jik (1431-1492) was a prominent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and a major personality in the early Yi dynasty. But all the achievements of Kim Chong-jik nearly failed to insure his great-grandson a continuing status as a member of the *yangban*. For when Kim Chong-jik's great-grandson failed a reading examination given to students, a special commissioner ordered him to bear military duty. When informed of the unfortunate fate that had befallen the direct heir of the revered Kim Chong-jik, the governor of Kyöngsang province managed to arrange for a substitute to be accepted in his place.⁸⁶

A similar fate very nearly overtook two grandnephews of the prominent scholar-official Yu Hui-ch'un (1513-1577). One of his grandnephews had not kept up his studies and was ordered to bear military duty after having failed the reading examination. But at the last moment, he was given a passing grade because he was a relative of the prominent Yu Hui-ch'un and thus escaped being taken into the army.⁸⁷ A couple of months later, his younger brother also escaped military service under similar circumstances.⁸⁸ These two young men were also grandsons of Yu Söng-ch'un, a brother of Yu Hui-ch'un, who had won the *saengwön* and *munkwa* degrees and had already served in several influential middle ranking posts, such as in the Board of Personnel and the *Hongmun'gwan*, before his premature death.

Another misfortune that befell Yu Hui-ch'un's own son is also revealing. When Yu Hui-ch'un died in 1577, he possessed both fame and fortune as the eminently respected First Counselor (*Pujehak*) of *Hongmun'gwan*. The fortune, which was considerable, he bequeathed to his only son, Kyöng-nyöm. Kyöng-nyöm was furthermore married to a daughter of Kim In-hu, another famous and well respected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Through Yu Hui-ch'un's *üm* privilege, Kyöng-nyöm was given the position of a post-station master though he had never acquired a degree. But Yu Kyöng-nyöm was so entirely inept that he not only lost his post but by 1600, had already squandered the fortune bequeathed to him. Having lost his inheritance and reached the brink of starvation, he was finally able to stir the pity of some local officials, who dispatched an appeal to the provincial governor to grant welfare assistance to the incompetent son of the highly talented Yu Hui-ch'un.⁸⁹

These four individuals—the great-grandson of Kim Chong-jik, the two grandnephews and the son of Yu Hui-ch'un—escaped losing the privileged *yangban* social status only by virtue of special favor engendered through the successes of their distinguished relatives. What is significant here is that, if the descendants of such prominent personages came so close to losing their social status, it is not difficult

⁸⁵ Quoted in Ch'oe Ch'ang-gyu, *Kündae Han'guk chöngch'i sasangsa* (Seoul, 1972), p. 93.

⁸⁶ *Miam ilgi ch'o*, IV, 313.

⁸⁷ *Ibid.*, 345.

⁸⁸ *Ibid.*, 391.

⁸⁹ *Ibid.*, V, 346-48.